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Ⅲ):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

김나영·권미경·오동석·정유나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Ⅲ):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

저 자

김나영, 권미경, 오동석, 정유나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나 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오 동 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정 유 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24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Ⅲ):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02) 6948-965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07-7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고, 2020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2005년에 이미 이러한 출산율 감소에 대비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하였다. 아울러 2006년부터 관계부처합동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구유형의 변화 등 우리나라 유자녀 가구의 생활양식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정책수요자의 요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존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보육’ 정책에만 집중하던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육아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지역사회 양육환경과 연계된 거시적 패러다임 정립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본 연구를 통하여 육아지원정책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양육환경을 재설계하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용 통계 자료를 활용과 심층면담 등을 통하여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지역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인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육아친화마을 조성 및 인증 사업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반 마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향후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토대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본 보고서의 자료 수집을 위해 도움을 주신 관련 기관 관계자 분들, 보고서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자문 및 검토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요약	1
----	---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20
3. 연구방법	21
4. 선행연구	23
II.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추진과정	49
1.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개요	51
2.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1차년도 연구	52
3.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2차년도 연구	59
III. 저출생 인식 조사·분석	65
1. 설문 개요	67
2. 설문 결과	69
3. 소결	151
IV. 육아친화 인식 조사·분석	153
1. 육아친화 인식 영향 요인 분석: 위계적 선형 모형	155
2. 육아친화 인식 영향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167
V.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기본계획	175
1. 인증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177
2. 사업추진계획	177
3. KICCE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방법 및 절차	178

4. 인증 모니터링	182
5.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방법 및 절차	183
6.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운영	185
 VI. 육아친화마을 조성 추진 관련 사례	199
1. 우수 활용 사례: 울산광역시 남구	201
2. 우수 활용 사례: 부산광역시	216
3. 2차년도 검토 사례: 경기도 광명시	223
4. 2차년도 검토 사례: 경기도 남양주시	233
5. 소결	238
 VII. 육아친화마을 인증 관련 법제 연구	241
1.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 관련 법제 연구	243
2.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 제정 방안	256
3. 소결	258
 VIII. 육아친화마을 조성 추진 방안	261
1. 결론	263
2.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264
 참고문헌	273
Abstract	277
부록	279
부록 1. 육아친화마을 구현을 위한 현장 세미나 포스터	279
부록 2.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280
부록 3.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영역별 지표	285
부록 4. 저출생 및 육아친화 인식 조사	293



표 목차

〈표 Ⅰ-3-1〉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일정	22
〈표 Ⅰ-4-1〉 202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29
〈표 Ⅰ-4-2〉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 및 방법	33
〈표 Ⅰ-4-3〉 아동친화도시 지정 현황	33
〈표 Ⅰ-4-4〉 2021년 고령친화도시 가입 현황	37
〈표 Ⅰ-4-5〉 가족친화인증 세부 추진일정	40
〈표 Ⅰ-4-6〉 가족친화인증 평가 배점 기준	40
〈표 Ⅰ-4-7〉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현황	41
〈표 Ⅰ-4-8〉 2021년도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분야별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	43
〈표 Ⅰ-4-9〉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육아친화 관련 시행계획	44
〈표 Ⅱ-2-1〉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54
〈표 Ⅱ-3-1〉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안)	62
〈표 Ⅲ-1-1〉 응답자 구성	67
〈표 Ⅲ-1-2〉 조사문항 구성	68
〈표 Ⅲ-1-3〉 응답자 특성	68
〈표 Ⅲ-2-1〉 저출생 현상 심각성 평가	69
〈표 Ⅲ-2-2〉 지역(시군구) 인구 밀집도 평가	71
〈표 Ⅲ-2-3〉 거주지역에 대한 젊은세대 정착 적절성 평가	74
〈표 Ⅲ-2-4〉 젊은세대 정착 부적절 이유	76
〈표 Ⅲ-2-5〉 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공감도	78
〈표 Ⅲ-2-6〉 결혼, 출산, 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중복응답, 1순위)	81
〈표 Ⅲ-2-7〉 거주 기초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평가	84
〈표 Ⅲ-2-8〉 저출생 극복 시책 효과를 위한 개선사항 (1순위)	87
〈표 Ⅲ-2-9〉 자녀 출생 요인 대책 (1순위)	90
〈표 Ⅲ-2-10〉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필요성_청년 취업지원정책	92
〈표 Ⅲ-2-11〉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필요성_출산장려정책	94
〈표 Ⅲ-2-12〉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필요성_일가정양립정책	96
〈표 Ⅲ-2-13〉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필요성_아동돌봄정책	98
〈표 Ⅲ-2-14〉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부 단위	100
〈표 Ⅲ-2-15〉 거주 기초지자체의 육아친화환경 조성 대응 평가	101

〈표 Ⅲ-2-16〉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우선적으로 고려될 요소	103
〈표 Ⅲ-2-17〉 거주지역 평가_초중고 교육환경	106
〈표 Ⅲ-2-18〉 거주지역 평가_영유아 자녀돌봄 및 양육환경	107
〈표 Ⅲ-2-19〉 거주지역 평가_주택가격	109
〈표 Ⅲ-2-20〉 거주지역 평가_자연환경(공원 등)	111
〈표 Ⅲ-2-21〉 거주지역 평가_생활편의시설(마트 등)	113
〈표 Ⅲ-2-22〉 거주지역 평가_여가(놀이) 및 문화시설	115
〈표 Ⅲ-2-23〉 거주지역 평가_취업 여건	117
〈표 Ⅲ-2-24〉 거주지역 평가_이웃과의 교류	119
〈표 Ⅲ-2-25〉 거주지역 평가_교통편의	121
〈표 Ⅲ-2-26〉 거주지역 평가_기초지자체 정책 수립 및 시행	123
〈표 Ⅲ-2-27〉 거주지역 평가_기초지자체와 시민과의 소통	124
〈표 Ⅲ-2-28〉 거주지역 평가_지역개발 및 성장	126
〈표 Ⅲ-2-29〉 거주지역 평가_전반적인 경제여건(상황)	128
〈표 Ⅲ-2-30〉 결혼에 대한 인식	131
〈표 Ⅲ-2-31〉 미혼자들이 결혼하는 데 느낄 어려움	134
〈표 Ⅲ-2-32〉 자녀 출생에 대한 인식	137
〈표 Ⅲ-2-33〉 자녀 출생에 대한 긍정 인식 이유	139
〈표 Ⅲ-2-34〉 자녀 출생에 대한 부정 인식 이유	142
〈표 Ⅲ-2-35〉 친화도시 인지도_아동친화도시	145
〈표 Ⅲ-2-36〉 친화도시 인지도_여성친화도시	146
〈표 Ⅲ-2-37〉 친화도시 인지도_가족친화인증	147
〈표 Ⅲ-2-38〉 친화도시 인지도_고령친화도시	148
〈표 Ⅲ-2-39〉 친화도시 인증 사업 필요성 공감도	149
〈표 Ⅳ-1-1〉 종속변수	157
〈표 Ⅳ-1-2〉 분석변수	158
〈표 Ⅳ-1-3〉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160
〈표 Ⅳ-1-4〉 상관관계 분석	162
〈표 Ⅳ-1-5〉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종속변수: 양육환경 적절성A)	163
〈표 Ⅳ-1-6〉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종속변수: 양육환경 적절성B)	164
〈표 Ⅳ-1-7〉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종속변수: 지역시설 이용만족도)	165
〈표 Ⅳ-2-1〉 분석변수	168
〈표 Ⅳ-2-2〉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170

〈표 IV-2-3〉 상관관계 분석	172
〈표 IV-2-4〉 다중회귀 분석 결과	173
〈표 V-1-1〉 육아친화마을 조성 3대 목표	177
〈표 V-3-1〉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심사기준	180
〈표 V-3-2〉 육아친화마을 조성 위한 목표별 추진 계획	181
〈표 V-4-1〉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 모니터링 계획	183
〈표 V-5-1〉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심사기준: 사업성과보고서	184
〈표 V-5-2〉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심사기준: 사업계획서	184
〈표 V-6-1〉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188
〈표 V-6-2〉 지역주민 참여 워크숍 진행순서 예시	195
〈표 VI-1-1〉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 및 세대 추이	202
〈표 VI-1-2〉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인구 추이	202
〈표 VI-1-3〉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동별 영유아 인구현황(2020년 기준)	203
〈표 VI-1-4〉 전국울산시·남구 영유아 인구 증감률	204
〈표 VI-1-5〉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수	205
〈표 VI-1-6〉 울산광역시 남구 동별 보육시설 수	205
〈표 VI-1-7〉 울산광역시 구별 보육시설 수 (2018-2020)	207
〈표 VI-1-8〉 일반집단 구성요소별 문항 및 결과 안내	209
〈표 VI-1-9〉 인적네트워크 만족도	210
〈표 VI-1-10〉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	211
〈표 VI-1-11〉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	211
〈표 VI-1-12〉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	212
〈표 VI-1-13〉 행정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	212
〈표 VI-1-14〉 주제 별 마을별 요구사항	213
〈표 VI-1-15〉 울산광역시 남구 안심 육아공통체 발전을 위한 실천 전략	214
〈표 VI-1-16〉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심사기준	215
〈표 VI-2-1〉 부산광역시 인구 및 세대 추이	216
〈표 VI-2-2〉 부산광역시 영유아 인구 추이	217
〈표 VI-2-3〉 부산광역시 보육시설 수	218
〈표 VI-2-4〉 부산광역시 육아친화성 측정 지표	218
〈표 VI-2-5〉 부산광역시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221
〈표 VI-2-6〉 전문가 의견 및 제언	222
〈표 VI-3-1〉 광명시 인구 및 세대 추이	223

〈표 VI-3-2〉 광명시 영유아 인구 추이	224
〈표 VI-3-3〉 광명시 행정동별 영유아 인구현황 (2020)	224
〈표 VI-3-4〉 전국경기도·광명시 영유아 인구 증감률	225
〈표 VI-3-5〉 광명시 보육시설 수	227
〈표 VI-3-6〉 광명시 실천과제 성과지표	228
〈표 VI-3-7〉 광명시 보육부문 실천과제	228
〈표 VI-3-8〉 광명시 보육사업 추진 성과	232
〈표 VI-4-1〉 남양주시 인구 및 세대 추이	233
〈표 VI-4-2〉 남양주시 영유아 인구 추이	234
〈표 VI-4-3〉 남양주시 행정동별 영유아 인구현황 (2020)	234
〈표 VI-4-4〉 전국경기도·남양주시 영유아 인구 증감률	235
〈표 VI-4-5〉 남양주시 보육시설 수	236
〈표 VI-4-6〉 남양주시 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 사업 추진 개요	237
〈표 VI-4-7〉 남양주시 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 사업계획(안)	238
〈표 VII-1-1〉 1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44
〈표 VII-1-2〉 2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7
〈표 VII-1-3〉 2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47
〈표 VII-1-4〉 3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49
〈표 VII-1-5〉 3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9
〈표 VII-1-6〉 3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50
〈표 VII-1-7〉 4-1안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방안	252
〈표 VII-1-8〉 4-2안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방안	253
〈표 VII-1-9〉 4안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방안	254
〈표 VII-2-1〉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표준안	266



그림 목차

[그림 I-1-1]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모형	19
[그림 I-4-1] 가족친화인증 절차	39
[그림 II-2-1]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	52
[그림 II-2-2] 육아친화마을 구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	53
[그림 II-2-3]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지표 요인별 절대적 육아 친화성 요인 점수 비교	55
[그림 II-2-4]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지표 요인별 상대적 육아 친화성 요인 점수 비교	56
[그림 II-2-5]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57
[그림 II-2-6]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순환모형	58
[그림 II-3-1]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체계도	59
[그림 II-3-2]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의 1차년도(상)와 2차년도(하) 구성 체계 비교	60
[그림 V-3-1]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일정	179
[그림 V-5-1]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일정	183
[그림 V-6-1] KICCE 육아친화마을 진단 도구	187
[그림 V-6-2]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191
[그림 V-6-3] 육아친화마을 조성 KICCE 컨설팅 추진 절차	192
[그림 V-6-4]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실행 과정	193
[그림 VI-1-1]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인식 조사 연구 절차	209
[그림 VI-2-1] 부산광역시 육아친화성 측정 지표 산식	219
[그림 VI-2-2] 초점집단면접 조사 대상자 구성	220
[그림 VI-2-3] 전문가 조사 대상자 구성	221
[그림 VI-3-1] 광명시 보육정책과의 비전과 전략	227
[그림 VIII-2-1]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유사친화 인증 사업 추진도	270
[그림 VIII-2-2] KICCE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운영 방안	272



부록 표 목차

〈부표 1〉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280
〈부표 2-1〉 영유아기 보육/돌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285
〈부표 2-2〉 아동기 보육/돌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286
〈부표 2-3〉 공원/녹지 육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287
〈부표 2-4〉 여가/문화 육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288
〈부표 2-5〉 교통/안전 육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289
〈부표 2-6〉 보건/의료 육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291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보육 정책’에 집중하던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은 불가피
 - 가구유형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육형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육아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지역사회 양육환경과 연계된 거시적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이를 기반으로 육아지원정책들이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양육환경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
- 본 연구의 ‘육아친화’ 및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은 기존의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마을)’ 등의 개념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정의
 - ‘육아’라는 행위의 특성상 대상 연령층이 영유아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육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 및 지역사회의 역할 등이 총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그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 등에 그 차이가 있음.

나. 연구의 내용

- KICCE 육아친화마을 관련 문헌연구: 1차년도에서 개발한 육아친화마을 진단 체크리스트, 선행 인증사업 연구, 법규정을 검토하여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기준 마련
- 저출생 인식 조사·분석: 저출생 극복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만족도, 향후 관련 정책 요구 등을 파악하고, 아울러 지역의 육아친화 환경 조성에 대한 전반을 파악하여 분석

□ 육아친화 인식 조사·분석

- 통계청, 질병관리청,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11차)를 병합하여 새롭게 구축한 2차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분석데이터를 구축하여 육아친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2차년도 설문자료를 활용한 지역 육아친화 인식 분석

□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절차 및 인증 매뉴얼 구축: 본 연구의 인증사업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위원회 구성, 평가지표, 인증수여 등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고,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마련

□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근거 법개정 검토: 인증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향후 인증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규정 검토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활용사례 (울산 남구, 부산광역시)

- 본 연속연구를 활용하여 지역 육아친화마을 분석한 사례 보고
- 본 연속연구 중 2차 연구(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시범진단 및 적용)에 참여하였던 지역의 육아친화 환경 조성 현황 재점검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인증을 위한 근거 법 마련 검토, 인증절차 수립 등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청취

다.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추진과정

□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1차년도 연구

- 개념 정의 및 구성요소 도출: “‘육아친화마을’이란 서로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마을, 즉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님’을 의미
- 육아친화마을 구성 위한 과정적 절차 구상: “체크리스트와 평가지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마을 내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를 중심으로 진단하는 객관적 ‘육아친화마을 지표’의 구성과 지역별 수요자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 구성이라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구체화

- ‘육아친화마을 지표’는 지자체 수준에서 마을 조성 시 현황을 진단하는 위로 부터의 접근방법(Top-down)이라면,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는 마을특 성을 고려하여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아래로부터의 접근방법 (Bottom-up)
- 육아친화마을 지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력하여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육아관련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라는 기준으로 지표구성 영역을 확정 하고, 세부지표 풀(pool)을 구성하고, 최종 ‘KICCE 육아친화마을 지표’를 선정
-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는 두 단계를 거 쳐 도출. 먼저 연구진이 관련 선행연구와 사전 수요자 면담 등의 자료를 참조 하여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을 구성. 다음은 양육자들 이 참여하는 주민워크숍에서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을 활용하여 지역맞춤형 체크리스트 도출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도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모 형을 4단계로 제시

□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2차년도 연구

-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의 보완: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구성요소(철학 및 가치, 서비스 인프라, 인적참여 네트워크)에 협력을 위한 요소로 ‘행정서비 스’를 포함. 또한,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절차를 보다 구체화.
- 1차년도의 절대적 공급지표와 상대적 공급지표를 발전시켜 물리적 접근성 지 표와 주민 체감도 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2차년도의 지표는 절대적 공급 지표(육아친화 직접 지표와 간접 지표 자료 수집), 상대적 공급지표, 물리 적 접근성 지표, 주민 체감도 지표로 구성
- 특히 1차년도 연구에서의 지표체계에 더하여 육아 관련 서비스·인프라에 대 한 실제 이용가능성과 체감 정도를 포함하여 확대
- 지역 유형화 및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적용 시범사업 추진: 육아를 중심으 로 지역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영유아의 인구변화를 주요 요인으로 고려.
- 지역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유형화: 1) 대규모 신규 주거지역 조성 확충으 로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는 신규조성 대도시지역, 2) 도시재 생 지역으로 기존 원도심의 낙후와 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영유아 인구의 변

화가 보이는 곳, 3)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 내에 도시와 농어촌의 공존으로 차별화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

-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안) 제시: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안)’을 제안.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목적, 육아친화마을의 기본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원칙,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기본 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 제안

2. 저출생 인식 조사·분석

가. 조사내용

- 본 연구의 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의 ‘저출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전국 만 25~45세 성인 남녀 1,000명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실시
- 조사 내용은 저출생현상 및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지자체, 유관 정책 및 출생 요인 평가/지원정책 필요성/육아친화관련 인식 및 거주지역 평가/결혼 및 출생에 대한 인식/친화도시인지도 및 필요성 등임.

나. 조사결과

- 저출생 현상에 대한 심각성 평가 조사 결과, ‘심각함’ 89.0%, ‘심각 안함’ 11.0%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에는 ‘심각한 편이다’가 60.2%, 남성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56.1%로 높은 비중을 차지. 또, 연령별 조사 결과, 25~59세, 30~34세, 35~39세, 40~45세 모두 ‘심각한 편이다’가 47.0% 이상으로 많았다. 특히, 40~45세에서는 ‘심각한 편이다’가 52.7%로 과반 이상을 차지
- 거주지역에 대한 젊은세대의 정착 적절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적절함’ 52.9%, ‘부적절함’ 47.1%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적절함’이 55.9%로 44.1%인 ‘부적절함’보다 높았으나 남성의 경우, ‘적절함’이 49.7%로 ‘부적절함’인 50.3%보다 낮음.
 - 연령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함’이 46.1%로 53.9%인 ‘부적절함’보다 작은 25~29세를 제외하고, 30~34세, 35~39세, 40~45세에서는 모두 ‘적절함’이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청년층의 거주지역의 정착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청년층의 거주에 대한 요구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

□ 젊은 세대의 정착이 부적절한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일자리가 부족해서’ 37.4%, ‘주택공급 부족’ 20.6%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모든 기준에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주택공급 부족’이 각 1순위, 2순위의 비중을 차지
- 권역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이 34.0%, ‘일자리가 부족해서’ 15.8% 순으로 나타났고, 호남권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이 60.4%, ‘주택공급 부족’ 15.1%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 순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또, 자녀가 없는 그룹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주택공급 부족’ 순이었지만, 자녀가 있는 그룹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39.2%,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18.8% 순으로 나타남.
- 이상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집단 특성별 요구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육아친화환경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해 본 결과, ‘조성 안됨’ 78.1%, ‘조성됨’ 21.9%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저출생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

- 거주 기초지자체의 육아친화환경 조성 대응 평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대응안함’이 78.1%로 ‘대응함’ 21.9%보다 많음. ‘별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56.5%,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 21.6% 순으로 나타남.
-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출산 및 양육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조사해 본 결과,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49.3%, ‘육아를 위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 12.2%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 순위를 전반적으로 유지하나 호남권과 충청권에서는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응답 비중이 각각 48.7%,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각각 15.4%, 14.1%로 많음.

-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은 저출생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전히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보다 지역별 상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저출생 극복 노력과 육아친화환경 마련이 필요

3. 육아친화 인식 조사·분석

- 2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구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육아친화 인식(적절성, 만족도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
-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요소들이 육아친화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여 인증 심사 시 해당 요소들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가. 분석자료

- 본 연구진이 통계청 데이터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11차)를 병합하여 새롭게 구축. 지역특성 변수 구성을 위하여 통계청의 지역 내 총 생산, 합계출산율, 고령화 지수 등 지역 인구 및 사회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육아친화에 대한 변수 구성을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 데이터 중에서 거주 지역의 양육환경 적절성 및 시설 이용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을 사용

나. 분석모형

- ‘양육환경 적절성’ 및 ‘지역시설 이용만족도’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
- 독립변수로는 가구특성과 지역특성의 변수를 사용
- 지역특성과 가구특성은 위계적 자료 또는 내재적 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흔히 다층모형으로 알려진 위계적 선형모형을 분석모형으로 활용

다. 변수설정

- 종속변수는 ‘양육환경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과 ‘지역 시설 이용만족도’에 대한 응답. 해당 변수는 두 가지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분석
 - ‘양육환경 적절성A’의 8개 문항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양육에 영향을 주는 문항인 범죄, 치안, 안전 그리고 이웃관계 항목만으로 ‘양육환경 적절성B’로 구성하여 분석을 시행
- 분석에는 핵심설명변수인 가구 거주 지역 규모 변수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경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내 총생산, 해당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할 합계출산율, 노령화 지수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

라. 분석결과

- 종속변수 ‘양육환경 적절성A’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의 평균적인 ‘양육환경 적절성A’는 도시의 규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도시는 읍면동과 비교하여 ‘양육환경 적절성A’가 평균적으로 1.857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구수준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환경 적절성A’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델 2에서는 대도시에서 가구 소득과 ‘양육환경 적절성A’의 양(+)의 관계만 그대로 나타남.
- ‘양육환경 적절성B’는 ‘양육환경 적절성A’에 대한 설문조사 중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치가 잘 구비되어 있다.’에 대한 응답 값만을 포함한 변수
 - 지역의 평균적인 ‘양육환경 적절성B’는 지역특성 변수와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수준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 지출이 낮을수록 ‘양육환경 적절성B’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델 2에서도 이러한 변수의 관계는 동일하게 나타남.

□ 마지막으로 ‘지역시설 이용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의 평균적인 ‘지역시설 이용만족도’는 지역특성 변수와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수준에서는 모가 취업을 하였다면, 자녀 수가 적을수록 ‘지역시설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델 2에서는 자녀 수에 관한 관계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4.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기본계획

가. 인증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육아친화 철학과 가치 확산, 서비스 인프라 구축,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주요 세 가지 목표 달성을 통하여 실현
- 육아친화마을 조성 3대 목표는 육아친화 철학과 가치 확산, 서비스 인프라 구축, 인적 네트워크 형성임.

나. 사업추진계획

□ 육아친화마을 인증

- 신규지정: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계획에 대하여 육아친화마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함.
- 재인증: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하여 지난 3년간의 사업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서 등을 육아친화마을 심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KICCE 육아친화마을 재인증을 부여함.

□ 인증 모니터링

- 육아친화마을 인증 이후 인증 전(全) 기간 동안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지원

- 육아정책, 지역보육, 행정, 도시계획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육아친화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자체가 필요로 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

다. KICCE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방법 및 절차

□ 신규인증 절차 및 일정



□ 신규인증 평가기준

항목	지표	내용	배점
사업목표	목표 및 추진계획	- 육아친화마을 조성 3대 목표 반영 - 추진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와 사업추진계획의 부합성 -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30
사업기반	제도적 여건	- 주무부서(인력) 확보 -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 조례 제·개정	25
	예산확보	- 재원확보 방안의 구체성 -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 예산 확보 - 육아친화 철학과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 확보 - 지역주민의 육아친화 활동 지원 예산 확보	20
	조성의지	-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단, 대도시 지역 필수 수행) ¹⁾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노력 - 시군구의회 및 기관장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활동 실적 -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친화사업 추진 여부	25
계			100

라. 인증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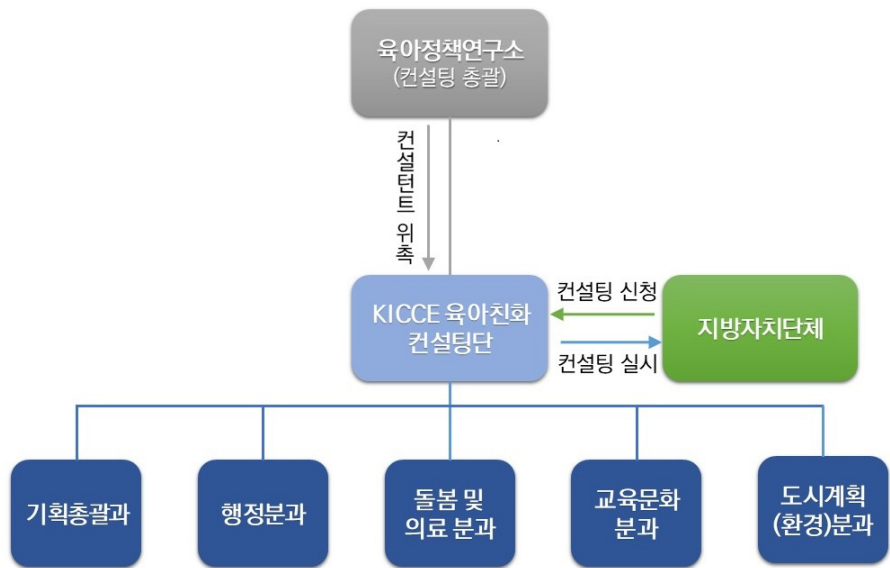
- 육아친화마을 인증 이후 인증 전(全) 기간 동안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

구분		내용	제출양식
신규인증	1차년도	- 사업기반 구축 - 2차 및 3차년도 계획	1차 사업성과 보고서
	2차년도	- 1차년도 성과 - 3차년도 계획	2차 사업성과 보고서
	3차년도	- 실적평가 - 사업분야별 추진성과 검토	최종 사업성과 보고서
재인증	1~6차년도	- 재인증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매 3년 사업성과 보고서 (총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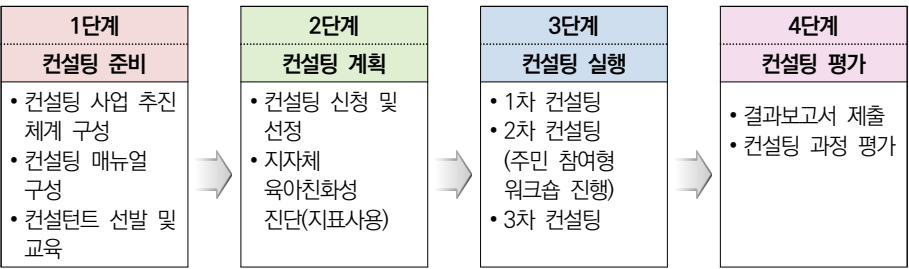
마.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운영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필요성 및 추진체계
- 육아친화마을의 개념, 조성목표,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마을을 조성하여 실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컨설팅이 필요
 -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빈번한 부서이동 등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정책 및 육아정책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수행되어야 함.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운영 방안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추진 절차



5. 육아친화마을 인증 관련 법제 연구

가.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 관련 법제 연구

- 1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방안
- 육아친화마을의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

한 법률」이 가장 가깝고,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이 법률에 육아친화마을의 근거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그러나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의 첫발을 떼기에는 여성가족부령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 따라서 1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 2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2안은 1안보다 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법치주의에 충실한 장점

- 다만,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유의미성에 대한 정치한 논리를 뒷받침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1안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등의 면을 고려

□ 3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3안의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법적 근거조항만 다를 뿐 그 내용은 1안과 2안의 그것과 같음.

- 3안은 법치주의에 가장 부합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가장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으나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입법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 4안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방안

-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의 근거 조항에 뒤이어 제39조의2를 신설하는 방안과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의 여성친화도시 조항을 개정하여 육아친화마을에 관한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

- 여성친화적이면서도 양성평등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추진

□ 5안 -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저출생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예산만 투여할 것도 아니며, 육아에 필요한 도시 환경을 연결하여 국가 전체의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방법이 필요

- 적극적인 예산 투입도 뒤따라야 하므로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법률’이 필요

- 담당 행정부처 역시 관련 행정부처가 협력해서 추진. 법률 제정과정 자체도 쉽지 않지만, 어떤 법제 구조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충분한 숙의가 필요

나.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 제정 방안

- 육아친화마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령을 개정하는 다섯 가지 방안과 별도로 또는 동시에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 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6.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가. 인증 기준 세분화

- 본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평균적인 ‘양육환경 적절성’의 경우 대도시가 읍면동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증 기준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대도시의 경우 육아친화 컨설팅 수행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 양육환경 적절성 개선을 보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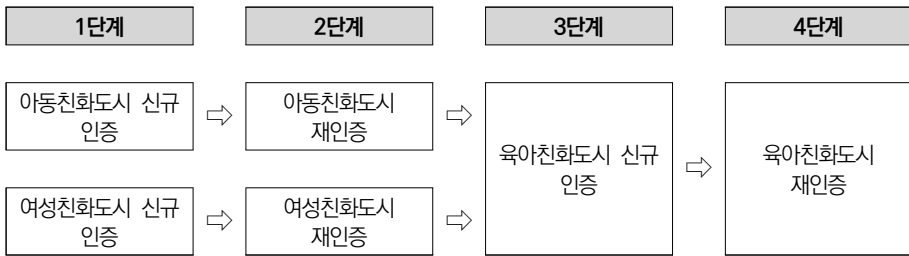
나. 기본조례 마련

- KICCE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참고로 하여 기본적인 육아친화마을조성 개념을 공유하면서 지자체 특징을 반영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
 -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
 - 아동친화도시나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적 근거 없이도 그리고 인증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육아친화마을 인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조례표준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다. 유사 인증사업과의 관계 정립

- 다양한 관련 ‘친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두 개의 친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유사 친화(인증)사업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
- 아래와 같이 유사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라. 컨설팅사업의 활성화

-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폭넓은 분야에 대하여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수립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연속성 있는 인력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육아친화 환경 조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필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선행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마을(공동체)을 단위로 한 사업은 공공자원의 일종이므로 그 특성인 고유성, 비가역성, 불확실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승차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기능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의 수혜자가 당사자가 아닐 수 있음까지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김주원, 2017). 이러한 공동체 단위 사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필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책 수요자인 개인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양육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도 수요자 중심의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구유형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육형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수요자인 양육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항상 존재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수요자의 평가는 여러 가지 사회 통계로도 나타나는데, 우선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 수준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감소하였으며, 서울 0.64명, 부산 0.75명, 대구·광주·대전 0.81명 등으로 17개 특광역시·도 전체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 2.24). 정부는 2005년에 이미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에 대비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하였다. 아울러 2006년부터 관계부처합동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합계출산율 수준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에 집중하던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은 불가피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육아친화 환

경 조성'이라는 지역사회 양육환경과 연계된 거시적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육아지원정책들이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양육환경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육아친화' 및 '육아친화마을'의 개념¹⁾은 기존의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마을)' 등의 개념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육아'라는 행위의 특성상 대상 연령층이 영유아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육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 및 지역사회의 역할 등이 총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그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 등에 그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교육기관, 육아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지역사회 전달체계, 놀이터와 각종 문화시설 등 인프라, 행정서비스, 도시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육아친화'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돌봄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친화마을 사업과 달리 본 연구의 '육아친화마을'은 지역과 수요자 중심의 육아친화 환경 전반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동친화나 청소년친화, 가족친화의 지표가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 안전 등에 집중된 것과는 일정 부분 일치하면서도 '육아친화환경'은 지역사회 내 육아에 대한 가치 부여와 배려,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육아지원제도, 지원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고 본다(권미경 외, 2019: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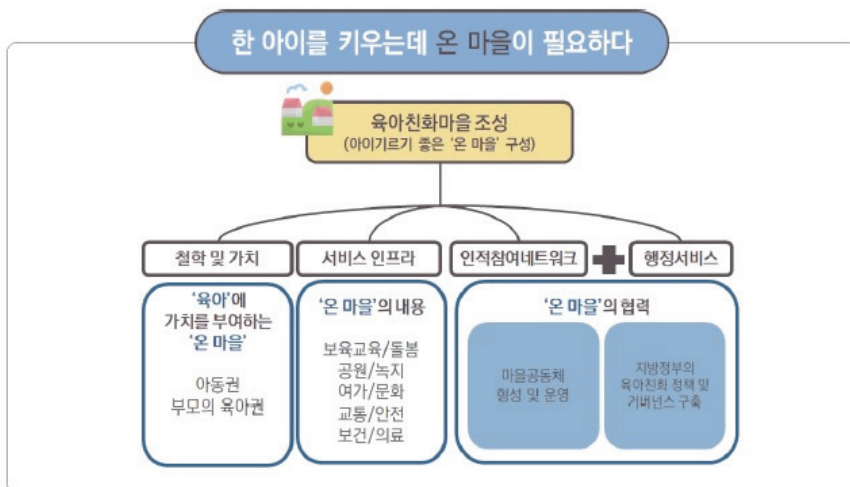
'육아친화마을'이란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님'을 의미하며, '육아친화마을 조성'이란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에서의 온 마을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해당 마을이 지니는 철학, 공간, 서비스 인프라, 인적 참여와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권미경 외, 2019: 55-56). 한편 '육아친화마을'은 '공동체'의 개념이 포함된 개념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서 육아 영역을 포함하는 공동체의 모든 행위를 포괄하므로 지역사회와 정책수요자의 역할이 동시에 부각된다(권미경 외, 2019: 22).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 즉, 지방분권화 된 복지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는 정책수요자의 정책에 대한

1) 본 연구는 3개년으로 기획된 연구의 3차년도 연구이며, '육아친화' 및 '육아친화마을'의 개념 정의는 선행 1차년도 연구에서 수립된 것을 사용함.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체감을 향상시키고 육아친화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정책 수요자의 체감을 제고할 수 있는 육아친화문화의 확산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육아친화마을’ 조성과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조성사업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육아친화 환경의 조성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육아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선행연구인 1, 2차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하는 가정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으로 마을 단위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발전적인 재구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성 지표 수립과 이의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그림 I-1-1]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모형



자료: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2020).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p. 16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서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기초적 환경 조사, 육구 조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도출한 육아친화마을 평가 지표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인증기준을 도출하고, 아울러 육아친화마을 인증에 대한 전반

적인 수행 체계 수립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 우수사례를 선정하고자 한다.

한편, 2차 데이터 및 본 연속연구의 2차 연구에서 설문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육아친화 환경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물론 사회전반의 육아친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3개년 연속과제 중에서 3차년도 연구이며, 1, 2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육아친화마을 진단 체크리스트 및 KICCE 육아친화마을 지표를 활용하여 육아친화마을 인증기준(지표)를 구축한다.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 수여를 위한 인증절차 수립, 시행계획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향후 인증사업 운영의 기초를 수립한다. 신규인증 및 재인증을 위한 절차 마련과 인증신청을 위해 필요한 양식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향후 본격적인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향후 인증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규정을 검토해 본다. 관련 인증사업의 경우를 검토해 본 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규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한 저출생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해 보고 2차 데이터 및 2차 연구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육아친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근거를 제시한다. 저출생 국민인식 조사 및 2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저출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육아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재점검 하여 향후 인증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차 연구에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로 이미 한 차례 시범진단을 한 지역에 대한 방문면담을 통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노력을 파악해 보고 그 외 지역에서 본 연속연구를 활용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하고자 한 사례를 파악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증평가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본다.

끝으로 향후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3. 연구방법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위한 3개년 연속 연구의 마지막 연구인 3차년도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내용을 수행하고자 한다.

가. KICCE 육아친화마을 관련 문헌연구

1차년도에서 개발한 육아친화마을 진단 체크리스트와 선행 인증사업(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기업, 아동친화도시 등) 관련 연구들 및 해당 인증사업의 법규정 검토를 통하여 향후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실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나. 저출생 인식 조사·분석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3개년 연속과제의 마지막 연구인만큼 저출생 극복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만족도, 향후 관련 정책 요구 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만 25~45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인식현황을 분석한다,

다. 육아친화 인식 조사·분석

통계청, 질병관리청,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11차)등 2차 데이터를 병합하여 새롭게 데이터를 구축한다. 또한 2차 연구에서 실시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재구축한다. 해당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지역) 육아친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인증평가에 반영한다.

라.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절차 및 인증 매뉴얼 구축

인증사업 혹은 친화(도시) 인증사업 등 관련 인증사업 연구 검토를 통하여 기본적인 인증절차 및 인증사업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선행 1, 2차 연구에 활용된

지표와 연구결과, 앞선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인증평가지표를 구성한다. 아울러 선행 친화인증사업 연구를 검토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적합한 인증사업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마.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근거 법 마련 검토

여성친화도시사업과 같이 근거법이 마련된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므로, 본 육아친화마을 조성 인증사업의 경우도 그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인증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규정을 검토해 본다. 관련 인증사업의 경우를 검토해 본 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규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에 대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마련에 대한 검토도 병행 실시한다.

바.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연구 활용사례

2차 연구(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시범진단 및 적용)에 참여하였던 지역의 육아친화환경 조성 현황을 재점검 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본 연속연구를 활용한 지역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적용 사례를 해당 지역의 육아환경 현황과 함께 보고한다.

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인증절차 마련을 위한 기본절차 구축,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 마련 검토, 관련 유사 친화사업의 인증절차 수립 검토 등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일정

구분	일시	참석자	내용
간담회	3. 30.	사회혁신기업 담당자	육아친화마을 조성 현황 청취
	4. 6.	광명시청 보육정책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광명시 육아친화마을 조성 현황 청취
	11. 23.	제주특별자치도청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	제주도 여성친화도시 현황 청취

구분	일시	참석자	내용
자문회의	4.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사업 담당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옹호팀	여성친화, 가족친화, 아동친화 인증 및 육아친화마을 인증 방향성 논의
	4. 20.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을 위한 근거 법 마련 검토
	4. 21.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4. 2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담당자	가족친화인증 현황 및 KICCE 육아친 화마을 인증 관련 논의
사례조사	9. 10.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KICCE 육아친화마을 활용 사례조사
	9. 15.	부산시 사하구청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유형별 친화도시 인증 사례조사
	9. 27.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2차 연구 지역 점검
	9. 29.	광명시청 보육정책과	
	11. 12.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현황 청취
	11. 18.	대구경북연구원	대구 친화도시 관련 의견 청취
	11. 23.	제주여성친화가족지원센터	'제주차림' 프로젝트 관련 현황 청취

아. 현장 세미나 개최

본 연구의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기준 및 운영매뉴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
후 해당 사업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연구 종료시점에
1회 개최한다. 아울러 육아친화마을 구현을 위하여 본 연구를 활용한 지역연구를
발굴하고 해당 연구배경과 결과를 공유하여 육아친화마을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현장 세미나를 통하여 지역의 육아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현황을 파악
하고 향후 육아친화마을을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을 논의한다.

4. 선행연구

가.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관련 연구

본 연구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역에 인증을 부여하는 3차년도 연구로 육아친화
및 인증사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맞춤형 육아지원방안 연구(강은진·유해미·윤지연, 2016)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육아지원환경의 탐색이 필요한 상황이며, 각 지역 환경과 양육 여건에 따라 저출생 극복 실행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전국의 육아지원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돌봄지원 환경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이는 문헌연구, 국내외 제도 분석, GIS 분석, 전문가 조사 및 설문조사, 사례 조사, 자문회의 및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주요연구내용을 보면, 친양육적인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환경 관련 요소를 개념화하고, 지역별 육아지원 환경 평가 영역과 요소를 산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지역사회 맞춤형 육아지원 우수사례 성공요인 및 시사점 도출하고 지역별 육아지원 환경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편차가 매우 컸으며 낮은 공급수준을 보이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권미경 외, 2020)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 현재 주거단지가 지닌 육아친화성 정도를 진단하였다. ‘철학과 가치’, ‘물리적 환경’,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라는 4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60가지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육아친화 정도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요구를 수렴하여 개선안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육아친화 중심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리빙랩 운영 방안(강은진·박진아·조혜주, 2019) 연구는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리빙랩을 운영하며, 지역의 육아친화성을 진단하고 문제해결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인간중심 기술구현을 위한 리빙랩 운영을 적용하였다. 국내외 리빙랩 사례 연구, 시범적용 지역 영유아 가구 설문조사, 부모대상 숙의토론을 통해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개념 정리하고,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과정 도출하였으며,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육아친화마을 조성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 사업과 관련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고, 관련하여 정책적 제언으로 일부 제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육아친화마을 인증 추진 가능성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선행 인증 관련 사업을 바탕으로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절차를 수립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KICCE 육아친화마을의 인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 관련 사례

본 항에서는 친화 인증을 부여하는 사례로 도시(지자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여성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1) 여성친화도시

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법제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사이의 협약으로 이뤄진다. 2009년 익산시, 여수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이후 매년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여성이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12).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다.

(1) 법령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는 간략하게 근거 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자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규(조례·규칙)>에서 “여성친화도시”로 검색하면, 136개 조례가 있다.²⁾ 여성친화도시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절차와 실시 및 평가, 조성 기준 및 내용, 조성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매뉴얼에 따른 조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45).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지자체 및 시민의 기본적 책무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단계와 평가의 원칙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단계별 조성 내용, 추진체계,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일, 돌봄/교육, 여가문화, 건강 계획의 기준 및 내용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임무 등
 제6장 보칙
 부칙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상기 136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목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1. 10. 7. 인출.

- (2)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등의 개념을 정의한다.
- (3) 단체장의 책무: 단체장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책무를 정한다. 시민의 책무를 정하기도 한다.
- (4) 기본계획: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5) 여성친화도시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6)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다.
- (7) 여성 참여: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과 필요한 거버넌스 관련 사항을 정한다.
- (8) 여성의 권익 관련 사항 예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사항을 예시한다.
- (9) 여성 관련 조사: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 (10) 성별영향평가: 조례나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기 전에 성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여성친화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11)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12)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시민에게 여성의 권리를 교육하도록 한다.
- (13)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또는 전담부서: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또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함으로써 도시 전반에 걸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 (14) 조성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예시한다.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시설 조성사업, 취업·창업 활성화 등을 예시하기도 한다.
- (15) 재정지원: 사업수행에 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 (16) 수당 등: 위원회 관련 수당 등 지급 근거를 정한다.
- (17) 위탁: 일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다.
- (18)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다.
- (19)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과 규정을 둔다.

나) 인증절차 및 방법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및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와 사업, 공간 및 의사결정 과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여성친화도시의 5대 목표는 1)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이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7).

여성친화도시 지정준비 과정에서의 핵심 절차는 주무부서 구성 및 인력배치, 관련 조례제정 등을 통한 사업 기반 조성과 컨설팅을 통한 사업 발굴 전략수립이다(조선주, 이선민, 이동선, 권도연, 2017). 여성가족부는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지정된 이후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 받아야한다.³⁾ 신규 지정 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도시와 협약 체결을 한다. 재지정시에는 5년간의 사업성과 및 향후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 재지정 도시와 협약 체결한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신규지정의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시·도에, 시·도는 시·군·구에게 지정계획을 수립 및 통보한다(5월). 시·군·구는 시·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정계획을 제출한다(8월). 이후 시·도는 자체 검토 후 우수 지자체를 여성가족부에 추천한다(9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지정 도시를 심사 및 확정한다(12월). 이에 필요한 서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시·군·구)와 검토의견서(시·도)이다.⁴⁾ 지정 후에는 1단계 추진단계에서는(1~5년차 도시) 매년 이행점검 보고서를, 5년차 재지정 심사시에는 종합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3) 인천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101>에서 2021. 3. 16. 인출.

4)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8.do에서 2021. 6. 10. 인출.

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매년 12월 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업데이트 되며, 2021년 1월 기준 전국 96개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있다.

〈표 I-4-1〉 202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단위: 개

시도	지정 수	시·군·자치구
서울특별시	13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부산광역시	6	사상구, 연제구, 남구, 금정구, 사하구, 동구
대구광역시	2	수성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4	부평구,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광주광역시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4	서구, 대덕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	1	중구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14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화성시, 양주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하남시
강원도	7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횡성군, 정선군, 삼척시, 춘천시
충청북도	6	제천시,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충청남도	11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공주시, 예산군, 천안시
전라북도	3	김제시, 남원시, 고창군
전라남도	8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광양시,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화순군
경상북도	5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김천시
경상남도	5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고성군, 진주시
제주도	1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운영.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8.do에서 2021. 6. 10. 인출.

2) 아동친화도시

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법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와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시이다(UNICEF, 2004: 1)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① 아동권리 전담부서, ②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③ 아동의

참여체계,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⑤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⑥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⑦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⑧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⑨ 아동 영향평가, ⑩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10대 원칙으로 제시한다(유니세프한국 위원회, 2019: 8).

(1) 법령의 부재

아동친화도시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 문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나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니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유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그것을 확인한 것이다.⁶⁾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결정했다.⁷⁾

아동친화도시가 법률적 근거 없이도 조례의 제정으로 그 규범적 근거를 마련한 배경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도시 자체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여성, 아동, 고령 등 각종 친화도시의 조성과 그 체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까닭이다. 그 과정에서 지원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요청된다. 중앙집권주의에서 지방분권주의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일은 장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6)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7) 헌재 1995. 4. 20. 선고 92헌마264등 결정.

(2)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의 구성요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규(조례·규칙)>에서 “아동친화도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로 검색하면, 144개 조례가 있다.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따로 제정했다.

- (1) 목적: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 (2)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아동과 아동친화도시 개념을 정의한다.
아동의 권리 내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기도 한다.
- (3) 단체장의 책무: 단체장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책무를 정한다. 시민과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의 책무를 정하기도 한다.
- (4) 조성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일반원칙인 비차별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1: 11) 등을 비롯하여 아동의 표현의 자유 원칙, 아동의 인격 존중 원칙 등을 정한다.
- (5) 기본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6)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7) 아동 참여: 아동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정한다.
- (8) 아동참여기구: 아동참여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9) 아동의 권익 관련 사항 예시: 아동의 안전, 건강,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예시한다.
- (10) 아동실태조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 (11) 아동영향평가: 조례나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기 전에 아동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친화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12) 아동친화예산제도: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아동을 위해 적정

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1. 10. 7. 인출.

하게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13)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시민에게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도록 한다. 단체장을 비롯한 행정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도 아동권리교육을 하도록 한다.
- (14) 아동권리침해구제와 아동권리옴부즈퍼슨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15)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를 두도록 함으로써 도시 전반에 걸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 (16) 조성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예시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예시하기도 한다.
- (17) 재정지원: 사업 수행에 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 (18) 수당 등: 위원회 관련 수당 등 지급 근거를 정한다.
- (19) 위탁: 일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다.
- (20)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다.
- (21)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과 규정을 둔다.

나) 인증절차 및 방법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하며, 아동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유니세프, 2019: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개념은 1996년 이스탄불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II)에서 시작되어 각국 대표들이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제의를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시작되었다(유니세프, 2019: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달성해야 하며, 해당 구성요소는 1) 아동권리 전담부서,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3) 아동의 참여체계,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5) 아동권리 홍보 및 교

육, 6)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7)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8)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9) 아동영향평가, 10) 아동의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유니세프, 2019: 8).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도시나 지자체가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 인증 신청을 하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선정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며, 구체적인 인증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⁹⁾

〈표 I-4-2〉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 및 방법

구분	내용
인증신청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인증 신청 ※ 지방자치법 제2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음
MOU 체결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전달한 자기평가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심의자료 준비 및 제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인정하는 평가위원회가 지자체 제출 자료를 심사
심의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해당 지자체를 Child Friendly City로 인증 ※ 인증 후 4년간 전략 사업 수행 및 상시적 모니터링 진행
인증완료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전달한 자기평가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자료: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절차. <http://www.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21. 10. 19. 인출.

다) 아동친화도시 지정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50개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62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¹⁰⁾

〈표 I-4-3〉 아동친화도시 지정 현황

시도	구분	시·군·자치구
서울특별시	인증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추진	강남구, 동작구,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구

9) 자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 <http://www.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21. 10. 19. 인출.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도. <http://www.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21. 12. 21. 인출.

시도	구분	시·군·자치구
부산광역시	인증	금정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구
	추진	남구, 부산진구, 북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인증	달서구
	추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증	남동구, 동구, 서구
	추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증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추진	북구
대전광역시	인증	서구, 유성구
	추진	대덕구
울산광역시	추진	북구,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증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인증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추진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안산시, 양주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강원도	인증	횡성군
	추진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충청북도	인증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충주시
	추진	진천군, 청주시
충청남도	인증	논산시, 당진시, 아산시
	추진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전라북도	인증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추진	김제시
전라남도	인증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장흥군, 화순군
	추진	목포시, 여수시
경상북도	인증	구미시, 영주시
	추진	경주시, 김천시, 칠곡군, 포항시
경상남도	인증	김해시
	추진	고성군, 진주시, 창원시
제주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도. <http://www.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21. 12. 21. 인출.

3) 고령친화도시

가) 고령친화도시 법제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¹¹⁾ 고령친화는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

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¹²⁾

(1) 법률의 부재

고령친화도시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관련 법률로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6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¹³⁾

(2)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의 구성요소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근거로서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들고 있지만, 해당 법률에 고령친화도시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 (2) 기본이념과 정의
- (3) 시장 등의 책무
- (4)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5) 건강증진, 노인건강실태조사,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고령자 의무고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생업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생활환경 편의증진,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경로우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학대 예방,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노인자살 예방, 노인의 날 행사, 표창
- (6)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활성화,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의 양성, 노인정책센터 설치·운영
- (7) 노인복지정책위원회
- (8) 보칙: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업무의 협조, 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사무의 위탁

11)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12)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1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1. 10. 7. 인출.

나) 가입절차 및 방법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C: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및 도시화 추세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진행되어온 프로젝트로서,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질과 존엄성을 유지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도시 차원에서 만들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정은하, 2017).

GNAFC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의지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WHO는 2007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 가져야 할 주요 영역¹⁴⁾과 점검 항목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는데, 이 가이드에 기초한 실행계획 수립이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에게 요구되는 주요 과업이다.¹⁵⁾

구체적으로 국제네트워크의 회원가입을 위한 행정상의 필수요소는 WHO 8대 영역의 고령친화도 조사결과, 노인 참여과정 및 민관협력체계 구성방안 증명(시민 공청회 등), 고령친화도시 중장기 계획(3개년), 사업추진과정 모니터링 지표 및 운영방안, 공식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등이다(이동기·이중섭, 2020). 이를 바탕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WHO에서는 다양한 시민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실행계획의 포괄성, 충분성, 적절성, 실행가능성을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이영주·고광욱·강혜원, 2017).

14) 외부환경 및 시설, 여가 및 사회활동, 교통 수단 편의성, 존중 및 사회통합, 주거 환경 안정성, 의사소통 및 정보, 인적자원의 활용, 건강 및 지역돌봄 총 8대 영역

15) 고령친화서울. <http://afc.welfare.seoul.kr/afc/about/about.action>에서 2021. 3. 16. 인출.

다) 고령친화도시 가입 현황

2021년 12월 기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44개국 1,114개 도시가 있다.¹⁶⁾ 국내에서는 32개 시군구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표 I-4-4〉 2021년 고령친화도시 가입 현황

시도	구분	시·군·자치구
서울특별시	가입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금천구
부산광역시	가입	부산광역시
	추진	사상구
대구광역시	추진	남구
인천광역시	가입	미추홀구, 동구
광주광역시	가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추진	북구
대전광역시	추진	유성구
울산광역시	가입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입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가입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의왕시
	추진	안양시, 평택시
강원도	가입	고성군
충청북도	추진	음성군
충청남도	가입	논산시, 공주시
	추진	서산시
전라북도	가입	정읍시
전라남도	가입	나주시, 화순군
경상북도	가입	칠곡군
	추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가입	남해군, 창원시, 통영시
	추진	김해시
제주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주: 추진현황은 김춘남·박영란·고영호·최성은(2019)의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연구의 〈표 II-4〉 전국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홈페이지.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search-network/?_sf_t_countries=repulic-of-korea에서 2021. 12. 21. 인출.

16)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소개.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who-network/>에서 2021. 3. 16. 인출.

4) 가족친화인증

가) 가족친화인증 법제

가족친화인증 근거법률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그 중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이다(법 제2조 제2호). 가족친화제도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이다(법 제2조 제3호). 가족친화 마을환경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할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1) 법률 근거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인증을 제외하고 있다. 그렇지만 2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¹⁷⁾

(2)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조례의 내용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2) 정의

(3)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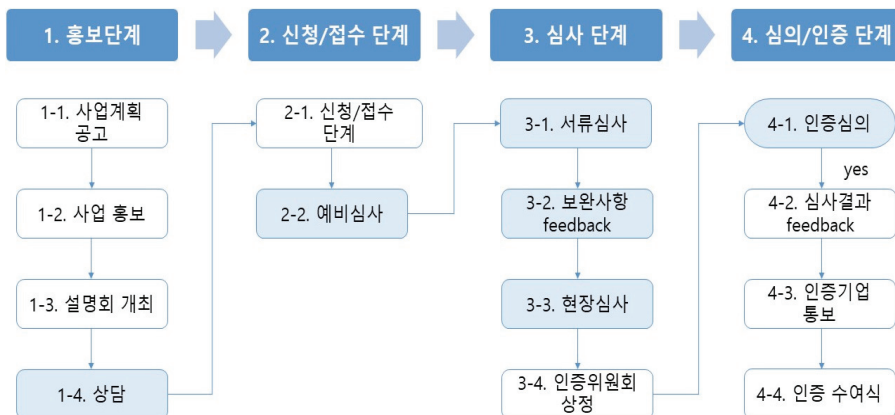
1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2021. 10. 7. 인출.

- (4) 시행계획의 수립, 계획수립 등의 협조
- (5) 실태조사 등
- (6)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가족친화 기업 지원
- (7) 포상, 시행규칙

나) 인증절차 및 방법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인증절차는 홍보, 신청/접수, 심사, 심의/인증의 단계를 거치며, [그림 I-4-1]와 같고 세부 추진일정은 <표 I-4-5>와 같다.

[그림 I-4-1] 가족친화인증 절차



자료: 가족친화지원사업 <https://www.ffsb.kr/ffm/ffmCertProcess.do>에서 2021. 5. 11. 인출.

〈표 I-4-5〉 가족친화인증 세부 추진일정

시기	내용	세부내용
4월	사업공고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공지
4~6월	전국 권역별 설명회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설명회 세부 일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인증설명회 신청
	인증신청	인증신청 세부 일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가족친화인증신청안내
6~8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서류심사: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 신규인증: 4일,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 2일
11월 상정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	최종 인증여부 결정
12월 예정	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	개별 결과발표: 12월(예정)
다음 해 1월 예정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Feedback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

자료: 가족친화지원사업 <https://www.ffsb.kr/ffm/ffmCertProcess.do>에서 2021. 5. 11. 인출.

가족친화인증은 법규 요구사항인 최소 충족요건 및 인증 배제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신규인증 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점수 획득 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및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 점수 획득 시 인증이 된다.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경우 점수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표 I-4-6〉과 같다.

〈표 I-4-6〉 가족친화인증 평가 배점 기준

구분	신규인증(최초)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기인증)
중소기업	100점 만점에 60점(가점 포함) 이상 점수 획득 시 인증	100점 만점에 60점(가점 포함) 이상 획득 시 인증	100점 만점에 65점(가점 포함) 이상 획득 시 인증
대기업 및 공공기관	100점 만점에 70점(가점 포함)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 점수 획득 시 인증	100점 만점에 70점(가·감점 포함) 이상 획득 시 인증	100점 만점에 75점(가·감점 포함) 이상 획득 시 인증

자료: 가족친화지원사업 <https://www.ffsb.kr/ffm/ffmCertEstNew.do>에서 2021. 5. 11. 인출.

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2020년 12월 기준 총 4,340개사이며, 대기업은 456개사, 중소기업은 2,839개사, 공공기관은 1,045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표 I-4-7〉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현황

단위: 개사

구분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총계	4,340	456	2,839	1,045
2020	859	62	722	75
2019	705	64	588	53
2018	674	39	565	70
2017	767	49	414	304
2016	385	50	185	150
2015	267	35	133	99
2014	314	57	150	107
2013	192	48	63	81
2012	68	18	4	46
2011	69	19	11	39
2010	18	5	3	10
2009	13	7	1	5
2008	9	3	-	6

자료: 가족친화지원사업 <https://www.ffsb.kr/ffm/ffmCertStatus.do>에서 2021. 5. 11. 인출.

아동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는 특정 생애주기 대상이며,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이 인증의 대상이고,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에 기초하는 여성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 반해 육아친화마을은 육아를 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아동권과 양육을 위한 부모권을 모두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가족친화인증은 모두 육아친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시사점

친화도시 조성의 법제화 선행사례로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가족친화 인증의 법제를 살펴보았다.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여

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여성가족부가 지정 주체¹⁸⁾이고, 아동친화도시는 법률적 근거는 없고, 민간단체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인증 주체¹⁹⁾이다.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여성가족부가 기업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지정하는데, 인증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다. 고령친화도시의 경우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법률적 근거 또는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친화마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를 비교하더라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인증에 대한 지원이 있지는 않다. 공통적으로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방향성과 원칙 그리고 내용이 변주될 뿐 행정이 작용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의 구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력의 분권과 분산 관련 법률이 개혁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취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역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은 단순히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²⁰⁾ 이는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각 인권 주체마다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 조성의 측면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주체 대상은 여성이고,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아동의 참여를 강조하므로 상대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관심은 약하다. 반면 육아친화마을은 여성과 아동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 특히 영·유아와 육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시의 조성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김영화, 2010: 92). 육아친화마을이 인권 주체별 친화도시와 다른 점은 도시가 ‘영·유아-육아보호자-육아과정’에 친화적이어야

18)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8.do에서 2021. 6. 10. 인출.

1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initiative/child-friendly-cities.asp>에서 2021. 6. 10. 인출.

20) 수원시 홈페이지 여성친화도시.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welfare/welfare07/welfare_07-05.jsp에서 2021. 6. 10. 인출.

한다는 복합적이고 과정적인 친화성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 여성 친화도시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와 공통성이 있으면서, 복합적이고 과정적인 친화성을 더하는 의미가 있다. 즉 기존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의 인프라와 제도 및 정책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면서, 육아에 필요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조화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육아가 어려운 사회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고,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 속에서 파편적인 정책으로 그러한 경향성을 전환하기는 어렵기에 육아에 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와 경향의 전환은 한 세대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고, 마을 단위에서부터 다양한 차원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도시의 조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 지방자치단체 육아친화 관련 시행 정책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총 사업비(순지방비) 7.27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0.6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사업(국비보조사업) 예산은 총 39.6조원으로 2020년 38.4조에서 3.2% 증가하였다. 대부분 지자체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세종(12.1%) 및 충남(9.3%)의 경우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분야별로 살펴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사업에 40%,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사업에 30% 예산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o> pp. 4~40, 2021. 12. 21. 인출.).

〈표 I-4-8〉 2021년도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분야별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단위: 개, 억 원

추진 분야	과제 수	예산
총계	6,217(100%)	72,693(100%)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2,927(47%)	29,210(40%)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1,241(20%)	23,052(32%)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320(21%)	18,782(26%)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729(12%)	1,650(2%)

자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o> pp. 4~40에서 2021. 12. 21. 인출.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노년,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20년 대비 생애주기별 예산 비중은 노년(22,675억 원, 31%), 영유아(18,147억 원, 25%), 아동/청소년(17,453억 원, 24%)으로 유사하였다. 지원유형별로는 현금/현물 형태사업(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이 33,450억 원으로 전체의 46% 차지하였고, 서비스 지원(어린이집 지원 등) 11,176억 원(15%), 감면/면제(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이용감면 등) 8,980억 원(12%) 순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o> pp. 4~40, 2021. 12. 21. 인출.).

2021년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친화 관련 사업은 아래와 같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비용 지원, 주거 관련 지원,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4-9〉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육아친화 관련 시행계획

단위: 명

구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주요 사업 현황
서울특별시	47,400 (0.64)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 서울형 초등돌봄체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 구축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및 역량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추진체계 강화
부산광역시	15,066 (0.75)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 부모교육 인센티브제 추진
대구광역시	13,233 (0.93)	• 대학생 결혼·육아 U-learning 콘텐츠 대학 교과목 보급 • 3자녀이상 부모 및 자녀 도시철도 요금지원 • 작은 결혼식 비용지원 • 대구형 온종일 돌봄 시범사업 •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지원,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지원

구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주요 사업 현황
인천광역시	16,050 (0.83)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인천 아빠육아 천사(1004)단 운영 - 아이사랑 꿈터 확충, 아동학대 예방 사업 - 혁신육아 복합센터 건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출산인구 플러스 아카데미
광주광역시	7,318 (0.81)	- 광주출생육아수당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구축·운영 - 출산장려 캠페인
대전광역시	7,500 (0.81)	-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대전형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 -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 - 공공산후조리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 한부모 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안내 수첩 제작
울산광역시	6,711 (-)	- 가족돌봄 휴가 확대 -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3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출산지원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 청소년 반려문화 교육체험 활성화 - 다문화가족 부모나라 말하기 대회, 다문화가족 자녀공부방 운영 - 결혼이민자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세종특별자치시	3,472 (1.28)	- 공동육아 나눔터 -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금 - 맘편한 산후조리지원 및 철분제 엽산제 지원 - 모두의 놀이터 조성 - 거버넌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 미래 인구 문제 대응 및 지속 성장·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위원회 운영
경기도	77,800 (0.88)	-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경기도 워라밸링크 운영)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 -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경기 행복주택 건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인구교육 운영

구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주요 사업 현황
강원도	7,894 (1.04)	• 초등돌봄 시범사업 지원, 강원형 초등돌봄 서비스 구축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8,600 (0.98)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네트워크 구축 • 출산양육지원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숲 태교 교실운영, 임산부 안전벨트 대여 • 교복구입비 지원, 무상급식 지원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 가족꿈아카데미, 신혼 예비부부 부모교육 • 주민공감 맞춤형 인구교육
충청남도	12,123 (1.04)	• 충남공공산후조리원 리모델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초등돌봄교실 연장운영 지원 •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및 민간 주도 마을돌봄 육성 •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보전 • 저발전 시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지원 • 농어촌지역 아이돌봄센터 확대,
전라북도	8,381 (0.84)	•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 다문화(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 도민 인구 인식개선 홍보사업
전라남도	10,832 (1.234)	• 신생아 양육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공립유치원 확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재원체계 강화 • 인구문제 극복 인식개선 교육
경상북도	12,045 (1.00)	•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 사업 • 직장맘자녀안심케어 지원사업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부담경감사업 • 경북여성일자리본부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조성

구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주요 사업 현황
경상남도	17,053 (1.05)	• 부모부담 보육료 및 아동급식 지원 •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확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가족친화마을 조성 •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 여성창업 서비스 지원, 신중년 채용 장려금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3,691 (1.145)	• 제주 양성평등 교육센터 설치 운영 • 제주형 수놓음 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 • 무주택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 중·고·특수학교 무상교복 지원,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 주거복지센터 운영

자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o> pp. 4~40에서 2021. 12. 21. 인출.

II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추진과정

- 1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개요
- 2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1차년도 연구
- 3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2차년도 연구

II.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추진과정

본 연구는 지역사회 육아환경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3개년 연속과제이다. 본 장에서는 3차년도 연구의 배경이 되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1차년도, 2차년도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3차년도 연구 추진에의 제언 및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1.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개요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표현은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정책 수요자의 일상생활의 장(場)인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밀접하게 체감하는 생활환경으로의 마을 단위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온 마을’은 과연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실현해갈 것인가의 답을 찾고자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를 2019년부터 3개년 연구로 추진하고 있다.”(권미경 외, 2019.)²¹⁾

1차년도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육아친화’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진단도구인 지표 및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는 조성모형을 설계하였다.

2차년도에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의 지역별 적합성을 높이고자 지속인구 유입 지역, 도시재생지역, 도농복합지역을 대표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지표 적용을 통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인 3차년도 연구는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인증화 과정을 마련하는 연구로 추진하고자 한다.

21)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머리말에서 인용함.

2.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1차년도 연구²²⁾

가. 1차년도 연구 내용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1차년도는 기초연구로 다음의 내용을 추진하였다.

1) 개념 정의 및 구성요소 도출

‘아동친화’, ‘가족친화’, ‘여성친화’ 등의 친화마을, 친화 도시와 차별되는 ‘육아친화’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를 명료화하였다. “‘육아친화마을’이란 서로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마을, 즉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님’을 의미한다.”(권미경 외, 2019: 55)고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를 [그림 II-2-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II-2-1]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78. [그림 II-4-1]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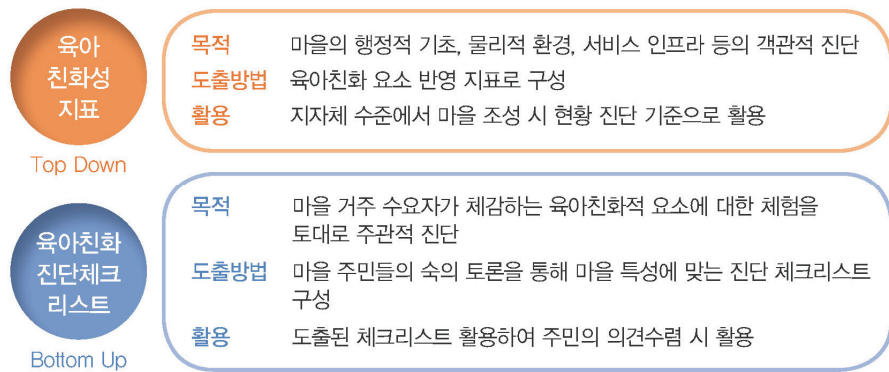
22)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재구성함.

2) 육아친화마을 구성 위한 과정적 절차 구성

전문가 자문, 정책수요자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객관적 물리적 지표로 친화성을 진단함에 한계를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크리스트와 평가지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마을 내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를 중심으로 진단하는 객관적 ‘육아친화마을 지표’의 구성과 지역별 수요자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 구성이라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권미경 외, 2019: 22~23)을 구체화하였다.

‘육아친화마을 지표’는 지자체 수준에서 마을 조성 시 현황을 진단하는 위로부터의 접근방법(Top-down)이라면,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는 마을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아래로부터의 접근방법(Bottom-up)이다(권미경 외, 2019: 23).

[그림 II-2-2] 육아친화마을 구성을 위한 과정적 절차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23. [그림 1-1-1] 임.

3) KICCE 육아친화마을 지표 구성 및 육아친화성 측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력하여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육아관련 직접적 자원’과 ‘육아 인프라’라는 기준으로 지표구성 영역을 확정하고, 세부지표 풀(pool)을 구성하고, 최종 ‘KICCE 육아친화마을 지표’를 선정”하였다(권미경 외, 2019: 135).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는 다음 <표 II-2-1>과 같다.

〈표 Ⅱ-2-1〉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요인		범주	지표명	하위정보	단위	출처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	영유아기 (상대지표 시 영유아 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어린이집 시설		총합	시군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유치원 시설		유치원 설치 현황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부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현황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아동기 (상대지표 시 아동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초등학교 시설		초등학교 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
		지역아동센터시설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읍면동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 회 홈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직원 수	읍면동	
육아 인프라 관련 지표	전 연령 돌봄 인프라 (상대지표 시 영유아+아동 총인구 1천명 비율)	공원 /녹지	공원	공원개소 및 면적	시군구	도시계획현황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개소 및 면적	시군구	
		여가 /문화	도서관시설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시군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시설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문화와 여가
		교통 /안전	교통문화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시군구	e지방지표 주거와 교통
				교통안전지수	시군구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지역안전 상대유형	화재	시군구	e지방지표 안전
				범죄		
				생활안전		
		보건 /의료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원 수	시군구	건강보험통계
			소아과	소아과 의원 수	시군구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의원 수	시군구	
			종합병원	종합병원 수	시군구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163. 〈표 Ⅳ-3-9〉임.

전국의 시군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를 세부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세부지표의 총량을 통해 측정된 육아친화성의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지표의 규모로 측정한 절대 육아친화성 지표의 경우, 육아직접적 자원은 수도권지역에, 시와 구지역, 즉 도시지역일수록 풍부하게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권미경 외, 2019: 214). 또한, 이를 통해 “지역 환경의 차별화된 특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육아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권미경 외, 2019: 215).

4)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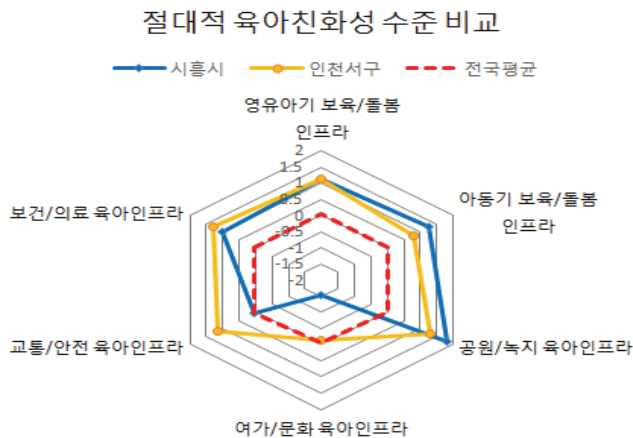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는 두 단계를 거쳐 도출되었다. 먼저 연구진이 관련 선행연구와 사전 수요자 면담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을 구성하였다. 다음은 양육자들이 참여하는 주민워크숍에서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을 활용하여 지역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권미경 외, 2019: 219).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의 차원은 철학과 가치, 인적네트워크,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등 9개 차원으로 구성”하였다(권미경 외, 2019: 223).

5)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와 체크리스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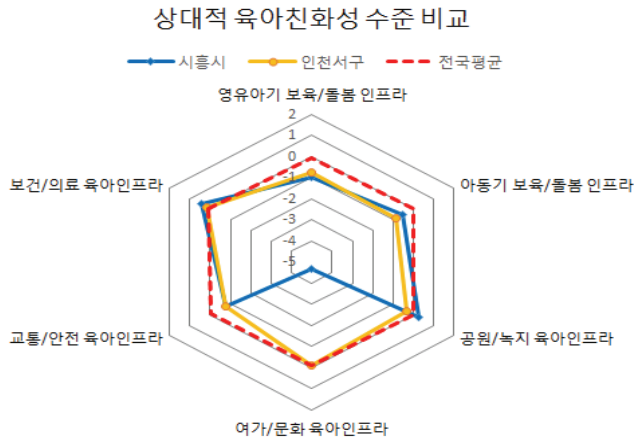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지표와 체크리스트’ 실효성 진단을 위해 인천 서구와 시흥시에 시범 적용하였다.

[그림 II-2-3]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지표 요인별 절대적 육아친화성 요인점수 비교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263. [그림 VI-1-1]임.

[그림 II-2-4] 시흥시와 인천 서구의 육아친화지표 요인별 상대적 육아친화성 요인점수 비교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264. [그림 VI-1-2]임.

6)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도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모형²³⁾을 4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는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 적용을 통해 육아친화적 환경(육아 직접자원, 간접인프라)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진단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을 가지고 주민 참여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육아친화마을에 담길 가치와 철학,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3단계는 정책수요자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이다. ‘KICCE 요구조사 초안’을 토대로 2단계에서 지역특성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4단계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실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기존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지역 내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아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II-2-5]와 같다.

23)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p. 357~366의 내용을 축약함.

[그림 II-2-5]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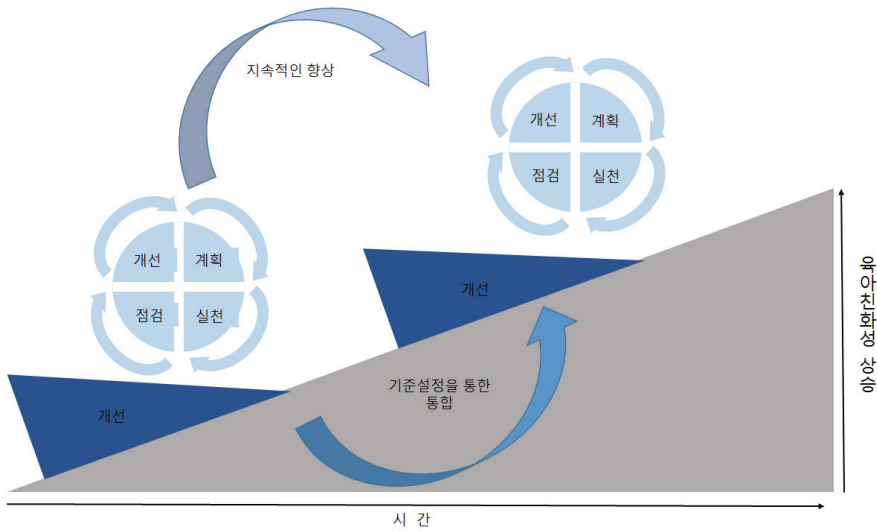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358. [그림 VII-1-1]임.

나. 1차년도 연구를 통한 제언 및 시사점

첫째, 1차년도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진단도구를 마련하여 추후 인증화를 위한 이론적인 기초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객관적 진단자료인 지표와 상대적 진단자료인 체크리스트 풀(pool)을 개발하였다.

둘째, 1차년도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이 일회성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이는 육아친화마을 인증과 재인증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었다.

[그림 Ⅱ-2-6]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순환모형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367. [그림 Ⅶ-2-1]임.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은 경영학에서의 PDCA 순환모형 중 진단과 계획 단계(Plan)에 해당한다. 계획한 육아친화성 부여 방안들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천하고(Do), 점검하고(Check), 평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Act)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는 더 나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권미경 외, 2019: 367).”

셋째, 1차년도 연구에서는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모색하였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가 되는 법령 마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육아친화성 지표를 매년 갱신하여 제공하고, 지표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에 관한 리포트 등 자료들을 축적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의 설치(권미경 외, 2019: 372)”를 제안하였다. 지자체 수준에서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인력, 재정 편성을 위해 지방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육아친화지표 등급이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산 지원 및 정책 정보제공 등 지원을 담당한다(권미경 외, 2019: 372~373).

3.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2차년도 연구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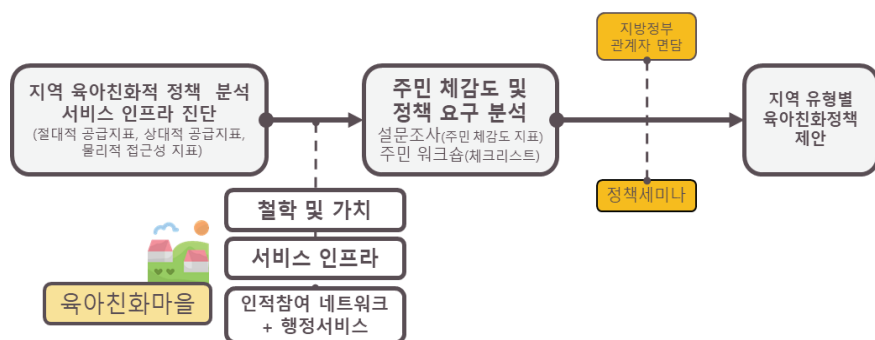
가. 2차년도 연구 내용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2차년도는 1차년도 개발한 모형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범적용해서 개선안을 도출하는 연구로 다음의 내용을 추진하였다.

1)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의 보완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구성요소(철학 및 가치, 서비스 인프라, 인적참여 네트워크)에 협력을 위한 요소로 ‘행정서비스’를 포함하였다. 또한,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즉, “지역의 육아친화적 정책분석과 서비스 인프라 진단을 거친 다음(강은진 외, 2020: 15), 주민의 체감도와 정책 요구 분석을 통해 지역의 유형을 고려한 육아친화정책을 제안하는 방식(강은진 외, 2020: 16)”으로 제시하였다. 1차년도의 절대적 공급지표와 상대적 공급지표를 발전시켜 물리적 접근성 지표와 주민 체감도 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2차년도의 지표는 절대적 공급지표(육아친화 직접 지표와 간접 지표 자료 수집), 상대적 공급지표, 물리적 접근성 지표, 주민 체감도 지표로 구성하였다(강은진 외, 2020: 16).

[그림 II-3-1]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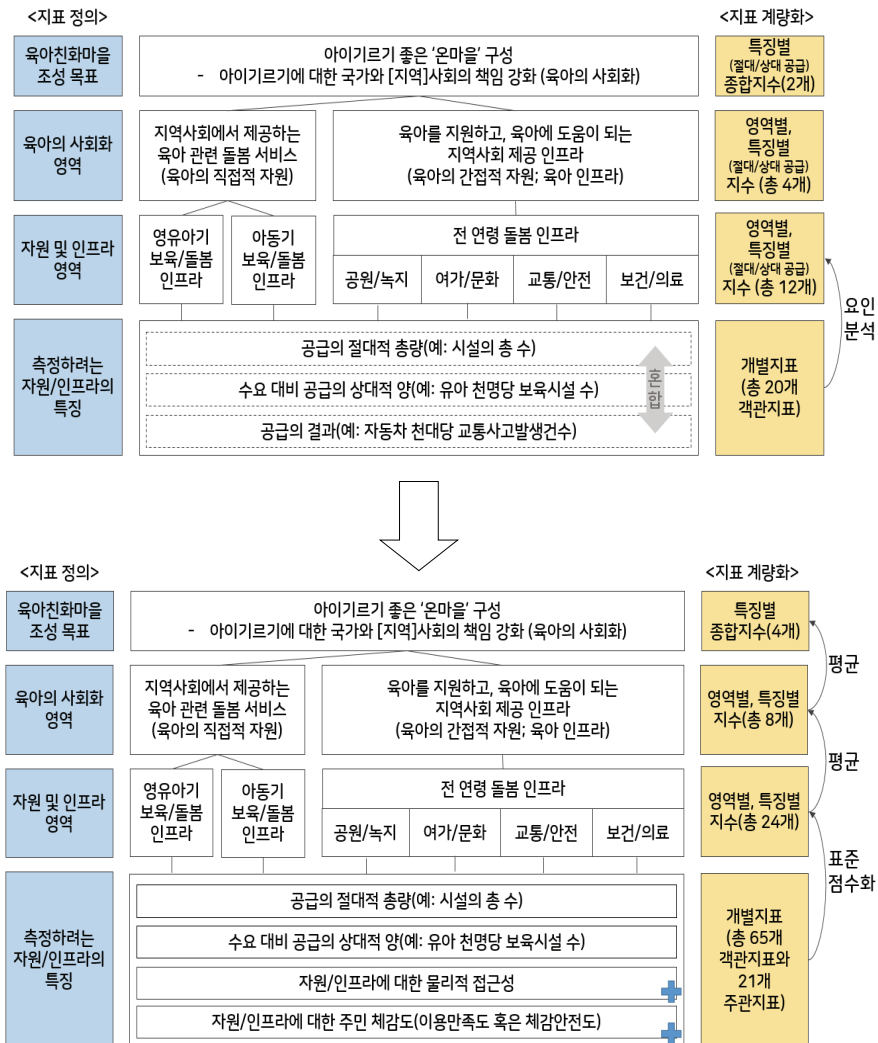


자료: 강은진 외(2020).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진단 및 적용. p. 17. [그림 I-3-1] 임.

24) 강은진 외(2020)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특히 1차년도 연구에서의 지표체계에 더하여 육아 관련 서비스·인프라에 대한 실제 이용가능성과 체감 정도를 포함하여 확대하였다(강은진 외, 2020: 68). 1차년도와 2차년도 계량지표 구성체계를 비교하면 다음 [그림 II-3-2]와 같다.

[그림 II-3-2]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의 1차년도(상)와 2차년도(하) 구성체계 비교



자료: 강은진 외(2020).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Ⅱ):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진단 및 적용. p. 68. [그림 II-4-1] 임.

2) 지역 유형화 및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적용 시범사업 추진

2차년도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이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찾고자하였다.

연구에서는 육아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영유아의 인구변화를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지역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 첫째, 대규모 신규 주거지역 조성 확충으로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는 신규조성 대도시지역이다. 둘째는 도시재생 지역으로 기존 원도심의 낙후와 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영유아 인구의 변화가 보이는 곳이다. 셋째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 내에 도시와 농어촌의 공존으로 차별화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적용 시범지역은 “출산율 및 영유아 인구수가 비교적 높으며, 시 정책과 계획에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이 있는 등 지자체 장이나 구성원들이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중요도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강은진 외, 2020: 17)”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는 대규모 신규 주거지역으로 남양주 별내, 도시재생 지역으로 광명시, 도농복합지역으로 공주시를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은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의 적용과정으로 [그림 II-2-5]에서 제시한 내용을 추진하였다. 즉, 해당 지역을 육아친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 진단하고, 지역 유형별 육아친화정책과 육아친화마을 인증 사업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를 통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방향과 접근방안을 구체화하였다.²⁵⁾ 신규도시형 육아친화마을은 도시 조성 계획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그 추진 과정에 따라 육아지원 인프라에 대한 공급 및 접근 대책 마련이 필요함과 입주 초기부터 육아친화적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Pop-up형 주민참여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도시재생형 육아친화마을의 경우는 직접 자원의 배치에 대해서는 공급률을 높이되, 간접 자원에 대해서는 기존 인프라의 배치 조정, 시설 개선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공간재생 시 지역의 육아공동체 활동을 위한 다기능적 복합 공간 마련 및 육아친화 네트워크 지원을 제안하였다. 도

25)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2020).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진단 및 적용. pp. 262~264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함.

농복합형 육아친화마을은 복합적인 특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치의 공유가 중요하다. 육아의 중요성과 가치와 함께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 공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마을 공동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능복합형으로서 온 마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를 설치하여, 함께 돌보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하였다.

3)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안) 제시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육아친화마을 조례의 목적, 육아친화마을의 기본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원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기본 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안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강은진 외, 2020: 281)”

〈표 II-3-1〉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안)

구분	내용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는 아이 키우기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친화마을의 정의	육아친화마을이란, 서로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마을, 즉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마을이다. 육아친화마을이란, 온 마을이 아이 기르는데 필요한 철학, 공간,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참여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지역사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료: 강은진 외(2020).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Ⅱ):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진단 및 적용. p. 281 〈표 VI-4-1〉임.

나. 2차년도 연구를 통한 제언 및 시사점

첫째, 2차년도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로 행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3차년도 연구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였다. “지역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의 육아친화정책에 대한 비전과 거버넌스 구축은 육아친화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강은진 외, 2020: 15).”

둘째, 2차년도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기존 친화도시의 인증화 과정을 탐색과 도시기본계획 및 건축 계획 등을 검토하여 육아친화마을의 조성 및 지속 유지를 위한 인증화 사업추진을 제안하였다.

셋째, 2차년도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육아친화마을의 조성과정을 면밀하게 제시하였다.

넷째, 2차년도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예산확보 및 실제 정책화를 도모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를 그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하였다. 즉, 국무조정실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토교통부 ‘아이 키우기 좋은 3기 신도시’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농촌 유토피아 사업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육아친화마을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육아친화마을 지표를 활용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계획수립과 평가, 시도 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육아친화분과 포함,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제시하였다.

III

저출생 인식 조사·분석

1 설문 개요

2 설문 결과

3 소결

Ⅲ. 저출생 인식 조사·분석

본 장과 다음 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분석 및 2차데이터/2차조사결과 분석은 저출생 및 육아친화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육아친화마을 구축을 위한 인증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1. 설문 개요

본 연구의 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의 ‘저출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전국 만 25~45세 성인 남녀 1,000명의 온라인 패널²⁶⁾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2021년 8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권역·성·연령별 인구수에 비례한 표본을 배분 설정하였으며, 구성은 <표 III-1-1>과 같고 조사 내용은 <표 III-1-2>와 같다.

<표 III-1-1> 응답자 구성

단위: 명

지역 ¹⁾	성별	합계	연령 ²⁾			
			25~29세	30~34세	35~39세	40~45세
계		1,000	180	220	266	334
수도권	남	285	71	66	67	81
	여	263	37	59	73	94
영남권	남	121	27	27	30	37
	여	104	7	14	37	46
호남권	남	37	10	10	10	7
	여	41	5	10	12	14
충청권	남	45	7	12	12	14
	여	47	4	13	12	18
기타권역	남	25	6	3	5	11
	여	32	6	6	8	12

주: 1)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기타권역(강원/제주)

2) 응답자의 연령은 만 나이임.

26) 온라인 패널사 활용: ㈜인바이트 패널(80만 규모 Invitation Based Panel)

〈표 Ⅲ-1-2〉 조사문항 구성

구분	내용
저출생현상 및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 저출생 현상 심각성 평가 - 지역(시군구) 인구 밀집도 평가 - 거주지역에 대한 젊은세대 정착 적절성 평가, 젊은세대 정착 부적절 이유 - 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공감도
지자체,유관 정책 및 출생 요인 평가	- 결혼, 출산, 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 - 거주 기초지자체의 저출생대응 평가 - 저출생 극복 시책 효과를 위한 개선사항 - 자녀 출생 요인 대책
지원정책 필요성	- 지원정책 필요성: 청년 취업지원정책, 결혼장려정책, 출산장려정책, 일가정양립정책, 아동돌봄정책
육아친화관련 인식 및 거주지역 평가	-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부 단위 - 거주 기초지자체의 육아친화환경 조성 대응 평가 -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우선적으로 고려될 요소 - 거주지역 평가: 초중고 교육환경, 영유아 자녀돌봄 및 양육환경, 주택가격, 자연환경(공원 등), 생활편의시설(마트 등), 여가(놀이) 및 문화시설, 취업 여건, 이웃과의 교류, 교통편의, 기초지자체정책 수립 및 시행, 기초지자체와 시민과의 소통, 지역개발 및 성장, 전반적인 경제여건(상황)
결혼 및 출생에 대한 인식	- 결혼에 대한 인식 (미혼자들이 결혼하는 데 느낄 어려움) - 자녀 출생에 대한 인식 (자녀출생에 대한 공부정인식)
친화도시인지도 및 필요성	- 친화도시인지도: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인증, 고령친화도시 - 친화도시인증 사업 필요성 공감도

〈표 Ⅲ-1-3〉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명	비율			명	비율
전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성별	여성	513	51.3	혼인상태	미혼	469	46.9
	남성	487	48.7		기혼	506	50.6
연령 ¹⁾	25~29세	180	18.0		이혼/사별	25	2.5
	30~34세	220	22.0	취업상태 ²⁾	취업	840	84.0
	35~39세	266	26.6		비취업	160	16.0
	40~45세	334	33.4	자녀유무	자녀 있음	399	39.9
	수도권	548	54.8		자녀 없음	601	60.1
권역별	영남권	225	22.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57	25.7
	호남권	78	7.8		300~500만원	332	33.2
	충청권	92	9.2				
	기타권역	57	5.7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명	비율			명	비율
최종학력	고졸 이하	90	9.0		500~700만원	222	22.2
	대졸	769	76.9		700만원 이상	189	18.9
	대학원 이상	141	14.1				

주: 1) 응답자의 연령은 만 나이임.

2) '취업'은 경제활동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용직, 임시직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인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모두 포함함.

2. 설문 결과

저출생 현상 심각성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를 보면, '심각함' 89.0%, '심각 안 함' 11.0%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심각한 편이다'가 60.2%, 남성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남성이 저출생 현상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심각함' 응답의 경우, 남성 93.6%, 여성 84.6%). 또한 연령별 조사 결과, 25~59세, 30~34세, 35~39세, 40~45세 모두 '심각한 편이다'가 47.0% 이상을 차지해 연령대와 상관없이 심각하게 저출생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45세에서는 '심각한 편이다'가 52.7%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 III-2-1〉 저출생 현상 심각성 평가

단위: %, (명)

구분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심각한 편이다	④ 매우 심각하다	①+② 심각 안함	③+④ 심각함	계 (명)
전체		2.5 (25)	8.5 (85)	49.2 (492)	39.8 (398)	11.0 (110)	89.0 (890)	100.0 (1,000)
성별	여성	2.7 (14)	12.7 (65)	60.2 (309)	24.4 (125)	15.4 (79)	84.6 (434)	100.0 (513)
	남성	2.3 (11)	4.1 (20)	37.6 (183)	56.1 (273)	6.4 (31)	93.6 (456)	100.0 (487)
	χ^2	110.886***						
연령	25~29세	2.8 (5)	12.2 (22)	47.2 (85)	37.8 (68)	15.0 (27)	85.0 (153)	100.0 (180)

구분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심각한 편이다	④ 매우 심각하다	①+② 심각 안함	③+④ 심각함	계 (명)
	30~34세	0.5 (1)	10.0 (22)	48.2 (106)	41.4 (91)	10.5 (23)	89.5 (197)	100.0 (220)
	35~39세	4.1 (11)	10.5 (28)	47.0 (125)	38.3 (102)	14.7 (39)	85.3 (227)	100.0 (266)
	40~45세	2.4 (8)	3.9 (13)	52.7 (176)	41.0 (137)	6.3 (21)	93.7 (313)	100.0 (334)
	χ^2	21.609*						
권역	수도권	2.2 (12)	8.6 (47)	46.0 (252)	43.2 (237)	10.8 (59)	89.2 (489)	100.0 (548)
	영남권	5.3 (12)	8.9 (20)	52.0 (117)	33.8 (76)	14.2 (32)	85.8 (193)	100.0 (225)
	호남권	0.0 (0)	7.7 (6)	59.0 (46)	33.3 (26)	7.7 (6)	92.3 (72)	100.0 (78)
	충청권	0.0 (0)	7.6 (7)	52.2 (48)	40.2 (37)	7.6 (7)	92.4 (85)	100.0 (92)
	기타권역	1.8 (1)	8.8 (5)	50.9 (29)	38.6 (22)	10.5 (6)	89.5 (51)	100.0 (57)
	χ^2	19.761						
최종학력	고졸 이하	3.3 (3)	5.6 (5)	51.1 (46)	40.0 (36)	8.9 (8)	91.1 (82)	100.0 (90)
	대졸	2.2 (17)	9.4 (72)	49.7 (382)	38.8 (298)	11.6 (89)	88.4 (680)	100.0 (769)
	대학원 이상	3.5 (5)	5.7 (8)	45.4 (64)	45.4 (64)	9.2 (13)	90.8 (128)	100.0 (141)
	χ^2	5.880						
혼인상태	미혼	3.2 (15)	10.4 (49)	48.0 (225)	38.4 (180)	13.6 (64)	86.4 (405)	100.0 (469)
	기혼	1.8 (9)	6.5 (33)	51.0 (258)	40.7 (206)	8.3 (42)	91.7 (464)	100.0 (506)
	이혼/사별	4.0 (1)	12.0 (3)	36.0 (9)	48.0 (12)	16.0 (4)	84.0 (21)	100.0 (25)
	χ^2	9.099						
취업상태	취업	2.4 (20)	8.5 (71)	49.5 (416)	39.6 (333)	10.8 (91)	89.2 (749)	100.0 (840)
	비취업	3.1 (5)	8.8 (14)	47.5 (76)	40.6 (65)	11.9 (19)	88.1 (141)	100.0 (160)
	χ^2	0.45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8 (7)	6.3 (25)	49.4 (197)	42.6 (170)	8.0 (32)	92.0 (367)	100.0 (399)
	자녀 없음	3.0 (18)	10.0 (60)	49.1 (295)	37.9 (228)	13.0 (78)	87.0 (523)	100.0 (601)
	χ^2	6.693						

구분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심각한 편이다	④ 매우 심각하다	①+② 심각 안함	③+④ 심각함	계 (명)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5 (9)	9.7 (25)	51.0 (131)	35.8 (92)	13.2 (34)	86.8 (223)	100.0 (257)
	300~500만원	1.8 (6)	8.4 (28)	53.0 (176)	36.7 (122)	10.2 (34)	89.8 (298)	100.0 (332)
	500~700만원	1.8 (4)	6.3 (14)	48.2 (107)	43.7 (97)	8.1 (18)	91.9 (204)	100.0 (222)
	700만원 이상	3.2 (6)	9.5 (18)	41.3 (78)	46.0 (87)	12.7 (24)	87.3 (165)	100.0 (189)
	χ^2	12.501						

* $p < .05$, *** $p < .001$.

지역(시군구)의 인구 밀집도 평가 결과, 전체 응답결과에서는 ‘많은 편’이 60.2%, ‘적은편’이 39.8%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많은 편’이 54.4%, ‘적은 편’이 45.6%였는데, 여성의 경우, ‘많은편’이 65.7%로 남성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많은 편이다’에서 각각 55.9%, 45.2%로 가장 높았다. 모든 권역에서 ‘많은 편이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수도권에서만 ‘많은편’이 76.1%로 ‘적은 편’인 23.9%보다 많았고, 다른 지역인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기타 권역에서는 모두 ‘많은 편’보다 ‘적은 편’의 비중이 더 높아 인구분포의 불균형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많은 편이다’가 61.7%로 높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적은 편이다’가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종학력, 혼인상태, 가구 소득 기준에서는 모두 ‘많은 편’이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적은편’보다 높았다.

〈표 III-2-2〉 지역(시군구) 인구 밀집도 평가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많은 편이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매우 적은 편이다	①+② 많은 편	③+④ 적은 편	계 (명)
전체		9.5 (95)	50.7 (507)	35.3 (353)	4.5 (45)	60.2 (602)	39.8 (398)	100.0 (1,000)
성별	여성	9.7 (50)	55.9 (287)	31.6 (162)	2.7 (14)	65.7 (337)	34.3 (176)	100.0 (513)

구분		① 매우 많은 편이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매우 적은 편이다	①+② 많은 편	③+④ 적은 편	계 (명)
	남성	9.2 (45)	45.2 (220)	39.2 (191)	6.4 (31)	54.4 (265)	45.6 (222)	100.0 (487)
	χ^2	17.258***						
연령	25~29세	15.0 (27)	51.1 (92)	28.3 (51)	5.6 (10)	66.1 (119)	33.9 (61)	100.0 (180)
	30~34세	8.2 (18)	50.5 (111)	35.9 (79)	5.5 (12)	58.6 (129)	41.4 (91)	100.0 (220)
	35~39세	9.4 (25)	51.1 (136)	35.0 (93)	4.5 (12)	60.5 (161)	39.5 (105)	100.0 (266)
	40~45세	7.5 (25)	50.3 (168)	38.9 (130)	3.3 (11)	57.8 (193)	42.2 (141)	100.0 (334)
	χ^2	13.313						
권역	수도권	14.4 (79)	61.7 (338)	21.4 (117)	2.6 (14)	76.1 (417)	23.9 (131)	100.0 (548)
	영남권	4.0 (9)	40.9 (92)	50.2 (113)	4.9 (11)	44.9 (101)	55.1 (124)	100.0 (225)
	호남권	2.6 (2)	28.2 (22)	55.1 (43)	14.1 (11)	30.8 (24)	69.2 (54)	100.0 (78)
	충청권	2.2 (2)	39.1 (36)	54.3 (50)	4.3 (4)	41.3 (38)	58.7 (54)	100.0 (92)
	기타권역	5.3 (3)	33.3 (19)	52.6 (30)	8.8 (5)	38.6 (22)	61.4 (35)	100.0 (57)
	χ^2	152.613***						
최종학력	고졸 이하	7.8 (7)	45.6 (41)	38.9 (35)	7.8 (7)	53.3 (48)	46.7 (42)	100.0 (90)
	대졸	9.6 (74)	48.9 (376)	37.1 (285)	4.4 (34)	58.5 (450)	41.5 (319)	100.0 (769)
	대학원 이상	9.9 (14)	63.8 (90)	23.4 (33)	2.8 (4)	73.8 (104)	26.2 (37)	100.0 (141)
	χ^2	15.761*						
혼인상태	미혼	10.9 (51)	53.7 (252)	30.1 (141)	5.3 (25)	64.6 (303)	35.4 (166)	100.0 (469)
	기혼	8.1 (41)	48.4 (245)	39.9 (202)	3.6 (18)	56.5 (286)	43.5 (220)	100.0 (506)
	이혼/사별	12.0 (3)	40.0 (10)	40.0 (10)	8.0 (2)	52.0 (13)	48.0 (12)	100.0 (25)
	χ^2	13.329*						
취업상태	취업	9.4 (79)	50.0 (420)	36.2 (304)	4.4 (37)	59.4 (499)	40.6 (341)	100.0 (840)
	비취업	10.0 (16)	54.4 (87)	30.6 (49)	5.0 (8)	64.4 (103)	35.6 (57)	100.0 (160)
	χ^2	1.843						

구분		① 매우 많은 편이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	④ 매우 적은 편이다	①+② 많은 편	③+④ 적은 편	계 (명)
자녀 유무	자녀 있음	7.8 (31)	48.1 (192)	39.6 (158)	4.5 (18)	55.9 (223)	44.1 (176)	100.0 (399)
	자녀 없음	10.6 (64)	52.4 (315)	32.4 (195)	4.5 (27)	63.1 (379)	36.9 (222)	100.0 (601)
	χ^2	6.44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4 (19)	52.5 (135)	33.1 (85)	7.0 (18)	59.9 (154)	40.1 (103)	100.0 (257)
	300~500만원	7.5 (25)	46.1 (153)	42.2 (140)	4.2 (14)	53.6 (178)	46.4 (154)	100.0 (332)
	500~700만원	11.3 (25)	55.9 (124)	28.8 (64)	4.1 (9)	67.1 (149)	32.9 (73)	100.0 (222)
	700만원 이상	13.8 (26)	50.3 (95)	33.9 (64)	2.1 (4)	64.0 (121)	36.0 (68)	100.0 (189)
	χ^2	23.289**						

* $p < .05$, ** $p < .01$, *** $p < .001$.

거주지역에 대한 젊은세대의 정착 적절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 결과 중에서 ‘적절함’ 52.9%, ‘부적절함’ 47.1%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적절함’이 55.9%로 44.1%인 ‘부적절함’보다 높았으나 남성의 경우, ‘적절함’이 49.7%로 ‘부적절함’인 50.3%보다 낮았다. 권역 기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만 ‘적절함’이 약 60.0%로 ‘부적절함’보다 많았고, 그 외 다른 지역인 영남권, 호남권, 기타 권역에서는 ‘부적절함’이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적절함’보다 많았다. 최종 학력 기준, 고졸 이하만 ‘부적절함’이 57.8%로 ‘적절함’인 42.2%보다 높았고, 그 외인 대졸, 대학원 이상에서는 ‘적절함’이 과반 이상의 비중으로 ‘부적절함’보다 높았다. 이혼상태 기준, 미혼과 기혼은 ‘적절함’이 각각 50.1%, 55.7%로 ‘부적절함’보다 높았고, 이혼/사별에서는 ‘부적절함’이 52.0%로 48.0%인 ‘적절함’보다 높았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300만원 미만에서만 ‘부적절함’이 53.7%로 46.3%인 ‘적절함’보다 높았고, 그 외 그룹에서는 모두 ‘적절함’이 과반 이상의 비중으로 더 많았다.

〈표 Ⅲ-2-3〉 거주지역에 대한 젊은세대 정착 적절성 평가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부적절 하다	② 다소 부적절 하다	③ 적절한 편이다	④ 매우 적절하다	①+② 부적절함	③+④ 적절함	계 (명)
전체		11.7 (117)	35.4 (354)	46.9 (469)	6.0 (60)	47.1 (471)	52.9 (529)	100.0 (1,000)
성별	여성	9.7 (50)	34.3 (176)	48.5 (249)	7.4 (38)	44.1 (226)	55.9 (287)	100.0 (513)
	남성	13.8 (67)	36.6 (178)	45.2 (220)	4.5 (22)	50.3 (245)	49.7 (242)	0.0 (487)
	χ^2	7.871*						
연령	25~29세	15.0 (27)	38.9 (70)	42.2 (76)	3.9 (7)	53.9 (97)	46.1 (83)	100.0 (180)
	30~34세	13.6 (30)	33.2 (73)	48.6 (107)	4.5 (10)	46.8 (103)	53.2 (117)	100.0 (220)
	35~39세	11.7 (31)	34.2 (91)	47.7 (127)	6.4 (17)	45.9 (122)	54.1 (144)	100.0 (266)
	40~45세	8.7 (29)	35.9 (120)	47.6 (159)	7.8 (26)	44.6 (149)	55.4 (185)	100.0 (334)
	χ^2	11.047						
권역	수도권	10.0 (55)	29.2 (160)	53.3 (292)	7.5 (41)	39.2 (215)	60.8 (333)	100.0 (548)
	영남권	12.0 (27)	44.0 (99)	38.7 (87)	5.3 (12)	56.0 (126)	44.0 (99)	100.0 (225)
	호남권	15.4 (12)	52.6 (41)	30.8 (24)	1.3 (1)	67.9 (53)	32.1 (25)	100.0 (78)
	충청권	14.1 (13)	25.0 (23)	54.3 (50)	6.5 (6)	39.1 (36)	60.9 (56)	100.0 (92)
	기타권역	17.5 (10)	54.4 (31)	28.1 (16)	0.0 (0)	71.9 (41)	28.1 (16)	100.0 (57)
	χ^2	56.377***						
최종학력	고졸 이하	25.6 (23)	32.2 (29)	37.8 (34)	4.4 (4)	57.8 (52)	42.2 (38)	100.0 (90)
	대졸	10.5 (81)	37.1 (285)	47.2 (363)	5.2 (40)	47.6 (366)	52.4 (403)	100.0 (769)
	대학원 이상	9.2 (13)	28.4 (40)	51.1 (72)	11.3 (16)	37.6 (53)	62.4 (88)	100.0 (141)
	χ^2	29.262***						
혼인상태	미혼	14.3 (67)	35.6 (167)	45.8 (215)	4.3 (20)	49.9 (234)	50.1 (235)	100.0 (469)
	기혼	9.5 (48)	34.8 (176)	47.8 (242)	7.9 (40)	44.3 (224)	55.7 (282)	100.0 (506)
	이혼/사별	8.0 (2)	44.0 (11)	48.0 (12)	0.0 (0)	52.0 (13)	48.0 (12)	100.0 (25)
	χ^2	12.801*						

구분		① 매우 부적절 하다	② 다소 부적절 하다	③ 적절한 편이다	④ 매우 적절하다	①+② 부적절함	③+④ 적절함	계 (명)
취업상태	취업	11.5 (97)	36.7 (308)	46.1 (387)	5.7 (48)	48.2 (405)	51.8 (435)	100.0 (840)
	비취업	12.5 (20)	28.8 (46)	51.3 (82)	7.5 (12)	41.3 (66)	58.8 (94)	100.0 (160)
	χ^2	3.96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0 (36)	36.3 (145)	46.9 (187)	7.8 (31)	45.4 (181)	54.6 (218)	100.0 (399)
	자녀 없음	13.5 (81)	34.8 (209)	46.9 (282)	4.8 (29)	48.3 (290)	51.7 (311)	100.0 (601)
	χ^2	7.69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9.1 (49)	34.6 (89)	42.8 (110)	3.5 (9)	53.7 (138)	46.3 (119)	100.0 (257)
	300~500만원	7.8 (26)	40.4 (134)	46.4 (154)	5.4 (18)	48.2 (160)	51.8 (172)	100.0 (332)
	500~700만원	10.4 (23)	34.2 (76)	48.6 (108)	6.8 (15)	44.6 (99)	55.4 (123)	100.0 (222)
	700만원 이상	10.1 (19)	29.1 (55)	51.3 (97)	9.5 (18)	39.2 (74)	60.8 (115)	100.0 (189)
	χ^2	30.353***						

* $p < .05$, *** $p < .001$.

젊은 세대의 정착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에게 그 이유를 설문해 본 결과, ‘일자리가 부족해서’ 37.4%, ‘주택공급 부족’ 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준에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주택공급 부족’이 각 1순위, 2순위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권역 기준은 조금 달랐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이 34.0%, ‘일자리가 부족해서’ 15.8% 순으로 나타났고, 호남권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이 60.4%, ‘주택공급 부족’ 15.1%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 순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혼인 상태 기준에서 다른 그룹은 전체적인 기조를 유지했으나, 기혼 그룹에서만 ‘일자리가 부족해서’ 37.1%,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17.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그룹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주택공급 부족’ 순이었지만, 자녀가 있는 그룹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39.2%,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1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젊은세대 정착 부적절 이유

구분		일자리가 부족해서	주택공급 부족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기타	교통 환경이 불편해서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계 (명)
성별	전체	37.4 (176)	20.6 (97)	11.0 (52)	10.4 (49)	9.3 (44)	6.8 (32)	4.5 (21)	100.0 (471)
	여성	38.5 (87)	18.6 (42)	12.8 (29)	10.2 (23)	8.8 (20)	5.8 (13)	5.3 (12)	100.0 (226)
	남성	36.3 (89)	22.4 (55)	9.4 (23)	10.6 (26)	9.8 (24)	7.8 (19)	3.7 (9)	100.0 (245)
		χ^2 3.798							
연령	25~29세	34.0 (33)	23.7 (23)	17.5 (17)	6.2 (6)	11.3 (11)	6.2 (6)	1.0 (1)	100.0 (97)
	30~34세	34.0 (35)	26.2 (27)	11.7 (12)	4.9 (5)	5.8 (6)	11.7 (12)	5.8 (6)	100.0 (103)
	35~39세	33.6 (41)	18.9 (23)	4.9 (6)	15.6 (19)	13.9 (17)	5.7 (7)	7.4 (9)	100.0 (122)
	40~45세	45.0 (67)	16.1 (24)	11.4 (17)	12.8 (19)	6.7 (10)	4.7 (7)	3.4 (5)	100.0 (149)
		χ^2 39.720**							
권역	수도권	15.8 (34)	34.0 (73)	8.4 (18)	13.5 (29)	14.4 (31)	10.7 (23)	3.3 (7)	100.0 (215)
	영남권	47.6 (60)	8.7 (11)	15.1 (19)	9.5 (12)	7.9 (10)	4.8 (6)	6.3 (8)	100.0 (126)
	호남권	60.4 (32)	15.1 (8)	11.3 (6)	7.5 (4)	0.0 (0)	0.0 (0)	5.7 (8)	100.0 (53)
	충청권	63.9 (23)	8.3 (3)	11.1 (4)	2.8 (1)	0.0 (0)	5.6 (2)	8.3 (3)	100.0 (36)
	기타권역	65.9 (27)	4.9 (2)	12.2 (5)	7.3 (3)	7.3 (3)	2.4 (1)	0.0 (0)	100.0 (41)
		χ^2 127.221***							
최종학력	고졸 이하	44.2 (23)	15.4 (8)	7.7 (4)	7.7 (4)	9.6 (5)	11.5 (6)	3.8 (2)	100.0 (52)
	대졸	38.5 (141)	21.3 (78)	10.9 (40)	10.4 (38)	8.5 (31)	6.0 (22)	4.4 (16)	100.0 (366)
	대학원 이상	22.6 (12)	20.8 (11)	15.1 (8)	13.2 (7)	15.1 (8)	7.5 (4)	5.7 (3)	100.0 (53)
		χ^2 11.227							
혼인상태	미혼	37.2 (87)	26.1 (61)	11.1 (26)	3.4 (8)	10.7 (25)	9.8 (23)	1.7 (4)	100.0 (234)
	기혼	37.1 (83)	14.3 (32)	11.6 (26)	17.4 (39)	8.0 (18)	4.0 (9)	7.6 (17)	100.0 (224)
	이혼/사별	46.2 (6)	30.8 (4)	0.0 (0)	15.4 (2)	7.7 (1)	0.0 (0)	0.0 (0)	100.0 (13)
		χ^2 48.986***							
취업상태	취업	35.3 (143)	21.0 (85)	11.6 (47)	11.9 (48)	9.1 (37)	7.2 (29)	4.0 (16)	100.0 (405)
	비취업	50.0 (33)	18.2 (12)	7.6 (5)	1.5 (1)	10.6 (7)	4.5 (3)	7.6 (5)	100.0 (66)

구분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계 (명)	
	일자리가 부족해서	주택공급 부족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기타	교통 환경이 불편해서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자녀 유무	χ^2							12,533		
	자녀 있음	39.2	12.7	11.0	18.8	7.2	3.9	7.2	100.0	(181)
가구소득	χ^2				39.065***				100.0	(290)
	자녀 없음	36.2	25.5	11.0	5.2	10.7	8.6	2.8		
	300만원 미만	39.1	23.9	10.1	5.1	9.4	8.7	3.6	100.0	(138)
	300~500만원	40.6	15.0	11.3	13.1	6.9	6.9	6.3	100.0	(160)
	500~700만원	36.4	21.2	13.1	8.1	11.1	5.1	5.1	100.0	(99)
	700만원 이상	28.4	25.7	9.5	17.6	12.2	5.4	1.4	100.0	(74)
	χ^2				22.493					

** $p < .01$, *** $p < .001$.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조성안됨’으로 응답한 비중이 78.1%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그 다음으로는 25~29세, 30~34세에서는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가, 35~39세, 40~45세에서는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다’가 많았다. 혼인상태 기준, 기혼 그룹만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다’ 순으로 많았고, 다른 그룹에서는 모두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순이었다. 자녀가 있는 그룹은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59.1%,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다’ 23.1% 순으로 많았고, 자녀가 없는 그룹은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50.9%,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 2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공감도

단위: %, (명)

구분		① 전혀 조성되어 있지않다	② 별로 조성되어 있지않다	③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다	④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①+② 조성안됨	③+④ 조성됨	계 (명)
전체		23.9 (239)	54.2 (542)	20.3 (203)	1.6 (16)	78.1 (781)	21.9 (219)	100.0 (1,000)
성별	여성	22.6 (116)	56.1 (288)	19.7 (101)	1.6 (8)	78.8 (404)	21.2 (109)	100.0 (513)
	남성	25.3 (123)	52.2 (254)	20.9 (102)	1.6 (8)	77.4 (377)	22.6 (110)	100.0 (487)
	χ^2	1.668						
연령	25~29세	36.7 (66)	46.1 (83)	15.0 (27)	2.2 (4)	82.8 (149)	17.2 (31)	100.0 (180)
	30~34세	31.8 (70)	53.6 (118)	14.5 (32)	0.0 (0)	85.5 (188)	14.5 (32)	100.0 (220)
	35~39세	19.9 (53)	56.0 (149)	22.6 (60)	1.5 (4)	75.9 (202)	24.1 (64)	100.0 (266)
	40~45세	15.0 (50)	57.5 (192)	25.1 (84)	2.4 (8)	72.5 (242)	27.5 (92)	100.0 (334)
	χ^2	49.869***						
권역	수도권	27.6 (151)	51.3 (281)	19.5 (107)	1.6 (9)	78.8 (432)	21.2 (116)	100.0 (548)
	영남권	23.1 (52)	54.2 (122)	20.4 (46)	2.2 (5)	77.3 (174)	22.7 (51)	100.0 (225)
	호남권	17.9 (14)	59.0 (46)	21.8 (17)	1.3 (1)	76.9 (60)	23.1 (18)	100.0 (78)

구분		① 전혀 조성되어 있지않다	② 별로 조성되어 있지않다	③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다	④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①+②	③+④	계 (명)
	충청권	13.0 (12)	60.9 (56)	25.0 (23)	1.1 (1)	73.9 (68)	26.1 (24)	100.0 (92)
	기타권역	17.5 (10)	64.9 (37)	17.5 (10)	0.0 (0)	82.5 (47)	17.5 (10)	100.0 (57)
	χ^2	16.059						
최종학력	고졸 이하	31.1 (28)	55.6 (50)	11.1 (10)	2.2 (2)	86.7 (78)	13.3 (12)	100.0 (90)
	대졸	23.0 (177)	55.3 (425)	20.2 (155)	1.6 (12)	78.3 (602)	21.7 (167)	100.0 (769)
	대학원 이상	24.1 (34)	47.5 (67)	27.0 (38)	1.4 (2)	71.6 (101)	28.4 (40)	100.0 (141)
	χ^2	10.643						
혼인상태	미혼	29.6 (139)	51.0 (239)	18.1 (85)	1.3 (6)	80.6 (378)	19.4 (91)	100.0 (469)
	기혼	18.4 (93)	57.5 (291)	22.1 (112)	2.0 (10)	75.9 (384)	24.1 (122)	100.0 (506)
	이혼/사별	28.0 (7)	48.0 (12)	24.0 (6)	0.0 (0)	76.0 (19)	24.0 (6)	100.0 (25)
	χ^2	18.448**						
취업상태	취업	24.0 (202)	53.7 (451)	20.5 (172)	1.8 (15)	77.7 (653)	22.3 (187)	100.0 (840)
	비취업	23.1 (37)	56.9 (91)	19.4 (31)	0.6 (1)	80.0 (128)	20.0 (32)	100.0 (160)
	χ^2	1.51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5.8 (63)	59.1 (236)	23.1 (92)	2.0 (8)	74.9 (299)	25.1 (100)	100.0 (399)
	자녀 없음	29.3 (176)	50.9 (306)	18.5 (111)	1.3 (8)	80.2 (482)	19.8 (119)	100.0 (601)
	χ^2	24.43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7.6 (71)	52.5 (135)	18.7 (48)	1.2 (3)	80.2 (206)	19.8 (51)	100.0 (257)
	300~500만원	18.7 (62)	55.7 (185)	23.2 (77)	2.4 (8)	74.4 (247)	25.6 (85)	100.0 (332)
	500~700만원	27.9 (62)	55.9 (124)	15.8 (35)	0.5 (1)	83.8 (186)	16.2 (36)	100.0 (222)
	700만원 이상	23.3 (44)	51.9 (98)	22.8 (43)	2.1 (4)	75.1 (142)	24.9 (47)	100.0 (189)
	χ^2	15.722						

** $p < .01$, *** $p < .001$.

결혼, 출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자녀양육 관련 경제적 지원 강화’ 15.4%로 나타났다. 남성은 전체응답자 결과와 동일한 1,2순위를 보였지만, 여성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27.5%,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실행 지원 강화’ 14.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기준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이 1순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순위로는 25~29세에서는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실행 지원강화’가 16.7%, 30~34세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강화’가 17.3%, 35~39세와 40~45세에서는 ‘자녀양육 관련 경제적 지원 강화’가 각각 15.4%, 19.8%로 나타났다.

〈표 III-2-6〉 결혼, 출산, 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중복응답, 1순위)

단위: %, (명)

구분	청년고용 활성화	청년 주거지원 강화	임산·출산 관련 의료지원 강화	자녀양육 관련 경제적 지원 강화	질 좋은 보육·돌 봄 확대	공교육 개혁	성평등한 임·가정 양립 실현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결혼·출 산·친화 인식개선 강화	가족 다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지원	영유아 및 이동 중심 주거 환경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7.8 (78)	10.2 (102)	5.6 (56)	15.4 (154)	7.9 (79)	5.3 (53)	8.5 (85)	24.7 (247)	4.8 (48)	3.6 (36)	4.1 (41)	2.1 (21)	100.0 (1,000)
성별	여성	6.4 (33)	6.2 (32)	6.6 (34)	11.9 (61)	8.8 (45)	14.4 (74)	27.5 (141)	4.1 (21)	5.7 (29)	2.9 (15)	0.8 (4)	100.0 (513)
	남성	9.2 (45)	14.4 (70)	4.5 (22)	19.1 (93)	7.0 (34)	2.3 (11)	21.8 (106)	5.5 (27)	1.4 (7)	5.3 (26)	3.5 (17)	100.0 (487)
연령	25~29세	10.0 (18)	12.2 (22)	6.1 (11)	10.6 (19)	4.4 (8)	16.7 (30)	23.3 (42)	2.8 (5)	5.6 (10)	2.8 (5)	1.7 (3)	100.0 (180)
	30~34세	8.6 (19)	17.3 (38)	5.9 (13)	12.7 (28)	6.8 (15)	8.6 (19)	24.5 (54)	4.1 (9)	4.5 (10)	1.4 (3)	2.3 (5)	100.0 (220)
	35~39세	5.6 (15)	10.5 (28)	6.4 (17)	15.4 (41)	9.4 (25)	4.9 (13)	27.4 (73)	6.4 (17)	2.6 (7)	4.5 (12)	3.4 (9)	100.0 (266)
	40~45세	7.8 (26)	4.2 (14)	4.5 (15)	19.8 (66)	9.3 (31)	6.9 (23)	23.4 (78)	5.1 (17)	2.7 (9)	6.3 (21)	1.2 (4)	100.0 (334)
권역	수도권	5.5 (30)	12.2 (67)	6.8 (37)	14.1 (77)	6.4 (35)	10.6 (58)	24.8 (136)	4.0 (22)	4.0 (22)	4.4 (24)	2.4 (13)	100.0 (548)
	영남권	12.9 (29)	6.7 (15)	2.7 (6)	19.6 (44)	10.7 (24)	5.3 (12)	20.4 (46)	5.8 (13)	3.1 (7)	4.4 (10)	2.2 (5)	100.0 (225)
	호남권	11.5 (9)	6.4 (5)	9.0 (7)	14.1 (11)	7.7 (6)	5.1 (4)	30.8 (24)	3.8 (3)	3.8 (3)	3.8 (3)	100.0 (100)	100.0 (78)
	충청권	6.5 (6)	8.7 (8)	5.4 (5)	9.8 (9)	10.9 (10)	8.7 (8)	30.4 (28)	6.5 (6)	2.2 (2)	2.2 (2)	2.2 (2)	100.0 (92)

구분	청년고용 활성화	청년 주거지원 강화	임신·출산 관련 의료지원 강화	자녀양육 관련 경제적 지원 강화	질 좋은 모육·돌 봄 확대	공교육 개혁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실행 지원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결혼·출 산친화 인식개선 강화	가족 다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지원	영유아 및 아동 중심 주거 환경 지원	기타	계 (명)
기타권역	7.0 (4)	12.3 (7)	1.8 (1)	22.8 (13)	7.0 (4)	5.3 (3)	5.3 (3)	22.8 (13)	7.0 (4)	3.5 (2)	3.5 (2)	1.8 (1)	100.0 (57)
고졸 이하	10.0 (9)	12.2 (11)	10.0 (9)	14.4 (13)	5.6 (5)	7.8 (7)	2.2 (2)	20.0 (18)	6.7 (6)	3.3 (3)	5.6 (5)	2.2 (2)	100.0 (90)
대졸	7.8 (60)	10.5 (81)	5.7 (44)	15.7 (121)	7.7 (59)	5.3 (41)	8.8 (68)	24.3 (187)	4.6 (35)	3.9 (30)	3.6 (28)	2.0 (15)	100.0 (769)
대학원 이상	6.4 (9)	7.1 (10)	2.1 (3)	14.2 (20)	10.6 (15)	3.5 (5)	10.6 (15)	29.8 (42)	5.0 (7)	2.1 (3)	5.7 (8)	2.8 (4)	100.0 (141)
미혼	10.0 (47)	14.7 (69)	3.4 (16)	10.9 (51)	6.2 (29)	4.7 (22)	12.6 (59)	23.9 (112)	5.1 (24)	4.9 (23)	1.3 (6)	2.3 (11)	100.0 (469)
혼인 상태	5.7 (29)	5.7 (29)	7.7 (39)	19.4 (98)	9.5 (48)	5.9 (30)	4.7 (24)	26.1 (132)	4.7 (24)	2.0 (10)	6.7 (34)	1.8 (9)	100.0 (506)
이혼/사별	8.0 (2)	16.0 (4)	4.0 (1)	20.0 (5)	8.0 (2)	4.0 (1)	8.0 (2)	12.0 (3)	100.0 (100)	12.0 (3)	4.0 (1)	4.0 (1)	100.0 (25)
취업 상태	6.9 (58)	10.0 (84)	5.5 (46)	15.2 (128)	8.2 (69)	5.7 (48)	8.9 (75)	24.9 (209)	4.9 (41)	3.3 (28)	4.4 (37)	2.0 (17)	100.0 (840)
비취업	12.5 (20)	11.3 (18)	6.3 (10)	16.3 (26)	6.3 (10)	3.1 (5)	6.3 (10)	23.8 (38)	4.4 (7)	5.0 (8)	2.5 (4)	2.5 (4)	100.0 (160)
자녀 있음	6.8 (27)	6.0 (24)	5.8 (23)	18.5 (74)	10.3 (41)	6.5 (26)	5.0 (20)	25.1 (100)	4.8 (19)	2.3 (9)	7.5 (30)	1.5 (6)	100.0 (399)
자녀 유무	8.5 (51)	13.0 (78)	5.5 (33)	13.3 (80)	6.3 (38)	4.5 (27)	10.8 (65)	24.5 (147)	4.8 (29)	4.5 (27)	1.8 (11)	2.5 (15)	100.0 (601)
가구 소득	8.9 (23)	12.8 (33)	1.9 (5)	13.6 (35)	6.2 (16)	4.7 (12)	8.9 (23)	24.5 (63)	5.8 (15)	5.4 (14)	4.3 (11)	2.7 (7)	100.0 (257)
300~500만원	7.8	9.6	7.8	17.2	8.1	6.0	8.4	22.0	3.6	3.3	4.8	1.2	100.0

구분	청년고용 활성화	청년 주거지원 강화	임산·출산 관련 의료지원 강화	자녀양육 관련 경제적 지원 강화	질 좋은 모육·돌 봄 확대	공교육 개혁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실행 지원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결혼·출 산친화 인식개선 강화	가족 다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지원	영유아 및 이동 중심 주거 환경 지원	기타	계 (명)
	(26) 6.8	(32) 7.7	(26) 7.7	(57) 16.2	(27) 9.0	(20) 5.9	(28) 7.7	(73) 26.6	(12) 5.0	(11) 2.3	(16) 3.2	(4) 2.3	(332) 100.0
500~700만원	(15) 7.4	(17) 10.6	(17) 4.2	(36) 13.8	(20) 8.5	(13) 4.2	(17) 9.0	(59) 27.5	(11) 5.3	(5) 3.2	(7) 3.7	(5) 2.6	(222) 100.0
700만원 이상	(14) 7.4	(20) 10.6	(8) 4.2	(26) 13.8	(16) 8.5	(8) 4.2	(17) 9.0	(52) 27.5	(10) 5.3	(6) 3.2	(7) 3.7	(5) 2.6	(189) 100.0

거주 기초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대응안함’ 75.2%, ‘대응함’ 24.8%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별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60.4%, ‘어느정도 대응하고 있다’ 24.4%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별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52.6%,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 24.4%로 나타났다. 연령별 기준에서는 25~29세 그룹에서만 ‘별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55.6% 다음으로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가 27.2%로 많았는데, 다른 연령 그룹에서는 모두 ‘별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어느정도 대응하고 있다’가 많았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오히려 ‘대응안함’이 78.7%로 자녀가 있는 집단의 ‘대응안함’ 69.9%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2-7〉 거주 기초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평가

단위: %, (명)

구분		① 전혀 대응하고 있지않다	② 별로 대응하고 있지않다	③ 어느정도 대응하고 있다	④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①+② 대응안함	③+④ 대응함	계 (명)
전체		18.6 (186)	56.6 (566)	23.3 (233)	1.5 (15)	75.2 (752)	24.8 (248)	100.0 (1,000)
성별	여성	13.1 (67)	60.4 (310)	24.4 (125)	2.1 (11)	73.5 (377)	26.5 (136)	100.0 (513)
	남성	24.4 (119)	52.6 (256)	22.2 (108)	0.8 (4)	77.0 (375)	23.0 (112)	0.0 (487)
	χ^2	23.536***						
연령	25~29세	27.2 (49)	55.6 (100)	15.0 (27)	2.2 (4)	82.8 (149)	17.2 (31)	100.0 (180)
	30~34세	14.5 (32)	62.7 (138)	22.3 (49)	0.5 (1)	77.3 (170)	22.7 (50)	100.0 (220)
	35~39세	22.9 (61)	49.2 (131)	26.3 (70)	1.5 (4)	72.2 (192)	27.8 (74)	100.0 (266)
	40~45세	13.2 (44)	59.0 (197)	26.0 (87)	1.8 (6)	72.2 (241)	27.8 (93)	100.0 (334)
	χ^2	31.446***						
권역	수도권	19.0 (104)	55.5 (304)	24.3 (133)	1.3 (7)	74.5 (408)	25.5 (140)	100.0 (548)
	영남권	21.8 (49)	58.7 (132)	18.7 (42)	0.9 (2)	80.4 (181)	19.6 (44)	100.0 (225)
	호남권	14.1 (11)	56.4 (44)	25.6 (20)	3.8 (3)	70.5 (55)	29.5 (23)	100.0 (78)
	충청권	14.1 (13)	55.4 (51)	27.2 (25)	3.3 (3)	69.6 (64)	30.4 (28)	100.0 (92)
	χ^2							

구분		① 전혀 대응하고 있지않다	② 별로 대응하고 있지않다	③ 어느정도 대응하고 있다	④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①+② 대응안함	③+④ 대응함	계 (명)
	기타권역	15.8 (9)	61.4 (35)	22.8 (13)	0.0 (0)	77.2 (44)	22.8 (13)	100.0 (57)
	χ^2	13.32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7.8 (16)	61.1 (55)	20.0 (18)	1.1 (1)	78.9 (71)	21.1 (19)	100.0 (90)
	대졸	18.7 (144)	57.2 (440)	22.8 (175)	1.3 (10)	75.9 (584)	24.1 (185)	100.0 (769)
	대학원 이상	18.4 (26)	50.4 (71)	28.4 (40)	2.8 (4)	68.8 (97)	31.2 (44)	100.0 (141)
	χ^2	5.436						
혼인상태	미혼	19.2 (90)	59.3 (278)	20.3 (95)	1.3 (6)	78.5 (368)	21.5 (101)	100.0 (469)
	기혼	17.8 (90)	54.0 (273)	26.5 (134)	1.8 (9)	71.7 (363)	28.3 (143)	100.0 (506)
	이혼/사별	24.0 (6)	60.0 (15)	16.0 (4)	0.0 (0)	84.0 (21)	16.0 (4)	100.0 (25)
	χ^2	7.356						
취업상태	취업	18.2 (153)	56.8 (477)	23.6 (198)	1.4 (12)	75.0 (630)	25.0 (210)	100.0 (840)
	비취업	20.6 (33)	55.6 (89)	21.9 (35)	1.9 (3)	76.3 (122)	23.8 (38)	100.0 (160)
	χ^2	0.79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7.3 (69)	52.6 (210)	28.3 (113)	1.8 (7)	69.9 (279)	30.1 (120)	100.0 (399)
	자녀 없음	19.5 (117)	59.2 (356)	20.0 (120)	1.3 (8)	78.7 (473)	21.3 (128)	100.0 (601)
	χ^2	9.92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9.8 (51)	61.9 (159)	17.1 (44)	1.2 (3)	81.7 (210)	18.3 (47)	100.0 (257)
	300~500만원	15.4 (51)	56.9 (189)	26.2 (87)	1.5 (5)	72.3 (240)	27.7 (92)	100.0 (332)
	500~700만원	23.9 (53)	52.3 (116)	23.0 (51)	0.9 (2)	76.1 (169)	23.9 (53)	100.0 (222)
	700만원 이상	16.4 (31)	54.0 (102)	27.0 (51)	2.6 (5)	70.4 (133)	29.6 (56)	100.0 (189)
	χ^2	17.035*						

* $p < .05$, *** $p < .001$.

저출생 극복 시책 효과를 위한 개선사항(1순위)으로 ‘저출생 관련 지원 강화’ 23.6%, ‘우리지역의 저출생 추진시책에 대해 모름’ 22.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지역의 저출생 추진시책에 대해 모름’이 26.7%, ‘저출생 관련 지원 강화’ 20.9%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기준 그룹에서 ‘저출생 관련 지원 강화’와 ‘우리지역의 저출생 추진시책에 대해 모름’을 1순위로 응답했지만, 충청권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이 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22.8%인 ‘우리지역의 저출생 추진시책에 대해 모름’이었다.

자녀 출생 요인 대책 1순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경제적 안정과 여유’ 57.1%, ‘임금이나 경력손실 없는 근로시간 유연화’ 17.8% 순으로 1순위라고 응답했다. 이혼/사별 그룹은 ‘정부로부터의 믿을 만하고 충분한 돌봄 지원’이 28.0%, ‘경제적 안정과 여유’, ‘임금이나 경력손실 없는 근로시간 유연화’ 모두 24.0% 순이었다.

〈표 III-2-8〉 저출생 극복 정책 효과를 위한 개선사항 (1순위)

구분		기초지자체 채장관심 제고	담당공무원 저출생 극복 정책 관련 전문성향상	기초지자체 단체 자체적으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추진 권한 강화	저출생 극복 정책 시행 전담조직	저출생 대응 기초지자체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중앙 부처와 협력 강화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의 일관성 유지	저출생 관련 지원 강화	저출생 극복 정책 관련 각종 조례 제·개정	우리지역의 저출생 추진정책에 대해 모름	기타	계 (명)
성별	전체	4.0 (40)	4.8 (48)	5.9 (59)	4.0 (40)	14.1 (141)	5.4 (54)	7.6 (76)	23.6 (236)	4.7 (47)	22.6 (226)	3.3 (33)	100.0 (1,000)
	여성	3.1 (16)	5.1 (26)	5.1 (26)	4.7 (24)	14.2 (73)	4.9 (25)	8.6 (44)	20.9 (107)	4.9 (25)	26.7 (137)	1.9 (10)	100.0 (513)
연령	남성	4.9 (24)	4.5 (22)	6.8 (33)	3.3 (16)	14.0 (68)	6.0 (29)	6.6 (32)	26.5 (129)	4.5 (22)	18.3 (89)	4.7 (23)	100.0 (487)
	25~29세	2.8 (5)	3.9 (7)	6.1 (11)	4.4 (8)	12.8 (23)	3.3 (6)	4.4 (8)	26.1 (47)	6.1 (11)	26.1 (47)	3.9 (7)	100.0 (180)
	30~34세	4.5 (10)	6.4 (14)	2.7 (6)	6.4 (14)	8.6 (19)	5.9 (13)	7.3 (16)	24.5 (54)	5.0 (11)	25.5 (56)	3.2 (7)	100.0 (220)
	35~39세	4.1 (11)	5.6 (15)	5.3 (14)	2.6 (7)	15.0 (40)	4.5 (12)	8.3 (22)	27.8 (74)	2.6 (7)	20.3 (54)	3.8 (10)	100.0 (266)
권역	40~45세	4.2 (14)	3.6 (12)	8.4 (28)	3.3 (11)	17.7 (59)	6.9 (23)	9.0 (30)	18.3 (61)	5.4 (18)	20.7 (69)	2.7 (9)	100.0 (334)
	수도권	3.5 (19)	5.1 (28)	5.1 (28)	3.3 (18)	14.4 (79)	6.0 (33)	7.3 (40)	21.7 (119)	5.1 (28)	24.6 (135)	3.8 (21)	100.0 (548)
	영남권	5.3 (12)	3.1 (7)	6.2 (14)	4.9 (11)	12.4 (28)	4.4 (10)	8.0 (18)	24.4 (55)	4.0 (9)	23.1 (52)	4.0 (9)	100.0 (225)
	호남권	5.1 (4)	9.0 (7)	9.0 (7)	5.1 (4)	9.0 (7)	3.8 (3)	6.4 (5)	35.9 (28)	3.8 (3)	11.5 (9)	1.3 (1)	100.0 (78)

단위: %, (명)

구분	기초지자 체감관심 제고	담당공무원 저출생 극복 시책 관련 전문성향상	기초자치 단체 자체적으로 저출생 극복 시책을 추진 권한 강화	저출생 극복 시책 전담조직	저출생 대응 기초지자체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중앙 부처와 협력 강화	저출생 극복 시책 추진의 일관성 유지	저출생 관련 자원 강화	저출생 극복 시책 관련 각종 조례 제·개정	우리지역의 저출생 추진시책에 대해 모름	기타	계 (명)	
	충청권	3.3 (3)	2.2 (2)	6.5 (6)	3.3 (3)	25.0 (23)	4.3 (4)	10.9 (10)	18.5 (17)	3.3 (3)	22.8 (21)	0.0 (0)	100.0 (92)
	기타권역	3.5 (2)	7.0 (4)	7.0 (4)	7.0 (4)	7.0 (4)	7.0 (4)	5.3 (3)	29.8 (17)	7.0 (4)	15.8 (9)	3.5 (2)	100.0 (57)
최종 협력	고졸 이하	2.2 (2)	4.4 (4)	3.3 (3)	10.0 (9)	13.3 (12)	4.4 (4)	7.8 (7)	25.6 (23)	3.3 (3)	23.3 (21)	2.2 (2)	100.0 (90)
	대졸	4.3 (33)	4.9 (38)	6.1 (47)	3.1 (24)	13.7 (105)	5.7 (44)	6.9 (53)	23.8 (183)	5.3 (41)	22.8 (175)	3.4 (26)	100.0 (769)
혼인 상태	대학원 이상	3.5 (5)	4.3 (6)	6.4 (9)	5.0 (7)	17.0 (24)	4.3 (6)	11.3 (16)	21.3 (30)	2.1 (3)	21.3 (30)	3.5 (5)	100.0 (141)
	미혼	3.8 (18)	5.3 (25)	5.3 (25)	4.7 (22)	13.0 (61)	5.8 (27)	7.2 (34)	17.7 (83)	4.9 (23)	28.1 (132)	4.1 (19)	100.0 (469)
이혼/사별	기혼	4.3 (22)	4.2 (21)	6.7 (34)	3.4 (17)	14.8 (75)	5.1 (26)	7.7 (39)	28.9 (146)	4.5 (23)	17.6 (89)	2.8 (14)	100.0 (506)
		0.0 (0)	8.0 (2)	0.0 (0)	4.0 (1)	20.0 (5)	4.0 (1)	12.0 (3)	28.0 (7)	4.0 (1)	20.0 (5)	0.0 (0)	100.0 (25)
취업 상태	취업	4.2 (35)	4.6 (39)	5.5 (46)	4.0 (34)	14.6 (123)	5.4 (45)	8.0 (67)	23.9 (201)	4.5 (38)	22.1 (186)	3.1 (26)	100.0 (840)
	비취업	3.1 (5)	5.6 (9)	8.1 (13)	3.8 (6)	11.3 (18)	5.6 (9)	5.6 (9)	21.9 (35)	5.6 (9)	25.0 (40)	4.4 (7)	100.0 (16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4.3 (17)	4.8 (19)	7.3 (29)	3.3 (13)	17.0 (68)	5.5 (22)	8.5 (34)	24.8 (99)	4.8 (19)	17.5 (70)	2.3 (9)	100.0 (399)
	자녀 없음	3.8 (23)	4.8 (29)	5.0 (30)	4.5 (27)	12.1 (73)	5.3 (32)	7.0 (42)	22.8 (137)	4.7 (28)	26.0 (156)	4.0 (24)	100.0 (601)

구분	기초지자 체감관심 제고	담당공무원 저출생 극복 시책 관련 전문성향상	기초자치 단체 자체적으로 저출생 극복 시책을 추진 권한 강화	저출생 극복 시책 전담조직	저출생 내용 기초지자체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중앙 부처와 협력 강화	저출생 극복 시책 추진의 일관성 유지	저출생 관련 자원 강화	저출생 극복 시책 관련 각종 조례 제·개정	우리지역의 저출생 추진시책에 대해 모름	기타	계 (명)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4.3 (11)	4.7 (12)	4.3 (11)	5.1 (13)	5.4 (14)	9.7 (25)	22.6 (58)	5.1 (13)	20.6 (53)	3.5 (9)	100.0 (257)
	300~500만원	3.0 (10)	4.2 (14)	5.7 (19)	4.5 (15)	4.8 (16)	6.9 (23)	25.0 (83)	4.2 (14)	25.3 (84)	3.0 (10)	100.0 (332)
	500~700만원	3.2 (7)	3.2 (7)	7.7 (17)	5.0 (11)	6.8 (15)	5.4 (12)	24.3 (54)	5.9 (13)	22.5 (50)	2.7 (6)	100.0 (222)
	700만원 이상	6.3 (12)	7.9 (15)	6.3 (12)	0.5 (1)	4.8 (9)	8.5 (16)	21.7 (41)	3.7 (7)	20.6 (39)	4.2 (8)	100.0 (189)

〈표 III-2-9〉 자녀 출생 요인 대책 (1순위)

구분		경제적 안정과 여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정부로부터의 믿을 만하고 충분한 돌봄 지원	시간·육비 부담 감소	임금이나 경력손실 없는 근로시간 유연화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 확대	기타	계 (명)
전체		57.1 (571)	4.2 (42)	7.7 (77)	6.5 (65)	17.8 (178)	4.8 (48)	1.9 (19)	100.0 (1,000)
성별	여성	48.9 (251)	5.5 (28)	9.2 (47)	6.8 (35)	24.8 (127)	2.5 (13)	2.3 (12)	100.0 (513)
	남성	65.7 (320)	2.9 (14)	6.2 (30)	6.2 (30)	10.5 (51)	7.2 (35)	1.4 (7)	100.0 (487)
연령	25~29세	56.1 (101)	4.4 (8)	7.2 (13)	6.1 (11)	20.6 (37)	2.2 (4)	3.3 (6)	100.0 (180)
	30~34세	63.2 (139)	5.9 (13)	2.7 (6)	5.5 (12)	17.3 (38)	3.2 (7)	2.3 (5)	100.0 (220)
	35~39세	58.6 (156)	2.3 (6)	7.1 (19)	5.3 (14)	19.5 (52)	4.9 (13)	2.3 (6)	100.0 (266)
	40~45세	52.4 (175)	4.5 (15)	11.7 (39)	8.4 (28)	15.3 (51)	7.2 (24)	0.6 (2)	100.0 (334)
권역	수도권	56.8 (311)	4.4 (24)	6.8 (37)	7.7 (42)	17.9 (98)	3.6 (20)	2.9 (16)	100.0 (548)
	영남권	58.7 (132)	4.4 (10)	6.2 (14)	5.8 (13)	16.0 (36)	8.0 (18)	0.9 (2)	100.0 (225)
	호남권	56.4 (44)	2.6 (2)	12.8 (10)	5.1 (4)	19.2 (15)	3.8 (3)	0.0 (0)	100.0 (78)
	충청권	51.1 (47)	5.4 (5)	10.9 (10)	4.3 (4)	23.9 (22)	3.3 (3)	1.1 (1)	100.0 (92)
	기타권역	64.9 (37)	1.8 (1)	10.5 (6)	3.5 (2)	12.3 (7)	7.0 (4)	0.0 (0)	100.0 (57)
최종학력	고졸 이하	57.8 (52)	10.0 (9)	5.6 (5)	3.3 (3)	10.0 (9)	8.9 (8)	4.4 (4)	100.0 (90)
	대졸	56.8 (437)	3.3 (25)	8.3 (64)	6.9 (53)	18.3 (141)	4.9 (38)	1.4 (11)	100.0 (769)
	대학원 이상	58.2 (82)	5.7 (8)	5.7 (8)	6.4 (9)	19.9 (28)	1.4 (2)	2.8 (4)	100.0 (141)
혼인상태	미혼	58.6 (275)	5.3 (25)	5.5 (26)	4.7 (22)	19.4 (91)	3.4 (16)	3.0 (14)	100.0 (469)
	기혼	57.3 (290)	3.2 (16)	8.7 (44)	7.9 (40)	16.0 (81)	5.9 (30)	1.0 (5)	100.0 (506)

단위: %, (명)

구분		경제적 안정과 여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정부로부터의 믿을 만하고 충분한 돌봄 지원	사회육비 부담 감소	임금이나 경력손실 없는 근로시간 유연화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 확대	기타	계 (명)
취업상태	이혼/사별	24.0 (6)	4.0 (1)	28.0 (7)	12.0 (3)	24.0 (6)	8.0 (2)	0.0 (0)	100.0 (25)
	취업	57.4 (482)	3.3 (28)	8.1 (68)	6.2 (52)	18.1 (152)	4.9 (41)	2.0 (17)	100.0 (840)
	비취업	55.6 (89)	8.8 (14)	5.6 (9)	8.1 (13)	16.3 (26)	4.4 (7)	1.3 (2)	100.0 (16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53.1 (212)	3.5 (14)	10.8 (43)	8.3 (33)	15.5 (62)	7.5 (30)	1.3 (5)	100.0 (399)
	자녀 없음	59.7 (359)	4.7 (28)	5.7 (34)	5.3 (32)	19.3 (116)	3.0 (18)	2.3 (14)	100.0 (60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8.8 (151)	3.9 (10)	5.4 (14)	9.3 (24)	16.7 (43)	3.9 (10)	1.9 (5)	100.0 (257)
	300~500만원	52.7 (175)	5.7 (19)	9.3 (31)	6.3 (21)	18.1 (60)	6.0 (20)	1.8 (6)	100.0 (332)
	500~700만원	64.9 (144)	1.8 (4)	8.6 (19)	2.7 (6)	17.1 (38)	4.5 (10)	0.5 (1)	100.0 (222)
	700만원 이상	53.4 (101)	4.8 (9)	6.9 (13)	7.4 (14)	19.6 (37)	4.2 (8)	3.7 (7)	100.0 (189)

청년 취업지원정책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함’이 87.7%로 12.3%인 ‘필요안함’보다 많았다. 전체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조금 필요하다’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력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비중이 고졸 이하 60.0%, 대학원 이상 43.3%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그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0〉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필요성_청년 취업지원정책

단위: %, (명)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①+② 필요안함	③+④ 필요함	계 (명)
전체		2.7 (27)	9.6 (96)	36.7 (367)	51.0 (510)	12.3 (123)	87.7 (877)	100.0 (1,000)
성별	여성	1.8 (9)	9.4 (48)	40.0 (205)	48.9 (251)	11.1 (57)	88.9 (456)	100.0 (513)
	남성	3.7 (18)	9.9 (48)	33.3 (162)	53.2 (259)	13.6 (66)	86.4 (421)	100.0 (487)
	χ^2	7.493						
연령	25~29세	1.7 (3)	7.8 (14)	35.0 (63)	55.6 (100)	9.4 (17)	90.6 (163)	100.0 (180)
	30~34세	2.7 (6)	5.9 (13)	37.3 (82)	54.1 (119)	8.6 (19)	91.4 (201)	100.0 (220)
	35~39세	3.0 (8)	12.0 (32)	34.2 (91)	50.8 (135)	15.0 (40)	85.0 (226)	100.0 (266)
	40~45세	3.0 (10)	11.1 (37)	39.2 (131)	46.7 (156)	14.1 (47)	85.9 (287)	100.0 (334)
	χ^2	10.597						
권역	수도권	2.9 (16)	10.8 (59)	38.5 (211)	47.8 (262)	13.7 (75)	86.3 (473)	100.0 (548)
	영남권	2.2 (5)	7.6 (17)	32.4 (73)	57.8 (130)	9.8 (22)	90.2 (203)	100.0 (225)
	호남권	3.8 (3)	9.0 (7)	33.3 (26)	53.8 (42)	12.8 (10)	87.2 (68)	100.0 (78)
	충청권	1.1 (1)	8.7 (8)	40.2 (37)	50.0 (46)	9.8 (9)	90.2 (83)	100.0 (92)
	기타권역	3.5 (2)	8.8 (5)	35.1 (20)	52.6 (30)	12.3 (7)	87.7 (50)	100.0 (57)
	χ^2	9.079						
최종학력	고졸 이하	3.3 (3)	5.6 (5)	31.1 (28)	60.0 (54)	8.9 (8)	91.1 (82)	100.0 (90)
	대졸	2.3 (18)	9.6 (74)	36.7 (282)	51.4 (395)	12.0 (92)	88.0 (677)	100.0 (769)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①+② 필요안함	③+④ 필요함	계 (명)
	대학원 이상	4.3 (6)	12.1 (17)	40.4 (57)	43.3 (61)	16.3 (23)	83.7 (118)	100.0 (141)
	χ^2	8.589						
혼인상태	미혼	2.1 (10)	6.0 (28)	38.0 (178)	53.9 (253)	8.1 (38)	91.9 (431)	100.0 (469)
	기혼	3.4 (17)	13.2 (67)	34.8 (176)	48.6 (246)	16.6 (84)	83.4 (422)	100.0 (506)
	이혼/사별	0.0 (0)	4.0 (1)	52.0 (13)	44.0 (11)	4.0 (1)	96.0 (24)	100.0 (25)
	χ^2	20.195**						
취업상태	취업	2.7 (23)	10.2 (86)	38.0 (319)	49.0 (412)	13.0 (109)	87.0 (731)	100.0 (840)
	비취업	2.5 (4)	6.3 (10)	30.0 (48)	61.3 (98)	8.8 (14)	91.3 (146)	100.0 (160)
	χ^2	8.5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5 (14)	13.8 (55)	35.3 (141)	47.4 (189)	17.3 (69)	82.7 (330)	100.0 (399)
	자녀 없음	2.2 (13)	6.8 (41)	37.6 (226)	53.4 (321)	9.0 (54)	91.0 (547)	100.0 (601)
	χ^2	15.77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3 (6)	5.8 (15)	38.1 (98)	53.7 (138)	8.2 (21)	91.8 (236)	100.0 (257)
	300~500만원	1.5 (5)	8.4 (28)	40.7 (135)	49.4 (164)	9.9 (33)	90.1 (299)	100.0 (332)
	500~700만원	3.6 (8)	13.1 (29)	29.7 (66)	53.6 (119)	16.7 (37)	83.3 (185)	100.0 (222)
	700만원 이상	4.2 (8)	12.7 (24)	36.0 (68)	47.1 (89)	16.9 (32)	83.1 (157)	100.0 (189)
	χ^2	19.046*						

* $p < .05$, ** $p < .01$.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함’이 87.2%로 ‘필요안함’ 12.8%보다 많았다. ‘매우 필요하다’가 56.1%, ‘조금 필요하다’가 31.1% 순으로 많았는데 특히, 여성은 ‘매우 필요하다’가 49.3%, ‘조금 필요하다’가 34.7% 순으로 많았고, 남성은 ‘매우 필요하다’가 63.2%, ‘조금 필요하다’가 27.3% 순으로 많았다. 혼인상태가 미혼인 응답자의 48.2%는 ‘매우 필요하다’, 기혼 응답자의 62.5% 역시 ‘매우 필요하다’로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출산장려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 61.2%는 ‘매우 필요하다’,

31.3%는 ‘조금 필요하다’로 응답하여 92.5%가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52.7%가 ‘매우 필요하다’로 응답하였고, 30.9%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00만원 이상의 경우 47.6%, 500~700만원 미만의 경우 63.5%, 300~500만원 미만의 경우 56.3%, 300만원 미만의 경우 55.6%가 출산장려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하여 해당 가구소득 구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Ⅲ-2-11〉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필요성_출산장려정책

단위: %, (명)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①+② 필요안함	③+④ 필요함	계 (명)
전체		3.1 (31)	9.7 (97)	31.1 (311)	56.1 (561)	12.8 (128)	87.2 (872)	100.0 (1,000)
성별	여성	3.7 (19)	12.3 (63)	34.7 (178)	49.3 (253)	16.0 (82)	84.0 (431)	100.0 (513)
	남성	2.5 (12)	7.0 (34)	27.3 (133)	63.2 (308)	9.4 (46)	90.6 (441)	100.0 (487)
	χ^2	21.493***						
연령	25~29세	5.6 (10)	14.4 (26)	31.1 (56)	48.9 (88)	20.0 (36)	80.0 (144)	100.0 (180)
	30~34세	3.2 (7)	11.8 (26)	29.1 (64)	55.9 (123)	15.0 (33)	85.0 (187)	100.0 (220)
	35~39세	3.4 (9)	7.1 (19)	32.0 (85)	57.5 (153)	10.5 (28)	89.5 (238)	100.0 (266)
	40~45세	1.5 (5)	7.8 (26)	31.7 (106)	59.0 (197)	9.3 (31)	90.7 (303)	100.0 (334)
	χ^2	17.246*						
권역	수도권	3.5 (19)	10.6 (58)	32.7 (179)	53.3 (292)	14.1 (77)	85.9 (471)	100.0 (548)
	영남권	2.7 (6)	8.4 (19)	27.1 (61)	61.8 (139)	11.1 (25)	88.9 (200)	100.0 (225)
	호남권	2.6 (2)	12.8 (10)	28.2 (22)	56.4 (44)	15.4 (12)	84.6 (66)	100.0 (78)
	충청권	2.2 (2)	5.4 (5)	31.5 (29)	60.9 (56)	7.6 (7)	92.4 (85)	100.0 (92)
	기타권역	3.5 (2)	8.8 (5)	35.1 (20)	52.6 (30)	12.3 (7)	87.7 (50)	100.0 (57)
	χ^2	8.751						
최종학력	고졸 이하	3.3 (3)	7.8 (7)	28.9 (26)	60.0 (54)	11.1 (10)	88.9 (80)	100.0 (90)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①+② 필요안함	③+④ 필요함	계 (명)
	대졸	3.1 (24)	9.8 (75)	31.5 (242)	55.7 (428)	12.9 (99)	87.1 (670)	100.0 (769)
	대학원 이상	2.8 (4)	10.6 (15)	30.5 (43)	56.0 (79)	13.5 (19)	86.5 (122)	100.0 (141)
	χ^2	0.984						
혼인상태	미혼	4.7 (22)	13.4 (63)	33.7 (158)	48.2 (226)	18.1 (85)	81.9 (384)	100.0 (469)
	기혼	1.8 (9)	6.3 (32)	29.4 (149)	62.5 (316)	8.1 (41)	91.9 (465)	100.0 (506)
	이혼/사별	0.0 (0)	8.0 (2)	16.0 (4)	76.0 (19)	8.0 (2)	92.0 (23)	100.0 (25)
	χ^2	34.135***						
취업상태	취업	3.2 (27)	10.5 (88)	31.0 (260)	55.4 (465)	13.7 (115)	86.3 (725)	100.0 (840)
	비취업	2.5 (4)	5.6 (9)	31.9 (51)	60.0 (96)	8.1 (13)	91.9 (147)	100.0 (160)
	χ^2	4.03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5 (6)	6.0 (24)	31.3 (125)	61.2 (244)	7.5 (30)	92.5 (369)	100.0 (399)
	자녀 없음	4.2 (25)	12.1 (73)	30.9 (186)	52.7 (317)	16.3 (98)	83.7 (503)	0.0 (601)
	χ^2	17.78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7 (7)	11.7 (30)	30.0 (77)	55.6 (143)	14.4 (37)	85.6 (220)	100.0 (257)
	300~500만원	3.0 (10)	7.2 (24)	33.4 (111)	56.3 (187)	10.2 (34)	89.8 (298)	100.0 (332)
	500~700만원	1.8 (4)	7.2 (16)	27.5 (61)	63.5 (141)	9.0 (20)	91.0 (202)	100.0 (222)
	700만원 이상	5.3 (10)	14.3 (27)	32.8 (62)	47.6 (90)	19.6 (37)	80.4 (152)	100.0 (189)
	χ^2	19.313*						

* $p < .05$, *** $p < .001$.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함’이 94.7%로 ‘필요 안함’ 5.3%에 비해 많았다. ‘매우 필요하다’가 72.0%, ‘조금 필요하다’가 22.7% 순으로 많았다. 모든 그룹에서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순으로 많았다.

〈표 Ⅲ-2-12〉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필요성_일가정양립정책

단위: %, (명)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①+② 필요안함	③+④ 필요함	계 (명)
전체		1.4 (14)	3.9 (39)	22.7 (227)	72.0 (720)	5.3 (53)	94.7 (947)	100.0 (1,000)
성별	여성	0.8 (4)	2.9 (15)	20.7 (106)	75.6 (388)	3.7 (19)	96.3 (494)	100.0 (513)
	남성	2.1 (10)	4.9 (24)	24.8 (121)	68.2 (332)	7.0 (34)	93.0 (453)	100.0 (487)
	χ^2	9.325*						
연령	25~29세	2.2 (4)	2.8 (5)	24.4 (44)	70.6 (127)	5.0 (9)	95.0 (171)	100.0 (180)
	30~34세	1.4 (3)	2.3 (5)	22.7 (50)	73.6 (162)	3.6 (8)	96.4 (212)	100.0 (220)
	35~39세	1.9 (5)	4.1 (11)	18.4 (49)	75.6 (201)	6.0 (16)	94.0 (250)	100.0 (266)
	40~45세	0.6 (2)	5.4 (18)	25.1 (84)	68.9 (230)	6.0 (20)	94.0 (314)	100.0 (334)
	χ^2	11.182						
권역	수도권	1.5 (8)	4.2 (23)	21.2 (116)	73.2 (401)	5.7 (31)	94.3 (517)	100.0 (548)
	영남권	1.3 (3)	4.4 (10)	22.2 (50)	72.0 (162)	5.8 (13)	94.2 (212)	100.0 (225)
	호남권	1.3 (1)	5.1 (4)	23.1 (18)	70.5 (55)	6.4 (5)	93.6 (73)	100.0 (78)
	충청권	2.2 (2)	2.2 (2)	25.0 (23)	70.7 (65)	4.3 (4)	95.7 (88)	100.0 (92)
	기타권역	0.0 (0)	0.0 (0)	35.1 (20)	64.9 (37)	0.0 (0)	100.0 (57)	100.0 (57)
	χ^2	9.95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 (2)	7.8 (7)	18.9 (17)	71.1 (64)	10.0 (9)	90.0 (81)	100.0 (90)
	대졸	1.3 (10)	3.9 (30)	23.3 (179)	71.5 (550)	5.2 (40)	94.8 (729)	100.0 (769)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①+② 필요안함	③+④ 필요함	계 (명)
	대학원 이상	1.4 (2)	1.4 (2)	22.0 (31)	75.2 (106)	2.8 (4)	97.2 (137)	100.0 (141)
	χ^2	7.138						
혼인상태	미혼	1.9 (9)	4.3 (20)	24.3 (114)	69.5 (326)	6.2 (29)	93.8 (440)	100.0 (469)
	기혼	1.0 (5)	3.8 (19)	21.1 (107)	74.1 (375)	4.7 (24)	95.3 (482)	100.0 (506)
	이혼/사별	0.0 (0)	0.0 (0)	24.0 (6)	76.0 (19)	0.0 (0)	100.0 (25)	100.0 (25)
	χ^2	4.890						
취업상태	취업	1.5 (13)	3.6 (30)	23.6 (198)	71.3 (599)	5.1 (43)	94.9 (797)	100.0 (840)
	비취업	0.6 (1)	5.6 (9)	18.1 (29)	75.6 (121)	6.3 (10)	93.8 (150)	100.0 (160)
	χ^2	4.37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0.8 (3)	4.3 (17)	21.6 (86)	73.4 (293)	5.0 (20)	95.0 (379)	100.0 (399)
	자녀 없음	1.8 (11)	3.7 (22)	23.5 (141)	71.0 (427)	5.5 (33)	94.5 (568)	100.0 (601)
	χ^2	2.78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6 (4)	4.7 (12)	18.7 (48)	75.1 (193)	6.2 (16)	93.8 (241)	100.0 (257)
	300~500만원	2.4 (8)	4.2 (14)	26.8 (89)	66.6 (221)	6.6 (22)	93.4 (310)	100.0 (332)
	500~700만원	0.5 (1)	1.8 (4)	18.5 (41)	79.3 (176)	2.3 (5)	97.7 (217)	100.0 (222)
	700만원 이상	0.5 (1)	4.8 (9)	25.9 (49)	68.8 (130)	5.3 (10)	94.7 (179)	100.0 (189)
	χ^2	18.784*						

* $p < .05$.

아동돌봄정책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함’이 95.0%로 ‘필요 안함’ 5.0%에 비해 많았다. 전반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미혼, 기혼, 이혼/사별 그룹에서 ‘매우 필요하다’가 각각 63.5%, 73.7%, 8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금 필요하다’가 각각 31.3%, 21.5%, 12.0%로 많았다.

〈표 Ⅲ-2-13〉 저출생고령사회 대책 필요성_아동돌봄정책

단위: %, (명)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①+② 필요안함	③+④ 필요함	계 (명)
전체		1.7 (17)	3.3 (33)	25.9 (259)	69.1 (691)	5.0 (50)	95.0 (950)	100.0 (1,000)
성별	여성	1.6 (8)	4.1 (21)	24.0 (123)	70.4 (361)	5.7 (29)	94.3 (484)	100.0 (513)
	남성	1.8 (9)	2.5 (12)	27.9 (136)	67.8 (330)	4.3 (21)	95.7 (466)	100.0 (487)
	χ^2	3.883						
연령	25~29세	2.8 (5)	2.2 (4)	29.4 (53)	65.6 (118)	5.0 (9)	95.0 (171)	100.0 (180)
	30~34세	0.9 (2)	3.6 (8)	25.9 (57)	69.5 (153)	4.5 (10)	95.5 (210)	100.0 (220)
	35~39세	2.3 (6)	2.3 (6)	20.7 (55)	74.8 (199)	4.5 (12)	95.5 (254)	100.0 (266)
	40~45세	1.2 (4)	4.5 (15)	28.1 (94)	66.2 (221)	5.7 (19)	94.3 (315)	100.0 (334)
	χ^2	12.372						
권역	수도권	1.8 (10)	4.2 (23)	25.9 (142)	68.1 (373)	6.0 (33)	94.0 (515)	100.0 (548)
	영남권	2.2 (5)	2.2 (5)	25.8 (58)	69.8 (157)	4.4 (10)	95.6 (215)	100.0 (225)
	호남권	1.3 (1)	2.6 (2)	28.2 (22)	67.9 (53)	3.8 (3)	96.2 (75)	100.0 (78)
	충청권	1.1 (1)	2.2 (2)	22.8 (21)	73.9 (68)	3.3 (3)	96.7 (89)	100.0 (92)
	기타권역	0.0 (0)	1.8 (1)	28.1 (16)	70.2 (40)	1.8 (1)	98.2 (56)	100.0 (57)
	χ^2	5.72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 (2)	4.4 (4)	31.1 (28)	62.2 (56)	6.7 (6)	93.3 (84)	100.0 (90)
	대졸	1.8 (14)	3.0 (23)	26.7 (205)	68.5 (527)	4.8 (37)	95.2 (732)	100.0 (769)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①+② 필요안함	③+④ 필요함	계 (명)
	대학원 이상	0.7 (1)	4.3 (6)	18.4 (26)	76.6 (108)	5.0 (7)	95.0 (134)	100.0 (141)
	χ^2	7.937						
혼인상태	미혼	2.3 (11)	2.8 (13)	31.3 (147)	63.5 (298)	5.1 (24)	94.9 (445)	100.0 (469)
	기혼	1.2 (6)	3.6 (18)	21.5 (109)	73.7 (373)	4.7 (24)	95.3 (482)	100.0 (506)
	이혼/사별	0.0 (0)	8.0 (2)	12.0 (3)	80.0 (20)	8.0 (2)	92.0 (23)	100.0 (25)
	χ^2	19.563**						
취업상태	취업	1.8 (15)	3.5 (29)	26.2 (220)	68.6 (576)	5.2 (44)	94.8 (796)	100.0 (840)
	비취업	1.3 (2)	2.5 (4)	24.4 (39)	71.9 (115)	3.8 (6)	96.3 (154)	100.0 (160)
	χ^2	0.98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0.8 (3)	4.0 (16)	22.6 (90)	72.7 (290)	4.8 (19)	95.2 (380)	100.0 (399)
	자녀 없음	2.3 (14)	2.8 (17)	28.1 (169)	66.7 (401)	5.2 (31)	94.8 (570)	100.0 (601)
	χ^2	8.62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9 (5)	2.7 (7)	24.5 (63)	70.8 (182)	4.7 (12)	95.3 (245)	100.0 (257)
	300~500만원	2.4 (8)	3.9 (13)	29.5 (98)	64.2 (213)	6.3 (21)	93.7 (311)	100.0 (332)
	500~700만원	0.9 (2)	2.7 (6)	17.1 (38)	79.3 (176)	3.6 (8)	96.4 (214)	100.0 (222)
	700만원 이상	1.1 (2)	3.7 (7)	31.7 (60)	63.5 (120)	4.8 (9)	95.2 (180)	100.0 (189)
	χ^2	19.787*						

* $p < .05$, ** $p < .01$.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부 단위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중앙정부’ 38.8%, ‘기초자치단체(시군구)’ 35.1%,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및 도)’ 26.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대부분 전체의 비중과 같은 비중 순위로 응답한 것과 다르게, 여성 그룹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41.1%, ‘중앙정부’ 38.8%,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도)’ 27.3% 순으로 많았다.

〈표 Ⅲ-2-14〉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부 단위

단위: %, (명)

구분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특·광역시 및 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계 (명)	
전체		38.8	(388)	26.1	(261)	35.1	(351)	100.0	(1,000)
성별	여성	31.6	(162)	27.3	(140)	41.1	(211)	100.0	(513)
	남성	46.4	(226)	24.8	(121)	28.7	(140)	100.0	(487)
	χ^2	25.643***							
연령	25~29세	36.7	(66)	31.7	(57)	31.7	(57)	100.0	(180)
	30~34세	42.3	(93)	25.5	(56)	32.3	(71)	100.0	(220)
	35~39세	37.6	(100)	27.4	(73)	35.0	(93)	100.0	(266)
	40~45세	38.6	(129)	22.5	(75)	38.9	(130)	100.0	(334)
	χ^2	7.551							
권역	수도권	39.8	(218)	25.4	(139)	34.9	(191)	100.0	(548)
	영남권	41.8	(94)	25.8	(58)	32.4	(73)	100.0	(225)
	호남권	29.5	(23)	35.9	(28)	34.6	(27)	100.0	(78)
	충청권	44.6	(41)	22.8	(21)	32.6	(30)	100.0	(92)
	기타권역	21.1	(12)	26.3	(15)	52.6	(30)	100.0	(57)
	χ^2	16.799*							
최종학력	고졸 이하	40.0	(36)	28.9	(26)	31.1	(28)	100.0	(90)
	대졸	38.5	(296)	25.5	(196)	36.0	(277)	100.0	(769)
	대학원 이상	39.7	(56)	27.7	(39)	32.6	(46)	100.0	(141)
	χ^2	1.433							
혼인상태	미혼	39.9	(187)	28.8	(135)	31.3	(147)	100.0	(469)
	기혼	37.5	(190)	24.3	(123)	38.1	(193)	100.0	(506)
	이혼/사별	44.0	(11)	12.0	(3)	44.0	(11)	100.0	(25)
	χ^2	8.123							
취업상태	취업	38.3	(322)	26.7	(224)	35.0	(294)	100.0	(840)
	비취업	41.3	(66)	23.1	(37)	35.6	(57)	100.0	(160)
	χ^2	0.956							
자녀유무	자녀 있음	38.3	(153)	23.3	(93)	38.3	(153)	100.0	(399)
	자녀 없음	39.1	(235)	28.0	(168)	32.9	(198)	100.0	(601)
	χ^2	4.01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8.1	(98)	24.9	(64)	37.0	(95)	100.0	(257)
	300~500만원	36.7	(122)	27.4	(91)	35.8	(119)	100.0	(332)
	500~700만원	38.3	(85)	26.6	(59)	35.1	(78)	100.0	(222)
	700만원 이상	43.9	(83)	24.9	(47)	31.2	(59)	100.0	(189)
	χ^2	3.287							

* $p < .05$, *** $p < .001$.

거주 기초지자체의 육아친화환경 조성 대응 평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대응안함’이 78.1%로 ‘대응함’ 21.9%보다 많았다. ‘별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56.5%,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 21.6% 순으로 많았다.

남성의 경우에 ‘별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52.4%,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 28.3% 순으로 많아 전체 응답 순위와 같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별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가 60.4%로 가장 높았고, ‘어느정도 대응하고 있다’ 22.8%가 차지했다.

〈표 III-2-15〉 거주 기초지자체의 육아친화환경 조성 대응 평가

단위: %, (명)

구분		① 전혀 대응하고 있지않다	② 별로 대응하고 있지않다	③ 어느정도 대응하고 있다	④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①+② 대응안함	③+④ 대응함	계 (명)
전체		21.6 (216)	56.5 (565)	20.9 (209)	1.0 (10)	78.1 (781)	21.9 (219)	100.0 (1,000)
성별	여성	15.2 (78)	60.4 (310)	22.8 (117)	1.6 (8)	75.6 (388)	24.4 (125)	100.0 (513)
	남성	28.3 (138)	52.4 (255)	18.9 (92)	0.4 (2)	80.7 (393)	19.3 (94)	100.0 (487)
	χ^2	27.954***						
연령	25~29세	26.1 (47)	53.9 (97)	18.3 (33)	1.7 (3)	80.0 (144)	20.0 (36)	100.0 (180)
	30~34세	20.9 (46)	58.6 (129)	19.5 (43)	0.9 (2)	79.5 (175)	20.5 (45)	100.0 (220)
	35~39세	24.8 (66)	55.3 (147)	19.2 (51)	0.8 (2)	80.1 (213)	19.9 (53)	100.0 (266)
	40~45세	17.1 (57)	57.5 (192)	24.6 (82)	0.9 (3)	74.6 (249)	25.4 (85)	100.0 (334)
	χ^2	11.005						
권역	수도권	20.3 (111)	56.0 (307)	22.6 (124)	1.1 (6)	76.3 (418)	23.7 (130)	100.0 (548)
	영남권	25.8 (58)	56.9 (128)	16.9 (38)	0.4 (1)	82.7 (186)	17.3 (39)	100.0 (225)
	호남권	19.2 (15)	55.1 (43)	23.1 (18)	2.6 (2)	74.4 (58)	25.6 (20)	100.0 (78)
	충청권	21.7 (20)	58.7 (54)	18.5 (17)	1.1 (1)	80.4 (74)	19.6 (18)	100.0 (92)
	기타권역	21.1 (12)	57.9 (33)	21.1 (12)	0.0 (0)	78.9 (45)	21.1 (12)	100.0 (57)
	χ^2	8.820						
최종학력	고졸 이하	30.0 (27)	51.1 (46)	16.7 (15)	2.2 (2)	81.1 (73)	18.9 (17)	100.0 (90)

구분		① 전혀 대응하고 있지않다	② 별로 대응하고 있지않다	③ 어느정도 대응하고 있다	④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①+② 대응안함	③+④ 대응함	계 (명)
	대졸	20.8 (160)	58.3 (448)	20.3 (156)	0.7 (5)	79.1 (608)	20.9 (161)	100.0 (769)
	대학원 이상	20.6 (29)	50.4 (71)	27.0 (38)	2.1 (3)	70.9 (100)	29.1 (41)	100.0 (141)
	χ^2	12.518						
혼인상태	미혼	20.5 (96)	58.0 (272)	20.5 (96)	1.1 (5)	78.5 (368)	21.5 (101)	100.0 (469)
	기혼	22.5 (114)	54.7 (277)	21.7 (110)	1.0 (5)	77.3 (391)	22.7 (115)	100.0 (506)
	이혼/사별	24.0 (6)	64.0 (16)	12.0 (3)	0.0 (0)	88.0 (22)	12.0 (3)	100.0 (25)
	χ^2	2.689						
취업상태	취업	21.4 (180)	56.2 (472)	21.7 (182)	0.7 (6)	77.6 (652)	22.4 (188)	100.0 (840)
	비취업	22.5 (36)	58.1 (93)	16.9 (27)	2.5 (4)	80.6 (129)	19.4 (31)	100.0 (160)
	χ^2	5.92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2.6 (90)	54.4 (217)	22.1 (88)	1.0 (4)	76.9 (307)	23.1 (92)	100.0 (399)
	자녀 없음	21.0 (126)	57.9 (348)	20.1 (121)	1.0 (6)	78.9 (474)	21.1 (127)	100.0 (601)
	χ^2	1.23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2.6 (58)	57.2 (147)	19.5 (50)	0.8 (2)	79.8 (205)	20.2 (52)	100.0 (257)
	300~500만원	19.9 (66)	54.5 (181)	24.4 (81)	1.2 (4)	74.4 (247)	25.6 (85)	100.0 (332)
	500~700만원	22.5 (50)	60.4 (134)	17.1 (38)	0.0 (0)	82.9 (184)	17.1 (38)	100.0 (222)
	700만원 이상	22.2 (42)	54.5 (103)	21.2 (40)	2.1 (4)	76.7 (145)	23.3 (44)	100.0 (189)
	χ^2	10.228						

*** $p < .001$.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조사해 본 결과,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49.3%, ‘육아를 위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 12.2% 순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 순위를 전반적으로 유지하나 호남권과 충청권에 서는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응답 비중이 각각 48.7%,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각각 15.4%, 14.1%로 많았다.

〈표 III-2-16〉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우선적으로 고려될 요소

구분		육아에 대한 철학과 가치 실현	육아를 위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	보육(교육)· 돌봄 서비스 인프라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마트 등)	계 (명)
전체		6.5 (65)	12.2 (122)	49.3 (493)	2.8 (28)	2.5 (25)	8.0 (80)	2.8 (28)	9.1 (91)	3.7 (37)	3.1 (31)	100.0 (1,000)
성별	여성	6.0 (31)	12.5 (64)	51.9 (266)	2.5 (13)	2.5 (13)	6.4 (33)	2.9 (15)	9.7 (50)	3.3 (17)	2.1 (11)	100.0 (513)
	남성	7.0 (34)	11.9 (58)	46.6 (227)	3.1 (15)	2.5 (12)	9.7 (47)	2.7 (13)	8.4 (41)	4.1 (20)	4.1 (20)	100.0 (487)
χ^2							9.371					
연령	25~29세	6.1 (11)	14.4 (26)	46.7 (84)	3.9 (7)	1.1 (2)	7.8 (14)	1.1 (2)	10.6 (19)	6.7 (12)	1.7 (3)	100.0 (180)
	30~34세	6.8 (15)	10.9 (24)	49.1 (108)	3.6 (8)	4.1 (9)	5.9 (13)	1.8 (4)	10.0 (22)	3.2 (7)	4.5 (10)	100.0 (220)
	35~39세	6.0 (16)	11.3 (30)	49.6 (132)	2.6 (7)	2.6 (7)	9.4 (25)	4.9 (13)	7.1 (19)	4.1 (11)	2.3 (6)	100.0 (266)
	40~45세	6.9 (23)	12.6 (42)	50.6 (169)	1.8 (6)	2.1 (7)	8.4 (28)	2.7 (9)	9.3 (31)	2.1 (7)	3.6 (12)	100.0 (334)
χ^2							29.149					
권역	수도권	6.6 (36)	13.0 (71)	48.7 (267)	3.6 (20)	1.3 (7)	5.1 (28)	2.9 (16)	10.6 (58)	5.1 (28)	3.1 (17)	100.0 (548)
	영남권	7.1 (16)	12.0 (27)	48.0 (108)	1.8 (4)	5.3 (12)	9.3 (21)	1.8 (4)	7.6 (17)	2.7 (6)	4.4 (10)	100.0 (225)
	호남권	6.4 (5)	10.3 (8)	48.7 (38)	1.3 (1)	2.6 (2)	15.4 (12)	3.8 (3)	7.7 (6)	1.3 (1)	2.6 (2)	100.0 (78)
	충청권	4.3 (4)	8.7 (8)	50.0 (46)	3.3 (3)	3.3 (3)	14.1 (13)	3.3 (3)	10.9 (10)	1.1 (1)	1.1 (1)	100.0 (92)

단위: %, (명)

구분	육아에 대한 철학과 가치 실현	육아를 위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	보육(교육)· 돌봄 서비스 인프라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마트 등)	계 (영)
기타권역	7.0 (4)	14.0 (8)	59.6 (34)	0.0 (0)	1.8 (1)	10.5 (6)	3.5 (2)	0.0 (0)	1.8 (1)	1.8 (1)	100.0 (57)
χ^2 54.448*											
최종 학력	고졸 이하	6.7 (6)	17.8 (16)	36.7 (33)	4.4 (4)	2.2 (2)	10.0 (9)	3.3 (3)	4.4 (4)	4.4 (4)	100.0 (90)
	대졸	5.9 (45)	11.1 (85)	51.0 (392)	3.0 (23)	2.3 (18)	8.2 (63)	2.9 (22)	3.8 (29)	2.9 (22)	100.0 (769)
	대학원 이상	9.9 (14)	14.9 (21)	48.2 (68)	0.7 (1)	3.5 (5)	5.7 (8)	2.1 (3)	2.8 (4)	3.5 (5)	100.0 (141)
	χ^2 17.381										
혼인 상태	미혼	6.4 (30)	13.2 (62)	46.5 (218)	3.6 (17)	2.1 (10)	6.0 (28)	2.3 (11)	5.8 (27)	3.4 (16)	100.0 (469)
	기혼	6.5 (33)	11.3 (57)	51.6 (261)	2.2 (11)	3.0 (15)	9.5 (48)	3.4 (17)	1.8 (9)	3.0 (15)	100.0 (506)
	이혼/사별	8.0 (2)	12.0 (3)	56.0 (14)	0.0 (0)	0.0 (0)	16.0 (4)	0.0 (0)	4.0 (1)	0.0 (0)	100.0 (25)
	χ^2 27.796										
취업 상태	취업	6.2 (52)	12.1 (102)	50.0 (420)	3.0 (25)	2.3 (19)	7.9 (66)	2.7 (23)	3.5 (29)	3.1 (26)	100.0 (840)
	비취업	8.1 (13)	12.5 (20)	45.6 (73)	1.9 (3)	3.8 (6)	8.8 (14)	3.1 (5)	5.0 (8)	3.1 (5)	100.0 (160)
자녀 유무	χ^2 4.357										
	자녀 있음	7.0 (28)	11.3 (45)	51.4 (205)	2.3 (9)	3.3 (13)	9.0 (36)	2.8 (11)	1.0 (4)	3.5 (14)	100.0 (399)
	자녀 없음	6.2 (37)	12.8 (77)	47.9 (288)	3.2 (19)	2.0 (12)	7.3 (44)	2.8 (17)	5.5 (33)	2.8 (17)	100.0 (601)

구분	육아에 대한 철학과 가치 실현	육아를 위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	보육(교육)· 돌봄 서비스 인프라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마트 등)	계 (명)	
χ^2	18.077*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7.8 (20)	11.3 (29)	47.1 (121)	2.3 (6)	1.2 (3)	7.0 (18)	2.3 (6)	10.1 (26)	8.2 (21)	2.7 (7)	100.0 (257)
	300~500만원	4.5 (15)	13.3 (44)	46.1 (153)	3.9 (13)	3.3 (11)	12.0 (40)	3.0 (10)	9.0 (30)	1.5 (5)	3.3 (11)	100.0 (332)
	500~700만원	7.2 (16)	13.1 (29)	55.0 (122)	2.3 (5)	2.3 (5)	5.4 (12)	2.3 (5)	7.2 (16)	2.3 (5)	3.2 (7)	100.0 (222)
	700만원 이상	7.4 (14)	10.6 (20)	51.3 (97)	2.1 (4)	3.2 (6)	5.3 (10)	3.7 (7)	10.1 (19)	3.2 (6)	3.2 (6)	100.0 (189)
χ^2	44.861*											

* $p < .05$.

초중고 교육환경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만족'이 64.4%로 '불만족' 35.6%보다 많았다. '다소 만족' 54.8%, '다소 불만족' 29.7% 순으로 많았다.

자녀가 있는 그룹은 '다소 만족' 47.6%, '다소 불만족' 37.6% 순으로 많았고, 자녀가 없는 그룹은 '다소 만족' 59.6%, '다소 불만족' 24.5% 순으로 많았다.

〈표 Ⅲ-2-17〉 거주지역 평가_초중고 교육환경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5.9 (59)	29.7 (297)	54.8 (548)	9.6 (96)	35.6 (356)	64.4 (644)	100.0 (1,000)
성별	여성	4.3 (22)	30.0 (154)	57.3 (294)	8.4 (43)	34.3 (176)	65.7 (337)	100.0 (513)
	남성	7.6 (37)	29.4 (143)	52.2 (254)	10.9 (53)	37.0 (180)	63.0 (307)	100.0 (487)
	χ^2	7.511						
연령	25~29세	5.6 (10)	25.6 (46)	60.0 (108)	8.9 (16)	31.1 (56)	68.9 (124)	100.0 (180)
	30~34세	4.5 (10)	29.1 (64)	57.7 (127)	8.6 (19)	33.6 (74)	66.4 (146)	100.0 (220)
	35~39세	7.5 (20)	27.8 (74)	55.6 (148)	9.0 (24)	35.3 (94)	64.7 (172)	100.0 (266)
	40~45세	5.7 (19)	33.8 (113)	49.4 (165)	11.1 (37)	39.5 (132)	60.5 (202)	100.0 (334)
	χ^2	9.435						
권역	수도권	6.2 (34)	26.1 (143)	55.3 (303)	12.4 (68)	32.3 (177)	67.7 (371)	100.0 (548)
	영남권	6.7 (15)	33.3 (75)	53.8 (121)	6.2 (14)	40.0 (90)	60.0 (135)	100.0 (225)
	호남권	7.7 (6)	32.1 (25)	52.6 (41)	7.7 (6)	39.7 (31)	60.3 (47)	100.0 (78)
	충청권	1.1 (1)	35.9 (33)	58.7 (54)	4.3 (4)	37.0 (34)	63.0 (58)	100.0 (92)
	기타권역	5.3 (3)	36.8 (21)	50.9 (29)	7.0 (4)	42.1 (24)	57.9 (33)	100.0 (57)
	χ^2	21.154*						
최종학력	고졸 이하	3.3 (3)	31.1 (28)	55.6 (50)	10.0 (9)	34.4 (31)	65.6 (59)	100.0 (90)
	대졸	6.2 (48)	28.7 (221)	56.4 (434)	8.6 (66)	35.0 (269)	65.0 (500)	100.0 (769)
	대학원 이상	5.7 (8)	34.0 (48)	45.4 (64)	14.9 (21)	39.7 (56)	60.3 (85)	100.0 (141)
	χ^2	9.988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혼인상태	미혼	5.5 (26)	25.8 (121)	58.4 (274)	10.2 (48)	31.3 (147)	68.7 (322)	100.0 (469)
	기혼	6.3 (32)	33.0 (167)	51.4 (260)	9.3 (47)	39.3 (199)	60.7 (307)	100.0 (506)
	이혼/사별	4.0 (1)	36.0 (9)	56.0 (14)	4.0 (1)	40.0 (10)	60.0 (15)	100.0 (25)
	χ^2	8.276						
취업상태	취업	5.6 (47)	30.4 (255)	54.6 (459)	9.4 (79)	36.0 (302)	64.0 (538)	100.0 (840)
	비취업	7.5 (12)	26.3 (42)	55.6 (89)	10.6 (17)	33.8 (54)	66.3 (106)	100.0 (160)
	χ^2	1.82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8 (27)	37.6 (150)	47.6 (190)	8.0 (32)	44.4 (177)	55.6 (222)	100.0 (399)
	자녀 없음	5.3 (32)	24.5 (147)	59.6 (358)	10.6 (64)	29.8 (179)	70.2 (422)	100.0 (601)
	χ^2	22.74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8 (15)	29.6 (76)	56.8 (146)	7.8 (20)	35.4 (91)	64.6 (166)	100.0 (257)
	300~500만원	3.9 (13)	32.2 (107)	54.5 (181)	9.3 (31)	36.1 (120)	63.9 (212)	100.0 (332)
	500~700만원	6.8 (15)	26.1 (58)	57.2 (127)	9.9 (22)	32.9 (73)	67.1 (149)	100.0 (222)
	700만원 이상	8.5 (16)	29.6 (56)	49.7 (94)	12.2 (23)	38.1 (72)	61.9 (117)	100.0 (189)
	χ^2	9.818						

* $p < .05$, *** $p < .001$.

영유아 자녀돌봄 및 양육환경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불만족’ 이 59.3%로 40.7%인 ‘만족’ 응답보다 많았다. ‘다소 불만족’ 49.8%, ‘다소 만족’ 37.8% 순으로 많았다.

〈표 III-2-18〉 거주지역 평가_영유아 자녀돌봄 및 양육환경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9.5 (95)	49.8 (498)	37.8 (378)	2.9 (29)	59.3 (593)	40.7 (407)	100.0 (1,000)
성별	여성	8.2	47.6	40.9	3.3	55.8	44.2	100.0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남성	(42) 10.9 (53)	(244) 52.2 (254)	(210) 34.5 (168)	(17) 2.5 (12)	(286) 63.0 (307)	(227) 37.0 (180)	(513) 100.0 (487)
	χ^2	6.332						
연령	25~29세	10.6 (19)	52.8 (95)	32.8 (59)	3.9 (7)	63.3 (114)	36.7 (66)	100.0 (180)
	30~34세	10.5 (23)	51.8 (114)	36.4 (80)	1.4 (3)	62.3 (137)	37.7 (83)	100.0 (220)
	35~39세	10.5 (28)	47.7 (127)	38.0 (101)	3.8 (10)	58.3 (155)	41.7 (111)	100.0 (266)
	40~45세	7.5 (25)	48.5 (162)	41.3 (138)	2.7 (9)	56.0 (187)	44.0 (147)	100.0 (334)
	χ^2	8.523						
권역	수도권	8.0 (44)	48.9 (268)	38.5 (211)	4.6 (25)	56.9 (312)	43.1 (236)	100.0 (548)
	영남권	12.4 (28)	51.1 (115)	36.4 (82)	0.0 (0)	63.6 (143)	36.4 (82)	100.0 (225)
	호남권	17.9 (14)	43.6 (34)	35.9 (28)	2.6 (2)	61.5 (48)	38.5 (30)	100.0 (78)
	충청권	6.5 (6)	48.9 (45)	42.4 (39)	2.2 (2)	55.4 (51)	44.6 (41)	100.0 (92)
	기타권역	5.3 (3)	63.2 (36)	31.6 (18)	0.0 (0)	68.4 (39)	31.6 (18)	100.0 (57)
	χ^2	28.873**						
최종학력	고졸 이하	6.7 (6)	57.8 (52)	33.3 (30)	2.2 (2)	64.4 (58)	35.6 (32)	100.0 (90)
	대졸	10.0 (77)	49.4 (380)	37.7 (290)	2.9 (22)	59.4 (457)	40.6 (312)	100.0 (769)
	대학원 이상	8.5 (12)	46.8 (66)	41.1 (58)	3.5 (5)	55.3 (78)	44.7 (63)	100.0 (141)
	χ^2	3.786						
혼인상태	미혼	8.3 (39)	52.0 (244)	36.5 (171)	3.2 (15)	60.3 (283)	39.7 (186)	100.0 (469)
	기혼	10.7 (54)	48.4 (245)	38.1 (193)	2.8 (14)	59.1 (299)	40.9 (207)	100.0 (506)
	이혼/사별	8.0 (2)	36.0 (9)	56.0 (14)	0.0 (0)	44.0 (11)	56.0 (14)	100.0 (25)
	χ^2	6.429						
취업상태	취업	9.3 (78)	51.7 (434)	36.5 (307)	2.5 (21)	61.0 (512)	39.0 (328)	100.0 (840)
	비취업	10.6 (17)	40.0 (64)	44.4 (71)	5.0 (8)	50.6 (81)	49.4 (79)	100.0 (160)
	χ^2	9.002*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0.3 (41)	46.6 (186)	40.4 (161)	2.8 (11)	56.9 (227)	43.1 (172)	100.0 (399)
	자녀 없음	9.0 (54)	51.9 (312)	36.1 (217)	3.0 (18)	60.9 (366)	39.1 (235)	100.0 (601)
	χ^2	2.96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0.9 (28)	48.6 (125)	37.7 (97)	2.7 (7)	59.5 (153)	40.5 (104)	100.0 (257)
	300~500만원	7.8 (26)	52.7 (175)	37.3 (124)	2.1 (7)	60.5 (201)	39.5 (131)	100.0 (332)
	500~700만원	10.4 (23)	48.2 (107)	38.3 (85)	3.2 (7)	58.6 (130)	41.4 (92)	100.0 (222)
	700만원 이상	9.5 (18)	48.1 (91)	38.1 (72)	4.2 (8)	57.7 (109)	42.3 (80)	100.0 (189)
	χ^2	4.513						

* $p < .05$, ** $p < .01$.

주택 가격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불만족’이 78.2%로 ‘만족’ 21.8%보다 많았다. ‘매우 불만족’ 43.0%, ‘다소 불만족’ 35.2% 순으로 많았다. 특히, 자녀 있음의 경우 ‘매우 불만족’ 38.6%, ‘다소 불만족’ 34.3% 순으로 많았고, 자녀 없음의 경우에는 ‘매우 불만족’ 45.9%, ‘다소 불만족’ 35.8% 순이었다.

300만원 미만의 그룹은 ‘매우 불만족’ 50.2%, ‘다소 불만족’ 36.2% 순으로 많았고, 300~500만원 그룹 ‘매우 불만족’ 39.5%, ‘다소 불만족’ 36.4% 순으로 많았고, 500~700만원 그룹 ‘매우 불만족’ 41.4%, ‘다소 불만족’ 37.8% 순으로 많았고, 700만원 이상 그룹 ‘매우 불만족’ 41.3%, ‘다소 불만족’ 28.6% 순으로 많았다.

〈표 III-2-19〉 거주지역 평가_주택가격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43.0 (430)	35.2 (352)	19.5 (195)	2.3 (23)	78.2 (782)	21.8 (218)	100.0 (1,000)
성별	여성	40.9 (210)	37.4 (192)	20.1 (103)	1.6 (8)	78.4 (402)	21.6 (111)	100.0 (513)
	남성	45.2 (220)	32.9 (160)	18.9 (92)	3.1 (15)	78.0 (380)	22.0 (107)	100.0 (487)
	χ^2	5.220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연령	25~29세	49.4 (89)	36.7 (66)	13.3 (24)	0.6 (1)	86.1 (155)	13.9 (25)	100.0 (180)
	30~34세	48.2 (106)	34.5 (76)	16.4 (36)	0.9 (2)	82.7 (182)	17.3 (38)	100.0 (220)
	35~39세	40.6 (108)	34.2 (91)	21.8 (58)	3.4 (9)	74.8 (199)	25.2 (67)	100.0 (266)
	40~45세	38.0 (127)	35.6 (119)	23.1 (77)	3.3 (11)	73.7 (246)	26.3 (88)	100.0 (334)
	χ^2	20.150*						
권역	수도권	45.8 (251)	35.0 (192)	16.6 (91)	2.6 (14)	80.8 (443)	19.2 (105)	100.0 (548)
	영남권	40.0 (90)	36.0 (81)	23.6 (53)	0.4 (1)	76.0 (171)	24.0 (54)	100.0 (225)
	호남권	37.2 (29)	33.3 (26)	24.4 (19)	5.1 (4)	70.5 (55)	29.5 (23)	100.0 (78)
	충청권	31.5 (29)	38.0 (35)	26.1 (24)	4.3 (4)	69.6 (64)	30.4 (28)	100.0 (92)
	기타권역	54.4 (31)	31.6 (18)	14.0 (8)	0.0 (0)	86.0 (49)	14.0 (8)	100.0 (57)
	χ^2	24.510						
최종학력	고졸 이하	44.4 (40)	40.0 (36)	14.4 (13)	1.1 (1)	84.4 (76)	15.6 (14)	100.0 (90)
	대졸	42.1 (324)	35.0 (269)	20.2 (155)	2.7 (21)	77.1 (593)	22.9 (176)	100.0 (769)
	대학원 이상	46.8 (66)	33.3 (47)	19.1 (27)	0.7 (1)	80.1 (113)	19.9 (28)	100.0 (141)
	χ^2	5.476						
혼인상태	미혼	45.8 (215)	37.1 (174)	16.0 (75)	1.1 (5)	82.9 (389)	17.1 (80)	100.0 (469)
	기혼	40.1 (203)	33.4 (169)	22.9 (116)	3.6 (18)	73.5 (372)	26.5 (134)	100.0 (506)
	이혼/사별	48.0 (12)	36.0 (9)	16.0 (4)	0.0 (0)	84.0 (21)	16.0 (4)	100.0 (25)
	χ^2	16.274*						
취업상태	취업	43.1 (362)	35.7 (300)	18.7 (157)	2.5 (21)	78.8 (662)	21.2 (178)	100.0 (840)
	비취업	42.5 (68)	32.5 (52)	23.8 (38)	1.3 (2)	75.0 (120)	25.0 (40)	100.0 (160)
	χ^2	3.08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8.6 (154)	34.3 (137)	23.6 (94)	3.5 (14)	72.9 (291)	27.1 (108)	100.0 (399)
	자녀 없음	45.9	35.8	16.8	1.5	81.7	18.3	100.0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276)	(215)	(101)	(9)	(491)	(110)	(601)
χ^2		12.96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0.2 (129)	36.2 (93)	12.1 (31)	1.6 (4)	86.4 (222)	13.6 (35)	100.0 (257)
	300~500만원	39.5 (131)	36.4 (121)	22.3 (74)	1.8 (6)	75.9 (252)	24.1 (80)	100.0 (332)
	500~700만원	41.4 (92)	37.8 (84)	18.5 (41)	2.3 (5)	79.3 (176)	20.7 (46)	100.0 (222)
	700만원 이상	41.3 (78)	28.6 (54)	25.9 (49)	4.2 (8)	69.8 (132)	30.2 (57)	100.0 (189)
χ^2		24.114**						

* $p < .05$, ** $p < .01$.

거주지역 평가로 자연환경(공원 등)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 중 '만족'이 61.7%로 '불만족' 38.3%보다 높았다. '다소 만족'이 48.9%, '다소 불만족' 28.9%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 의 경우 '다소 만족'이 50.4%, '다소 불만족' 25.0% 순으로 높았다. 영남권의 경우 '다소 만족'이 41.8%, '다소 불만족' 39.6% 순으로 높았다. 호남권의 경우 '다소 만족'이 47.4%, '다소 불만족' 32.1% 순으로 높았다. 충청권 의 경우 '다소 만족'이 47.8%, '다소 불만족' 29.3% 순으로 높았다. 기타권역의 경우 '다소 만족'이 66.7%, '다소 불만족' 19.3% 순으로 높았다.

〈표 III-2-20〉 거주지역 평가_자연환경(공원 등)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9.4 (94)	28.9 (289)	48.9 (489)	12.8 (128)	38.3 (383)	61.7 (617)	100.0 (1,000)
성별	여성	7.2 (37)	28.7 (147)	49.7 (255)	14.4 (74)	35.9 (184)	64.1 (329)	100.0 (513)
	남성	11.7 (57)	29.2 (142)	48.0 (234)	11.1 (54)	40.9 (199)	59.1 (288)	100.0 (487)
	χ^2	7.698						
연령	25~29세	7.2 (13)	31.1 (56)	47.8 (86)	13.9 (25)	38.3 (69)	61.7 (111)	100.0 (180)
	30~34세	10.5 (23)	28.2 (62)	48.2 (106)	13.2 (29)	38.6 (85)	61.4 (135)	100.0 (220)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35~39세	10.9 (29)	26.3 (70)	49.2 (131)	13.5 (36)	37.2 (99)	62.8 (167)	100.0 (266)
	40~45세	8.7 (29)	30.2 (101)	49.7 (166)	11.4 (38)	38.9 (130)	61.1 (204)	100.0 (334)
	χ^2	4.108						
권역	수도권	8.4 (46)	25.0 (137)	50.4 (276)	16.2 (89)	33.4 (183)	66.6 (365)	100.0 (548)
	영남권	11.1 (25)	39.6 (89)	41.8 (94)	7.6 (17)	50.7 (114)	49.3 (111)	100.0 (225)
	호남권	12.8 (10)	32.1 (25)	47.4 (37)	7.7 (6)	44.9 (35)	55.1 (43)	100.0 (78)
	충청권	8.7 (8)	29.3 (27)	47.8 (44)	14.1 (13)	38.0 (35)	62.0 (57)	100.0 (92)
	기타권역	8.8 (5)	19.3 (11)	66.7 (38)	5.3 (3)	28.1 (16)	71.9 (41)	100.0 (57)
	χ^2	36.61***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0 (9)	36.7 (33)	44.4 (40)	8.9 (8)	46.7 (42)	53.3 (48)	100.0 (90)
	대졸	9.2 (71)	29.3 (225)	50.1 (385)	11.4 (88)	38.5 (296)	61.5 (473)	100.0 (769)
	대학원 이상	9.9 (14)	22.0 (31)	45.4 (64)	22.7 (32)	31.9 (45)	68.1 (96)	100.0 (141)
	χ^2	18.245**						
혼인상태	미혼	10.4 (49)	29.6 (139)	48.6 (228)	11.3 (53)	40.1 (188)	59.9 (281)	100.0 (469)
	기혼	8.3 (42)	28.1 (142)	49.2 (249)	14.4 (73)	36.4 (184)	63.6 (322)	100.0 (506)
	이혼/사별	12.0 (3)	32.0 (8)	48.0 (12)	8.0 (2)	44.0 (11)	56.0 (14)	100.0 (25)
	χ^2	4.014						
취업상태	취업	9.6 (81)	29.0 (244)	49.2 (413)	12.1 (102)	38.7 (325)	61.3 (515)	100.0 (840)
	비취업	8.1 (13)	28.1 (45)	47.5 (76)	16.3 (26)	36.3 (58)	63.8 (102)	100.0 (160)
	χ^2	2.21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8 (35)	30.3 (121)	47.1 (188)	13.8 (55)	39.1 (156)	60.9 (243)	100.0 (399)
	자녀 없음	9.8 (59)	28.0 (168)	50.1 (301)	12.1 (73)	37.8 (227)	62.2 (374)	100.0 (601)
	χ^2	1.68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0.9 (28)	28.4 (73)	48.6 (125)	12.1 (31)	39.3 (101)	60.7 (156)	100.0 (257)
	300~500만원	9.3	30.7	45.5	14.5	40.1	59.9	100.0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500~700만원	(31) 7.7 (17)	(102) 27.9 (62)	(151) 52.3 (116)	(48) 12.2 (27)	(133) 35.6 (79)	(199) 64.4 (143)	(332) 100.0 (222)
	700만원 이상	9.5 (18)	27.5 (52)	51.3 (97)	11.6 (22)	37.0 (70)	63.0 (119)	100.0 (189)
	χ^2	4.560						

** $p < .01$, *** $p < .001$.

거주지역 평가로 생활편의시설(마트 등)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 중 ‘만족’이 73.6%, ‘불만족’이 26.4%로 나타났다. ‘다소 만족’ 58.5%, ‘다소 불만족’ 19.9%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으나 권역 기준 수도권과 최종 학력 대학원 이상의 경우에서만 ‘다소 만족’이 각각 55.8%, 48.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거주자들의 19.0%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최종 학력이 대학원이 이상의 경우는 응답자의 26.2%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21〉 거주지역 평가_생활편의시설(마트 등)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6.5 (65)	19.9 (199)	58.5 (585)	15.1 (151)	26.4 (264)	73.6 (736)	100.0 (1,000)
성별	여성	5.5 (28)	20.3 (104)	60.0 (308)	14.2 (73)	25.7 (132)	74.3 (381)	100.0 (513)
	남성	7.6 (37)	19.5 (95)	56.9 (277)	16.0 (78)	27.1 (132)	72.9 (355)	100.0 (487)
	χ^2	2.787						
연령	25~29세	5.6 (10)	14.4 (26)	64.4 (116)	15.6 (28)	20.0 (36)	80.0 (144)	100.0 (180)
	30~34세	7.7 (17)	22.7 (50)	58.6 (129)	10.9 (24)	30.5 (67)	69.5 (153)	100.0 (220)
	35~39세	7.9 (21)	16.9 (45)	58.6 (156)	16.5 (44)	24.8 (66)	75.2 (200)	100.0 (266)
	40~45세	5.1 (17)	23.4 (78)	55.1 (184)	16.5 (55)	28.4 (95)	71.6 (239)	100.0 (334)
	χ^2	14.457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권역	수도권	6.6 (36)	18.6 (102)	55.8 (306)	19.0 (104)	25.2 (138)	74.8 (410)	100.0 (548)
	영남권	6.2 (14)	21.3 (48)	61.8 (139)	10.7 (24)	27.6 (62)	72.4 (163)	100.0 (225)
	호남권	9.0 (7)	26.9 (21)	56.4 (44)	7.7 (6)	35.9 (28)	64.1 (50)	100.0 (78)
	충청권	6.5 (6)	16.3 (15)	62.0 (57)	15.2 (14)	22.8 (21)	77.2 (71)	100.0 (92)
	기타권역	3.5 (2)	22.8 (13)	68.4 (39)	5.3 (3)	26.3 (15)	73.7 (42)	100.0 (57)
	χ^2	22.168*						
최종학력	고졸 이하	6.7 (6)	24.4 (22)	56.7 (51)	12.2 (11)	31.1 (28)	68.9 (62)	100.0 (90)
	대졸	6.8 (52)	19.4 (149)	60.5 (465)	13.4 (103)	26.1 (201)	73.9 (568)	100.0 (769)
	대학원 이상	5.0 (7)	19.9 (28)	48.9 (69)	26.2 (37)	24.8 (35)	75.2 (106)	100.0 (141)
	χ^2	17.969**						
혼인상태	미혼	6.8 (32)	20.0 (94)	57.1 (268)	16.0 (75)	26.9 (126)	73.1 (343)	100.0 (469)
	기혼	6.5 (33)	18.8 (95)	59.9 (303)	14.8 (75)	25.3 (128)	74.7 (378)	100.0 (506)
	이혼/사별	0.0 (0)	40.0 (10)	56.0 (14)	4.0 (1)	40.0 (10)	60.0 (15)	100.0 (25)
	χ^2	9.755						
취업상태	취업	6.4 (54)	20.1 (169)	58.6 (492)	14.9 (125)	26.5 (223)	73.5 (617)	100.0 (840)
	비취업	6.9 (11)	18.8 (30)	58.1 (93)	16.3 (26)	25.6 (41)	74.4 (119)	100.0 (160)
	χ^2	0.33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0 (24)	21.3 (85)	59.4 (237)	13.3 (53)	27.3 (109)	72.7 (290)	100.0 (399)
	자녀 없음	6.8 (41)	19.0 (114)	57.9 (348)	16.3 (98)	25.8 (155)	74.2 (446)	100.0 (601)
	χ^2	2.44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0 (18)	22.2 (57)	56.4 (145)	14.4 (37)	29.2 (75)	70.8 (182)	100.0 (257)
	300~500만원	6.0 (20)	22.3 (74)	57.2 (190)	14.5 (48)	28.3 (94)	71.7 (238)	100.0 (332)
	500~700만원	6.3 (14)	17.1 (38)	60.8 (135)	15.8 (35)	23.4 (52)	76.6 (170)	100.0 (222)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700만원 이상	6.9 (13)	15.9 (30)	60.8 (115)	16.4 (31)	22.8 (43)	77.2 (146)	100.0 (189)
χ^2		5.412						

* $p < .05$, ** $p < .01$.

거주지역 평가로 여가(놀이) 및 문화시설을 조사해 본 결과, ‘불만족’ 62.1%, ‘만족’ 37.9% 이었다. ‘다소 불만족’ 44.4%, ‘다소 만족’ 31.9%, ‘매우 불만족’ 17.7%, ‘매우 만족’ 6.0% 순으로 높았다.

〈표 III-2-22〉 거주지역 평가_여가(놀이) 및 문화시설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17.7 (177)	44.4 (444)	31.9 (319)	6.0 (60)	62.1 (621)	37.9 (379)	100.0 (1,000)
성별	여성	16.2 (83)	43.9 (225)	32.9 (169)	7.0 (36)	60.0 (308)	40.0 (205)	100.0 (513)
	남성	19.3 (94)	45.0 (219)	30.8 (150)	4.9 (24)	64.3 (313)	35.7 (174)	100.0 (487)
	χ^2	3.623						
연령	25~29세	13.9 (25)	47.8 (86)	31.1 (56)	7.2 (13)	61.7 (111)	38.3 (69)	100.0 (180)
	30~34세	16.8 (37)	46.4 (102)	33.2 (73)	3.6 (8)	63.2 (139)	36.8 (81)	100.0 (220)
	35~39세	19.9 (53)	41.0 (109)	32.7 (87)	6.4 (17)	60.9 (162)	39.1 (104)	100.0 (266)
	40~45세	18.6 (62)	44.0 (147)	30.8 (103)	6.6 (22)	62.6 (209)	37.4 (125)	100.0 (334)
	χ^2	6.902						
권역	수도권	13.3 (73)	42.3 (232)	36.1 (198)	8.2 (45)	55.7 (305)	44.3 (243)	100.0 (548)
	영남권	25.3 (57)	44.9 (101)	25.8 (58)	4.0 (9)	70.2 (158)	29.8 (67)	100.0 (225)
	호남권	24.4 (19)	51.3 (40)	21.8 (17)	2.6 (2)	75.6 (59)	24.4 (19)	100.0 (78)
	충청권	15.2 (14)	43.5 (40)	37.0 (34)	4.3 (4)	58.7 (54)	41.3 (38)	100.0 (92)
	기타권역	24.6	54.4	21.1	0.0	78.9	21.1	100.0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χ^2	(14)	(31)	(12)	(0)	(45)	(12)	(57)
		42.199***						
최종학력	고졸 이하	20.0 (18)	50.0 (45)	26.7 (24)	3.3 (3)	70.0 (63)	30.0 (27)	100.0 (90)
	대졸	17.7 (136)	44.3 (341)	32.1 (247)	5.9 (45)	62.0 (477)	38.0 (292)	100.0 (769)
	대학원 이상	16.3 (23)	41.1 (58)	34.0 (48)	8.5 (12)	57.4 (81)	42.6 (60)	100.0 (141)
	χ^2	4.961						
혼인상태	미혼	15.6 (73)	45.0 (211)	33.0 (155)	6.4 (30)	60.6 (284)	39.4 (185)	100.0 (469)
	기혼	19.2 (97)	43.7 (221)	31.2 (158)	5.9 (30)	62.8 (318)	37.2 (188)	100.0 (506)
	이혼/사별	28.0 (7)	48.0 (12)	24.0 (6)	0.0 (0)	76.0 (19)	24.0 (6)	100.0 (25)
	χ^2	5.876						
취업상태	취업	17.7 (149)	44.3 (372)	32.5 (273)	5.5 (46)	62.0 (521)	38.0 (319)	100.0 (840)
	비취업	17.5 (28)	45.0 (72)	28.8 (46)	8.8 (14)	62.5 (100)	37.5 (60)	100.0 (160)
	χ^2	3.01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0.8 (83)	43.6 (174)	30.6 (122)	5.0 (20)	64.4 (257)	35.6 (142)	100.0 (399)
	자녀 없음	15.6 (94)	44.9 (270)	32.8 (197)	6.7 (40)	60.6 (364)	39.4 (237)	100.0 (601)
	χ^2	5.14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9.8 (51)	42.8 (110)	30.7 (79)	6.6 (17)	62.6 (161)	37.4 (96)	100.0 (257)
	300~500만원	17.8 (59)	45.5 (151)	32.5 (108)	4.2 (14)	63.3 (210)	36.7 (122)	100.0 (332)
	500~700만원	15.8 (35)	47.3 (105)	31.1 (69)	5.9 (13)	63.1 (140)	36.9 (82)	100.0 (222)
	700만원 이상	16.9 (32)	41.3 (78)	33.3 (63)	8.5 (16)	58.2 (110)	41.8 (79)	100.0 (189)
	χ^2	6.435						

*** $p < .001$.

거주지역 평가로 취업 여건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 중 ‘불만족’이 78.0%로 ‘만족’ 22.0%보다 높았다. ‘다소 불만족’ 49.4%, ‘매우 불만족’ 28.6% 순으로 높았다. 여성의 경우 ‘다소 불만족’이 53.2%, ‘매우 불만족’ 23.4% 순으로 높았는데,

‘다소 만족’은 21.1%로 ‘매우 불만족’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성의 경우 ‘다소불만족’이 45.4%, ‘매우 불만족’ 34.1%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다소 불만족’이 50.7%, ‘매우 불만족’ 23.7% 순으로 높았는데, ‘다소 만족’은 22.6%로 ‘매우 불만족’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호남권의 경우 ‘다소 불만족’은 44.9%로 두 번째로 많은 ‘매우 불만족’ 41.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타 권역의 경우 ‘매우 불만족’이 5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42.1%가 ‘다소 불만족’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23〉 거주지역 평가·취업 여건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28.6 (286)	49.4 (494)	19.7 (197)	2.3 (23)	78.0 (780)	22.0 (220)	100.0 (1000)
성별	여성	23.4 (120)	53.2 (273)	21.1 (108)	2.3 (12)	76.6 (393)	23.4 (120)	100.0 (513)
	남성	34.1 (166)	45.4 (221)	18.3 (89)	2.3 (11)	79.5 (387)	20.5 (100)	100.0 (487)
	χ^2	14.082**						
연령	25~29세	37.8 (68)	45.0 (81)	15.0 (27)	2.2 (4)	82.8 (149)	17.2 (31)	100.0 (180)
	30~34세	25.5 (56)	52.7 (116)	20.9 (46)	0.9 (2)	78.2 (172)	21.8 (48)	100.0 (220)
	35~39세	26.3 (70)	47.4 (126)	22.6 (60)	3.8 (10)	73.7 (196)	26.3 (70)	100.0 (266)
	40~45세	27.5 (92)	51.2 (171)	19.2 (64)	2.1 (7)	78.7 (263)	21.3 (71)	100.0 (334)
	χ^2	16.028						
권역	수도권	23.7 (130)	50.7 (278)	22.6 (124)	2.9 (16)	74.5 (408)	25.5 (140)	100.0 (548)
	영남권	33.8 (76)	48.4 (109)	16.4 (37)	1.3 (3)	82.2 (185)	17.8 (40)	100.0 (225)
	호남권	41.0 (32)	44.9 (35)	14.1 (11)	0.0 (0)	85.9 (67)	14.1 (11)	100.0 (78)
	충청권	20.7 (19)	52.2 (48)	22.8 (21)	4.3 (4)	72.8 (67)	27.2 (25)	100.0 (92)
	기타권역	50.9 (29)	42.1 (24)	7.0 (4)	0.0 (0)	93.0 (53)	7.0 (4)	100.0 (57)
	χ^2	40.677***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8 (25)	58.9 (53)	12.2 (11)	1.1 (1)	86.7 (78)	13.3 (12)	100.0 (90)
	대졸	29.6 (228)	48.8 (375)	19.2 (148)	2.3 (18)	78.4 (603)	21.6 (166)	100.0 (769)
	대학원 이상	23.4 (33)	46.8 (66)	27.0 (38)	2.8 (4)	70.2 (99)	29.8 (42)	100.0 (141)
	χ^2	10.676						
혼인상태	미혼	30.9 (145)	48.6 (228)	19.0 (89)	1.5 (7)	79.5 (373)	20.5 (96)	100.0 (469)
	기혼	26.5 (134)	49.6 (251)	20.8 (105)	3.2 (16)	76.1 (385)	23.9 (121)	100.0 (506)
	이혼/사별	28.0 (7)	60.0 (15)	12.0 (3)	0.0 (0)	88.0 (22)	12.0 (3)	100.0 (25)
	χ^2	7.009						
취업상태	취업	27.3 (229)	50.6 (425)	19.8 (166)	2.4 (20)	77.9 (654)	22.1 (186)	100.0 (840)
	비취업	35.6 (57)	43.1 (69)	19.4 (31)	1.9 (3)	78.8 (126)	21.3 (34)	100.0 (160)
	χ^2	4.96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6.3 (105)	50.4 (201)	20.1 (80)	3.3 (13)	76.7 (306)	23.3 (93)	100.0 (399)
	자녀 없음	30.1 (181)	48.8 (293)	19.5 (117)	1.7 (10)	78.9 (474)	21.1 (127)	100.0 (601)
	χ^2	4.03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5.0 (90)	44.0 (113)	20.2 (52)	0.8 (2)	79.0 (203)	21.0 (54)	100.0 (257)
	300~500만원	25.9 (86)	53.6 (178)	18.7 (62)	1.8 (6)	79.5 (264)	20.5 (68)	100.0 (332)
	500~700만원	26.6 (59)	50.0 (111)	19.8 (44)	3.6 (8)	76.6 (170)	23.4 (52)	100.0 (222)
	700만원 이상	27.0 (51)	48.7 (92)	20.6 (39)	3.7 (7)	75.7 (143)	24.3 (46)	100.0 (189)
	χ^2	14.299						

** $p < .01$, *** $p < .001$.

거주지역 평가로 이웃과의 교류를 조사해 본 결과, ‘불만족’이 61.5%로 ‘만족’ 38.5%보다 많았다. ‘다소 불만족’ 48.7%, ‘다소 만족’ 36.4% 순으로 비중이 컸다. 여성의 경우 ‘다소 불만족’ 47.8%, ‘다소 만족’ 40.9% 순으로 많았고, 남성의 경우 ‘다소 불만족’ 49.7%, ‘다소 만족’ 31.6% 순으로 많았다.

〈표 III-2-24〉 거주지역 평가_이웃과의 교류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12.8 (128)	48.7 (487)	36.4 (364)	2.1 (21)	61.5 (615)	38.5 (385)	100.0 (1,000)
성별	여성	8.4 (43)	47.8 (245)	40.9 (210)	2.9 (15)	56.1 (288)	43.9 (225)	100.0 (513)
	남성	17.5 (85)	49.7 (242)	31.6 (154)	1.2 (6)	67.1 (327)	32.9 (160)	100.0 (487)
	χ^2	25.614***						
연령	25~29세	15.6 (28)	48.3 (87)	35.0 (63)	1.1 (2)	63.9 (115)	36.1 (65)	100.0 (180)
	30~34세	13.2 (29)	47.7 (105)	37.3 (82)	1.8 (4)	60.9 (134)	39.1 (86)	100.0 (220)
	35~39세	14.7 (39)	48.5 (129)	34.2 (91)	2.6 (7)	63.2 (168)	36.8 (98)	100.0 (266)
	40~45세	9.6 (32)	49.7 (166)	38.3 (128)	2.4 (8)	59.3 (198)	40.7 (136)	100.0 (334)
	χ^2	6.886						
권역	수도권	13.9 (76)	50.5 (277)	33.4 (183)	2.2 (12)	64.4 (353)	35.6 (195)	100.0 (548)
	영남권	13.3 (30)	47.6 (107)	37.3 (84)	1.8 (4)	60.9 (137)	39.1 (88)	100.0 (225)
	호남권	14.1 (11)	43.6 (34)	42.3 (33)	0.0 (0)	57.7 (45)	42.3 (33)	100.0 (78)
	충청권	5.4 (5)	43.5 (40)	46.7 (43)	4.3 (4)	48.9 (45)	51.1 (47)	100.0 (92)
	기타권역	10.5 (6)	50.9 (29)	36.8 (21)	1.8 (1)	61.4 (35)	38.6 (22)	100.0 (57)
	χ^2	15.088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3 (12)	50.0 (45)	34.4 (31)	2.2 (2)	63.3 (57)	36.7 (33)	100.0 (90)
	대졸	12.6 (97)	48.4 (372)	37.3 (287)	1.7 (13)	61.0 (469)	39.0 (300)	100.0 (769)
	대학원 이상	13.5 (19)	49.6 (70)	32.6 (46)	4.3 (6)	63.1 (89)	36.9 (52)	100.0 (141)
	χ^2	4.730						
혼인상태	미혼	12.8 (60)	51.0 (239)	35.2 (165)	1.1 (5)	63.8 (299)	36.2 (170)	100.0 (469)
	기혼	12.6 (64)	47.2 (239)	37.0 (187)	3.2 (16)	59.9 (303)	40.1 (203)	100.0 (506)
	이혼/사별	16.0 (4)	36.0 (9)	48.0 (12)	0.0 (0)	52.0 (13)	48.0 (12)	100.0 (25)
	χ^2	8.541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취업상태	취업	13.6 (114)	48.6 (408)	36.0 (302)	1.9 (16)	62.1 (522)	37.9 (318)	100.0 (840)
	비취업	8.8 (14)	49.4 (79)	38.8 (62)	3.1 (5)	58.1 (93)	41.9 (67)	100.0 (160)
	χ^2	3.70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1.3 (45)	48.1 (192)	37.3 (149)	3.3 (13)	59.4 (237)	40.6 (162)	100.0 (399)
	자녀 없음	13.8 (83)	49.1 (295)	35.8 (215)	1.3 (8)	62.9 (378)	37.1 (223)	100.0 (601)
	χ^2	5.65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4 (37)	48.2 (124)	36.2 (93)	1.2 (3)	62.6 (161)	37.4 (96)	100.0 (257)
	300~500만원	10.8 (36)	51.5 (171)	36.1 (120)	1.5 (5)	62.3 (207)	37.7 (125)	100.0 (332)
	500~700만원	14.9 (33)	46.4 (103)	36.9 (82)	1.8 (4)	61.3 (136)	38.7 (86)	100.0 (222)
	700만원 이상	11.6 (22)	47.1 (89)	36.5 (69)	4.8 (9)	58.7 (111)	41.3 (78)	100.0 (189)
	χ^2	11.454						

*** $p < .001$.

거주지역 평가로 교통편의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 중 ‘만족’ 57.1%, ‘불만족’ 42.9%로 나타났다. ‘다소 만족’ 44.4%, ‘다소 불만족’ 29.1% 순으로 많았다. 권역 기준 수도권외의 경우 ‘다소 만족’ 48.0%, ‘다소 불만족’ 24.3% 순으로 많았다. 영남권의 경우 ‘다소 만족’ 41.8%, ‘다소 불만족’ 32.4% 순으로 많았다. 호남권의 경우 ‘다소 만족’ 46.2%, ‘다소 불만족’ 29.5%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호남권의 ‘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의 합인 ‘만족’ 비중과 ‘매우 불만족’과 ‘다소 불만족’의 합인 ‘불만족’ 비중은 50.0%로 동일하였다. 충청권의 경우, ‘다소 만족’ 35.9%, ‘다소 불만족’ 43.5% 순으로 많았다. 기타권역의 경우에는 ‘다소 불만족’이 3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다소 만족’으로 31.6%였다.

〈표 III-2-25〉 거주지역 평가_교통편의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13.8 (138)	29.1 (291)	44.4 (444)	12.7 (127)	42.9 (429)	57.1 (571)	100.0 (1,000)
성별	여성	11.7 (60)	30.2 (155)	45.6 (234)	12.5 (64)	41.9 (215)	58.1 (298)	100.0 (513)
	남성	16.0 (78)	27.9 (136)	43.1 (210)	12.9 (63)	43.9 (214)	56.1 (273)	100.0 (487)
	χ^2	4.220						
연령	25~29세	13.3 (24)	27.8 (50)	45.0 (81)	13.9 (25)	41.1 (74)	58.9 (106)	100.0 (180)
	30~34세	15.0 (33)	34.1 (75)	41.4 (91)	9.5 (21)	49.1 (108)	50.9 (112)	100.0 (220)
	35~39세	13.5 (36)	33.5 (89)	41.4 (110)	11.7 (31)	47.0 (125)	53.0 (141)	100.0 (266)
	40~45세	13.5 (45)	23.1 (77)	48.5 (162)	15.0 (50)	36.5 (122)	63.5 (212)	100.0 (334)
	χ^2	14.023						
권역	수도권	11.5 (63)	24.3 (133)	48.0 (263)	16.2 (89)	35.8 (196)	64.2 (352)	100.0 (548)
	영남권	15.1 (34)	32.4 (73)	41.8 (94)	10.7 (24)	47.6 (107)	52.4 (118)	100.0 (225)
	호남권	20.5 (16)	29.5 (23)	46.2 (36)	3.8 (3)	50.0 (39)	50.0 (39)	100.0 (78)
	충청권	14.1 (13)	43.5 (40)	35.9 (33)	6.5 (6)	57.6 (53)	42.4 (39)	100.0 (92)
	기타권역	21.1 (12)	38.6 (22)	31.6 (18)	8.8 (5)	59.6 (34)	40.4 (23)	100.0 (57)
	χ^2	40.70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6 (14)	36.7 (33)	37.8 (34)	10.0 (9)	52.2 (47)	47.8 (43)	100.0 (90)
	대졸	14.0 (108)	27.3 (210)	46.4 (357)	12.2 (94)	41.4 (318)	58.6 (451)	100.0 (769)
	대학원 이상	11.3 (16)	34.0 (48)	37.6 (53)	17.0 (24)	45.4 (64)	54.6 (77)	100.0 (141)
	χ^2	10.451						
혼인상태	미혼	12.2 (57)	27.5 (129)	44.8 (210)	15.6 (73)	39.7 (186)	60.3 (283)	100.0 (469)
	기혼	15.2 (77)	30.4 (154)	43.9 (222)	10.5 (53)	45.7 (231)	54.3 (275)	100.0 (506)
	이혼/사별	16.0 (4)	32.0 (8)	48.0 (12)	4.0 (1)	48.0 (12)	52.0 (13)	100.0 (25)
	χ^2	9.152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취업상태 ¹⁾	취업	14.2 (119)	28.7 (241)	44.4 (373)	12.7 (107)	42.9 (360)	57.1 (480)	100.0 (840)
	비취업	11.9 (19)	31.3 (50)	44.4 (71)	12.5 (20)	43.1 (69)	56.9 (91)	100.0 (160)
	χ^2	0.82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0 (64)	30.6 (122)	43.6 (174)	9.8 (39)	46.6 (186)	53.4 (213)	100.0 (399)
	자녀 없음	12.3 (74)	28.1 (169)	44.9 (270)	14.6 (88)	40.4 (243)	59.6 (358)	100.0 (601)
	χ^2	7.47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0 (36)	32.7 (84)	41.6 (107)	11.7 (30)	46.7 (120)	53.3 (137)	100.0 (257)
	300~500만원	15.1 (50)	32.2 (107)	42.2 (140)	10.5 (35)	47.3 (157)	52.7 (175)	100.0 (332)
	500~700만원	13.1 (29)	24.3 (54)	49.1 (109)	13.5 (30)	37.4 (83)	62.6 (139)	100.0 (222)
	700만원 이상	12.2 (23)	24.3 (46)	46.6 (88)	16.9 (32)	36.5 (69)	63.5 (120)	100.0 (189)
	χ^2	12.634						

*** $p < .001$.

거주지역 평가로 기초지자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 중 ‘불만족’ 71.9%, ‘만족’ 28.1%였다. ‘다소 불만족’ 53.6%, ‘다소 만족’ 25.8% 순으로 높았다.

권역 기준 수도권외의 경우 ‘다소 불만족’이 52.9%, ‘다소 만족’이 28.1% 순으로 높았다. 영남권의 경우 ‘다소 불만족’이 56.0%, ‘매우 불만족’이 22.7% 순으로 높았다. 호남권의 경우 ‘다소 불만족’이 42.3%, ‘다소 만족’이 28.2% 순으로 높았다. 충청권의 경우 ‘다소 불만족’이 52.2%, ‘다소 만족’이 29.3% 순으로 높았다. 기타 권역의 경우에는 ‘다소 불만족’이 68.4%, ‘다소 만족’이 15.8% 순으로 높았다.

미혼의 경우 ‘다소 불만족’이 56.9%, ‘다소만족’이 27.5% 순으로 높았다. 기혼의 경우 ‘다소 불만족’이 50.8%, ‘다소만족’이 24.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이혼/사별의 경우 ‘다소 불만족’이 48.0%, ‘매우 불만족’이 28.0% 순으로 높았다.

자녀 유무 기준 자녀 있음의 경우 ‘다소 불만족’이 54.9%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소 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동등하게 21.6% 순으로 높았다. 자녀 없음의 경우에는 ‘다소 불만족’이 52.7%, ‘다소 만족’이 28.6% 순으로 높았다.

〈표 III-2-26〉 거주지역 평가_기초지자체 정책 수립 및 시행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18.3 (183)	53.6 (536)	25.8 (258)	2.3 (23)	71.9 (719)	28.1 (281)	100.0 (1,000)
성별	여성	14.4 (74)	55.6 (285)	27.3 (140)	2.7 (14)	70.0 (359)	30.0 (154)	100.0 (513)
	남성	22.4 (109)	51.5 (251)	24.2 (118)	1.8 (9)	73.9 (360)	26.1 (127)	100.0 (487)
	χ^2	11.145*						
연령	25~29세	14.4 (26)	58.3 (105)	25.0 (45)	2.2 (4)	72.8 (131)	27.2 (49)	100.0 (180)
	30~34세	19.5 (43)	50.5 (111)	29.1 (64)	0.9 (2)	70.0 (154)	30.0 (66)	100.0 (220)
	35~39세	18.4 (49)	55.3 (147)	22.6 (60)	3.8 (10)	73.7 (196)	26.3 (70)	100.0 (266)
	40~45세	19.5 (65)	51.8 (173)	26.6 (89)	2.1 (7)	71.3 (238)	28.7 (96)	100.0 (334)
	χ^2	9.920						
권역	수도권	16.2 (89)	52.9 (290)	28.1 (154)	2.7 (15)	69.2 (379)	30.8 (169)	100.0 (548)
	영남권	22.7 (51)	56.0 (126)	20.4 (46)	0.9 (2)	78.7 (177)	21.3 (48)	100.0 (225)
	호남권	24.4 (19)	42.3 (33)	28.2 (22)	5.1 (4)	66.7 (52)	33.3 (26)	100.0 (78)
	충청권	17.4 (16)	52.2 (48)	29.3 (27)	1.1 (1)	69.6 (64)	30.4 (28)	100.0 (92)
	기타권역	14.0 (8)	68.4 (39)	15.8 (9)	1.8 (1)	82.5 (47)	17.5 (10)	100.0 (57)
	χ^2	22.54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7 (15)	63.3 (57)	18.9 (17)	1.1 (1)	80.0 (72)	20.0 (18)	100.0 (90)
	대졸	18.5 (142)	53.8 (414)	25.1 (193)	2.6 (20)	72.3 (556)	27.7 (213)	100.0 (769)
	대학원 이상	18.4 (26)	46.1 (65)	34.0 (48)	1.4 (2)	64.5 (91)	35.5 (50)	100.0 (141)
	χ^2	10.081						
혼인상태	미혼	13.0 (61)	56.9 (267)	27.5 (129)	2.6 (12)	69.9 (328)	30.1 (141)	100.0 (469)
	기혼	22.7 (115)	50.8 (257)	24.3 (123)	2.2 (11)	73.5 (372)	26.5 (134)	100.0 (506)
	이혼/사별	28.0 (7)	48.0 (12)	24.0 (6)	0.0 (0)	76.0 (19)	24.0 (6)	100.0 (25)
	χ^2	17.491**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취업상태	취업	18.6 (156)	54.0 (454)	25.2 (212)	2.1 (18)	72.6 (610)	27.4 (230)	100.0 (840)
	비취업	16.9 (27)	51.3 (82)	28.8 (46)	3.1 (5)	68.1 (109)	31.9 (51)	100.0 (160)
	χ^2	1.61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1.6 (86)	54.9 (219)	21.6 (86)	2.0 (8)	76.4 (305)	23.6 (94)	100.0 (399)
	자녀 없음	16.1 (97)	52.7 (317)	28.6 (172)	2.5 (15)	68.9 (414)	31.1 (187)	100.0 (601)
	χ^2	8.93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8.7 (48)	52.5 (135)	26.8 (69)	1.9 (5)	71.2 (183)	28.8 (74)	100.0 (257)
	300~500만원	16.0 (53)	57.8 (192)	24.1 (80)	2.1 (7)	73.8 (245)	26.2 (87)	100.0 (332)
	500~700만원	20.7 (46)	51.8 (115)	26.1 (58)	1.4 (3)	72.5 (161)	27.5 (61)	100.0 (222)
	700만원 이상	19.0 (36)	49.7 (94)	27.0 (51)	4.2 (8)	68.8 (130)	31.2 (59)	100.0 (189)
	χ^2	8.330						

* $p < .05$, ** $p < .01$.

거주지역 평가로 기초지자체와 시민과의 소통을 조사해 본 결과, ‘불만족’ 77.6%, ‘만족’ 22.4%로, ‘불만족’이 더 높았다. ‘다소 불만족’ 53.2%, ‘매우 불만족’ 24.4% 순으로 높았다.

혼인 상태 기준 미혼의 경우 ‘다소 불만족’ 56.5%, ‘다소 만족’ 22.0% 순으로 높았다. 기혼의 경우 ‘다소 불만족’ 51.2%, ‘매우 불만족’ 28.3% 순으로 높았다. 이혼/사별의 경우 ‘매우 불만족’이 36.0%로 가장 높았고, ‘다소 불만족’과 ‘다소 만족’이 모두 32.0%, ‘매우 만족’은 0.0% 순이었다.

〈표 III-2-27〉 거주지역 평가_기초지자체와 시민과의 소통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24.4 (244)	53.2 (532)	20.2 (202)	2.2 (22)	77.6 (776)	22.4 (224)	100.0 (1,000)
성별	여성	20.3	54.8	22.6	2.3	75.0	25.0	100.0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남성	(104) 28.7 (140)	(281) 51.5 (251)	(116) 17.7 (86)	(12) 2.1 (10)	(385) 80.3 (391)	(128) 19.7 (96)	(513) 100.0 (487)
	χ^2	10.972*						
연령	25~29세	22.2 (40)	53.9 (97)	20.0 (36)	3.9 (7)	76.1 (137)	23.9 (43)	100.0 (180)
	30~34세	24.1 (53)	52.3 (115)	23.2 (51)	0.5 (1)	76.4 (168)	23.6 (52)	100.0 (220)
	35~39세	26.3 (70)	54.1 (144)	16.2 (43)	3.4 (9)	80.5 (214)	19.5 (52)	100.0 (266)
	40~45세	24.3 (81)	52.7 (176)	21.6 (72)	1.5 (5)	76.9 (257)	23.1 (77)	100.0 (334)
	χ^2	12.117						
권역	수도권	21.9 (120)	54.0 (296)	21.2 (116)	2.9 (16)	75.9 (416)	24.1 (132)	100.0 (548)
	영남권	31.6 (71)	47.6 (107)	19.1 (43)	1.8 (4)	79.1 (178)	20.9 (47)	100.0 (225)
	호남권	26.9 (21)	48.7 (38)	23.1 (18)	1.3 (1)	75.6 (59)	24.4 (19)	100.0 (78)
	충청권	21.7 (20)	55.4 (51)	21.7 (20)	1.1 (1)	77.2 (71)	22.8 (21)	100.0 (92)
	기타권역	21.1 (12)	70.2 (40)	8.8 (5)	0.0 (0)	91.2 (52)	8.8 (5)	100.0 (57)
	χ^2	19.786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24)	58.9 (53)	13.3 (12)	1.1 (1)	85.6 (77)	14.4 (13)	100.0 (90)
	대졸	24.6 (189)	53.6 (412)	19.6 (151)	2.2 (17)	78.2 (601)	21.8 (168)	100.0 (769)
	대학원 이상	22.0 (31)	47.5 (67)	27.7 (39)	2.8 (4)	69.5 (98)	30.5 (43)	100.0 (141)
	χ^2	8.811						
혼인상태	미혼	19.6 (92)	56.5 (265)	22.0 (103)	1.9 (9)	76.1 (357)	23.9 (112)	100.0 (469)
	기혼	28.3 (143)	51.2 (259)	18.0 (91)	2.6 (13)	79.4 (402)	20.6 (104)	100.0 (506)
	이혼/사별	36.0 (9)	32.0 (8)	32.0 (8)	0.0 (0)	68.0 (17)	32.0 (8)	100.0 (25)
	χ^2	17.034**						
취업상태 ¹⁾	취업	24.5 (206)	53.0 (445)	20.2 (170)	2.3 (19)	77.5 (651)	22.5 (189)	100.0 (840)
	비취업	23.8 (38)	54.4 (87)	20.0 (32)	1.9 (3)	78.1 (125)	21.9 (35)	100.0 (160)
	χ^2	0.178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7.8 (111)	53.4 (213)	16.8 (67)	2.0 (8)	81.2 (324)	18.8 (75)	100.0 (399)
	자녀 없음	22.1 (133)	53.1 (319)	22.5 (135)	2.3 (14)	75.2 (452)	24.8 (149)	100.0 (601)
	χ^2	7.11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5.3 (65)	51.4 (132)	22.2 (57)	1.2 (3)	76.7 (197)	23.3 (60)	100.0 (257)
	300~500만원	21.7 (72)	56.0 (186)	19.3 (64)	3.0 (10)	77.7 (258)	22.3 (74)	100.0 (332)
	500~700만원	27.9 (62)	50.5 (112)	20.3 (45)	1.4 (3)	78.4 (174)	21.6 (48)	100.0 (222)
	700만원 이상	23.8 (45)	54.0 (102)	19.0 (36)	3.2 (6)	77.8 (147)	22.2 (42)	100.0 (189)
	χ^2	7.789						

* $p < .05$, ** $p < .01$.

거주지역 평가로 지역개발 및 성장을 조사해 본 결과, ‘불만족’ 65.5%로 ‘만족’ 34.5%보다 높았다. ‘다소 불만족’ 42.5%, ‘다소 만족’ 31.1% 순으로 높았다.

권역 기준 수도권 권의 경우에는 ‘다소 불만족’ 39.2%, ‘다소 만족’ 37.8% 순으로 높았다. 영남권의 경우, ‘다소 불만족’ 49.3%, ‘매우 불만족’ 27.6% 순으로 높았다. 호남권의 경우 ‘매우 불만족’ 38.5%, ‘다소 불만족’ 35.9% 순으로 높았다. 충청권의 경우 ‘다소 불만족’ 40.2%, ‘다소 만족’ 34.8% 순으로 높았다. 기타 권역의 경우 ‘다소 불만족’ 59.6%, ‘매우 불만족’ 28.1% 순으로 높았다.

〈표 Ⅲ-2-28〉 거주지역 평가_지역개발 및 성장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23.0 (230)	42.5 (425)	31.1 (311)	3.4 (34)	65.5 (655)	34.5 (345)	100.0 (1,000)
성별	여성	20.3 (104)	43.9 (225)	32.7 (168)	3.1 (16)	64.1 (329)	35.9 (184)	100.0 (513)
	남성	25.9 (126)	41.1 (200)	29.4 (143)	3.7 (18)	66.9 (326)	33.1 (161)	100.0 (487)
	χ^2	5.030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연령	25~29세	21.7 (39)	45.0 (81)	28.9 (52)	4.4 (8)	66.7 (120)	33.3 (60)	100.0 (180)
	30~34세	21.8 (48)	43.2 (95)	34.5 (76)	0.5 (1)	65.0 (143)	35.0 (77)	100.0 (220)
	35~39세	25.2 (67)	42.1 (112)	27.4 (73)	5.3 (14)	67.3 (179)	32.7 (87)	100.0 (266)
	40~45세	22.8 (76)	41.0 (137)	32.9 (110)	3.3 (11)	63.8 (213)	36.2 (121)	100.0 (334)
	χ^2	12.852						
권역	수도권	18.8 (103)	39.2 (215)	37.8 (207)	4.2 (23)	58.0 (318)	42.0 (230)	100.0 (548)
	영남권	27.6 (62)	49.3 (111)	21.8 (49)	1.3 (3)	76.9 (173)	23.1 (52)	100.0 (225)
	호남권	38.5 (30)	35.9 (28)	23.1 (18)	2.6 (2)	74.4 (58)	25.6 (20)	100.0 (78)
	충청권	20.7 (19)	40.2 (37)	34.8 (32)	4.3 (4)	60.9 (56)	39.1 (36)	100.0 (92)
	기타권역	28.1 (16)	59.6 (34)	8.8 (5)	3.5 (2)	87.7 (50)	12.3 (7)	100.0 (57)
	χ^2	53.456***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2 (20)	45.6 (41)	28.9 (26)	3.3 (3)	67.8 (61)	32.2 (29)	100.0 (90)
	대졸	24.2 (186)	42.4 (326)	30.0 (231)	3.4 (26)	66.6 (512)	33.4 (257)	100.0 (769)
	대학원 이상	17.0 (24)	41.1 (58)	38.3 (54)	3.5 (5)	58.2 (82)	41.8 (59)	100.0 (141)
	χ^2	5.728						
혼인상태	미혼	20.0 (94)	43.5 (204)	33.0 (155)	3.4 (16)	63.5 (298)	36.5 (171)	100.0 (469)
	기혼	25.5 (129)	41.3 (209)	29.6 (150)	3.6 (18)	66.8 (338)	33.2 (168)	100.0 (506)
	이혼/사별	28.0 (7)	48.0 (12)	24.0 (6)	0.0 (0)	76.0 (19)	24.0 (6)	100.0 (25)
	χ^2	6.091						
취업상태	취업	23.0 (193)	43.3 (364)	30.4 (255)	3.3 (28)	66.3 (557)	33.7 (283)	100.0 (840)
	비취업	23.1 (37)	38.1 (61)	35.0 (56)	3.8 (6)	61.3 (98)	38.8 (62)	100.0 (160)
	χ^2	1.85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4.8 (99)	43.9 (175)	28.6 (114)	2.8 (11)	68.7 (274)	31.3 (125)	100.0 (399)
	자녀 없음	21.8 (131)	41.6 (250)	32.8 (197)	3.8 (23)	63.4 (381)	36.6 (220)	100.0 (601)
	χ^2	3.409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4.9 (64)	39.7 (102)	32.7 (84)	2.7 (7)	64.6 (166)	35.4 (91)	100.0 (257)
	300~500만원	18.4 (61)	48.8 (162)	30.1 (100)	2.7 (9)	67.2 (223)	32.8 (109)	100.0 (332)
	500~700만원	27.9 (62)	39.2 (87)	28.4 (63)	4.5 (10)	67.1 (149)	32.9 (73)	100.0 (222)
	700만원 이상	22.8 (43)	39.2 (74)	33.9 (64)	4.2 (8)	61.9 (117)	38.1 (72)	100.0 (189)
	χ^2	13.782						

*** $p < .001$.

거주지역 평가로 전반적인 경제여건(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 중 ‘불만족’이 67.9%로 ‘만족’ 32.1%보다 높았다. ‘다소 불만족’ 47.0%, ‘다소 만족’ 29.5% 순으로 높았다. 권역 기준 수도권의 경우 ‘다소 불만족’ 44.3%, ‘다소 만족’ 33.4% 순으로 높았다. 영남권의 경우 ‘다소 불만족’ 52.4%, ‘매우 불만족’ 25.3% 순으로 높았다. 호남권의 경우 ‘다소 불만족’ 48.7%, ‘매우 불만족’ 29.5% 순으로 높았다. 충청권의 경우 ‘다소 만족’ 40.2%, ‘다소 불만족’ 39.1% 순으로 높았다. 기타권역의 경우 ‘다소 불만족’ 61.4%, ‘다소 만족’ 21.1% 순으로 높았다.

최종학력 기준 고졸 이하의 경우에는 ‘다소 불만족’ 48.9%, ‘매우 불만족’ 25.6% 순으로 높았다. 대졸의 경우 ‘다소 불만족’ 48.8%, ‘다소 만족’ 26.9% 순으로 높았다. 대학원 이상의 경우에는 ‘다소 만족’ 46.8%, ‘다소 불만족’ 36.2% 순으로 높았다.

〈표 III-2-29〉 거주지역 평가_전반적인 경제여건(상황)

단위: %, (명)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전체		20.9 (209)	47.0 (470)	29.5 (295)	2.6 (26)	67.9 (679)	32.1 (321)	100.0 (1000)
성별	여성	19.3 (99)	48.0 (246)	30.0 (154)	2.7 (14)	67.3 (345)	32.7 (168)	100.0 (513)
	남성	22.6 (110)	46.0 (224)	29.0 (141)	2.5 (12)	68.6 (334)	31.4 (153)	100.0 (487)
	χ^2	1.661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연령	25~29세	24.4 (44)	49.4 (89)	23.3 (42)	2.8 (5)	73.9 (133)	26.1 (47)	100.0 (180)
	30~34세	22.7 (50)	45.5 (100)	31.8 (70)	0.0 (0)	68.2 (150)	31.8 (70)	100.0 (220)
	35~39세	19.9 (53)	46.6 (124)	28.9 (77)	4.5 (12)	66.5 (177)	33.5 (89)	100.0 (266)
	40~45세	18.6 (62)	47.0 (157)	31.7 (106)	2.7 (9)	65.6 (219)	34.4 (115)	100.0 (334)
	χ^2	15.582						
권역	수도권	18.4 (101)	44.3 (243)	33.4 (183)	3.8 (21)	62.8 (344)	37.2 (204)	100.0 (548)
	영남권	25.3 (57)	52.4 (118)	20.4 (46)	1.8 (4)	77.8 (175)	22.2 (50)	100.0 (225)
	호남권	29.5 (23)	48.7 (38)	21.8 (17)	0.0 (0)	78.2 (61)	21.8 (17)	100.0 (78)
	충청권	19.6 (18)	39.1 (36)	40.2 (37)	1.1 (1)	58.7 (54)	41.3 (38)	100.0 (92)
	기타권역	17.5 (10)	61.4 (35)	21.1 (12)	0.0 (0)	78.9 (45)	21.1 (12)	100.0 (57)
	χ^2	36.579***						
최종학력	고졸 이하	25.6 (23)	48.9 (44)	24.4 (22)	1.1 (1)	74.4 (67)	25.6 (23)	100.0 (90)
	대졸	21.5 (165)	48.8 (375)	26.9 (207)	2.9 (22)	70.2 (540)	29.8 (229)	100.0 (769)
	대학원 이상	14.9 (21)	36.2 (51)	46.8 (66)	2.1 (3)	51.1 (72)	48.9 (69)	100.0 (141)
	χ^2	25.504***						
혼인상태	미혼	21.5 (101)	47.1 (221)	29.2 (137)	2.1 (10)	68.7 (322)	31.3 (147)	100.0 (469)
	기혼	20.0 (101)	46.4 (235)	30.4 (154)	3.2 (16)	66.4 (336)	33.6 (170)	100.0 (506)
	이혼/사별	28.0 (7)	56.0 (14)	16.0 (4)	0.0 (0)	84.0 (21)	16.0 (4)	100.0 (25)
	χ^2	4.740						
취업상태	취업	20.0 (168)	48.0 (403)	29.2 (245)	2.9 (24)	68.0 (571)	32.0 (269)	100.0 (840)
	비취업	25.6 (41)	41.9 (67)	31.3 (50)	1.3 (2)	67.5 (108)	32.5 (52)	100.0 (160)
	χ^2	4.63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9.5 (78)	46.6 (186)	31.1 (124)	2.8 (11)	66.2 (264)	33.8 (135)	100.0 (399)
	자녀 없음	21.8 (131)	47.3 (284)	28.5 (171)	2.5 (15)	69.1 (415)	30.9 (186)	100.0 (601)
	χ^2	1.224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계 (명)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7.2 (70)	45.1 (116)	27.2 (70)	0.4 (1)	72.4 (186)	27.6 (71)	100.0 (257)
	300~500만원	18.4 (61)	49.4 (164)	29.5 (98)	2.7 (9)	67.8 (225)	32.2 (107)	100.0 (332)
	500~700만원	19.4 (43)	48.6 (108)	28.4 (63)	3.6 (8)	68.0 (151)	32.0 (71)	100.0 (222)
	700만원 이상	18.5 (35)	43.4 (82)	33.9 (64)	4.2 (8)	61.9 (117)	38.1 (72)	100.0 (189)
	χ^2	17.369*						

* $p < .05$, *** $p < .001$.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 ‘부정’이 59.6%로 40.4%인 ‘긍정’보다 높았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47.7%, ‘하는 것이 낫다’ 34.1% 순으로 높았다.

여성의 경우 ‘하지 않아도 괜찮다’ 56.3%로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하는 것이 낫다’ 25.3%가 많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하는 것이 낫다’가 4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 38.6% 였다. 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부정’ 45.8%에 비해 ‘긍정’ 54.2%가 더 높았다.

연령 기준 25~29세의 경우 ‘하지 않아도 괜찮다’ 47.8%, ‘하는 것이 낫다’ 28.3% 순으로 높았다. 결혼에 대해 ‘부정’ 비중이 68.9%로 연령대 그룹 중 가장 높았다. 30~34세의 경우 ‘하지 않아도 괜찮다’가 53.6%로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낫다’ 28.6%가 높았다. 35~39세의 경우 ‘하지 않아도 괜찮다’ 47.7%, ‘하는 것이 낫다’ 33.5% 순으로 높았다. 40~45세의 경우 ‘하지 않아도 괜찮다’ 43.7%, ‘하는 것이 낫다’ 41.3% 순으로 높았다. 40~45세의 경우 결혼에 대해 ‘부정’ 50.6%와 ‘긍정’ 49.4% 비중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혼인 상태 기준 미혼의 경우 ‘하지 않아도 괜찮다’ 50.7%, ‘하는 것이 낫다’ 27.9% 순으로 높았다. 기혼의 경우 ‘하지 않아도 괜찮다’ 44.9%, ‘하는 것이 낫다’ 39.9% 순으로 높았는데, 결혼에 대해 ‘부정’ 50.6%와 ‘긍정’ 49.4%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이혼/사별의 경우 ‘하지 않아도 괜찮다’ 48.0%, ‘하는 것이 낫다’ 32.0% 순으로 높았다.

자녀 유무 기준 자녀 있음의 경우에는 ‘하는 것이 낫다’ 41.1%, ‘하지 않아도 괜찮다’ 42.4% 순으로 높았다. 자녀 없음의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51.2%, ‘하는 것이 낫다’ 29.5% 순으로 높았다.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하지 않아도 괜찮다’ 55.6%, ‘하는 것이 낫다’ 25.3% 순으로 높았다. 300~500만원인 경우 ‘하지 않아도 괜찮다’ 49.4%, ‘하는 것이 낫다’ 35.5% 순으로 높았다. 500~700만원인 경우 ‘하지 않아도 괜찮다’ 43.2%, ‘하는 것이 낫다’ 41.0% 순으로 높았다. 700만원 이상인 경우 ‘하지 않아도 괜찮다’ 39.2%, ‘하는 것이 낫다’ 35.4% 순으로 높았다.

〈표 III-2-30〉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① 꼭 해야 한다	② 하는 것이 낫다	③ 하지 않아도 괜찮다	④ 안 하는 것이 낫다	①+② 긍정	③+④ 부정	계 (명)
전체		6.3 (63)	34.1 (341)	47.7 (477)	11.9 (119)	40.4 (404)	59.6 (596)	100.0 (1,000)
성별	여성	1.9 (10)	25.3 (130)	56.3 (289)	16.4 (84)	27.3 (140)	72.7 (373)	100.0 (513)
	남성	10.9 (53)	43.3 (211)	38.6 (188)	7.2 (35)	54.2 (264)	45.8 (223)	100.0 (487)
	χ^2	89.536***						
연령	25~29세	2.8 (5)	28.3 (51)	47.8 (86)	21.1 (38)	31.1 (56)	68.9 (124)	100.0 (180)
	30~34세	4.1 (9)	28.6 (63)	53.6 (118)	13.6 (30)	32.7 (72)	67.3 (148)	100.0 (220)
	35~39세	8.3 (22)	33.5 (89)	47.7 (127)	10.5 (28)	41.7 (111)	58.3 (155)	100.0 (266)
	40~45세	8.1 (27)	41.3 (138)	43.7 (146)	6.9 (23)	49.4 (165)	50.6 (169)	100.0 (334)
	χ^2	40.998***						
권역	수도권	6.6 (36)	34.5 (189)	46.4 (254)	12.6 (69)	41.1 (225)	58.9 (323)	100.0 (548)
	영남권	4.9 (11)	32.4 (73)	52.4 (118)	10.2 (23)	37.3 (84)	62.7 (141)	100.0 (225)
	호남권	7.7 (6)	32.1 (25)	47.4 (37)	12.8 (10)	39.7 (31)	60.3 (47)	100.0 (78)
	충청권	7.6 (7)	37.0 (34)	45.7 (42)	9.8 (9)	44.6 (41)	55.4 (51)	100.0 (92)
	기타권역	5.3 (3)	35.1 (20)	45.6 (26)	14.0 (8)	40.4 (23)	59.6 (34)	100.0 (57)
	χ^2	4.677						

구분		① 꼭 해야 한다	② 하는 것이 낫다	③ 하지 않아도 괜찮다	④ 안 하는 것이 낫다	①+② 긍정	③+④ 부정	계 (명)
최종학력	고졸 이하	6.7 (6)	27.8 (25)	54.4 (49)	11.1 (10)	34.4 (31)	65.6 (59)	100.0 (90)
	대졸	5.5 (42)	33.6 (258)	48.6 (374)	12.4 (95)	39.0 (300)	61.0 (469)	100.0 (769)
	대학원 이상	10.6 (15)	41.1 (58)	38.3 (54)	9.9 (14)	51.8 (73)	48.2 (68)	100.0 (141)
	χ^2	12.511						
혼인상태	미혼	3.0 (14)	27.9 (131)	50.7 (238)	18.3 (86)	30.9 (145)	69.1 (324)	100.0 (469)
	기혼	9.5 (48)	39.9 (202)	44.9 (227)	5.7 (29)	49.4 (250)	50.6 (256)	100.0 (506)
	이혼/사별	4.0 (1)	32.0 (8)	48.0 (12)	16.0 (4)	36.0 (9)	64.0 (16)	100.0 (25)
	χ^2	61.468***						
취업상태	취업	6.9 (58)	35.0 (294)	46.0 (386)	12.1 (102)	41.9 (352)	58.1 (488)	100.0 (840)
	비취업	3.1 (5)	29.4 (47)	56.9 (91)	10.6 (17)	32.5 (52)	67.5 (108)	100.0 (160)
	χ^2	7.91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3 (37)	41.1 (164)	42.4 (169)	7.3 (29)	50.4 (201)	49.6 (198)	100.0 (399)
	자녀 없음	4.3 (26)	29.5 (177)	51.2 (308)	15.0 (90)	33.8 (203)	66.2 (398)	100.0 (601)
	χ^2	34.80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9 (10)	25.3 (65)	55.6 (143)	15.2 (39)	29.2 (75)	70.8 (182)	100.0 (257)
	300~500만원	5.1 (17)	35.5 (118)	49.4 (164)	9.9 (33)	40.7 (135)	59.3 (197)	100.0 (332)
	500~700만원	5.9 (13)	41.0 (91)	43.2 (96)	9.9 (22)	46.8 (104)	53.2 (118)	100.0 (222)
	700만원 이상	12.2 (23)	35.4 (67)	39.2 (74)	13.2 (25)	47.6 (90)	52.4 (99)	100.0 (189)
	χ^2	34.572***						

* $p < .05$, *** $p < .001$.

미혼자들이 결혼하는 데 느낄 어려움을 조사해 본 결과, ‘주택 마련’ 52.5%, ‘일가정 양립 문화 미흡’ 18.0% 순으로 많았다. 여성의 경우 ‘주택마련’ 48.8%, ‘일가정 양립 문화 미흡’ 24.1% 순으로 많았다. 남성의 경우 ‘주택마련’ 58.7%, ‘자신 또는 배우자의 고용 문제’ 17.0% 순으로 많았다. 혼인 상태 기준 미혼의 경우 주택 마련 49.7%, ‘일가정 양립 문화 미흡’ 18.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혼의 경우

주택 마련' 57.0%, '일가정 양립 문화 미흡' 16.4% 순으로 많았다. 취업 상태 기준 취업의 경우 주택 마련' 54.1%, '일가정 양립 문화 미흡' 1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의 경우 주택 마련' 45.4%, '자신 또는 배우자의 고용 문제' 2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 기준 300만원 미만인 경우 '주택 마련' 47.8%, '자신 또는 배우자의 고용 문제' 21.4% 순이었고, 300~500만원인 경우 '주택 마련' 51.8%, '일가정 양립 문화 미흡' 1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00~700만원인 경우 '주택 마련' 62.7%, '일가정 양립 문화 미흡' 14.4% 순으로 많았다. 700만원 이상인 경우 '주택 마련' 50.5%, '일가정 양립 문화 미흡' 28.3% 순으로 높게 나타나, 대부분 '주택 마련'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표 III-2-31〉 미혼자들이 결혼하는 데 느낀 어려움

구분		주택 마련	일가정 양립 문화 미흡	자신 또는 배우자의 고용 문제	가족 및 양육 친화환경 미흡	자녀 교육비 문제	기타	장시간 근로	계 (명)
성별	전체	52.5 (313)	18.0 (107)	15.3 (91)	5.5 (33)	3.7 (22)	3.7 (22)	1.3 (8)	100.0 (596)
	여성	48.8 (182)	24.1 (90)	14.2 (53)	5.6 (21)	2.7 (10)	3.8 (14)	0.8 (3)	100.0 (373)
	남성	58.7 (131)	7.6 (17)	17.0 (38)	5.4 (12)	5.4 (12)	3.6 (8)	2.2 (5)	100.0 (223)
χ^2		29.474***							
연령	25~29세	48.4 (60)	19.4 (24)	14.5 (18)	3.2 (4)	5.6 (7)	7.3 (9)	1.6 (2)	100.0 (124)
	30~34세	60.8 (90)	16.9 (25)	11.5 (17)	6.8 (10)	0.7 (1)	2.7 (4)	0.7 (1)	100.0 (148)
	35~39세	54.2 (84)	17.4 (27)	15.5 (24)	4.5 (7)	3.9 (6)	2.6 (4)	1.9 (3)	100.0 (155)
	40~45세	46.7 (79)	18.3 (31)	18.9 (32)	7.1 (12)	4.7 (8)	3.0 (5)	1.2 (2)	100.0 (169)
χ^2		21.185							
권역	수도권	54.2 (175)	19.5 (63)	13.3 (43)	4.3 (14)	3.4 (11)	4.0 (13)	1.2 (4)	100.0 (323)
	영남권	55.3 (78)	13.5 (19)	16.3 (23)	5.0 (7)	4.3 (6)	4.3 (6)	1.4 (2)	100.0 (141)
	호남권	40.4 (19)	19.1 (9)	21.3 (10)	8.5 (4)	4.3 (2)	4.3 (2)	2.1 (1)	100.0 (47)
	충청권	45.1 (23)	19.6 (10)	21.6 (11)	9.8 (5)	2.0 (1)	0.0 (0)	2.0 (1)	100.0 (51)
	기타권역	52.9 (18)	17.6 (6)	11.8 (4)	8.8 (3)	5.9 (2)	2.9 (1)	0.0 (0)	100.0 (34)
χ^2		16.121							
최종학력	고졸 이하	52.5 (31)	15.3 (9)	20.3 (12)	6.8 (4)	1.7 (1)	1.7 (1)	1.7 (1)	100.0 (59)
	대졸	52.7 (247)	17.3 (81)	14.5 (68)	5.8 (27)	3.8 (18)	4.5 (21)	1.5 (7)	100.0 (469)
	대학원 이상	51.5 (35)	25.0 (17)	16.2 (11)	2.9 (2)	4.4 (3)	0.0 (0)	0.0 (0)	100.0 (68)
χ^2		10.242							
혼인상태	미혼	49.7 (161)	18.8 (61)	17.3 (56)	4.0 (13)	3.4 (11)	5.2 (17)	1.5 (5)	100.0 (324)
	기혼	57.0 (146)	16.4 (42)	13.7 (35)	5.9 (15)	3.9 (10)	2.0 (5)	1.2 (3)	100.0 (256)
	이혼/사별	37.5 (6)	25.0 (4)	0.0 (0)	31.3 (5)	6.3 (1)	0.0 (0)	0.0 (0)	100.0 (16)
χ^2		32.911**							

단위: %, (명)

구분	주택 마련	일가정 양립 문화 미흡	자신 또는 배우자의 고용 문제	가족 및 양육 친화환경 미흡	자녀 교육비 문제	기타	장시간 근로	계 (명)
취업상태	취업	54.1 (264)	19.1 (93)	12.9 (63)	5.3 (26)	3.9 (19)	1.0 (5)	100.0 (488)
	비취업	45.4 (49)	13.0 (14)	25.9 (28)	6.5 (7)	2.8 (3)	2.8 (3)	100.0 (108)
χ^2 15.4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54.0 (107)	17.7 (35)	11.6 (23)	9.6 (19)	4.5 (9)	0.5 (1)	100.0 (198)
	자녀 없음	51.8 (206)	18.1 (72)	17.1 (68)	3.5 (14)	3.3 (13)	1.8 (7)	100.0 (398)
χ^2 15.93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7.8 (87)	14.8 (27)	21.4 (39)	5.5 (10)	3.8 (7)	1.6 (3)	100.0 (182)
	300~500만원	51.8 (102)	17.8 (35)	15.7 (31)	5.6 (11)	5.1 (10)	2.0 (4)	100.0 (197)
	500~700만원	62.7 (74)	14.4 (17)	11.9 (14)	5.1 (6)	3.4 (4)	0.0 (0)	100.0 (118)
	700만원 이상	50.5 (50)	28.3 (28)	7.1 (7)	6.1 (6)	1.0 (1)	1.0 (1)	100.0 (99)
χ^2 30.455*								

* $p < .05$, ** $p < .01$, *** $p < .001$.

자녀 출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 ‘긍정’이 50.1%로 ‘부정’ 49.9%보다 많았다. ‘없어도 괜찮다’ 41.1%, ‘있는 것이 낫다’ 36.2% 순으로 많았다.

여성의 경우 ‘없어도 괜찮다’ 52.0%, ‘있는 것이 낫다’ 28.7% 순으로 높았다. 여성의 경우 자녀 출생에 대해 ‘부정’하는 인식이 63.7%로 ‘긍정’ 36.3%보다 높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있는 것이 낫다’ 44.1%, ‘없어도 괜찮다’ 29.6% 순으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 출생에 대해 ‘긍정’하는 인식이 64.7%로 ‘부정’ 35.3%보다 높았다.

연령 기준에서 25~29세는 ‘없어도 괜찮다’ 48.9%, ‘있는 것이 낫다’ 26.7% 순으로 높았다. 30~34세는 ‘없어도 괜찮다’ 50.5%, ‘있는 것이 낫다’ 28.6% 순으로 높았다. 25~29세와 30~34세의 경우 자녀 출생에 대해 ‘긍정’하는 인식이 약 30.0%로 ‘부정’ 약 60.0%보다 낮았다. 35~39세는 ‘있는 것이 낫다’ 38.0%, ‘없어도 괜찮다’ 36.5% 순으로 높았다. 40~45세는 ‘있는 것이 낫다’ 44.9%, ‘없어도 괜찮다’ 34.4% 순으로 높았다. 35~39세와 40~45세는 자녀 출생에 대해 ‘긍정’하는 인식이 각각 56.8%, 62.3%로 ‘부정’ 43.2%, 37.7%보다 높았다.

혼인 상태 기준 미혼인 경우 ‘없어도 괜찮다’ 48.0%, ‘있는 것이 낫다’ 30.1% 순으로 높았다. 기혼인 경우 ‘있는 것이 낫다’ 41.9%, ‘없어도 괜찮다’ 35.0% 순으로 높았다. 이혼/사별인 경우 ‘있는 것이 낫다’, ‘없어도 괜찮다’ 모두 36.0% 이고, ‘꼭 있어야 한다’ 20.0% 순으로 높았다. 미혼인 경우만 자녀 출생에 대해 ‘부정’이 ‘긍정’에 비해 높았고, 기혼 및 이혼/사별의 경우 ‘긍정’이 ‘부정’에 비해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있는 것이 낫다’ 44.1%, ‘없어도 괜찮다’ 28.3% 순으로 높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 ‘없어도 괜찮다’ 49.6%, ‘있는 것이 낫다’ 30.9% 순으로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긍정’이 67.9%로 ‘부정’ 32.1%보다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부정’이 61.7%로 ‘긍정’ 38.3%보다 높았다.

〈표 III-2-32〉 자녀 출생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것이 낮다	③ 없어도 괜찮다	④ 없는 것이 낮다	①+② 긍정	③+④ 부정	계 (명)
전체		13.9 (139)	36.2 (362)	41.1 (411)	8.8 (88)	50.1 (501)	49.9 (499)	100.0 (1000)
성별	여성	7.6 (39)	28.7 (147)	52.0 (267)	11.7 (60)	36.3 (186)	63.7 (327)	100.0 (513)
	남성	20.5 (100)	44.1 (215)	29.6 (144)	5.7 (28)	64.7 (315)	35.3 (172)	100.0 (487)
	χ^2	87.373***						
연령	25~29세	5.6 (10)	26.7 (48)	48.9 (88)	18.9 (34)	32.2 (58)	67.8 (122)	100.0 (180)
	30~34세	9.5 (21)	28.6 (63)	50.5 (111)	11.4 (25)	38.2 (84)	61.8 (136)	100.0 (220)
	35~39세	18.8 (50)	38.0 (101)	36.5 (97)	6.8 (18)	56.8 (151)	43.2 (115)	100.0 (266)
	40~45세	17.4 (58)	44.9 (150)	34.4 (115)	3.3 (11)	62.3 (208)	37.7 (126)	100.0 (334)
	χ^2	82.284***						
권역	수도권	12.6 (69)	36.3 (199)	40.9 (224)	10.2 (56)	48.9 (268)	51.1 (280)	100.0 (548)
	영남권	14.2 (32)	33.8 (76)	44.4 (100)	7.6 (17)	48.0 (108)	52.0 (117)	100.0 (225)
	호남권	19.2 (15)	35.9 (28)	35.9 (28)	9.0 (7)	55.1 (43)	44.9 (35)	100.0 (78)
	충청권	18.5 (17)	39.1 (36)	39.1 (36)	3.3 (3)	57.6 (53)	42.4 (39)	100.0 (92)
	기타권역	10.5 (6)	40.4 (23)	40.4 (23)	8.8 (5)	50.9 (29)	49.1 (28)	100.0 (57)
	χ^2	11.086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4.4 (13)	36.7 (33)	37.8 (34)	11.1 (10)	51.1 (46)	48.9 (44)	100.0 (90)
	대졸	13.0 (100)	35.1 (270)	42.7 (328)	9.2 (71)	48.1 (370)	51.9 (399)	100.0 (769)
	대학원 이상	18.4 (26)	41.8 (59)	34.8 (49)	5.0 (7)	60.3 (85)	39.7 (56)	100.0 (141)
	χ^2	9.195						
혼인 상태	미혼	7.2 (34)	30.1 (141)	48.0 (225)	14.7 (69)	37.3 (175)	62.7 (294)	100.0 (469)
	기혼	19.8 (100)	41.9 (212)	35.0 (177)	3.4 (17)	61.7 (312)	38.3 (194)	100.0 (506)
	이혼/사별	20.0 (5)	36.0 (9)	36.0 (9)	8.0 (2)	56.0 (14)	44.0 (11)	100.0 (25)
	χ^2	83.348***						

구분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것이 낮다	③ 없어도 괜찮다	④ 없는 것이 낮다	①+② 긍정	③+④ 부정	계 (명)
취업 상태	취업	14.9 (125)	36.0 (302)	40.6 (341)	8.6 (72)	50.8 (427)	49.2 (413)	100.0 (840)
	비취업	8.8 (14)	37.5 (60)	43.8 (70)	10.0 (16)	46.3 (74)	53.8 (86)	100.0 (160)
	χ^2	4.36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3.8 (95)	44.1 (176)	28.3 (113)	3.8 (15)	67.9 (271)	32.1 (128)	100.0 (399)
	자녀 없음	7.3 (44)	30.9 (186)	49.6 (298)	12.1 (73)	38.3 (230)	61.7 (371)	100.0 (601)
	χ^2	103.925***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9.3 (24)	30.0 (77)	49.4 (127)	11.3 (29)	39.3 (101)	60.7 (156)	100.0 (257)
	300~500만원	12.7 (42)	40.4 (134)	39.8 (132)	7.2 (24)	53.0 (176)	47.0 (156)	100.0 (332)
	500~700만원	18.5 (41)	36.5 (81)	37.4 (83)	7.7 (17)	55.0 (122)	45.0 (100)	100.0 (222)
	700만원 이상	16.9 (32)	37.0 (70)	36.5 (69)	9.5 (18)	54.0 (102)	46.0 (87)	100.0 (189)
	χ^2	22.555**						

** $p < .01$, *** $p < .001$.

자녀 출생에 대한 긍정 인식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자녀 있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46.3%,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가치/보람 있기 때문에’ 34.3% 순으로 높았다.

혼인 상태 기준 미혼인 경우 ‘자녀 있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44.0%,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가치/보람 있기 때문에’ 27.4% 순으로 높았다. 기혼인 경우 ‘자녀 있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47.4%,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가치/보람 있기 때문에’ 39.1% 순으로 높았다. 이혼/사별인 경우 ‘자녀 있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50.0%,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21.4%,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가치/보람 있기 때문에’와 ‘노후에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가 모두 14.3%를 차지했다. 자녀 유무 기준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있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46.9%,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가치/보람 있기 때문에’ 41.3% 순으로 높았다. 자녀가 없을 경우 ‘자녀 있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45.7%,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가치/보람 있기 때문에’ 26.1% 순으로 높았다.

〈표 III-2-33〉 자녀 출생에 대한 긍정 인식 이유

구분		자녀 있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가치/보람 있기 때문에	가족의 화목을 위해	노년 생활 같이	노후에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기문의 대를 이어야 하므로	기타	대부분이 자녀를 낳으므로	계 (명)
성별	전체	46.3 (232)	34.3 (172)	8.8 (44)	4.2 (21)	2.0 (10)	1.8 (9)	1.4 (7)	1.2 (6)	100.0 (501)
	여성	46.8 (87)	33.9 (63)	6.5 (12)	5.4 (10)	3.2 (6)	1.6 (3)	0.5 (1)	2.2 (4)	100.0 (186)
	남성	46.0 (145)	34.6 (109)	10.2 (32)	3.5 (11)	1.3 (4)	1.9 (6)	1.9 (6)	0.6 (2)	100.0 (315)
		8.957								
연령	25~29세	51.7 (30)	19.0 (11)	10.3 (6)	5.2 (3)	5.2 (3)	3.4 (2)	1.7 (1)	3.4 (2)	100.0 (58)
	30~34세	50.0 (42)	27.4 (23)	8.3 (7)	8.3 (7)	1.2 (1)	2.4 (2)	1.2 (1)	1.2 (1)	100.0 (84)
	35~39세	45.7 (69)	36.4 (55)	8.6 (13)	2.6 (4)	2.0 (3)	1.3 (2)	2.0 (3)	1.3 (2)	100.0 (151)
	40~45세	43.8 (91)	39.9 (83)	8.7 (18)	3.4 (7)	1.4 (3)	1.4 (3)	1.0 (2)	0.5 (1)	100.0 (208)
		22.114								
권역	수도권	43.7 (117)	38.1 (102)	8.2 (22)	4.5 (12)	1.9 (5)	1.9 (5)	0.4 (1)	1.5 (4)	100.0 (268)
	영남권	49.1 (53)	32.4 (35)	9.3 (10)	4.6 (5)	0.9 (1)	0.9 (1)	1.9 (2)	0.9 (1)	100.0 (108)
	호남권	46.5 (20)	30.2 (13)	9.3 (4)	4.7 (2)	4.7 (2)	2.3 (1)	0.0 (0)	2.3 (1)	100.0 (43)
	충청권	56.6 (30)	24.5 (13)	5.7 (3)	3.8 (2)	0.0 (0)	3.8 (2)	5.7 (3)	0.0 (0)	100.0 (53)
	기타권역	41.4 (12)	31.0 (9)	17.2 (5)	0.0 (0)	6.9 (2)	0.0 (0)	3.4 (1)	0.0 (0)	100.0 (29)
		30.544								
최종학력	고졸 이하	32.6 (15)	30.4 (14)	19.6 (9)	8.7 (4)	4.3 (2)	4.3 (2)	0.0 (0)	0.0 (0)	100.0 (46)
	대졸	46.5 (172)	34.6 (128)	8.6 (32)	4.1 (15)	1.9 (7)	1.4 (5)	1.4 (5)	1.6 (6)	100.0 (370)
	대학원 이상	52.9 (45)	35.3 (30)	3.5 (3)	2.4 (2)	1.2 (1)	2.4 (2)	2.4 (2)	0.0 (0)	100.0 (85)
		21.735								
혼인상태	미혼	44.0 (77)	27.4 (48)	9.7 (17)	7.4 (13)	4.0 (7)	4.6 (8)	1.7	1.1 (2)	100.0 (175)
	기혼	47.4 (148)	39.1 (122)	7.7 (24)	2.6 (8)	0.3 (1)	0.3 (1)	1.3 (4)	1.3 (4)	100.0 (312)

구분	자녀 있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 낳아 키우는 것이 가치/보람 있기 때문에	가족의 화목을 위해	노년 이웃과 함께 살기	노후에 나 를 부양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므로	기타	대부분이 자녀를 낳으므로	계 (명)
	이혼/사별 χ^2	이혼/사별 χ^2	이혼/사별 χ^2	이혼/사별 χ^2	이혼/사별 χ^2	이혼/사별 χ^2	이혼/사별 χ^2	이혼/사별 χ^2	이혼/사별 χ^2
취업상태	50.0 (7)	14.3 (2)	21.4 (3)	0.0 (0)	14.3 (2)	0.0 (0)	0.0 (0)	0.0 (0)	100.0 (14)
	46.8 (200)	34.4 (147)	8.9 (38)	3.5 (147)	1.6 (7)	1.9 (8)	1.6 (7)	1.2 (5)	100.0 (427)
자녀 유무	43.2 (32)	33.8 (25)	8.1 (6)	8.1 (6)	4.1 (3)	1.4 (1)	0.0 (0)	1.4 (1)	100.0 (74)
	46.9 (127)	41.3 (112)	7.4 (20)	1.5 (4)	0.4 (1)	0.4 (1)	1.1 (3)	1.1 (3)	100.0 (271)
가구소득	45.7 (105)	26.1 (60)	10.4 (24)	7.4 (17)	3.9 (9)	3.5 (8)	1.7 (4)	1.3 (3)	100.0 (230)
	43.6 (44)	28.7 (29)	9.9 (10)	5.9 (6)	6.9 (7)	3.0 (3)	0.0 (0)	2.0 (2)	100.0 (101)
	47.7 (84)	31.3 (55)	10.2 (18)	4.0 (7)	0.6 (1)	2.3 (4)	2.8 (5)	1.1 (2)	100.0 (176)
	45.9 (56)	41.0 (50)	9.0 (11)	0.8 (1)	0.0 (0)	0.8 (1)	0.8 (1)	1.6 (2)	100.0 (122)
	47.1 (48)	37.3 (38)	4.9 (5)	6.9 (7)	2.0 (2)	1.0 (1)	1.0 (1)	0.0 (0)	100.0 (102)

* $p < .05$. *** $p < .001$.

자녀 출생에 대한 부정 인식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경제적 부담’ 36.7%, ‘본인 혹은 부부의 삶에 집중하고자’ 16.2% 순으로 높았다. 여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 28.4%, ‘사회 및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성평등 인식 부족’ 15.9% 순으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 52.3%, ‘본인 혹은 부부의 삶에 집중하고자’ 18.6% 순으로 높았다. 혼인 상태 기준 미혼인 경우 ‘경제적 부담’ 35.7%, ‘본인 혹은 부부의 삶에 집중하고자’ 17.0% 순으로 높았다. 기혼인 경우 ‘경제적 부담’ 38.7%, ‘자녀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17.5% 순으로 높았다. 이혼/사별의 경우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종사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 45.5%, ‘경제적 부담’ 27.3% 순으로 높았다. 자녀 유무 기준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적 부담’ 32.0%, ‘자녀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20.3% 순으로 높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 ‘경제적 부담’ 38.3%, ‘본인 혹은 부부의 삶에 집중하고자’ 17.3% 순으로 높았다.

〈표 III-2-34〉 자녀 출생에 대한 부정 인식 이유

단위: %, (명)								
구분	경제적 부담	보인 혹은 부부의 삶에 집중하고자	자녀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사회 및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성평등 인식 부족	자녀가 없어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종사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	사회의 양육친화환경 조성 미흡	기타
성별	전체	36.7 (183)	16.2 (81)	11.8 (59)	11.2 (56)	9.4 (47)	9.0 (45)	2.4 (12)
	여성	28.4 (93)	15.0 (49)	12.5 (41)	15.9 (52)	10.7 (35)	11.9 (39)	2.1 (7)
	남성	52.3 (90)	18.6 (32)	10.5 (18)	2.3 (4)	7.0 (12)	3.5 (6)	2.9 (5)
χ^2 48.276***								
연령	25~29세	41.8 (51)	13.1 (16)	5.7 (7)	17.2 (21)	5.7 (7)	9.8 (12)	4.1 (5)
	30~34세	44.9 (61)	16.9 (23)	11.0 (15)	9.6 (13)	6.6 (9)	6.6 (9)	0.7 (1)
	35~39세	32.2 (37)	17.4 (20)	13.9 (16)	10.4 (12)	13.9 (16)	7.8 (9)	3.5 (4)
	40~45세	27.0 (34)	17.5 (22)	16.7 (21)	7.9 (10)	11.9 (15)	11.9 (15)	3.2 (4)
χ^2 34.038*								
권역	수도권	37.1 (104)	16.8 (47)	11.8 (33)	13.2 (37)	8.6 (24)	8.6 (24)	2.1 (6)
	영남권	36.8	17.1	13.7	9.4	8.5	6.8	4.3
100.0								

구분	경제적 부담	본인 혹은 부부의 삶에 집중하고자	자녀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사회 및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성평등 인식 부족	자녀가 없어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종사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	사회의 양육친화환경 조성 미흡	기타	계 (명)
	호남권	(43) 40.0 (14)	(20) 11.4 (4)	(16) 5.7 (2)	(11) 8.6 (3)	(10) 22.9 (8)	(8) 5.7 (2)	(5) 0.0 (0)	(117) 100.0 (35)
	충청권	33.3 (13)	15.4 (6)	5.1 (2)	7.7 (3)	10.3 (4)	17.9 (7)	5.1 (2)	100.0 (39)
	기타권역	32.1 (9)	14.3 (4)	21.4 (6)	7.1 (2)	3.6 (1)	14.3 (4)	0.0 (0)	100.0 (28)
	χ^2					30.429			
최종학력	고졸 이하	38.6 (17)	13.6 (6)	15.9 (7)	4.5 (2)	20.5 (9)	4.5 (2)	2.3 (1)	0.0 (0)
	대졸	38.6 (154)	15.8 (63)	11.8 (47)	12.0 (48)	6.8 (27)	9.8 (39)	2.8 (11)	2.5 (10)
	대학원 이상	21.4 (12)	21.4 (12)	8.9 (5)	10.7 (6)	19.6 (11)	7.1 (4)	7.1 (4)	3.6 (2)
	χ^2					28.972*			
혼인상태	미혼	35.7 (105)	17.0 (50)	7.8 (23)	13.6 (40)	11.6 (34)	8.5 (25)	3.7 (11)	2.0 (6)
	기혼	38.7 (75)	16.0 (31)	17.5 (34)	7.7 (15)	6.7 (13)	7.7 (15)	2.6 (5)	3.1 (6)
	이혼/사별	27.3 (3)	0.0 (0)	18.2 (2)	9.1 (1)	0.0 (0)	45.5 (5)	0.0 (0)	0.0 (1)
	χ^2					38.072***			

구분		경제적 부담	본인 혹은 부부의 삶에 집중하고자	자녀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사회 및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성평등 인식 부족	자녀가 없어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종사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	사회의 양육친화환경 조성 미흡	기타	계 (명)
취업상태	취업	35.4 (146)	14.8 (61)	12.3 (51)	11.9 (49)	10.4 (43)	9.7 (40)	2.7 (11)	2.9 (12)	100.0 (413)
	비취업	43.0 (37)	23.3 (20)	9.3 (8)	8.1 (7)	4.7 (4)	5.8 (5)	5.8 (5)	0.0 (0)	100.0 (86)
χ^2		14.13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2.0 (41)	13.3 (17)	20.3 (26)	8.6 (11)	7.0 (9)	13.3 (17)	2.3 (3)	3.1 (4)	100.0 (128)
	자녀 없음	38.3 (142)	17.3 (64)	8.9 (33)	12.1 (45)	10.2 (38)	7.5 (28)	3.5 (13)	2.2 (8)	100.0 (371)
χ^2		18.77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4.6 (54)	17.9 (28)	8.3 (13)	10.3 (16)	12.8 (20)	7.7 (12)	5.8 (9)	2.6 (4)	100.0 (156)
	300~500만원	44.2 (69)	14.7 (23)	10.9 (17)	10.9 (17)	7.1 (11)	7.7 (12)	2.6 (4)	1.9 (3)	100.0 (156)
	500~700만원	39.0 (39)	16.0 (16)	15.0 (15)	9.0 (9)	8.0 (8)	11.0 (11)	1.0 (1)	1.0 (1)	100.0 (100)
	700만원 이상	24.1 (21)	16.1 (14)	16.1 (14)	16.1 (14)	9.2 (8)	11.5 (10)	2.3 (2)	4.6 (4)	100.0 (87)
χ^2		25.886								

* $p < .05$, ** $p < .01$, *** $p < .001$.

아동 친화도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아니오’가 82.9%로 ‘예’ 17.1%보다 많았다. 자녀 유무 기준 자녀가 있는 경우 ‘예’ 22.6%, ‘아니오’ 77.4%, 자녀가 없는 경우 ‘예’ 13.5%, ‘아니오’ 86.5%로 나타났다.

〈표 III-2-35〉 친화도시 인지도_아동친화도시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명)	
전체		17.1	(171)	82.9	(829)	100.0	(1,000)
성별	여성	17.0	(87)	83.0	(426)	100.0	(513)
	남성	17.2	(84)	82.8	(403)	100.0	(487)
	χ^2	0.015					
연령	25~29세	16.7	(30)	83.3	(150)	100.0	(180)
	30~34세	13.2	(29)	86.8	(191)	100.0	(220)
	35~39세	20.7	(55)	79.3	(211)	100.0	(266)
	40~45세	17.1	(57)	82.9	(277)	100.0	(334)
	χ^2	4.807					
권역	수도권	19.0	(104)	81.0	(444)	100.0	(548)
	영남권	14.2	(32)	85.8	(193)	100.0	(225)
	호남권	19.2	(15)	80.8	(63)	100.0	(78)
	충청권	14.1	(13)	85.9	(79)	100.0	(92)
	기타권역	12.3	(7)	87.7	(50)	100.0	(57)
	χ^2	4.43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4	(13)	85.6	(77)	100.0	(90)
	대졸	16.8	(129)	83.2	(640)	100.0	(769)
	대학원 이상	20.6	(29)	79.4	(112)	100.0	(141)
	χ^2	1.701					
혼인상태	미혼	14.1	(66)	85.9	(403)	100.0	(469)
	기혼	19.8	(100)	80.2	(406)	100.0	(506)
	이혼/사별	20.0	(5)	80.0	(20)	100.0	(25)
	χ^2	5.712					
취업상태	취업	17.4	(146)	82.6	(694)	100.0	(840)
	비취업	15.6	(25)	84.4	(135)	100.0	(160)
	χ^2	0.29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2.6	(90)	77.4	(309)	100.0	(399)
	자녀 없음	13.5	(81)	86.5	(520)	100.0	(601)
	χ^2	13.94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5.2	(39)	84.8	(218)	100.0	(257)
	300~500만원	17.5	(58)	82.5	(274)	100.0	(332)
	500~700만원	16.7	(37)	83.3	(185)	100.0	(222)
	700만원 이상	19.6	(37)	80.4	(152)	100.0	(189)
	χ^2	1.551					

*** $p < .001$.

여성 친화도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아니오’가 75.9%로 ‘예’ 24.1%보다 많았다. 권역 기준 수도권의 경우 ‘아니오’ 72.6%, ‘예’ 27.4%이다. 영남권의 경우 ‘아니오’ 85.8%, ‘예’ 14.2%이다. 호남권의 경우 ‘아니오’ 66.7%, ‘예’ 33.3%이다. 충청권의 경우 ‘아니오’ 77.2%, ‘예’ 22.8%이다. 기타 권역의 경우 ‘아니오’ 78.9%, ‘예’ 21.1%이다. 취업 상태 기준 취업의 경우 ‘아니오’ 74.3%, ‘예’ 25.7%이고, 비취업의 경우 ‘아니오’ 84.4%, ‘예’ 15.6%이다.

〈표 III-2-36〉 친화도시 인지도_여성친화도시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명)	
전체		24.1	(241)	75.9	(759)	100.0	(1,000)
성별	여성	23.2	(119)	76.8	(394)	100.0	(513)
	남성	25.1	(122)	74.9	(365)	100.0	(487)
	χ^2	0.470					
연령	25~29세	23.9	(43)	76.1	(137)	100.0	(180)
	30~34세	19.1	(42)	80.9	(178)	100.0	(220)
	35~39세	25.2	(67)	74.8	(199)	100.0	(266)
	40~45세	26.6	(89)	73.4	(245)	100.0	(334)
	χ^2	4.379					
권역	수도권	27.4	(150)	72.6	(398)	100.0	(548)
	영남권	14.2	(32)	85.8	(193)	100.0	(225)
	호남권	33.3	(26)	66.7	(52)	100.0	(78)
	충청권	22.8	(21)	77.2	(71)	100.0	(92)
	기타권역	21.1	(12)	78.9	(45)	100.0	(57)
	χ^2	19.216***					
최종학력	고졸 이하	25.6	(23)	74.4	(67)	100.0	(90)
	대졸	22.8	(175)	77.2	(594)	100.0	(769)
	대학원 이상	30.5	(43)	69.5	(98)	100.0	(141)
	χ^2	4.017					
혼인상태	미혼	22.6	(106)	77.4	(363)	100.0	(469)
	기혼	25.1	(127)	74.9	(379)	100.0	(506)
	이혼/사별	32.0	(8)	68.0	(17)	100.0	(25)
	χ^2	1.705					
취업상태	취업	25.7	(216)	74.3	(624)	100.0	(840)
	비취업	15.6	(25)	84.4	(135)	100.0	(160)
	χ^2	7.47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5.3	(101)	74.7	(298)	100.0	(399)
	자녀 없음	23.3	(140)	76.7	(461)	100.0	(601)
	χ^2	0.53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0	(54)	79.0	(203)	100.0	(257)
	300~500만원	22.3	(74)	77.7	(258)	100.0	(332)
	500~700만원	27.9	(62)	72.1	(160)	100.0	(222)
	700만원 이상	27.0	(51)	73.0	(138)	100.0	(189)
	χ^2	4.573					

* $p < .05$, ** $p < .01$, *** $p < .001$.

가족친화인증 인지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아니오’ 응답이 82.6%로 ‘예’ 17.4%보다 많았다. 최종 학력 기준 고졸 이하의 경우 ‘아니오’ 86.7%, ‘예’ 13.3%이다. 대졸의 경우 ‘아니오’ 83.7%, ‘예’ 16.3%이다. 대학원 이상의 경우 ‘아니오’ 73.8%, ‘예’ 26.2%이다. 자녀 유무 기준 자녀가 있는 경우 ‘아니오’ 77.9%, ‘예’ 22.1%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 ‘아니오’ 85.7%, ‘예’ 14.3%이다.

〈표 III-2-37〉 친화도시 인지도_가족친화인증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명)	
전체		17.4	(174)	82.6	(826)	100.0	(1,000)
성별	여성	15.2	(78)	84.8	(435)	100.0	(513)
	남성	19.7	(96)	80.3	(391)	100.0	(487)
χ^2		3.532					
연령	25~29세	11.1	(20)	88.9	(160)	100.0	(180)
	30~34세	17.7	(39)	82.3	(181)	100.0	(220)
	35~39세	22.2	(59)	77.8	(207)	100.0	(266)
	40~45세	16.8	(56)	83.2	(278)	100.0	(334)
χ^2		9.292*					
권역	수도권	18.1	(99)	81.9	(449)	100.0	(548)
	영남권	16.0	(36)	84.0	(189)	100.0	(225)
	호남권	12.8	(10)	87.2	(68)	100.0	(78)
	충청권	21.7	(20)	78.3	(72)	100.0	(92)
	기타권역	15.8	(9)	84.2	(48)	100.0	(57)
χ^2		2.92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3	(12)	86.7	(78)	100.0	(90)
	대졸	16.3	(125)	83.7	(644)	100.0	(769)
	대학원 이상	26.2	(37)	73.8	(104)	100.0	(141)
χ^2		9.406**					
혼인상태	미혼	13.9	(65)	86.1	(404)	100.0	(469)
	기혼	20.2	(102)	79.8	(404)	100.0	(506)
	이혼/사별	28.0	(7)	72.0	(18)	100.0	(25)
χ^2		8.724*					
취업상태	취업	18.3	(154)	81.7	(686)	100.0	(840)
	비취업	12.5	(20)	87.5	(140)	100.0	(160)
χ^2		3.18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2.1	(88)	77.9	(311)	100.0	(399)
	자녀 없음	14.3	(86)	85.7	(515)	100.0	(601)
χ^2		10.0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0	(36)	86.0	(221)	100.0	(257)
	300~500만원	19.0	(63)	81.0	(269)	100.0	(332)
	500~700만원	16.7	(37)	83.3	(185)	100.0	(222)
	700만원 이상	20.1	(38)	79.9	(151)	100.0	(189)
χ^2		3.677					

* $p < .05$, ** $p < .01$.

고령친화도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아니오’ 응답이 84.1%로 ‘예’ 응답 15.9%보다 많았다.

〈표 Ⅲ-2-38〉 친화도시 인지도_고령친화도시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명)	
전체		15.9	(159)	84.1	(841)	100.0	(1,000)
성별	여성	16.4	(84)	83.6	(429)	100.0	(513)
	남성	15.4	(75)	84.6	(412)	100.0	(487)
	χ^2	0.177					
연령	25~29세	13.9	(25)	86.1	(155)	100.0	(180)
	30~34세	15.5	(34)	84.5	(186)	100.0	(220)
	35~39세	17.3	(46)	82.7	(220)	100.0	(266)
	40~45세	16.2	(54)	83.8	(280)	100.0	(334)
	χ^2	0.981					
권역	수도권	17.5	(96)	82.5	(452)	100.0	(548)
	영남권	12.9	(29)	87.1	(196)	100.0	(225)
	호남권	11.5	(9)	88.5	(69)	100.0	(78)
	충청권	17.4	(16)	82.6	(76)	100.0	(92)
	기타권역	15.8	(9)	84.2	(48)	100.0	(57)
	χ^2	3.86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7.8	(16)	82.2	(74)	100.0	(90)
	대졸	14.7	(113)	85.3	(656)	100.0	(769)
	대학원 이상	21.3	(30)	78.7	(111)	100.0	(141)
	χ^2	4.121					
혼인상태	미혼	15.1	(71)	84.9	(398)	100.0	(469)
	기혼	16.6	(84)	83.4	(422)	100.0	(506)
	이혼/사별	16.0	(4)	84.0	(21)	100.0	(25)
	χ^2	1.157					
취업상태	취업	15.4	(129)	84.6	(711)	100.0	(840)
	비취업	18.8	(30)	81.3	(130)	100.0	(160)
	χ^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3	(65)	83.7	(334)	100.0	(399)
	자녀 없음	15.6	(94)	84.4	(507)	100.0	(601)
	χ^2	0.07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8	(38)	85.2	(219)	100.0	(257)
	300~500만원	16.0	(53)	84.0	(279)	100.0	(332)
	500~700만원	14.4	(32)	85.6	(190)	100.0	(222)
	700만원 이상	19.0	(36)	81.0	(153)	100.0	(189)
	χ^2	2.006					

친화도시 인증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긍정’이 64.0%로 ‘부정’ 36.0%보다 많았다. ‘긍정’ 71.9%가 ‘부정’ 28.1%에 비해 큰 수치를 보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에는 ‘긍정’이 55.6%, ‘부정’이 44.4%로 나타났다.

연령 기준 25~29세의 경우 ‘있는 것이 낫다’ 47.8%, ‘없어도 괜찮다’ 21.7% 순으로 많았다. 30~34세의 경우 ‘있는 것이 낫다’ 45.0%, ‘없어도 괜찮다’ 34.1% 순으로 많았다. 35~39세의 경우 ‘있는 것이 낫다’ 50.8%, ‘없어도 괜찮다’ 22.2% 순으로 많았다.

혼인 상태 기준 미혼인 경우 ‘있는 것이 낫다’ 49.0%, ‘없어도 괜찮다’ 27.7% 순으로 많았다. 기혼인 경우 ‘있는 것이 낫다’ 48.4%, ‘없어도 괜찮다’ 23.9%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이혼/사별의 경우 ‘있는 것이 낫다’ 36.0%, ‘꼭 있어야 한다’ 28.0% 순으로 많았다.

자녀 유무 기준 자녀가 있는 경우 ‘있는 것이 낫다’ 46.6%, ‘없어도 괜찮다’ 23.8% 순으로 많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 ‘있는 것이 낫다’ 49.6%, ‘없어도 괜찮다’ 27.0% 순으로 많았다.

〈표 III-2-39〉 친화도시 인증 사업 필요성 공감도

단위: %, (명)

구분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것이 낫다	③ 없어도 괜찮다	④ 없는것이 낫다	①+② 긍정	③+④ 부정	계 (명)
전체		15.6 (156)	48.4 (484)	25.7 (257)	10.3 (103)	64.0 (640)	36.0 (360)	100.0 (1,000)
성별	여성	17.2 (88)	54.8 (281)	22.6 (116)	5.5 (28)	71.9 (369)	28.1 (144)	100.0 (513)
	남성	14.0 (68)	41.7 (203)	29.0 (141)	15.4 (75)	55.6 (271)	44.4 (216)	100.0 (487)
	χ^2	38.363***						
연령	25~29세	15.0 (27)	47.8 (86)	21.7 (39)	15.6 (28)	62.8 (113)	37.2 (67)	100.0 (180)
	30~34세	10.5 (23)	45.0 (99)	34.1 (75)	10.5 (23)	55.5 (122)	44.5 (98)	100.0 (220)
	35~39세	15.8 (42)	50.8 (135)	22.2 (59)	11.3 (30)	66.5 (177)	33.5 (89)	100.0 (266)
	40~45세	19.2 (64)	49.1 (164)	25.1 (84)	6.6 (22)	68.3 (228)	31.7 (106)	100.0 (334)
	χ^2	25.413**						

구분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것이 낮다	③ 없어도 괜찮다	④ 없는것이 낮다	①+② 긍정	③+④ 부정	계 (명)
권역	수도권	16.4 (90)	48.7 (267)	23.9 (131)	10.9 (60)	65.1 (357)	34.9 (191)	100.0 (548)
	영남권	12.4 (28)	46.7 (105)	30.2 (68)	10.7 (24)	59.1 (133)	40.9 (92)	100.0 (225)
	호남권	19.2 (15)	51.3 (40)	20.5 (16)	9.0 (7)	70.5 (55)	29.5 (23)	100.0 (78)
	충청권	13.0 (12)	50.0 (46)	28.3 (26)	8.7 (8)	63.0 (58)	37.0 (34)	100.0 (92)
	기타권역	19.3 (11)	45.6 (26)	28.1 (16)	7.0 (4)	64.9 (37)	35.1 (20)	100.0 (57)
	χ^2	8.51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6 (14)	53.3 (48)	22.2 (20)	8.9 (8)	68.9 (62)	31.1 (28)	100.0 (90)
	대졸	16.0 (123)	48.2 (371)	25.9 (199)	9.9 (76)	64.2 (494)	35.8 (275)	100.0 (769)
	대학원 이상	13.5 (19)	46.1 (65)	27.0 (38)	13.5 (19)	59.6 (84)	40.4 (57)	100.0 (141)
	χ^2	3.298						
혼인상태	미혼	10.4 (49)	49.0 (230)	27.7 (130)	12.8 (60)	59.5 (279)	40.5 (190)	100.0 (469)
	기혼	19.8 (100)	48.4 (245)	23.9 (121)	7.9 (40)	68.2 (345)	31.8 (161)	100.0 (506)
	이혼/사별	28.0 (7)	36.0 (9)	24.0 (6)	12.0 (3)	64.0 (16)	36.0 (9)	100.0 (25)
	χ^2	24.018***						
취업상태	취업	15.2 (128)	48.2 (405)	26.1 (219)	10.5 (88)	63.5 (533)	36.5 (307)	100.0 (840)
	비취업	17.5 (28)	49.4 (79)	23.8 (38)	9.4 (15)	66.9 (107)	33.1 (53)	100.0 (160)
	χ^2	0.91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1.8 (87)	46.6 (186)	23.8 (95)	7.8 (31)	68.4 (273)	31.6 (126)	100.0 (399)
	자녀 없음	11.5 (69)	49.6 (298)	27.0 (162)	12.0 (72)	61.1 (367)	38.9 (234)	100.0 (601)
	χ^2	21.8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4 (37)	47.5 (122)	24.5 (63)	13.6 (35)	61.9 (159)	38.1 (98)	100.0 (257)
	300~500만원	16.3 (54)	47.9 (159)	27.7 (92)	8.1 (27)	64.2 (213)	35.8 (119)	100.0 (332)
	500~700만원	18.5 (41)	50.5 (112)	21.2 (47)	9.9 (22)	68.9 (153)	31.1 (69)	100.0 (222)
	700만원 이상	12.7 (24)	48.1 (91)	29.1 (55)	10.1 (19)	60.8 (115)	39.2 (74)	100.0 (189)
	χ^2	10.374						

*** $p < .001$.

3. 소결

본 연구의 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의 ‘저출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전국 만 25~45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저출생 현상에 대한 심각성 평가 조사 결과, ‘심각함’ 89.0%, ‘심각 안함’ 11.0%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심각한 편이다’가 60.2%, 남성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5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 조사 결과, 25~59세, 30~34세, 35~39세, 40~45세 모두 ‘심각한 편이다’가 47.0% 이상으로 많았다. 특히, 40~45세에서는 ‘심각한 편이다’가 52.7%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권역 기준 모든 지역에서 ‘심각함’이 85.0% 이상으로 ‘심각 안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대부분은 저출생 현상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역에 대한 젊은세대의 정착 적절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적절함’ 52.9%, ‘부적절함’ 47.1%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적절함’이 55.9%로 44.1%인 ‘부적절함’보다 높았으나 남성의 경우, ‘적절함’이 49.7%로 ‘부적절함’인 50.3%보다 낮았다. 연령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함’이 46.1%로 53.9%인 ‘부적절함’보다 작은 25~29세를 제외하고, 30~34세, 35~39세, 40~45세에서는 모두 ‘적절함’이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청년층의 거주지역의 정착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거주에 대한 요구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권역 기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만 ‘적절함’이 약 60.0%로 ‘부적절함’보다 많았고, 그 외 다른 지역인 영남권, 호남권, 기타 권역에서는 ‘부적절함’이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적절함’보다 많았다. 이는 지역별 균형발전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젊은 세대의 정착이 부적절한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일자리가 부족해서’ 37.4%, ‘주택공급 부족’ 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준에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주택공급 부족’이 각 1순위, 2순위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권역 기준은 조금 달랐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이 34.0%, ‘일자리가 부족

해서' 15.8% 순으로 나타났고, 호남권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60.4%, '주택공급 부족' 15.1%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 순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자녀가 없는 그룹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주택공급 부족' 순이었지만, 자녀가 있는 그룹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39.2%,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18.8%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집단 특성별 요구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육아친화환경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해 본 결과, '조성안됨' 78.1%, '조성됨' 21.9%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저출생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거주 기초지자체의 육아친화환경 조성 대응 평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대응안함'이 78.1%로 '대응함' 21.9%보다 많았다. '별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56.5%,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 21.6%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출산 및 양육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겠다.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조사해 본 결과,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49.3%, '육아를 위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 12.2% 순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 순위를 전반적으로 유지하나 호남권과 충청권에 서는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응답 비중이 각각 48.7%,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각각 15.4%, 14.1%로 많았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은 저출생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전히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다 지역별 상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저출생 극복 노력과 육아친화환경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V

육아친화 인식 조사·분석

- 1 육아친화 인식 영향 요인 분석: 위계적 선형 모형
- 2 육아친화 인식 영향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IV. 육아친화 인식 조사·분석

본 장에서는 육아친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개의 자료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2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구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육아친화 인식(적절성, 만족도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2차년도에 진단 지역으로 선정되어 분석한 지역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육아친화 인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들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요소들이 육아친화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여 인증 심사 시 해당 요소들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육아친화 인식 영향 요인 분석: 위계적 선형 모형

가. 분석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는 본 연구진이 통계청 데이터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11차)를 병합하여 새롭게 구축하였다. 지역특성 변수 구성을 위하여 통계청의 지역 내 총생산, 합계출산율, 고령화 지수 등 지역 인구 및 사회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육아친화에 대한 변수 구성을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²⁷⁾ 11차(2018년) 데이터 중에서 거주 지역의 양육환경 적절성 및 시설 이용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가구 수는 한국아동패널 조사대상 2,150가구 중에서 거주 지역을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1,163가구이다.

27)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하여 각 시기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및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한국아동패널 소개. https://panel.kicce.re.kr/panel/html.do?menu_idx=50에서 2021. 6. 9. 인출.)

나. 분석모형

본 장에서는 ‘양육환경 적절성’ 및 ‘지역시설 이용만족도’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로는 가구특성과 지역특성의 변수를 사용한다. 지역특성과 가구특성은 위계적 자료(hierarchical data) 또는 내재적 자료(nested data)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흔히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으로 알려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분석모형으로 활용한다. 위계적 선형모형의 기초모형(baseline model)은 무조건적 평균 모형(unconditional means model)으로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Y_{ij} = \beta_{0j} + \epsilon_{ij}, \epsilon_{ij} \sim N(0, \sigma^2) \text{ (가구수준)} \quad \dots\dots\dots(1)$$

식(1)은 가구수준의 회귀식으로 지역에 따른 고정효과(fixed effect)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절편과 오차항으로만 구성된다.

$$\beta_{0j} = \gamma_{00} + u_{0j}, u_{0j} \sim N(0, \tau) \text{ (지역수준)} \quad \dots\dots\dots(2)$$

식(2)는 지역수준의 회귀식으로 식(1)에서 나타난 가구수준 회귀식의 모수추정치가 지역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 즉,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반영한다. 식(2)에서 설정한 무선효과는 절편항의 모수의 추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무선절편효과(random intercept effect)라 할 수 있다. 본 장의 분석에서는 기초모형을 바탕으로 지역에 따른 가구수준 절편값의 변화를 분석하는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구성하였다. 한편 엄밀한 분석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활용하여 각 모수추정량을 검정하였다.

다. 변수설정

종속변수는 ‘양육환경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과 ‘지역 시설 이용만족도’에 대한 응답이다. 해당 변수는 두 가지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양육환경 적절성A’의 경우 거주 지역 내의 아동 양육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그렇지 않음(1점)’에서 ‘매우 그러함(5점)’까지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총 8개로 안전, 치안, 범죄, 이웃 간의 관계,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²⁸⁾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보고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을 총합하여 ‘양육환경 적절성’ 점수를 산출하였다(총 40점).

‘양육환경 적절성A’의 8개 문항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양육에 영향을 주는 문항인 범죄, 치안, 안전 그리고 이웃관계 항목만으로 ‘양육환경 적절성B’로 구성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²⁹⁾ 구체적으로 ‘양육환경 적절성B’는 ‘양육환경 적절성A’에 대한 설문조사 중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치가 잘 구비되어 있다.’에 대한 응답만을 총합하였다(총 25점).

한편 또 다른 종속변수인 ‘지역시설 이용만족도’ 여가, 문화, 교육, 의료, 복지시설 등에 대한 13개 하위문항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지 않음(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함(5점)’까지로 각각 응답한 값을 총합하여 산출하였다(총 65점).

〈표 IV-1-1〉 종속변수

문항	내용
양육환경 적절성	1)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2)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3) 유해시설(유흥가, 윤락가 등)로부터 떨어져있다.
	4)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5)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다.
	6)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7)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8)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
지역시설 이용만족도	1) 놀이터
	2) 공원
	3) 산책로

28)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는 ‘매우 그러함’이 부정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이를 역코딩(reverse coding)한 값을 분석에 사용함.

29) ‘양육환경 적절성’ 중에서 2), 4), 5), 6), 그리고 8)번 설문조사 값이 이에 해당됨.

문항	내용
	4) 영화관
	5) 관람 및 체험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동식물원 등)
	6) 공연시설(문예회관, 음악회, 연극 등)
	7) 놀이공원(어린이대공원 등)
	8) 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9)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10) 실외 체육시설(농구장, 축구장 등)
	11)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등)
	12) 교육기관(학원, 대학교 등)
	13) 공공복지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분석에는 핵심설명변수인 가구 거주 지역 규모 변수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내 총생산, 해당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할 합계출산율, 노령화 지수(aging index, %)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IV-1-2〉 분석변수

변수	상세내용
종속변수	
양육환경 적절성A	1 - 40점 척도 각 문항의 응답 값은 다음과 같음. 1 전혀 그렇지 않음 2 대체로 그렇지 않음 3 보통 4 대체로 그러함 5 매우 그러함 0에 가까울수록 양육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며, 40점에 가까울수록 양육환경이 적절함.
양육환경 적절성B	1 - 25점 척도 각 문항의 응답 값은 위와 동일함.
지역시설 이용만족도 ¹⁾	1 - 65점 척도 각 문항의 응답 값은 다음과 같음. 1 매우 만족하지 않음 2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3 보통임 4 대체로 만족함 5 매우 만족함
독립변수	
핵심설명변수	
가구 거주 지역 규모 ²⁾	대도시/중소도시/읍면
통제변수 1: 가구 특성	

변수	상세내용
부/모 연령	만 ()세
부/모 취업 상태	1 취업 중 (취업/학업 병행 포함) 0 그 외
가구 소득 ³⁾	월 평균 () 만원
가구 총 지출 ³⁾	월 평균 () 만원
자녀 수	총 () 명
통제변수 2: 지역 특성	
지역 내 총생산 ³⁾⁴⁾	() 만원
합계출산율 ⁵⁾	가임 여성 1인당 명
노령화지수 ⁶⁾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

주: 1) 00에 가까울수록 지역 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낮으며, 65점에 가까울수록 지역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높음.

2) Reference: 읍면.

3) 자연로그 처리하여 분석함.

4) 통계청 (2018). 「지역소득」 중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3/2/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79534&ord=1 2021. 5. 11. 인출

5) 통계청 (2018). 「인구동향조사」, 시군구/합계출산율.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77055&ord=1 2021. 5. 11. 인출

6)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77115&ord=1 2021. 5. 11. 인출. 연구진이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자체 계산.

라.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우선 대상 가구의 가구특성 및 지역특성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활용하여 ‘양육환경 적절성’ 및 ‘지역 시설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기초통계 분석결과

분석에 사용되는 가구특성 및 지역특성 등의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3〉 참조). 우선 종속변수의 경우 ‘양육환경 적절성A’는 총점 40점에서 평균 28.6점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환경 적절성B’는 총점 25점에서 17.2점으로 나타났다. ‘지역시설 이용만족도’의 경우 총점 65점에서 평균은 40.4점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와 관련해서 분석 대상이 되는 가구의 39.5%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분석대상 가구의 54.3%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6.2%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모’의 연령은 평균 41.0세로 나타났으며, ‘부’의 평균 연령은 43.5세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 평균 58.1%가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의 경우 95.8%가 취업 중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과 관련하여 분석 대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567.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월 평균 총 소비 금액은 453.3만원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수준에서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한국아동패널 내의 응답 가구가 거주하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의 경우 평균 17.5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면, 6,260억 원(전라북도 무주군)에서 77.7조원(경기도 화성시)까지 지역 내 총생산 값에서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대상 가구의 거주 지역의 평균 합계출산율의 경우는 1.04명으로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 0.98명(통계청, 2018)보다 0.06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해남군(1.89명)이며,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0.61명) 및 강남구(0.63명)로 나타났다.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의 경우, 평균 107.8%로 나타나 15세 미만 인구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편차가 67.0%로 지역별 15세 미만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의 3배를 초과하는 지역이 많았으며, 반대로 울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노령화 지수가 0.5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15세 미만 인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변수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양육환경 적절성A		28.56	5.24	8	40
양육환경 적절성B		17.16	3.70	0	25
지역시설 이용만족도		40.36	11.63	0	65
대도시		0.40	0.49	0	1
중소도시		0.54	0.50	0	1
읍면		0.06	0.24	0	1
‘모’연령 (세)		41.01	3.54	29	56

변수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부’연령 (세)		43.49	3.86	29	60
‘모’취업 상태	1: 취업 중, 0: 그 외	0.58	0.49	0	1
‘부’취업 상태	1: 취업 중, 0: 그 외	0.96	0.20	0	1
가구 소득 (만원)		567.13	534.42	90	8000
가구 총 지출 (만원)		453.31	200.96	35	2500
자녀 수 (명)		2.22	0.70	1	6
지역 내 총생산 (백억원) ¹⁾		1750	1530	62.6	7770
합계출산율 (명)	가임여성 1인당 ()명	1.04	0.20	0.61	1.89
노령화지수 (%)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1.08	0.67	0.40	5.48
N		1,163			

주: 1) 회귀분석에서는 ‘지역 내 총생산’의 단위는 만원이지만, 기초통계에서는 백억원 단위를 사용함.

2)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IV-1-4〉 참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육환경 적절성A, 양육환경 적절성 B와 관련하여 가구 소득 및 지출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시설 이용만족도의 경우는 양육환경 적절성A·B와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 및 지출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각각 존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대도시와 읍·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는 그 외의 가구보다 지역시설 이용만족도가 높았고, 읍·면에 거주하는 가구는 그 외의 가구보다 시설 이용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역시설 이용만족도는 자녀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설명변수인 지역 규모와 관련하여, 대도시의 경우 지역 내 총생산(GRDP), 합계출산율과는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중소도시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기술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경기도 화성시 등과 같은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령화 지수의 경우 대도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중소도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읍면의 경우 0.62로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 역시 기술통계분석에서 읍·면으로 분류되는 지역 내에서 노령화 지수가 높은 것과 일치한다.

〈표 IV-1-4〉 상관관계 분석

구분	양육 환경 적절성A	양육 환경 적절성B	지역 시설 이용 만족도	대도시	중소 도시	읍 면	모 연령	부 연령	모 취업 상태	부 취업 상태	가구 소득	가구 총 지출	자녀수	지역내 총생산	합계 출산율	노령화 지수
양육환경 적절성A	1															
양육환경 적절성B	0.944 [*]	1														
지역시설이용만족도	0.319 [*]	0.312 [*]	1													
대도시	0.027	0.048	0.121 [*]	1												
중소도시	-0.027	-0.054	-0.011	-0.881 [*]	1											
읍면	0.001	0.014	-0.224 [*]	-0.208 [*]	-0.280 [*]	1										
모 연령	0.040	0.051	0.029	0.033	-0.011	-0.044	1									
부 연령	0.030	0.043	0.007	0.016	-0.008	-0.017	0.714 [*]	1								
모 취업상태	-0.008	0.008	0.015	0.009	0.001	-0.021	0.004	0.001	1							
부 취업상태	0.009	0.004	0.055	0.038	-0.012	-0.053	0.008	-0.022	-0.013	1						
가구 소득	0.072 [*]	0.066 [*]	0.095 [*]	-0.008	0.039	-0.064 [*]	0.055	0.036	0.149 [*]	0.057	1					
가구 총 지출	0.075 [*]	0.071 [*]	0.183 [*]	-0.009	0.071 [*]	-0.130 [*]	0.098 [*]	0.083 [*]	0.225 [*]	0.100 [*]	0.331 [*]	1				
자녀수	-0.011	-0.020	-0.079 [*]	-0.025	0.002	0.047	0.015	0.079 [*]	-0.026	-0.051	-0.075 [*]	-0.042	1			
지역내총생산	0.024	0.045	0.185 [*]	-0.182 [*]	0.296 [*]	-0.243 [*]	0.068 [*]	0.037	-0.047	0.002	0.060 [*]	0.147 [*]	-0.035	1		
합계출산율	0.030	-0.003	-0.241 [*]	-0.340 [*]	0.239 [*]	0.196 [*]	-0.115 [*]	-0.096 [*]	-0.038	-0.049	-0.075 [*]	-0.105 [*]	0.051	-0.035	1	
노령화지수	0.042	0.055	-0.176 [*]	-0.001	-0.298 [*]	0.616 [*]	-0.013	0.027	-0.002	-0.022	-0.050	-0.078 [*]	0.023	-0.383 [*]	-0.164 [*]	1

* $p < .05$.

3) 위계적 선형모형(HLM) 분석결과

종속변수 ‘양육환경 적절성A’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³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5〉 참조).³¹⁾ 지역의 평균적인 ‘양육환경 적절성A’는 도시의 규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도시는 읍면동과 비교하여 ‘양육환경 적절성A’가 평균적으로 1.86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amma_{01}=-1.86$, $p<.1$). 또한 가구수준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환경 적절성A’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_5=8.33$, $p<.05$). 지역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델 2에서는 대도시에서 가구 소득과 ‘양육환경 적절성A’의 양(+)의 관계만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5〉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종속변수: 양육환경 적절성A)

변수명			모델 1	모델 2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29.65***(1.891)	29.74***(1.707)
가구 특성	모 연령		-0.28(0.279)	-0.30(0.283)
	부 연령		-0.36(0.333)	-0.35(0.332)
	모 취업 상태		-0.45(0.794)	-0.571(0.814)
	부 취업 상태		0.67(1.511)	-0.00(1.391)
	ln(가구 소득)		8.33**(3.697)	8.40**(3.697)
	ln(가구 총 지출)		-4.31(3.022)	-4.23(3.016)
	자녀 수		0.89(1.396)	0.90(1.397)
지역 특성	대도시 ¹⁾		-1.86*(1.070)	-1.28(1.356)
	중소도시 ¹⁾		-0.95(1.112)	0.01(1.362)
	ln(지역 내 총생산)			-0.99(0.704)
	합계출산율			-1.63(2.052)
	노령화지수			-0.30(0.634)
무선 효과	가구수준	분산	20.32	20.07
		설명비율	0.66	0.35
	지역수준	분산	10.49	10.81
		설명비율	0.34	0.65
편차량			1099.45	1093.36
편차량의 차이				6.09

주: 1) Reference group: 읍·면

2) ()는 표준오차

* $p < .05$, ** $p < .1$, *** $p < .001$.

30) ‘양육환경 적절성A’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 우선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위계적 선형모형 활용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ICC=0.226으로 지역수준의 변수가 전체분산의 약 23%를 설명하므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1) 모델 2는 지역 규모에 추가적인 지역특성을 통제한 모형으로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 결과 편차량(deviation)의 차이는 6.089로 $\chi^2_{0.99,2}=9.210$ 과 비교하면 새로이 추가한 통제변수는 추가적인 설명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모델 1을 최종적으로 선택함.

‘양육환경 적절성B’³²⁾는 ‘양육환경 적절성A’에 대한 설문조사 중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이나 방법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치가 잘 구비되어 있다.’에 대한 응답 값만을 포함한 변수이다. 종속변수 ‘양육환경 적절성B’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6〉 참조).³³⁾ 지역의 평균적인 ‘양육환경 적절성B’는 지역특성 변수와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수준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beta_5=7.37$, $p<.05$), 가구 총 지출이 낮을수록($\beta_6=-4.90$, $p<.1$) ‘양육환경 적절성B’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델 2에서도 이러한 변수의 관계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6〉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종속변수: 양육환경 적절성B)

변수명		모델 1	모델 2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7.51*** (1.265)	17.55*** (1.198)
가구 특성	모 연령	-0.17(0.222)	-0.17(0.225)
	부 연령	-0.34(0.238)	-0.34(0.238)
	모 취업 상태	-0.41(0.559)	-0.49(0.578)
	부 취업 상태	1.18(0.957)	0.75(1.000)
	ln(가구 소득)	7.37** (3.110)	7.42** (3.112)
	ln(가구 총 지출)	-4.90* (2.582)	-4.84* (2.580)
	자녀 수	0.39(1.055)	0.40(1.056)
지역 특성	대도시 ¹⁾	-1.10(0.727)	-0.71(0.928)
	중소도시 ¹⁾	-0.77(0.780)	0.12(0.947)
	ln(지역 내 총생산)		-0.61(0.497)
	합계출산율		-1.14(1.355)
	노령화지수		-0.15(0.441)

32) ‘양육환경 적절성B’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선형모형(HLM)의 분석 전 급내상관계수(ICC)로 위계적 선형모형 활용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ICC=0.135로 지역수준의 변수가 전체분산의 약 14%를 설명하므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33) 모델 2는 지역 규모에 추가적인 지역특성을 통제한 모형으로 우도비검정(LR test) 결과 편차량의 차이는 3.518로 $\chi^2_{0.90, 2}=4.605$ 와 비교하면 새로이 추가한 통제변수는 추가적인 설명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모델 1을 최종적으로 선택함.

변수명			모델 1	모델 2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무선 효과	가구수준	분산	11.92	11.84
		설명비율	0.77	0.76
	지역수준	분산	3.57	3.71
		설명비율	0.23	0.24
편차량			982.95	979.45
편차량의 차이			3.52	

주: 1) Reference group: 읍·면

2)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지역시설 이용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선형모형(HLM)³⁴⁾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7〉 참조).³⁵⁾ 지역의 평균적인 ‘지역시설 이용만족도’는 지역특성 변수와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수준에서는 모가 취업을 하였다면($\beta_3=2.30$ $p<.1$), 자녀수가 적을수록($\beta_7=-2.83$, $p<.1$) ‘지역시설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델 2에서는 자녀수에 관한 관계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7〉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종속변수: 지역시설 이용만족도)

변수명		모델 1	모델 2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34.04*** (7.290)	31.89*** (7.539)
가구 특성	모 연령	-0.04(0.429)	-0.03(0.431)
	부 연령	0.02(0.574)	0.02(0.576)
	모 취업 상태	2.30*(1.286)	2.24(1.324)
	부 취업 상태	11.63(7.059)	11.66(7.258)
	ln(가구 소득)	-0.35(4.516)	-0.34(4.514)
	ln(가구 총 지출)	0.07(4.168)	0.07(4.166)
	자녀 수	-2.83*(1.636)	-2.83*(1.632)

34) 급내상관계수(ICC)로 위계적 선형모형 활용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ICC=0.712으로 지역수준의 변수가 전체분산의 약 71%를 설명하므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35) 모델 2는 지역 규모에 추가적인 지역특성을 통제한 모형으로 우도비검정(LR test) 결과 편차량의 차이는 8.317로 $\chi^2_{0.99, 2}=9.210$ 와 비교하면 새로이 추가한 통제변수는 추가적인 설명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모델 1을 최종적으로 선택함.

변수명			모델 1	모델 2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지역 특성	대도시 ¹⁾		-1.25(1.845)	1.44(2.887)
	중소도시 ¹⁾		-2.92(1.979)	-0.33(2.963)
	ln(지역 내 총생산)			0.04(1.090)
	합계출산율			1.23(3.080)
	노령화지수			1.28(1.180)
무선 효과	가구수준	분산	31.37	31.12
		설명비율	0.33	0.32
	지역수준	분산	64.30	65.58
		설명비율	0.62	0.68
편차량			1284.68	1276.36
편차량의 차이				8.32

주: 1) Reference group: 읍·면

2)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마. 소결

본 장에서는 통계청 데이터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11차) 등 위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활용하여 가구특성, 지역특성과 양육환경 적절성과 지역시설 이용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평균적인 ‘양육환경 적절성A’는 대도시가 읍면동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환경 적절성A’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환경 적절성B’는 지역특성 변수와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수준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 지출이 낮을수록 ‘양육환경 적절성B’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의 평균적인 ‘지역시설 이용만족도’는 지역특성 변수와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수준에서는 모가 취업을 한 경우, 자녀 수가 적을수록 ‘지역시설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육아친화 인식 영향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본 절에서는 2차 연구에서 실시한 지역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가구수준에서의 양육환경 적절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분석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강은진 외, 2020)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구축하였다. 해당 설문 조사의 응답가구는 총 1,098가구이나, 결측치를 목록별 제거(listwise deletion) 방식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610가구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분석방법

1) 분석모형

본 장에서는 양육자의 ‘양육환경 적절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로는 가구수준에서의 변수만을 투입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는 일반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한다. 다중회귀모형의 통계적 모형은 아래의 식(5)와 같다.

$$Y = \beta_0 + \beta_k X_k + \epsilon \quad \dots\dots\dots(5)$$

본 연구의 변수가 마을·동네에 대한 문항의 응답을 활용하고 있으나, ① 마을·동네수준이 가구수준과 계층적 또는 내재적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② 마을·동네의 범위가 각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지적 구성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본 장의 분석에서 위계적 선형모형의 활용은 부적절하며 하나의 수준(level)만을 고려한 다중회귀모형의 활용이 가장 적합하다.

2) 변수설정

종속변수는 “현재 귀하가 살고 계신 마을/동네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

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1점)’에서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다(4점)’까지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는 적절성의 측면에서 반대로 측정된 것이므로 역코딩(reverse coding)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마을·동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의료시설, 편익시설, 지원시설 등 ‘마을·동네 양육 관련 시설 존재 여부’,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가 추구하는 가치 평가’,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육아관련 보육·교육 기관 인프라 평가’,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평가’,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크 평가’ 등을 핵심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한편 자녀 수, 자녀 기준나이는 이들 핵심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표 IV-2-1〉 분석변수

변수		상세내용
종속변수		
양육환경 적절성		1 - 4점 척도 1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다 2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3 비교적 좋은 환경이다 4 매우 좋은 환경이다
독립변수		
핵심설명변수		
마을·동네 전반에 대한 평가 ¹⁾		1 -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마을·동네 양육 관련 시설 존재 여부 ²⁾	종합병원	1 있음 0 없음 3 모름
	일반병원	
	어린이공원	
	어린이도서관	
	영리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가 추구하는 가치 평가 ³⁾		1 - 5점 척도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변수	상세내용
	3 보통이다 4 중요한 편이다 5 매우 중요하다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육아관련 보육·교육기관 인프라 평가 ⁴⁾	1 - 5점 척도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중요한 편이다 5 매우 중요하다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평가 ⁴⁾	1 - 5점 척도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중요한 편이다 5 매우 중요하다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크 평가 ⁴⁾	1 - 5점 척도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중요한 편이다 5 매우 중요하다
통제변수	
자녀 수	총 ()명
자녀 기준나이	()세

주: 1) 5개 문항을 평균하여 계산.
2) '3=모름'의 응답은 목록별 제거 방식의 결측치 처리.
3) 6개 문항을 평균하여 계산.
4) 3개 문항을 평균하여 계산.

다.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결과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2-2〉 참조). 우선 종속변수인 '양육환경 적절성' 경우 총점 4점에서 평균 2.90점으로 조사 대상은 평균적으로 '비교적 좋은 환경이다(3점)'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경우 마을·동네 전반에 대한 평가는 총점 5점에서 평균 2.84점, 표준편차 0.82점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에 가까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동네 양육 관련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대상의 마을·동네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25.0%, 일반병의원은 79.0%가 있었고, 놀이시설은 어린이공원은 32.0%, 어린이도서관은 56.0%, 영리시설은 43.0%가 있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0.0%, 지역아동센터가 38.0%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들이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의 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항목은 육아 인프라(3.37점), 추구 가치(3.02점), 물리적 환경(3.05점), 인적네트워크(2.77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의 표준편차는 1.02~1.11 수준에서 비슷하여 항목 간 인식의 편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가구당 자녀 수는 평균적으로 1.79명, 자녀 기준나이는 6.25세로 나타났다.

〈표 IV-2-2〉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변수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양육환경 적절성			2.90	0.60	4	1
마을·동네 평가(현재 인식)			2.84	0.82	5	1
마을·동네 양육 관련 시설 존재 여부 (시설 특성)	종합병원	1: 있음, 0: 없음	0.25	0.43	1	0
	일반병의원		0.79	0.41	1	0
	어린이공원		0.32	0.47	1	0
	어린이도서관		0.56	0.50	1	0
	영리시설		0.43	0.50	1	0
	육아종합지원센터		0.30	0.46	1	0
	지역아동센터		0.38	0.49	1	0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필요 인식)	추구 가치		3.05	1.03	5	0
	육아 인프라		3.37	1.02	5	0
	물리적 환경		3.02	1.03	5	0
	인적네트워크		2.77	1.11	5	0
자녀 현황 (자녀 특성)	자녀 수		1.79	0.71	4	1
	자녀 기준나이		6.25	2.09	9	1
N			610			

2) 상관관계 분석결과

앞서 소개한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IV-2-3) 참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양육환경 적절성은 독립변수로 활용되는 대부분의 변수 즉, 현재 인식이라 할 수 있는 마을·동네 평가, 시설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종합병원, 일반병의원, 어린이공원, 어린이도서관, 영리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여부, 필요 인식이라 할 수 있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동네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하는 추구 가치, 육아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네트워크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동네 평가의 경우에는 각종 시설에 존재할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병원, 일반병의원, 어린이도서관의 존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다. 한편 현재 인식과 필요 인식의 네 가지 항목은 모두 높은 수준(0.240~0.38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인과적인 영향은 알 수 없으나 어느 한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다른 한쪽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에 포함된 전체 시설 간 존재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육아 관련 시설이 잘 구축된 마을·동네에는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나, 그렇지 않은 마을·동네에는 매우 적은 시설만이 입지하여 있어 육아 관련 시설의 측면에서 동네·마을 간 편차는 큰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자녀 수, 자녀 기준나이와 같은 자녀 특성은 통제변수이므로 따로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하지 않도록 하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마을·동네가 추구하는 가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중요도는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⁶⁾는 점을 특이할 만하다.

36) 상관관계 분석이나 인과적 관계(causality)의 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적 선후성(temporal precedence)만을 고려한다면 자녀 수와 필요 인식에 대한 인과적 해석이 가능하다.

〈표 IV-2-3〉 상관관계 분석

구분	양육환경 적절성	마을·동네 평가	종합병원 병의원	일반 병의원	어린이 공원	어린이 도서관	영리시설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역 아동센터	추구 가치	육아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네트워크	자녀 수	자녀 기준나이
양육환경 적절성	1														
마을·동네 평가	0.332 [*]	1													
종합병원	0.182 [*]	0.056	1												
일반병의원	0.261 [*]	0.041	0.302 [*]	1											
어린이공원	0.254 [*]	0.128 [*]	0.210 [*]	0.241 [*]	1										
어린이도서관	0.299 [*]	0.067	0.302 [*]	0.394 [*]	0.339 [*]	1									
영리시설	0.322 [*]	0.129 [*]	0.404 [*]	0.416 [*]	0.353 [*]	0.429 [*]	1								
육아종합지원센터	0.244 [*]	0.093 [*]	0.391 [*]	0.333 [*]	0.315 [*]	0.380 [*]	0.397 [*]	1							
지역아동센터	0.163 [*]	0.096 [*]	0.333 [*]	0.345 [*]	0.252 [*]	0.359 [*]	0.390 [*]	0.539 [*]	1						
추구 가치	0.184 [*]	0.298 [*]	0.103 [*]	0.133 [*]	0.141 [*]	0.066 [*]	0.184 [*]	0.097 [*]	0.085 [*]	1					
육아 인프라	0.136 [*]	0.240 [*]	0.077	0.013	0.047	0.026	0.038	0.080 [*]	0.036	0.268 [*]	1				
물리적 환경	0.312 [*]	0.312 [*]	0.141 [*]	0.143 [*]	0.221 [*]	0.148 [*]	0.206 [*]	0.197 [*]	0.135 [*]	0.317 [*]	0.252 [*]	1			
인적 네트워크	0.262 [*]	0.386 [*]	0.141 [*]	0.224 [*]	0.218 [*]	0.181 [*]	0.220 [*]	0.247 [*]	0.209 [*]	0.377 [*]	0.256 [*]	0.445 [*]	1		
자녀 수	0.004	-0.023	-0.074	-0.108 [*]	-0.038	-0.022	-0.069	-0.069	0.027	-0.128 [*]	0.037	-0.094 [*]	-0.063	1	
자녀 기준나이	0.013	0.083 [*]	-0.016	-0.021	-0.030	0.083 [*]	0.019	0.020	0.143 [*]	-0.012	-0.012	-0.027	-0.044	0.392 [*]	1

* $p < .05$.

3) 다중회귀 분석결과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양육환경 적절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2-4〉 참조).³⁷⁾

모델 4의 개별 변수를 살펴보면 자녀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마을·동네 전반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양육환경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병의원, 어린이공원, 어린이도서관, 영리시설 등 근린수준(neighborhood-level)에서 접근가능한 시설의 존재는 양육 환경의 적절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 인식 변수에서는 물리적 환경의 필요에 대한 중요성과 현재 거주 중인 마을·동네의 양육 환경 적절성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변수명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현재인식	마을·동네 평가		0.21*** (0.026)	0.17*** (0.030)	0.18*** (0.029)
시설특성	종합병원	0.02 (0.057)	0.01 (0.056)		0.01 (0.055)
	일반병의원	0.15** (0.063)	0.17** (0.060)		0.16** (0.060)
	어린이공원	0.15** (0.052)	0.10** (0.050)		0.08*** (0.050)
	어린이도서관	0.17** (0.053)	0.17** (0.051)		0.17* (0.051)
	영리시설	0.21*** (0.055)	0.17** (0.053)		0.16*** (0.053)
	육아종합지원센터		0.11* (0.059)		0.09 (0.059)
	지역아동센터		-0.10* (0.055)		-0.09* (0.054)

37) 분석에는 변수의 집합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각 변수의 계수, 모형의 적합성, 유의성 등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위계적 다중회귀(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방식을 활용함. F-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모든 모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모든 계수들은 통계적인 유의성에 있어 민감하지 않은(non-sensitive)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조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를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상호비교한 결과, 모델 4를 최종적으로 선택함.

변수명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필요 인식	추구 가치			0.02 (0.024)	0.01 (0.023)
	육아 인프라			0.00 (0.023)	0.01 (0.022)
	물리적 환경			0.12*** (0.025)	0.09*** (0.024)
	인적 네트워크			0.04 (0.024)	0.00 (0.023)
자녀 특성	자녀 수	0.04 (0.034)	0.05 (0.033)	0.04 (0.034)	0.06 (0.033)
	자녀 기준나이	-0.00 (0.012)	-0.01 (0.011)	-0.00 (0.012)	-0.01* (0.011)
절편		2.50*** (0.091)	1.93*** (0.111)	1.87*** (0.131)	1.72*** (0.130)
모형의 유의성(F -통계량)		16.13***	19.57***	17.02***	15.54***
모형의 적합성(R^2)		0.16	0.25	0.17	0.27
모형의 적합성($adj R^2$)		0.15	0.23	0.16	0.25

* $p < .05$, ** $p < .01$, *** $p < .001$.

라. 소결

본 장에서는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양육자 양육환경 적절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에 기초통계 분석결과 조사대상이 대체적으로 마을·동네의 양육환경 적절성을 ‘비교적 좋은 환경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상관관계 분석결과 육아 관련 시설이 잘 구축된 마을·동네에는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나, 그렇지 않은 마을·동네에는 매우 적은 시설만이 입지하여 있어 육아 관련 시설의 측면에서 동네·마을 간 편차가 큰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일반병의원, 어린이공원, 어린이도서관, 영리시설 등이 존재하면, 물리적 환경의 필요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과 현재 거주 중인 마을·동네의 양육환경 적절성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기본계획

- 1 인증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 2 사업추진계획
- 3 KICCE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방법 및 절차
- 4 인증 모니터링
- 5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방법 및 절차
- 6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운영

V.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기본계획

1. 인증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육아친화 철학과 가치 확산, 서비스 인프라 구축,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주요 세 가지 목표 달성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1-1〉 육아친화마을 조성 3대 목표

목표	내용
육아친화 철학과 가치 확산	• 아이,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 아이다움을 인정 • 육아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 • 성평등한 육아 문화 • 육아친화 가치 공유의 기회 확대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육아직접 지원 인프라(보육돌봄) •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 육아간접 지원 인프라(보건의료/교통 및 보행네트워크/치안 안전/행정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 • 소통을 위한 공간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p. 219~237)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 풀(pool)'을 기반으로 재구성함.

2. 사업추진계획

가. 육아친화마을 인증

1) 신규지정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계획에 대하여 육아친화마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기간은 3년³⁸⁾으로 한다.

38)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시기에서 약 3년을 주기로 추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2) 재인증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하여 지난 3년간의 사업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서 등을 육아친화마을 심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KICCE 육아친화마을 재인증을 부여한다.

나. 인증 모니터링

육아친화마을 인증 이후 인증 전(全) 기간 동안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다. 육아친화 문화 조성 교육

육아친화 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은 물론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실무능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관련 내용을 육아친화마을 조성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지원

육아정책, 지역보육, 행재정, 도시계획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육아친화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자체가 필요로 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한다.

3. KICCE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방법 및 절차

가. 신규인증 절차 및 일정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을 위한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매년 5월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구에 전달한다. 육아친화마을 인증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8월에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관계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육아친화마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접수된 육아친화마을 인증을 위한 1차 심사를 9월 중 진행한다. 해당 심사 통하여 평균 평가점수를 초과한 지역을 선정하

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육아정책연구소는 10~11월 중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끝으로 육아친화마을 심사위원회에서 12월 중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을 확정한다.³⁹⁾ 신규인증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매년 현장점검을 통하여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그림 V-3-1]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일정



나. 신규인증 평가기준

육아친화마을 조성 목표와 추진계획,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도기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육아친화마을 조성 의지 등 4개 부문의 10개 문항을 통하여 육아친화마을 인증 취득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앞서 3장에서 실시한 육아친화 인식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동)에 따라 구분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한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목표와 추진계획 지표를 통해서는 추진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사업목표와 사업추진계획이 적절하게 부합하는가, 사업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구성되었는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는가 등을 평가한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제도 지표에서는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 마련이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주무부서 혹은 관련 인력의 확보 상황,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조례 제개정 등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재정확보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9) 인증 지역 수는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함.

마지막으로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의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여부와 결과를 평가하고,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노력 및 기관장의 활동 실적을 평가한다.

〈표 V-3-1〉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심사기준

항목	지표	내용	배점
사업목표	목표 및 추진계획	- 육아친화마을 조성 3대 목표 반영 - 추진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와 사업추진계획의 부합성 -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30
사업기반	제도적 여건	- 주무부서(인력) 확보 -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 조례 제개정	25
	예산확보	- 재원확보 방안의 구체성 -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 예산 확보 - 육아친화 철학과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 확보 - 지역주민의 육아친화 활동 지원 예산 확보	20
	조성의지	-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단, 대도시 지역 필수 수행)¹⁾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노력 - 시군구의회 및 기관장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활동 실적 -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친화사업 추진 여부	25
계			100

주: 앞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에서, ‘양육환경 적절성’의 경우 대도시가 읍면동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HLM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대도시의 경우 해당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지정.

지역의 평균적인 ‘양육환경 적절성’은 대도시가 읍면동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수준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환경 적절성A’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목표 항목에서 ‘목표 및 추진계획’의 경우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3대 주요 목표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를 평가한다. 3대 목표를 보다 구체화 한 핵심 내용은 아래 〈표 V-3-2〉과 같으며, 해당 내용들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된 정도를 항목평가에 포함하도록 한다. 특히 육아친화 인식 분석을 통해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⁴⁰⁾’, 일반병의원, 어린이공원 및 도서관 등이 ‘양육환경 적절성’에

40) 2차년도 연구보고서의 설문조사 중에서 다음의 조사문항으로 구성, 1)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 안전, 2) 마을/동네 길은 밤에도 안전, 3) 경찰등 방범 인력 자주 순찰. (강은진 외, 2020: 313)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2-2. 공원녹지공간’, ‘2-3. 여가문화서비스 인프라’, ‘2-4.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2-6.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표 V-3-2〉 육아친화마을 조성 위한 목표별 추진 계획

목표	핵심 내용
1. 육아친화 철학과 가치 확산	
1-1.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 지역사회와 공동체성 결속감 ○ 지역사회와 공동체성 연대감 ○ 지역사회와 공동체성 충족감
1-2. 아이다움 인정	○ 영유아/아동 개별성(아이다움) 인정
1-3. 성평등 육아문화	○ 성평등 공간(ex. 남성화장실 내 기저귀갈이대 비치 등) ○ 성평등 서비스(ex. 남성 양육자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등) ○ 성평등 가치(육아친화환경 조성 캠페인)
2. 서비스 인프라 구축	
2-1.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 서비스 질(교사 근로환경, 보육(교육) 시간, 급간식·프로그램·교구 수준) ○ 공간 질(보육(교육)/야외놀이 공간 충분성 및 안정성) ○ 거버넌스 참여성 및 투명성 ○ 비용·접근성·접근방법 편리성·차량 안정성
2-2. 공원녹지공간	○ 비용·접근성·접근방법 편리성·차량 안정성 ○ 공간과 시설의 질(충분성, 안정성, 서비스 인프라 및 체험시설 다양성) ○ 인적 환경의 육아친화성(종사자의 우호적인 태도) ○ 이용 편리성 및 불편함 없는 공간 설계(ex. 주차장, 수유시설까지 동선 등)
2-3. 여가문화서비스 인프라	○ 비용·접근성·접근방법 ○ 공간과 시설의 질(충분성, 안정성, 서비스 인프라 및 체험시설 다양성) ○ 인적 환경의 육아친화성(종사자의 우호적인 태도) ○ 이용 편리성 및 불편함 없는 공간 설계(ex. 주차장, 수유시설까지 동선 등)
2-4.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 대형·개인병원 접근성 및 접근방법 편리성 ○ 대형·개인병원 서비스 질 충족성

목표	핵심 내용
	○ 대형·개인병원 의료인 수 충분성
	○ 대형·개인병원 인적환경 육아친화성(종사 의료인의 우호적인 태도)
	○ 대형·개인병원 공간 조성의 편리성
	2-5. 교통보행네트워크
	○ 대중교통 비용·접근성·접근방법 편리성·보행도로상태
	○ 대중교통 인프라 다양성(ex. 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
	○ 교통/운전 문화(운전자의 우호적인 태도)
	2-6.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
	○ 소방서 및 경찰서 접근성
	○ 경찰 등 방범인력 순찰 횟수
	○ 치안장비(CCTV) 설치·유형업소 또는 유해시설 및 안전한 보행도로 유무
	2-7. 행정서비스 인프라
	○ 육아친화마을 관련 조례·예산·인력
	○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의 정보 충분성 및 접근성
	○ 거버넌스 참여성(의견 개진 방법 마련) 및 개방성(의견 수렴 노력)
3. 인적 네트워크 형성	
	3-1.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
	○ 인적 네트워크 연결성(의지 기능 인적자원의 존재)
	○ 인적 네트워크의 자원(조직, 모임, 공동체 활동)
	3-2. 소통을 위한 공간
	○ 공동체 활동 물리적 공간과 시설의 충분성
	○ 온라인 소통방의 유무
	○ 공동체 활동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 공동체 모임 공간 및 시설 이용 편리성(ex. 사용 시간, 방법 등)
	○ 공동체 모임 공간 및 시설 육아친화성(ex. 수유, 주차 시설 등)

주: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체크리스트(pool)를 기반으로 재구성함.

4. 인증 모니터링

육아친화마을 인증 이후 인증 전(全) 기간 동안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해당 모니터링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는 인증단계 및 연도별 사업이행실적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표 V-4-1〉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 모니터링 계획

구분		내용	제출양식
신규인증	1차년도	- 사업기반 구축 - 2차 및 3차년도 계획	1차 사업성과 보고서
	2차년도	- 1차년도 성과 - 3차년도 계획	2차 사업성과 보고서
	3차년도	- 실적평가 - 사업분야별 추진성과 검토	최종 사업성과 보고서
재인증	1~6차년도	- 재인증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매 3년 사업성과 보고서 (총 2회)

5.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방법 및 절차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인증이 만료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사업성과(최종 사업성과 보고서) 및 향후 3년간의 추진 계획(사업계획서)을 접수받아 평가하여 재인증 6년을 부여한다.

가. 재인증 절차 및 일정

육아친화마을 재인증을 위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V-5-1]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일정



나. 재인증 심사기준

재인증을 위한 심사기준은 크게 사업실적과 육아친화마을 조성 성과 부문으로 구성된다. 사업실적은 성과평가 항목으로써 사업목표 추진 성과 요약과 달성 실적, 사업기반 추진 성과 요약과 달성 실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성과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목표별로 추진된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아울러 지역 특화 사례를 평가한다.

〈표 V-5-1〉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심사기준: 사업성과보고서

항목	지표	내용	배점
사업실적	성과평가	- 사업목표 추진 성과 요약 - 사업목표 달성 실적 - 사업기반 추진 성과 요약 - 사업기반 달성 실적	25
육아친화마을 조성 성과	철학과 가치	- 육아친화마을 조성 목표별 추진 신규사업 - 지역 특화 사례	25
	서비스 인프라		25
	인적네트워크		25
계			100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심사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신규인증 시와 전체적으로 동일하지만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에서 신규인증 시와는 차별화 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표 V-5-2〉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심사기준: 사업계획서

항목	지표	내용	배점
사업목표	목표 및 추진계획	- 육아친화마을 조성 3대 목표 반영 - 추진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와 사업추진계획의 부합성 -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신규인증과의 차별성)	30
사업기반	제도적 여건	- 주무부서(인력) 확보 -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 조례 제개정	25
	예산확보	- 재원확보 방안의 구체성 -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 예산 확보 - 육아친화 철학과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 확보 - 지역주민의 육아친화 활동 지원 예산 확보	20

항목	지표	내용	배점
	조성의지	-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단, 대도시 지역 필수 수행)¹⁾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 - 시군구의회 및 기관장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활동 실적	25
계			100

주: 앞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에서, '양육환경 적절성'의 경우 대도시가 읍면동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HLM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대도시의 경우 해당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지정.

6.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운영

가.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필요성 및 추진체계

육아친화마을의 개념, 조성목표,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마을을 조성하여 실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빈번한 부서이동 등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정책 및 육아정책전문가와 지속적인 협력 수행되어야 한다.

육아친화마을의 기본 목표는 지역 육아정책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육아친화마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의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준비 도시, 그리고 재인증에서 탈락한 재인증 준비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하여 더 많은 지역사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설팅 시행을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 내에 KICCE 육아친화 컨설팅단을 구축하고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컨설팅 업무를 운영하도록 한다. 즉, KICCE 육아친화 컨설팅단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컨설팅 안내, 컨설팅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컨설팅운영위원회 관리, 컨설턴트의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운영하는 등 컨설팅의 실무를 맡는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컨설팅 내용과 모형을 구성하여 이를 별도의 안내자료로 제작하여 이를 기초자치단체 230여 곳의 담당부서에 배포함으로써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나.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기대효과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의 육아정책 현황을 포괄적으로 수집,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주민 수요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수립이 가능하여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효과가 미흡한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생 및 육아친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및 재정 검토를 통한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KICCE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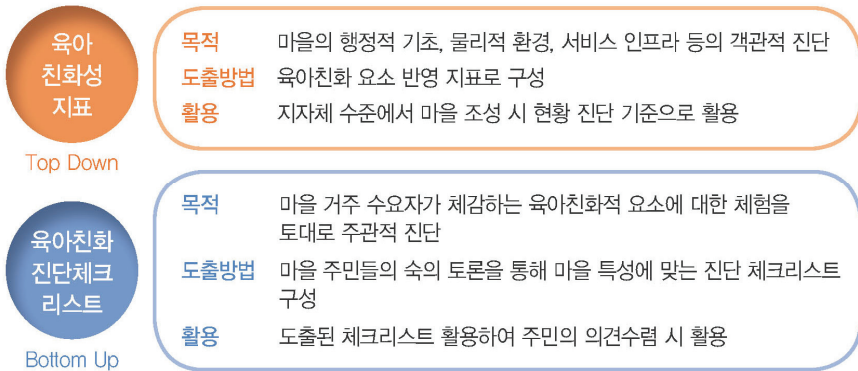
컨설팅은 육아환경 평가, 주민 워크숍, 자문회의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육아친화마을 조성 및 추진체계 구축과 육아정책사업 발굴 등 육아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 수립 및 관련 지원을 실시하고, 조례의 제·개정 필요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공무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방안 및 조성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개선 등에 관한 사업 전반을 지원하여 지자체 내 육아친화마을 조성 추진계획 확립 방안 전반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

라. KICCE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모형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컨설팅은 지자체의 육아 관련 정책과 환경을 육아친화성지표를 통해 진단하고, 주민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육아친화 진단체크리스트를 선정하고, 육아하는 주민 대상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육아 관련 정책과 환경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림 V-6-1] KICCE 육아친화마을 진단 도구



컨설팅 모형은 다음과 같이 4부분으로 구성된다.

1) 지표 적용 진단

목적 KICCE 육아친화컨설팅단이 지자체가 제공한 지역의 인구·경제·사회 기초 자료를 토대로 지역의 육아 관련 특성을 분석하여 지자체의 육아친화정도의 객관적 위치를 찾는다.

방법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표 V-6-2> 참조)를 적용하여 현재 지자체의 전반적인 환경을 육아친화라는 관점에서 정량화 하여 진단한다. 지표를 사용하여 지역별 육아친화성을 육아 관련 직접자원 인프라와 간접자원 인프라 등으로 진단하고, 지역 육아친화성 진단 정도를 전국 자료 분석과 비교 및 점검하여 그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여건을 측정하기 위한 'KICCE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는 크게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와 공원 /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등의 범주를 아우르는 육아의 간접적 자원(인프라)으로 구분 된다. 특히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의 절대규모와 상대규모(정책대상인 유아 및 아동의 인구수 대비 시설 수)를 모두 고려한다.

〈표 V-6-1〉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육아의 사회화 영역	육아 관련 자원 및 인프라 영역		육아친화마을 지표				
			서비스/ 인프라 유형	절대적 공급 지표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지표	주민주감도 지표
육아의 직접적 자원	영유아기 보육/돌봄 인프라	어린이집	어린이집 정원 수	영유아 천명당 어린이집 정원 수	최근린 어린이집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어린이집 도보 10분권 내 영유아 인구 비율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유치원	유치원 정원 수	유치원 학령인구 천명당 유치원 정원 수	최근린 유치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유치원 도보10분권 내 영유아 인구 비율	유치원 이용만족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 센터 수	인구 만명당 건강가정 지원센터 수	-		건강가정지원 센터 이용만족도
		공동육아 나눔터	공동육아 나눔터 수	인구 만명당 공동육아나눔터 수	-		공동육아나눔 터 이용만족도
	아동기 보육/돌봄 인프라	초등학교	초등학교 수	초등학령인구 천명당 초등학교 수	최근린 초등학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초등학교 도보10분권 내 초등학령인구 비율	초등학교 이용만족도
육아의 간접적 자원 (인프라)	전 연령 돌봄 인프라	공원/ 녹지	생활권 공원	생활권공원 수	인구 만명당 생활권 공원 수	최근린 생활권공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공원/녹지 이용만족도
						생활권공원 도보10분권 내 인구 비율	
		여가/ 문화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수	인구 만명당 어린이공원 수	-	어린이공원 이용만족도
	전 연령 돌봄 인프라	국공립 도서관	어린이(유아) 자료실을 운영 중인 국공립 도서관 수	어린이 천명당 어린이(유아) 자료실 보유 국공립도서관 수	최근린 국공립도서관 까지의 평균 도로이동 거리	국공립도서관 도보10 분권 내 인구 비율	국공립도서관 이용만족도
		공연문화 시설	어린이 도서관 수	어린이 천명당 어린이도서관 수	최근린 공연문화시설 까지의 평균 도로이동 거리	-	어린이도서관 이용만족도
						공연문화시설 차량 10분권 내 인구 비율	

육아의 사회화 영역	육아 관련 자원 및 인프라 영역	육아친화마을 지표					
		서비스/ 인프라 유형	절대적 공급 지표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지표	주민체감도 지표	
	전 연령 돌봄 인프라	교통/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 구역 수	어린이 천명당 어린이 보호구역 수	-	통학로/ 보행로 안전체감도
			어린이 보호용 CCTV	어린이보호용 CCTV 카메라 수	어린이 천명당 어린이보호용 CCTV 카메라 수	-	어린이보호용 안전 체감도
			경찰서	경찰서 수	인구 만명당 경찰서 수	최근린 경찰서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경찰서 차량이동 10분권내 인구 비율	방범순찰 안전체감도
			소방서	소방서 수	인구 만명당 소방서 수	최근린 소방서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소방서 차량이동 10분권 내 인구 비율	-
			자진옥외 대피소	자진옥외 대피소 수	인구 만명당 자진옥외 대피소 수	최근린 자진옥외대피소까지의 평균 도로이동 거리 자진옥외대피소 도보 10분권내 인구 비율	-
		보건/ 의료	산부인과	산부인과 병의원 수	여성인구 천명당 산부인과 병의원 수	최근린 병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산부인과 이용만족도
			소아 청소년과	소아 청소년과 병의원 수	소아청소년 천명당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수	병원 도보10분권 내 인구비율	소아청소년과 이용만족도
			가정 의학과	가정의학과 병의원 수	인구 만명당 가정의학과 병의원 수	최근린 의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의원 도보10분권 내 인구 비율	가정의학과 이용만족도
			종합병원	종합병원 수	인구 만명당 종합병원 수	최근린 종합병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종합병원 차량이동 10분권 내 인구 비율	종합병원 이용만족도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보건 기관 수	인구 만명당 보건기관 수	최근린 보건기관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보건기관 차량이동 10분권 내 인구 비율	보건소 이용만족도

자료: 강은진 외(2020).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진단 및 적용. pp.73~76.

2) 지역 체크리스트 개발 및 주민참여 워크숍

목적 KICCE 육아친화컨설팅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민참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육아친화마을의 가치와 철학, 물리적 환경, 서비스 인프라, 인적네트워크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구성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⁴¹⁾'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방법 주민참여 워크숍은 해당 지역 주민 30명 정도를 모집한 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당 인원을 약간의 조구성으로 편성하여 KICCE 육아친화컨설팅단에서 진행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워크숍은 2~3회 실시하여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참여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들은 제시된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에서 보다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요소들을 20~25개 선별하는데, 이를 통해 수요자 요구가 반영된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선정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이러한 지역주민 참여 워크숍은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마을 조성의 주체로 참여한 경험을 제공하며, 지자체에는 지역주민 참여형 행정과 정책수립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와 주민의 소통의 장(場)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본 컨설팅이 기존의 컨설팅들과 차별되는 부분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지표들이 적용됨에 따라 정책 현장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여 객관적 지표가 담아내기 어려운 지역 주민 요구를 심도 있게 수렴한다는 데에 있다.

3) 지역주민 요구조사

목적 'KICCE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설문문을 구성하여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육아친화성 현황 진단 및 평가, 지역의 육아친화성 향상을 위한 필요 정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한다.

방법 정책수요자인 영유아자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200~300명)

41)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은 철학과 가치, 인적네트워크, 보육·교육·돌봄서비스 인프라, 공원 녹지 공간,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네트워크,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서비스 인프라 등의 9개 부분에서의 핵심요소와 측정항목을 반영한 86개 요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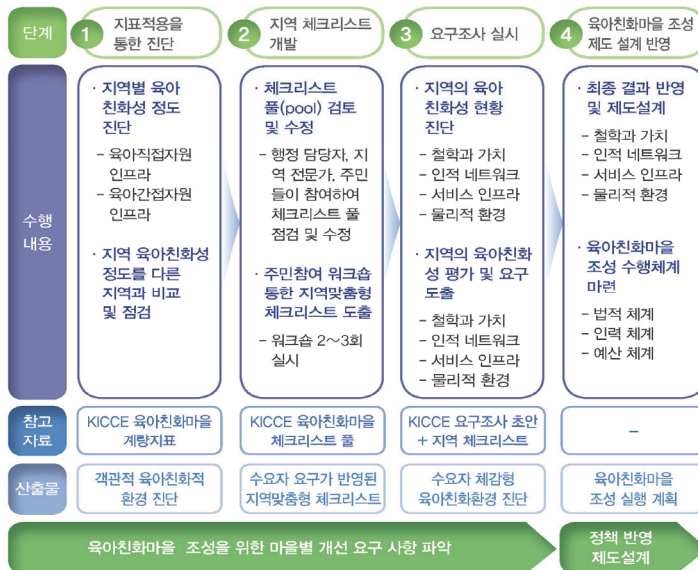
요구조사를 실시하며, 이 때 설문지의 구성과 결과의 분석은 KICCE 육아친화컨설팅단이 담당하고, 설문대상은 지자체에서 협력하여 선정한다. 설문지 구성은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최대한 수요자에게 체감되는 육아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드러나도록 구성한다.

4) 육아친화마을 조성 계획 수립

목적 지역 내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육아친화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방법 1단계의 지표 분석을 통한 진단으로 전국 자료와 비교하여 해당 지자체의 부족한 육아 관련 자원인프라 도출, 2단계의 주민참여 워크숍을 활용한 지역 체크리스트 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 주민 요구 파악, 3단계의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를 활용한 지역 전반의 요구 파악을 통하여 정책 기초자료 수합 등을 종합하여 4단계에서는 지자체 행정담당자가 주체가 되어 지자체의 현 정책의 개선점을 구체화하고 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그림 V-6-2]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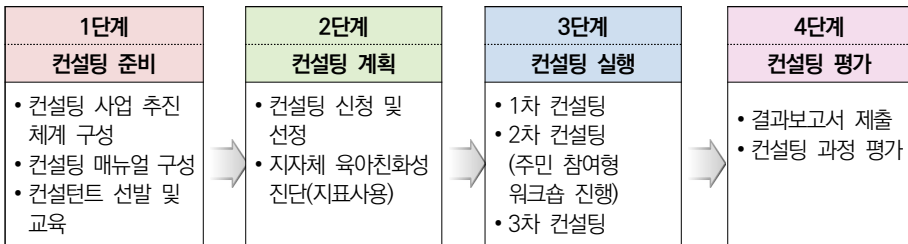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358. [그림 VII-1-1].

마.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추진 절차

KICCE 육아친화컨설팅단은 아이를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자체의 준비와 실행을 지원하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컨설팅은 준비 단계부터 평가에 이르는 총 4단계로 구성되며([그림 V-6-4] 참조), 컨설팅 소요기간은 참여 지자체의 신청 시점으로부터 결과보고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총 4개월 내외로 한다.

[그림 V-6-3] 육아친화마을 조성 KICCE 컨설팅 추진 절차



1) 1단계: 컨설팅 준비

컨설턴트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을 주축으로 행정, 돌봄, 교육, 의료, 도시계획, 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KICCE 육아친화컨설팅에서는 다른 컨설팅보다도 육아친화적 요소의 진단과 종합적 분석이 가능한 컨설턴트의 역량이 강조된다.

2) 2단계: 컨설팅 계획

KICCE육아친화컨설팅의 실행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컨설팅 신청 공고, 컨설팅 신청 접수, 대상 지자체 선정, ‘KICCE육아친화마을 지표’ 적용을 통한 육아친화성 진단 등이 진행된다.

3) 3단계: 컨설팅 실행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실행은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해 총 3회의 방문 컨설팅을 포함하는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림 V-6-4]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실행 과정

구분		시기	내용
컨설팅 실행	사전 진단 분석	컨설팅 신청 및 선정 이후 3주 이내	KICCE 육아친화컨설팅단은 해당 지자체의 특성 파악, 지자체의 육아친화성 진단(지표사용)
	1차 방문 컨설팅	일정확정	육아친화성 진단(지표사용) 결과 토대로 정책수요자 요구 수렴 계획 수립
	2차 방문 컨설팅 (주민참여 워크숍)	1차 컨설팅 후 2~3주 이내	정책수요자 요구 수렴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개최 및 수요 조사 실시계획 수립
	주민 대상 수요조사 실시	2차 컨설팅 후 3주 이내	정책수요자 주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3차 방문 컨설팅	2차 컨설팅 후 4~5주 이내	지표, 체크리스트, 설문을 통한 수요결과 반영한 개선방안 논의

가) 사전진단 분석

대상지자체가 선정되면 KICCE 육아친화컨설팅단에서는 컨설팅 신청 및 선정 이후 3주 이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지역의 인구분포를 포함하는 다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다. 컨설팅단은 대상지자체의 수합된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의 특성을 강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현재 육아친화적 환경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적용을 통해 진단하는데, 육아친화성을 육아 관련 직접자원 인프라와 간접자원 인프라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지역 육아친화성 진단 결과를 다른 지역과 비

교 및 점검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이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와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등의 범주를 아우르는 육아 인프라를 포함한다. 특히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의 절대규모와 상대규모(정책대상인 유아 및 아동의 인구수 대비 시설수)를 모두 고려하고자 함이 특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전문가는 전국 수준의 자료와 비교하여 대상 지자체의 현재 육아친화 정도를 구체화한다.

나) 1차 방문 컨설팅

지자체의 육아친화성에 대한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를 적용하여 진단한 결과 공유와 2차 컨설팅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컨설팅단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 적용 결과를 토대로 현재 지자체의 객관적 육아친화 정도 및 전국 수치와 비교한 현 수준을 설명한다.

컨설팅단은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육아관련 정책의 목록과 사업 내용을 수합한다. 해당 자료는 기초분석 뿐만 아니라 2차 방문컨설팅인 주민참여 워크숍 운영에 사용한다. 또한 컨설팅단과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은 현재 육아관련 사업추진의 성과와 어려움을 논의한다.

정책수요자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2차 컨설팅에서의 주민 참여형 워크숍 진행 준비를 논의한다. 컨설팅단은 주민참여 워크숍의 순서와 논의 내용을 기획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육아하는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30여명을 선정하여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워크숍 일자와 장소, 참여자의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다) 2차 방문 컨설팅

주민참여 워크숍을 진행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는 단계로, 1차 컨설팅 후 2~3주 내에 추진한다. 워크숍은 약 3~4시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데, 30여명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양육의 어려움 공유, 현재 지자체의 정책 검토, 개선 요구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

〈표 V-6-2〉 지역주민 참여 워크숍 진행순서 예시

진행 순서	상세 내용	시간	소요(분)
오프닝	• 개회 & 워크숍 취지 안내(육아정책연구소) • 워크숍 진행순서 및 목표산출물 안내, • 기본 규칙(Ground Rule) & 작성물과 작성방법(Parking Board)안내	10:00	0:10
	• 참석자 아이스브레이킹 및 워밍업 • 상호 인사: 사는 동네, 이름, 자녀현황, 나의 하루일과	10:10	0:20
우리가 바라는 육아환경	• 세 가지 관점에서 참여자가 바라는 육아환경에 대한 질문 및 토론 - 1라운드: 지역 사람들(알고지내는 사람 또는 육아하며 마주치게 되는 많은 지역주민)이 육아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	10:30	0:15
휴식시간		10:45	0:10
우리가 바라는 육아환경	- 2라운드: 인적 네트워크, 이웃과 교류(소통)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 3라운드: 서비스인프라(교육/보육, 의료/보건, 공원/녹지/여가공간, 교통/보행, 치안/안전 등)에 대해	10:55	0:35
과감하게 지우기!!!	• 총 6개 조로 재편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체크리스트 차트 하나씩 맡아 검토함 >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항목을 진행자 안내에 따라 2~4개씩 지워나감 > 86개 항목 중 15개 내외 항목으로 줄임	11:30	0:40
휴식시간		12:10	0:30
다 함께 결정하기!!!!	• 앞에서 거른 항목을 전체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투표를 통해 25개 내외의 최종 체크리스트 확정	12:40	0:20
지자체 육아정책검토	• 정책별 평가(Proud & Sorry)를 진행	13:00	0:20
1회차 마무리	• 워크숍 과정 결과 요약 및 회고, 향후 진행사항 소개 • 참석자참여소감청취, Exit survey 안내 후 종료	13:20	0:10

자료: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240. 〈표 V-3-1〉을 일부 보완함.

아울러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하여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중 지자체의 상황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참여한 주민들은 전체 리스트 중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리스트들을 지워나간다. 남은 리스트들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지자체의 최종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로 선정한다. 선정된 체크리스트는 주민 대상 수요조사지에 반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라) 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주민참여 워크숍이 끝난 직후부터 준비하여 가능한 3주 이내 주민 대상 설문조사 설문을 완료하고 결과 분석은 5주 이내 마무리하도록 한다.

- 설문조사지의 구성

컨설팅단은 <부록 3>에 예시로 제시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 워크숍에서 도출된 지역 특성을 살린 최종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설문지를 구성한다.

- 설문조사 실시

지자체 업무 담당자는 완성된 설문을 육아 중인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200~300명의 설문 응답을 받는다. 설문 응답자 확보를 위해 육아하는 가정의 이용이 많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등의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 설문조사 결과 분석

수합된 설문은 컨설팅단에 제공되고, 컨설팅단은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간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마) 3차 방문 컨설팅

2차 컨설팅 진행 후 5주 이내에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진행한다. 3차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육아친화성을 종합진단하며 향후 개선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컨설팅단은 그동안 추진 해온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지자체 육아정책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는 그 적용 가능지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추후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4단계: 컨설팅 평가

컨설팅단은 컨설팅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공한다. 컨설팅 종료와 더불어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과정에 대한 간략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컨설팅 과정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컨설팅 모형 수정에 활용한다.

VI

육아친화마을 조성 추진 관련 사례

- 1 우수 활용 사례: 울산광역시 남구
- 2 우수 활용 사례: 부산광역시
- 3 2차년도 연구 지역 검토 사례: 경기도 광명시
- 4 2차년도 연구 지역 검토 사례: 경기도 남양주시
- 5 소결

VI. 육아친화마을 조성 추진 관련 사례

본 장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관련 및 친화인증사업 운영 등 육아(관련)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 사례를 살펴보았다.

1. 우수 활용 사례: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에서 개발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 육아친화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가. 개요 및 육아관련 현황

활용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울산광역시 남구의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리고 보육현황 등의 기초자료를 살펴보겠다.

1) 인구 및 세대 현황

남구 인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 이하의 증감이 있고,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2.1% 감소했고,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1.2%가 감소하여 총 320,064명으로 인구가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세대수는 2014년부터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1.9%의 증가율을 보여 2020년 기준 137,925세대가 남구에 거주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표 VI-1-1〉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 및 세대 추이

단위: 명, 세대(%)

구분	인구		세대 수	
	총인구	(증감률)	총세대수	(증감률)
2014	347,759	(-0.37)	132,974	(1.54)
2015	343,598	(-1.19)	133,669	(0.52)
2016	340,714	(-0.83)	134,140	(0.35)
2017	335,439	(-1.54)	134,372	(0.17)
2018	330,732	(-1.40)	134,986	(0.45)
2019	323,819	(-2.09)	135,311	(0.24)
2020	320,064	(-1.15)	137,925	(1.9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2) 영유아 인구 현황

남구의 영유아 인구 규모는 2021년 기준 12,684명(행정안전부, 2021)으로 전체 남구 인구인 320,064명의 4.0%를 차지한다. 영유아 인구 추이는, 0~5세 전체의 인구가 2014년에 17,863명임에 비해 2020년에 12,684명을 나타내어, 2014년 대비 29.0%의 영유아 인구 감소를 나타냈다. 그 중, 0~2세 영아인구의 감소율이 2014년 9,071명에서 2020년 5,292명으로 줄어 41.7% 감소하였고, 3~5세 유아 인구의 감소율은 15.9%를 나타냈다.

〈표 VI-1-2〉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총인구	0~5세 전체	(전체 인구 대비 비율)	0~2세	(전체 인구 대비 비율)	3~5세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014	347,759	17,863	(5.13)	9,071	(2.60)	8,791	(2.52)
2015	343,598	17,544	(5.10)	8,724	(2.53)	8,820	(2.56)
2016	340,714	17,221	(5.05)	8,547	(2.50)	8,674	(2.54)
2017	335,439	16,118	(4.80)	7,745	(2.30)	8,373	(2.49)
2018	330,732	14,919	(4.51)	6,780	(2.04)	8,139	(2.46)
2019	323,819	13,693	(4.22)	5,796	(1.78)	7,897	(2.43)
2020	320,064	12,684	(3.96)	5,292	(1.65)	7,392	(2.30)
2014~2020 증감률	(-7.96)	(-28.99)	(-22.81)	(-41.66)	(-36.54)	(-15.91)	(-8.73)

주: 전국 4.093%, 부산광역시 3.65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남구 행정동별 영유아 인구 현황은 삼산동, 대현동이 순서대로 높은 영아, 유아 인구수를 보인다.

〈표 VI-1-3〉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동별 영유아 인구현황(2020년 기준)

단위: 명

남구	전체 인구	만0세	만1세	만2세	영아 총계	만3세	만4세	만5세	유아 총계
계	320,064	1,619	1,806	1,806	5,292	2,148	2,527	2,717	7,392
신정1동	19,117	58	71	71	186	81	91	98	270
신정2동	24,772	111	124	124	358	154	205	209	568
신정3동	16,361	102	111	111	318	102	139	158	399
신정4동	21,448	114	135	135	397	149	157	208	514
신정5동	8,855	44	30	30	127	49	32	56	137
달동	27,340	117	159	159	398	147	175	173	495
삼산동	48,826	247	262	262	809	348	369	434	1,151
삼호동	20,841	68	88	88	250	102	122	139	363
무거동	32,325	142	158	158	442	212	243	240	695
옥동	26,716	127	145	145	425	177	247	221	645
대현동	30,503	220	248	248	741	315	374	413	1,102
수암동	16,986	115	113	113	352	120	179	167	466
선암동	14,588	94	105	105	312	128	125	134	387
아름장생포동	11,386	60	57	57	177	64	69	67	2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전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의 0~5세 영유아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국의 영유아 수가 2014년 대비 2020년 22.6%가 감소하였는데, 그 중 0세, 1세, 2세의 감소율이 36.9%, 30.6%, 32.1%로 나타나, 영아감소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 전체 0~5세 영유아의 2014년 대비 2020년 인구수가 25.0%감소하였고, 남구는 2014년 대비 2020년 인구수가 29.0% 감소하여, 전국의 영유아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표 VI-1-4〉 전국울산시남구 영유아 인구 증감률

단위: 명(%)

구분	연도	0~5세 영유아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2014	2,741,835	419,833	438,778	488,030	474,932	472,731	447,531
	2015	2,739,901	424,563	437,994	439,989	488,716	475,519	473,120
	2016	2,680,088	393,674	441,720	439,207	440,530	489,140	475,817
	2017	2,568,516	345,786	409,814	442,943	439,700	440,872	489,401
	2018	2,415,349	317,685	361,625	411,225	443,586	440,123	441,105
	2019	2,285,605	295,132	330,970	362,900	412,018	444,102	440,483
	2020	2,121,390	265,087	304,651	331,606	363,250	412,429	444,367
	2014~2020 증감률	(-22.63)	(-36.86)	(-30.57)	(-32.05)	(-23.52)	(-12.76)	(-0.71)
울산시	2014	70,124	11,213	11,436	12,473	22,977	11,806	11,219
	2015	70,709	11,348	11,640	11,449	12,518	11,965	11,789
	2016	69,468	10,520	11,646	11,538	11,391	12,472	11,901
	2017	66,455	9,047	10,758	11,527	11,460	11,265	12,398
	2018	61,743	7,894	9,210	10,682	11,4025	11,362	11,193
	2019	57,822	7,324	8,129	9,158	10,584	11,355	11,305
	2020	52,566	6,375	7,398	8,022	9,069	10,471	11,231
	2014~2020 증감률	(-25.04)	(-43.15)	(-35.31)	(-35.69)	(-60.53)	(-11.31)	(0.11)
남구	2014	17,863	2,997	2,937	3,144	3,028	2,886	2,877
	2015	17,544	3,003	2,956	2,765	3,060	2,927	2,833
	2016	17,221	2,710	2,980	2,857	2,726	3,062	2,886
	2017	16,118	2,283	2,633	2,829	2,736	2,655	2,982
	2018	14,919	1,938	2,231	2,611	2,761	2,734	2,644
	2019	13,693	1,759	1,906	2,131	2,510	2,704	2,683
	2020	12,684	1,619	1,806	1,867	2,148	2,527	2,717
	2014~2020 증감률	(-28.99)	(-45.98)	(-38.51)	(-40.62)	(-29.06)	(-12.44)	(-5.5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3) 보육현황

남구 전체 보육시설 수는 2014년 271개에서 점차 줄어 2020년에는 220개 소⁴²⁾이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25개소, 민간어린이집이 81개소, 가정어린이

42) 2021년 6월 현재, 166개소.

집이 81개소이다. 2014년 대비 2020년의 전체 보육시설의 수는 19.0% 가량 감소하였다. 그 중, 국공립 비중은 2014년 3.7%였던 것에 반해, 2018년 6.4%, 2020년에 11.4% 정도로 높아져, 최근 6년간, 약 1.5배 정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었다. 지난 7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민간은 약 35.0%, 가정어린이집은 약 37.0%정도 감소하였다.

〈표 VI-1-5〉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수

단위: 개소, (%)

구분	남구 전체	국공립	(국공립 비중)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
2014	271	10	(3.69)	125	129	5	-	1	1
2015	263	10	(3.80)	122	123	6	-	1	1
2016	354	11	(3.10)	118	115	8	-	1	1
2017	244	12	(4.91)	114	107	9	-	1	1
2018	236	15	(6.35)	109	100	10	-	1	1
2019	222	22	(9.90)	94	93	9	-	1	3
2020	220	25	(11.36)	81	81	9	-	1	3
2014~2020 증감률	(-18.82)	(150.00)	(207.86)	(-35.20)	(-37.21)	(80.00)	-	(0.00)	(200.0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SEARCHKEY=TITLE&SEARCHVALUE=%EB%B3%B4%EC%9C%A1%ED%86%B5%EA%B3%84 2021. 9. 29. 인출.

〈표 VI-1-6〉 울산광역시 남구 동별 보육시설 수

단위: 개소, (%)

구분	연도	전체	국공립	(국공립 비중)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
남구 전체	2019	222	22	(9.90)	94	93	9	-	1	3
	2020	220	25	(11.36)	81	81	9	-	1	3
	2021	188	23	(12.23)	75	76	9	-	1	4
신정1동	2019	5	1	(20.00)	2	-	1	-	-	1
	2020	6	1	(16.67)	2	1	1	-	-	1
	2021	5	1	(20.00)	1	1	1	-	-	1
신정2동	2019	16	3	(18.75)	5	6	2	-	-	-
	2020	15	3	(20.00)	5	5	2	-	-	-
	2021	13	1	(7.69)	5	4	2	-	-	1
신정3동	2019	11	1	(9.09)	8	1	1	-	-	-

구분	연도	전체	국공립	(국공립 비중)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
	2020	10	1	(10.00)	7	1	1	-	-	-
	2021	9	1	(11.11)	6	1	1	-	-	-
신정4동	2019	17	2	(11.76)	8	7	-	-	-	-
	2020	14	2	(14.29)	6	6	-	-	-	-
	2021	14	2	(14.29)	5	7	-	-	-	-
신정5동	2019	3	1	(33.33)	2	-	-	-	-	-
	2020	3	1	(33.33)	2	-	-	-	-	-
	2021	3	1	(33.33)	2	-	-	-	-	-
달동	2019	13	1	(7.69)	8	4	-	-	-	-
	2020	11	1	(9.09)	6	3	-	-	-	1
	2021	11	1	(9.09)	6	3	-	-	-	
삼산동	2019	36	1	(2.78)	18	14	2	-	-	1
	2020	35	1	(2.86)	17	14	2	-	-	1
	2021	33	1	(3.03)	17	12	2	-	-	1
삼호동	2019	17	1	(5.88)	5	11	-	-	-	-
	2020	32	1	(3.13)	21	10	-	-	-	-
	2021	13	1	(7.69)	3	9	-	-	-	-
무거동	2019	29	1	(3.45)	12	15	-	-	1	-
	2020	22	1	(4.55)	9	12	-	-	-	-
	2021	21	1	(4.76)	8	11	-	-	-	-
옥동	2019	9	2	(22.22)	5	1	1	-	-	-
	2020	10	4	(40.00)	4	1	1	-	-	-
	2021	11	4	(36.36)	3	3	1	-	-	-
대현동	2019	30	4	(13.33)	5	21	-	-	-	-
	2020	28	4	(14.29)	4	20	-	-	-	-
	2021	24	4	(16.67)	3	17	-	-	-	-
수암동	2019	10	1	(10.00)	7	2	-	-	-	-
	2020	9	2	(22.22)	7	-	-	-	-	-
	2021	12	2	(16.67)	9	1	-	-	-	-
선암동	2019	18	2	(11.11)	7	8	1	-	-	-
	2020	10	2	(20.00)	-	7	1	-	-	-
	2021	15	2	(13.33)	5	7	1	-	-	-
아름장생포동	2019	5	1	(20.00)	3	-	1	-	-	-
	2020	5	1	(20.00)	3	-	1	-	-	-
	2021	4	1	(25.00)	2	-	1	-	-	-

자료: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2021) 내부자료.

울산광역시 5개구 별 보육시설 수의 3년간 추이를 보면, 국공립 시설 확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보육시설 수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을 살펴보았는데, 구별로 차이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2020년 기준 북구(13.7%), 울주군(12.9%), 남구(12.5%), 동구(9.5%), 중구(5.5%) 순서로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나타냈으며, 남구는 12.50%로 높은 국공립 비중을 나타냈다. 그 중 북구(5.9% → 13.7%)와 울주군(6.2% → 13.9%)는 2018년 대비 2020년의 증가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높았으나 남구(6.4% → 12.5%)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한편, 중구, 동구는 2020년 기준 10.0%이하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나타내었다.

〈표 VI-1-7〉 울산광역시 구별 보육시설 수 (2018~2020)

단위: 개소(%)

구분	연도	전체	국공립	국공립 비중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단체	사회복 지 법인	부모 협동
울산시	2018	868	52	(5.99)	442	316	36	5	13	4
	2019	842	72	(8.55)	412	300	35	5	13	5
	2020	790	89	(11.27)	363	280	36	4	13	5
중구	2018	141	5	(3.55)	80	44	8	-	3	1
	2019	135	6	(4.44)	78	39	9	-	3	-
	2020	127	7	(5.51)	69	39	9	-	3	-
남구	2018	236	15	(6.36)	109	100	10	-	1	1
	2019	222	22	(9.91)	94	93	9	-	1	3
	2020	200	25	(12.50)	81	81	9	-	1	3
동구	2018	142	11	(7.75)	75	51	5	-	-	-
	2019	135	11	(8.15)	73	46	5	-	-	-
	2020	126	12	(9.52)	68	40	6	-	-	-
북구	2018	204	12	(5.88)	95	86	5	2	2	2
	2019	210	22	(10.48)	90	87	5	2	2	2
	2020	205	28	(13.66)	80	87	5	1	2	2
울주군	2018	145	9	(6.21)	83	35	8	3	7	-
	2019	140	11	(7.86)	77	35	7	3	7	-
	2020	132	17	(12.88)	65	33	7	3	7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s.jsp?PAR_MENU_ID=03&MENU_ID=0321&SEARCHKEY=TITLE&SEARCHVALUE=%EB%B3%B4%EC%9C%A1%ED%86%B5%EA%B3%84 2021. 9. 29. 인출.

나. 육아친화 관련 추진 사업 현황⁴³⁾

울산광역시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 수행한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보고서」를 정리하여 추진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초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지자체 수준에서도 다양한 출산지원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금이나 물품 제공 등의 수혜성 정책이 주를 이루어 그 효과에는 한계가 나타나며, 2)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이 많지만 정책의 수요자인 육아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체감률이 낮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3) 육아지원정책들이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면밀하게 검토되고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지자체에서 육아를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남구의 육아정책 또한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발달하고 육아하는 당사자도 행복하게 육아하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육아친화 인식조사를 통하여 울산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남구공동체육아정책의 비전(vision)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연구방법 및 절차⁴⁴⁾

첫째,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육아친화마을’ 인식 정도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개발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부록 2)’를 5점 척도 설문지 형식으로 배부하여 조사결과를 수집한다.

둘째, 설문지를 회수하여 문항별, 제반 여건별로 응답내용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민의 인식 정도를 조사한다.

셋째, 응답내용 결과 중 만족도가 낮게 나온 문항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남구민의 육아친화마을 인식 정도를 알아본다.

넷째, 주관식 문항을 추가하여 응답자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생각과 육아친화마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다.

43) 해당 섹션의 내용은 울산광역시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 수행한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재구성하거나 필요 시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당 연구진들의 확인과 허가를 득하였음을 밝힘.

44) 본문 재사용.

2) 연구결과⁴⁵⁾⁴⁶⁾

응답자 207명 중 17명이 세 자녀 가구, 99명(48.0%)이 두 자녀가구, 108명(52.0%)이 한자녀 가구로 나타났다.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별 설문결과 분석 내용은 아래의 <표 VI-1-8>과 같다.

[그림 VI-1-1]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인식 조사 연구 절차



<표 VI-1-8> 일반집단 구성요소별 문항 및 결과 안내

구성요소		문항	응답결과	
			만족	불만족
객관식 (86문항)	철학과 가치	문항 1~8	문항 1~8	
	인적네트워크	문항 9&17	문항 9,10,12,14,15	문항 11,12,13,16,17
	보육(교육)·돌봄서비스 인프라	문항 18~35	문항 19~35	문항 18
	공원녹지공간	문항 36~45	문항 36~45	
	여가문화서비스 인프라	문항 46~55	문항 46~55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문항 56~67	문항 56~67	

45) 본고에서는 해당 연구에서 실시한 일반인 대상 조사결과만 포함하였음. 전문가 대상 조사 및 결과는 해당 연구보고서를 참조

46) 해당 섹션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해당 연구의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배열 구조 및 문장 연결 등은 본 연구진이 본 보고서의 작성 양식에 맞추기 위하여 임의로 재구성함.

구성요소		문항	응답결과	
			만족	불만족
	교통보행 네트워크	문항 68~73	문항 68,69,70,72,73	문항 71
	치안안전서비스 인프라	문항 74~79	문항 74~75,77,79	문항76,78
	행정서비스 인프라	문항 80~86	문항 82	문항 80,81,83,84,85,86
주관식 (1문항)		문항 87	주관식 응답	

자료: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보고서

가) 인적네트워크

응답자 207명 중 138명(66.7%)이 마을공동체, 육아공동체 형성 및 운영에 대해 불만족함을 알 수 있다.⁴⁷⁾ 또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운영에 대한 불만족은 72.5%로 나타났으며, 공동체 활동 공간과 시설에 대한 불만족 응답자는 7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07명 중 162명(78.3%)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9〉 인적네트워크 만족도

문항	단위: 명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31	42	65	47	22
	15%	20.3%	31.4%	22.7%	10.6%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은 양육자들끼리 관계를 맺어주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36	46	68	36	21
	17.4%	22.2%	32.9%	17.4%	10.1%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47	61	56	31	12
	22.7%	29.5%	27.1%	15%	5.8%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예: 사용시간 및 방법).	37	53	61	40	16
	17.9%	25.6%	29.5%	19.3%	17.7%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예: 수유 및 주차시설).	37	58	67	31	14
	17.9%	28%	32.4%	15%	16.8%

자료: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보고서

47) 조사결과 정리는 ‘보통’으로 응답했을 경우에 ‘불만족’ 응답으로 해석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나)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응답자 207명 중 142명(68.6%)이 내 아이의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는 아이의 숫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0〉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

단위: 명

문항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는 아이의 숫자가 적다.	24 11.6%	39 39%	79 38.2%	40 19.3%	25 12.1%

자료: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보고서

다) 교통보행 네트워크

조사대상자 207명 중 162명(78.3%)이 보행도로에서 유모차(또는 휠체어)가 다니기에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I-1-11〉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

단위: 명

문항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62 30%	45 45%	55 26.6%	26 12.6%	19 9.2%

자료: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보고서

라)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응답자 207명 중 152명(73.4%)이 경찰 등 방법인력이 순찰을 자주 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21명(58.4%)은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 대해 불만족함을 알 수 있다.

〈표 VI-1-12〉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

단위: 명

문항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경찰 등 방범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24	52	76	38	17
	11.6%	25.1%	36.7%	18.4%	8.2%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30	40	51	45	41
	14.5%	19.3%	24.6%	21.7%	19.8%

자료: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보고서

마) 행정 서비스 인프라

조사대상자 207명 중 168명(76.3%)이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에 대해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71명(82.6%)이 예산의 정도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07명 중 161명(77.8%)이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155명(74.8%)은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4명(79.3%)이 의견 개진 방법들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데, 응답자 207명 중 173명(83.5%)이 구청장의 의견 수렴 노력도에 대해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3〉 행정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

단위: 명

문항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이 존재한다.	30	40	98	32	17
	9.7%	19.3%	47.3%	15.5%	8.2%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29	53	89	22	14
	14%	25.6%	43%	10.6%	6.8%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27	38	96	33	13
	13%	18.4%	46.4%	15.9%	6.3%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하다.	28	34	93	41	11
	13.5%	16.4%	44.9%	19.8%	5.3%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29	44	91	30	13
	14%	21.3%	44%	14.5%	6.3%

문항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대표(구청장)는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한다.	41 19.8%	57 27.5%	75 36.2%	23 11.1%	11 5.3%

자료: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보고서

바) 주제 및 마을별 요구사항

주관식 문항에서 도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응답자들의 요구를 주제별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 VI-1-14>과 같다. 가장 높은 요구 주제는 ‘유모차 통행의 어려움 및 어린이보행, 어린이 자전거 통행 안전 요구’이며, 8곳에서 동일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요구 주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놀이터 설치요구’,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요구’,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부족’, ‘시간제 보육 시설 요구’와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요구’,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 저학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요구’와 ‘대중교통의 확충’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1-14> 주제 별 마을별 요구사항

주제	달동	대현동	무거동	삼산동	삼호동	선암동	수암동	신정동	야음동	옥동	계
유모차 통행의 어려움 및 어린이 보행, 어린이 자전거 통행 안전 요구	●		●	●	●	●	●		●	●	8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놀이터 설치 요구	●		●	●	●			●			5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요구		●			●	●		●			4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부족						●		●		●	3
시간제 보육 시설 요구				●	●						2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 요구							●			●	2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 저학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요구(예: 육아종합지원센터)				●							1
대중교통의 확충						●					1

자료: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보고서

사) 기타 항목에 대한 의견

다음은 상기 항목과는 다르게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항목들이다. 공원녹지공간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의 공원녹지공간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남구 내 울산대공원과 선암호수공원 등 공원/녹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고 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항목에 있어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의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남구 내 여가/문화 공간들이 잘 구축되어 지역민들의 만족감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3) ‘울산남구 안심 육아공동체 발전’을 위한 실천적 전략

해당 연구는 연구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 주제별 육아공동체 구성, 2) 육아공동체를 위한 공간 마련, 3) 영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한 공간마련과 프로그램 제공, 4) 조례 개정 및 주기적 의견 수렴 조사 시행, 5) 육아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법 실시, 6) 육아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등과 같은 여섯 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VI-1-15〉 울산광역시 남구 안심 육아공동체 발전을 위한 실천 전략

구분	주제
전략1	주제별 육아공동체 구성
전략2	육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동별 설치로 근접성과 편리성 제공/ 신정동, 옥동)
전략3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성·구체성이 있는 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제공
전략4	조례개정 및 남구보육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기적 의견수렴 조사
전략5	육아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 실시(높은 빌딩 위 또는 도보이동인구수가 많은 곳의 넓은 벽면을 활용한 LED전광판 광고)
전략6	육아정책 관련 의견개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자료: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보고서

다. 인증기준 적용

이상에서 수집된 울산광역시 남구의 육아친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된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이를 평가해 보았다. 다만 실제적으로 인증사업에 대한 신청지원을 받아 그 절차를 진행한 사항이 아니므로 인증기준의 포함 여부 수준만 연구진이 파악하여 보았다.

현시점에서 인증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평가할 수 없는 항목들이 대부분이지만 육아친화마을 조성 3대 목표 반영,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신규사업 발굴 등의 내용은 울산광역시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 연구와 본 연구진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실행되거나 향후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VI-1-16〉 육아친화마을 신규인증 심사기준

항목	지표	내용	평가
사업목표	목표 및 추진계획	- 육아친화마을 조성 3대 목표 반영	●
		- 추진목표의 명확성	-
		- 사업목표와 사업추진계획의 부합성	-
		-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
사업기반	제도적 여건	- 주무부서(인력) 확보	-
		-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
		- 조례 제개정	-
	예산확보	- 재원확보 방안의 구체성	-
		-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 예산 확보	-
		- 육아친화 철학과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 확보	-
		- 지역주민의 육아친화 활동 지원 예산 확보	-
	조성의지	-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노력	●
		- 시군구의회 및 기관장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활동 실적	
		-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친화사업 추진 여부	X

2. 우수 활용 사례: 부산광역시

가. 개요 및 육아관련 현황

1) 인구 및 세대 현황

부산광역시는 2021년 8월 현재, 1,537,395세대가 거주하고 인구는 3,359,527명(남: 1,644,378명, 여:1,715,149)⁴⁸⁾이다. 인구수는 2020년 기준 3,391,946명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부산광역시 거주 세대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유아 인구규모는 2021년 8월 기준 30,218명으로 전체 부산광역시 구 697,108명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인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0.6% 감소하여, 총 3,391,946명으로 인구가 집계되고 있다. 세대수 역시 약 1~2% 증감이 있으나 2018년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0.9%,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1.2%의 증가율을 보이며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2.2% 증가하여 2020년 기준 1,530,431세대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표 VI-2-1〉 부산광역시 인구 및 세대 추이

단위: 명, 세대(%)

구분	인구		세대 수	
	총인구	(증감률)	총세대수	(증감률)
2014	3,519,401	(-0.23)	1,421,648	(1.21)
2015	3,513,777	(-0.16)	1,437,818	(1.14)
2016	3,498,529	(-0.43)	1,451,270	(0.94)
2017	3,470,653	(-0.80)	1,467,555	(1.12)
2018	3,441,453	(-0.84)	1,480,468	(0.88)
2019	3,413,841	(-0.80)	1,497,908	(1.18)
2020	3,391,946	(-0.64)	1,530,431	(2.17)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4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 2021. 11. 17. 인출.

2) 영유아 인구 현황

부산광역시의 영유아 인구 규모는 2020년 기준 123,962명으로 전체 부산광역시 인구인 3,391,946명의 3.7%를 차지한다. 영유아 인구 추이는, 0~5세 전체의 인구가 2014년에 159,816명임에 비해 2020년에 123,962명을 나타내어, 2014년 대비 22.4%의 영유아 인구 감소를 나타냈다. 그 중, 0~2세 영아인구의 감소율이 2014년 79,755명에서 2020년 51,246명으로 줄어 35.8% 감소하였고, 3~5세 유아 인구는 2014년 80,061명에서 72,716명으로 9.2% 감소하였다.

〈표 VI-2-2〉 부산광역시 영유아 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0~5세 전체	(전체 인구 대비 비율)	0~2세	(전체 인구 대비 비율)	3~5세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014	3,519,401	159,816	(4.54)	79,755	(2.27)	80,061	(2.27)
2015	3,513,777	162,479	(4.62)	78,169	(2.22)	84,310	(2.40)
2016	3,498,529	160,015	(4.57)	77,081	(2.20)	82,934	(2.37)
2017	3,470,653	152,465	(4.39)	71,703	(2.07)	80,762	(2.33)
2018	3,441,453	142,927	(4.15)	64,435	(1.87)	78,492	(2.28)
2019	3,413,841	134,093	(3.93)	57,052	(1.67)	77,041	(2.26)
2020	3,391,946	123,962	(3.65)	51,246	(1.51)	72,716	(2.14)
2014~2020 증감률	-3.62	-22.43	(-19.52)	-35.75	(-33.33)	-9.17	(-5.7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인출.

3) 보육 현황

부산광역시 전체 보육시설 수는 2014년 1,957개에서 점차 줄어 2020년에는 1,778개소⁴⁹⁾이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261개소, 민간어린이집이 648개소, 가정어린이집이 692개소이다. 2014년 대비 2020년의 전체 보육시설의 수는 9.8% 가량 감소하였다. 그 중, 국공립 비중은 2014년 7.9%였던 것에 반해, 2018년 9.5%, 2020년 14.7% 정도로 높아져, 최근 6년간, 약 1.8배 정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었다. 지난 7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약 21.0%, 가정어린이집은 약 15.0%정도 감소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은 2014년 29개소였으나 2020년에는 57개소로 약 1.8배 정도 증가하였다.

49) 2021.6월 166개소이다.

〈표 VI-2-3〉 부산광역시 보육시설 수

단위: 개소, %

구분	부산광역시 전체	국공립	(국공립 비중)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
2014	1957	155	(7.92)	827	814	29	39	84	9
2015	1971	161	(8.17)	824	820	32	38	84	12
2016	1937	163	(8.42)	804	795	42	38	82	13
2017	1920	165	(8.59)	784	789	48	36	82	16
2018	1,891	180	(9.52)	762	764	53	36	82	14
2019	1,848	211	(11.42)	715	739	55	35	81	12
2020	1,778	261	(14.68)	648	692	57	31.00	78	11
2014~2020 증감률	-9.79	62.11	(79.71)	-21.36	-15.61	78.13	-18.42	-7.14	-8.33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SEARCHKEY=TITLE&SEARCHVALUE=%EB%B3%B4%EC%9C%A1%ED%86%B5%EA%B3%84 2021. 9. 29. 인출.

나.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⁵⁰⁾

1) 구군별 육아친화성 측정 및 분석

가) 육아친화성 지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자녀를 육아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사회를 목표로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1, 2차년도 연구를 참고하여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부산광역시의 육아친화성을 측정 분석하였다. 지표는 크게 육아 직접적 지원 지표와 육아 인프라 관련 지표로 구분하였고, 지표 산식은 [그림 VI-2-1]와 같다.

〈표 VI-2-4〉 부산광역시 육아친화성 측정 지표

구분	내용
육아 직접적 지원 지표	-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현황 - 돌봄 지원(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 시간제보육서비스)

50) 본 연구에서 진행한 「육아친화마을 구현을 위한 현장 세미나」에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강하라 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을 사용함.

구분	내용
육아인프라 관련 지표	- 공원/녹지(공원개소 및 면적, 어린이공원 개소 및 면적) - 여가/문화(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문화기반시설 현황) - 교통/안전(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안전지수 등) - 보건/의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종합병원 수)

자료: 강하라(2021). 구군 출산·육아환경 및 여건분석: 육아친화마을 조성 중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그림 VI-2-1] 부산광역시 육아친화성 측정 지표 산식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					육아 인프라 관련 지표				
요인	범주	지표명	해당정보	산출 방식	요인	범주	지표명	해당정보	산출 방식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	유치원 시설	어린이집 시설	어린이집 공급수준	어린이집 수 [구군]100-4세인구수 X 100	공원/녹지	공원	공원 공급수준	공원면적 [구군]공원면적/구군 X 100	공원면적 [구군]공원면적/구군 X 100
		유치원 시설	유치원 공급수준	유치원 수 [구군]100-4세인구수 X 100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공급수준	어린이공원면적 [구군]100-5세인구수 X 100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급수준	건강가정지원센터 수 [구군]100-4세인구수 X 10,000		도서관	도서관 공급수준	공공도서관 수 [구군]공공도서관 수 X 1,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수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 [구군]100-4세인구수 X 1,000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공급수준	어린이도서관 수 [구군]100-4세인구수 X 100	
	공동육아 나눔터	공동육아 나눔터 공급수준	공동육아 나눔터 수 [구군]100-4세인구수 X 10	여가/문화	문화 시설	인구 10만당 당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수 [구군]100-4세인구수 X 100,000	문화기반시설 수 [구군]100-4세인구수 X 100,000	
돌봄 공동체	돌봄공동체 공급수준	돌봄공동체 수 [구군]100-4세인구수 X 10	자동차 판매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자동차 판매 당 교통안전지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군]자동차판매량/구군 X 1,000			
시니어 보육서비스	시니어 보육서비스 공급수준	시니어보육서비스 공급수준 100-4세인구수 X 5	교통/안전		교통	지역안전 상대유형	지역안전 상대유형 [구군]100-4세인구수 X 1,000		
돌봄 지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공급수준	소아청소년과 수 [구군]100-4세인구수 X 1,000		보건/의료	가정	가정	가정	가정
	의학과	의학과	의학과			의학과	의학과	의학과	의학과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주: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에서 제시된 범주 중 아동기 지표(초등학교 시설,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직원 수)와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지표는 삭제하였음.
 자료: 강하라(2021). 구군 출산·육아환경 및 여건분석: 육아친화마을 조성 중심,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구군의 특성 및 인구 현황 등에 따라 구군 시설 및 인프라를 각 요소별 수요자를 고려한 산식을 평가 요소로 확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절대규모(각 구군별 시설 및 자원의 수 또는 면적 집계를 통해 산출) 및 상대규모(각 구군별 지표별 수요인구 대비 시설수 또는 면적 비율 환산을 통해 산출)를 고려하여 각 구군의 절대규모와 상대규모를 유형화하였다. 각 구군별로 절대규모의 유형화 수준과 상대규모 유형화 수준을 비교한 결과 구군 특성(수요 인구 규모, 구군 지역 규모 등)에 따라 절대규모와 상대규모에 차이가 있는 구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절대규모 수준이 낮으나 수요인구 규모 역시 적어 상대규모 수준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절대규모 수준은 높으나, 수요인구 규모 역시 높아 상대규모 수준은 낮게 나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육아친화성 측정 결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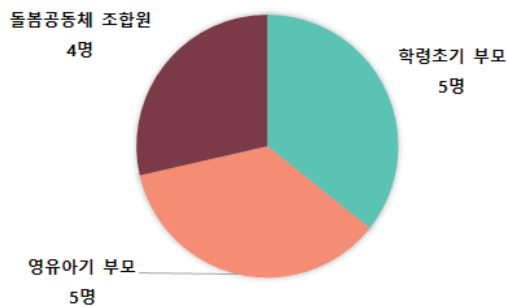
지표를 활용하여 구군별 육아친화성 수준 측정 결과 구군별 지표에 따른 절대적·상대적 육아친화성 수준을 이해하였고, 구군 내 수요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관리·감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구군 간 비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구군 내 점점에 초점을 두어 절대적·상대적 육아친화성 비교 이해 외에도 지표 내 하위지표 수준 점검을 수행하였다. 지표를 통한 구군별 육아친화성 수준 측정 결과는 구군 내 인구 특성(연령, 비율, 향후 기대 추세 등) 외에도 지리적 특성, 주요 시설 특징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2) 부산광역시 구군 출산정책 및 육아친화마을 전문가 조사

가) 초점집단면접 조사

부산광역시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유자녀 부모 요구 확인을 위하여 초점집단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상은 영유아기 자녀 및 학령초기 자녀를 둔 부모와 돌봄공동체 조합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VI-2-2] 초점집단면접 조사 대상자 구성



자료: 강하라(2021). 구군 출산·육아환경 및 여건분석: 육아친화마을 조성 중심.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개념과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였고, <표 IV-2-5>와 같다.

〈표 VI-2-5〉 부산광역시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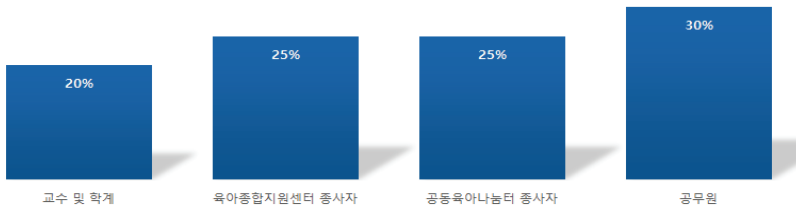
개념	하위개념
현재 거주하는 지역 육아 환경 중 만족하는 부분	- 공원, 녹지, 운동장 등 물리적 환경 -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육아와 관련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지원 기관 - 아동 전용 의료시설 - 안전하고 넓은 도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 육아 환경 중 불만족하는 부분	- 충분한 제반 시설과 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육아 지원 기관의 이용 한계 -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음 - 의료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도로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음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요인	- 돌봄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인프라 - 충분한 도서관 시설 - 문화와 여가 지원 시설 -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돌봄 공동체와 그에 따른 자원과 거버넌스 - 안전이 확보된 도로 환경
육아친화마을이 갖춰야 할 가치관과 태도	- “우리는 모두 다 아이였다.” - 아동 관점의 도시 -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육아친화마을

자료: 강하라(2021). 구군 출산·육아환경 및 여건분석: 육아친화마을 조성 중심.

나) 전문가 조사

부산광역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성은 교수 및 학계 관련 전문가 4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5인,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5인, 관련 공무원 6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VI-2-3〕 전문가 조사 대상자 구성



자료: 강하라(2021). 구군 출산·육아환경 및 여건분석:육아친화마을 조성 중심.

전문가 의견 및 제언을 종합하면 〈표 VI-2-6〉과 같다.

〈표 VI-2-6〉 전문가 의견 및 제언

영역	내용
육아친화마을 가치관	- 아동의 발달과 관점을 존중하는 인식제고 - 육아와 영유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아동이 눈치 보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마련 - 성평등한 육아 문화 확산
물리적 환경 인프라	- 육아와 관련된 것을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육아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 기존 육아 관련 시설들 간 연계 시행(육아종합지원센터와 박물관/미술관 간의 연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등) - 보호자와 자녀가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공원, 놀이터 등)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접근성 향상 - 시설 내 육아지원 공간 조성(수유 및 기저귀 갈이대 설치, 영유아 동반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서비스 인프라	- 영유아 성장과 발달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 돌봄 인프라 운영 시간 확대(맞벌이 부모 대상) - 육아 관련 어려움을 돕는 부모교육 제공 - 자녀 동반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함께존/키즈존 등을 운영하는 업체 선정 -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예약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외국어/영어 육아 정보지 비치
인적 네트워크	- 육아를 위한 소모임 또는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운영
정책 및 행정 서비스	-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 - 지자체장의 육아친화마을에 관한 높은 관심도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방 조례 제정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 구군 간 시설 및 인프라 편차 없도록 고루 분포하여 운영 - 접근성이 높은 행정 서비스 정보 및 관련 정책 정보 제공

자료: 강하라(2021). 구군 출산·육아환경 및 여건분석: 육아친화마을 조성 중심.

3) 육아친화마을 지표 관련 제언 및 논의점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의 지표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의 육아친화성을 측정 및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육아친화마을 지표 관련하여 가치관, 분위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 계획 및 시행 수준을 반영하거나 육아 및 출산 지원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시행 여부를 반영하는 것이 있다. 또한 육아친화성 조성사업 전후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육아친화성 지표와 연관하여 달성 수준이나 정책 시행 전후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이는 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2차년도 검토 사례: 경기도 광명시

본 절에서는 2차년도 연구에 참여하였던 경기도 광명시에 대하여 지난 1년 여 간 새롭게 추진되거나 기획된 육아친화 정책 혹은 사업을 파악하고자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 면담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가. 개요 및 육아관련 현황

1) 인구 및 세대 현황

광명시 인구는 2014년부터 지속해서 줄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 년도에 비해 2.0% 이하의 증감률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3.1% 감소했고,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5.7%만큼 크게 감소하여 총 298,599명으로 인구가 집계되고 있다.

세대수는 2018년이 2017년에 비해 0.75%의 증가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감소 추세이다.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4.3%의 감소율을 보여 2020년 기준 120,560세대가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다.

〈표 VI-3-1〉 광명시 인구 및 세대 추이

단위: 명, (%)

구분	인구		세대수	
	총인구	(증감률)	총세대수	(증감률)
2014	348,560	(-1.28)	129,039	(-1.04)
2015	344,978	(-1.02)	128,208	(-1.64)
2016	339,484	(-1.59)	127,461	(-0.58)
2017	332,790	(-1.97)	127,168	(-0.22)
2018	326,841	(-1.78)	128,126	(0.75)
2019	316,552	(-3.14)	126,001	(-1.65)
2020	298,599	(-5.67)	120,560	(-4.3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2) 영유아 인구

광명시의 영유아 인구 규모는 2021년 기준 6,954명(행정안전부, 2021)으로 전체 경기도의 인구인 615,708명의 1.1%를 차지한다. 영유아 인구 추이는, 0~5세 전체의 인구가 2014년에 21,264명임에 비해 2020년에 12,163명을 나타내어, 2014년 대비 42.80의 영유아 인구 감소를 나타냈다. 그 중, 0~2세 영아인구의 감소율이 2014년 10,414명에서 2020년 5,209명으로 줄어 50.0% 감소하였고, 3~5세 유아 인구의 감소율은 35.9%를 나타냈다.

〈표 VI-3-2〉 광명시 영유아 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0-5세 전체	(전체 인구 대비 비율)	0-2세	(전체 인구 대비 비율)	3-5세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014	348,560	21,264	(6.10)	10,414	(2.99)	10,850	(3.11)
2015	344,978	20,468	(5.93)	9,646	(2.80)	10,822	(3.14)
2016	339,484	18,923	(5.57)	8,939	(2.63)	9,984	(2.94)
2017	332,790	17,165	(5.16)	7,926	(2.38)	9,239	(2.78)
2018	326,841	15,355	(4.70)	6,914	(2.12)	8,441	(2.58)
2019	316,552	13,835	(4.37)	5,916	(1.87)	7,919	(2.50)
2020	298,599	12,163	(4.07)	5,209	(1.74)	6,954	(2.33)
2014-2020 증감률	(-14.33)	(-42.80)	(-33.23)	(-49.98)	(-41.61)	(-35.91)	(-25.18)

주: 전국 4.09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광명시 행정동별 영유아 인구 현황은 소하2동, 소하1동이 순서대로 높은 영아, 유아 인구수를 보인다.

〈표 VI-3-3〉 광명시 행정동별 영유아 인구현황 (2020)

단위: 명

광명시	전체인구	만0세	만1세	만2세	영아 총계	만3세	만4세	만5세	유아 총계
계	298,599	1,550	1,730	1,929	5,209	2,028	2,386	2,540	6,954
광명1동	695	1	1	0	2	0	2	1	3
광명2동	3,621	19	7	10	36	9	15	9	33
광명3동	9,895	18	25	35	78	24	44	22	90

광명시	전체인구	만0세	만1세	만2세	영아 총계	만3세	만4세	만5세	유아 총계
광명4동	14,123	59	46	56	161	71	60	75	206
광명5동	14,723	58	66	71	195	69	93	95	257
광명6동	10,873	44	46	70	160	70	81	93	244
광명7동	18,020	78	66	87	231	112	118	140	370
철산1동	11,185	55	59	72	186	75	98	101	274
철산2동	9,360	24	26	40	90	36	49	46	131
철산3동	32,927	125	175	200	500	225	282	308	815
철산4동	13,527	102	98	110	310	99	118	117	334
하안1동	26,579	106	134	189	429	162	230	242	634
하안2동	14,197	130	120	109	359	119	102	118	339
하안3동	20,670	131	141	140	412	140	155	161	456
하안4동	12,662	100	81	89	270	113	116	94	323
소하1동	32,120	133	210	238	581	257	303	351	911
소하2동	51,210	362	425	407	1,194	442	513	558	1,513
학운동	2,212	5	4	6	15	5	7	9	2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전국, 경기도, 광명시의 0~5세 영유아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국의 영유아 수가 2014년 대비 2020년 22.6%가 감소하였는데, 그 중 0세, 1세, 2세의 감소율이 36.9%, 30.6%, 32.1%로 나타나, 영아감소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0~5세 영유아의 2014년 대비 2020년 인구수가 16.6%감소하였고, 광명시는 2014년 대비 2020년 인구수가 42.8%감소하여, 전국의 영유아 감소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표 VI-3-4〉 전국경기도광명시 영유아 인구 증감률

단위: 명, (%)

구분	연도	0~5세 영유아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2014	2,741,835	419,833	438,778	488,030	474,932	472,731	447,531
	2015	2,739,901	424,563	437,994	439,989	488,716	475,519	473,120
	2016	2,680,088	393,674	441,720	439,207	440,530	489,140	475,817
	2017	2,568,516	345,786	409,814	442,943	439,700	440,872	489,401
	2018	2,415,349	317,685	361,625	411,225	443,586	440,123	441,105
	2019	2,285,605	295,132	330,970	362,900	412,018	444,102	440,483

구분	연도	0~5세 영유아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20	2,121,390	265,087	304,651	331,606	363,250	412,429	444,367
	2014~2020 증감률	(-22.63)	(-36.86)	(-30.57)	(-32.05)	(-23.52)	(-12.76)	(-0.71)
경기도	2014	737,803	109,299	116,253	131,017	128,969	129,204	123,061
	2015	738,754	111,355	116,728	118,171	132,736	130,026	129,738
	2016	729,339	104,099	119,264	119,772	120,371	134,576	131,257
	2017	706,088	92,366	111,697	122,017	121,953	122,070	135,985
	2018	677,880	87,536	100,422	115,769	125,398	124,626	124,129
	2019	651,271	82,540	94,410	102,974	117,921	127,335	126,091
	2020	615,708	76,810	88,101	96,802	105,278	119,777	128,940
	2014~2020 증감률	(-16.55)	(-29.72)	(-24.22)	(-26.11)	(-18.37)	(-7.30)	(4.78)
광명시	2014	21,264	3,220	3,393	3,801	3,725	3,646	3,479
	2015	20,468	3,172	3,204	3,270	3,676	3,630	3,516
	2016	18,923	2,769	3,095	3,075	3,072	3,486	3,426
	2017	17,165	2,253	2,735	2,938	2,974	2,932	3,333
	2018	15,355	2,039	2,262	2,613	2,782	2,851	2,808
	2019	13,835	1,761	2,025	2,130	2,491	2,684	2,744
	2020	12,163	1,550	1,730	1,929	2,028	2,386	2,540
	2014~2020 증감률	(-42.80)	(-51.86)	(-49.01)	(-49.25)	(-45.56)	(-34.56)	(-26.9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3) 보육현황

광명시의 보육시설 수 및 이용자 수⁵¹⁾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명시 전체 보육시설 수는 2014년 390개소에서 2020년 기준 244개소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종류별 시설 수 변화를 보면 2014년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각각 97, 256개소에서 58, 145개소로 감소한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4년 25개소에서 2020년 30개소로 20.0% 증가하였다.

5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에서 2021. 9. 29. 인출.

〈표 VI-3-5〉 광명시 보육시설 수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국공립	(국공립 비중)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
2014	390	25	(6.41)	97	256	2	4	2	4
2015	365	25	(6.85)	93	235	2	4	2	4
2016	342	25	(7.31)	90	214	3	4	2	4
2017	327	24	(7.34)	88	202	4	3	2	4
2018	309	28	(9.06)	82	187	4	2	2	4
2019	274	30	(10.95)	70	163	4	2	1	4
2020	244	30	(12.30)	58	145	4	2	1	4
2014~2020 증감률	(-37.44)	(20.00)	(91.80)	(-40.21)	(-43.36)	(100.00)	(-50.00)	(-50.00)	(0.0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SEARCHKEY=TITLE&SEARCHVALUE=%EB%B3%B4%EC%9C%A1%ED%86%B5%EA%B3%84 2021. 9. 29. 인출.

나. 육아친화 관련 추진 사업 현황

광명시는 ‘아이와 교직원인 행복한 보육도시, 광명’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립, 장애위험아동 전담돌봄이 지원 등 매우 다양한 육아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림 VI-3-1] 광명시 보육정책과의 비전과 전략

비전	아이와 교직원인 행복한 보육도시, 광명	
추진 목표	전략과제	실천과제(사업)
I. 보육·육아 친화적 환경조성	1.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	가.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나.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2. 안전한 보육환경 관리 강화	가.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 나. 어린이집 보육관리의 내실화 추진
II. 다양한 가정의 행복육아 지원	1. 육아정보 제공 및 장애영유아 지원	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립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다. 장애위험아동 전담돌봄이 지원

자료: 광명시청 보육정책과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상기 비전과 실천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는 아래와 같다. 특히, 영유아체험센터를 2025년까지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VI-3-6〉 광명시 실천과제 성과지표

단위: %

연번	실천과제(사업명)	지표산식 (단위)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현원/전체어린이집 현원 (이용률)	33.5	36.1	38.7	41.3
2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공정율	50	100	100	100

자료: 광명시청 보육정책과 내부자료.

광명시의 실천과제(사업)는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 어린이집 보육관리의 내실화 추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장애위험아동 전담돌봄이 지원이 있으며 아래와 같다. 이 중 보육공약사업은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7〉 광명시 보육부문 실천과제

구분	내용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개요	○ 뉴타운 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부지 및 택지개발지구 내 신규 어린이집 설치 ○ 뉴타운 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부지 신규 어린이집 설치: 3개소(4, 5, 11R구역) ○ 택지개발지구 내 신규 어린이집 설치: 3개소(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1개소/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광명역세권 새빛공원 각 1개소) ◇ 회계과(생활SOC통합화사업) 및 도시개발과(사업지구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와 협업
추진현황	○ 4R구역: 광명3동 복합청사부지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 협의 ○ 5R구역: 철산동 77-38 일원 조성부지(1,234.4㎡, 374평) 내 보육돌봄복합센터 건립 예정 ○ 11R구역: 대체부지(385.8㎡, 117평) 확보 건립 협의 중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현 시립소이어린이집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역세권 새빛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장소 협의
추진계획	뉴타운 구역 내 기부채납부지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신규 시립어린이집 설치 협의
기대효과	시립어린이집 확보(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개요	뉴타운 및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구분	내용
	◇ 도시재생과와 공동주택 관리동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 협업
추진현황	○ 2021. 6. 1.: 시립새론어린이집 개원(철산센터월푸르지오 단지) ○ 2021. 7. 1.: 시립솔빛어린이집 개원(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단지)
추진계획	○ 분기별 세부추진 계획 - 2021년 3분기: 2021년 제4차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1년 4분기: 제264회 광명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롯데캐슬 & SK VIEW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체결,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선정 - 2022년 1분기: 철산7단지 재건축(롯데캐슬 & SK VIEW) 준공(예정) - 2022년 2분기: 롯데캐슬 & SK VIEW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시설인수 및 리모델링공사, 롯데캐슬 & SK VIEW 내 시립어린이집 개원 ○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 - 2022년: 1개소, 철산롯데캐슬&SK VIEW(철산재건축7단지) - 2023년: 2개소,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15R), 광명푸르지오포레나(14R) - 2024년: 3개소, 뉴타운광명5R(2개소), 장애평자어린이집 - 2025년: 2개소, 뉴타운광명2R(2개소)
기대효과	시립어린이집 확보(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관련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및 광명시 보육조례 제32조 ○ 사업비(2022년 예산) 및 지원내역 : 2,558백만원
추진현황	-
추진계획	○ 1월: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연간: 어린이집 보조금 지속 지원 및 정산
기대효과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3. ~ 2023. 12. ○ 위치: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지하1층(연서일로 25) ○ 규모: 면적 1,861㎡ ○ 사업비: 2,000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시비 1,000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선정 국비(10억원) 확보 ○ 사업내용: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놀이형 체험센터 설치 ▶ 2030 중장기 발전계획 「놀이로 배우는 실내놀이터 조성」 반영 추진 ◇ 건설지원과(영유아체험센터 건립공사 협의) 및 예산법무과(사업비 예산편성 협의)와 협업
추진현황	○ 2020. 7.: 영유아체험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21. 4.: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 ○ 2021. 9.: 2021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계속비 사업] ○ 2021.10.: 과학컨텐츠 기본설계 용역 실시(예정)
추진계획	○ 1분기 •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자문위원단 구성 •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국비5억원, 시비5억원) ○ 2분기 •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구분	내용
	○ 3분기 • 영유아체험센터 운영계획 수립 ○ 4분기 • 영유아체험센터 전시물 제작·설치 착수 ※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과 연계추진하며 202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함
기대효과	○ 영유아 놀이체험 환경 및 과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 ○ 경기 서남권 어린이 과학체험관의 거점역할로 도시브랜드 상승 효과 기대
어린이집 보육관리의 내실화 추진	
사업개요	○ 사업목적: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관리 체계 강화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 ○ 사업대상: 어린이집 220개소 ※ 국공립31, 사학복지법인1, 법인·단체2, 민간50, 가정130, 협동2, 직장4 ○ 사업비: 171,176천원(국비 8,088천원, 도비 30,794천원, 시비 132,294천원) ○ 주요내용 - 어린이집과 소통하고 보육현장을 배려하는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 - 어린이집 안심보육 중점 3대 분야 (안전관리, 급식위생, 재무회계) 관리방안 마련 - 학부모 참여 유도로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재무회계, 노무, 안전, 아동학대예방)
추진현황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결과: 193개소 (시정명령 11, 자격정지 1, 자격취소 2) ○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컨설팅 25개소, 교육 19회 794명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2개소 ○ 안전관리(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전기/가스 안전점검, 급식 위생점검) ○ 코로나19 감염 관리: 방역비 및 운영비 지원(910,440천원),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
추진계획	○ 1분기 • 경기도형 보육컨설팅(평가제 컨설팅 및 교육) • 어린이집 지도점검(정기 및 수시) • 열린어린이집 선정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 ○ 2분기 •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및 지도점검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보육환경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 3분기 •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및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 점검 •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실태 및 통학차량 점검 • 재무·회계 및 노무 교육 •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및 신규·재선정 신청 접수 ○ 4분기 •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및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열린어린이집 신규·재선정 심사 및 선정 • 아동학대 및 안전 교육
기대효과	○ 영유아의 안전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구분	내용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립*	
사업개요	○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과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 위치: 광명시 광명동 776-16번지 일원(광명너부대 도시재생사업 내) ○ 규모: 797.95㎡(지상 1, 2층) ○ 보육정원: 51여명(장애아 30, 비장애아 21) ○ 사업비: 미편성(광명너부대 도시재생사업비 부담) ※ 내부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비 예산은 도시재생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편성 ◇ 도시재생과와 사업지구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 협업
추진현황	○ 2018. 7. ~ 2019. 5.: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치장소 검토 ○ 2018. 7. ~ 2019. 5.: 타지자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벤치마킹(4개소) ○ 2019. 7.: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계도면 협의완료
추진계획	○ 광명너부대 도시재생 2단계 사업 추진상황과 연계 추진
기대효과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치로 취약보육 활성화 및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사업개요	○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과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 위치: 광명시 광명동 776-16번지 일원(광명너부대 도시재생사업 내) ○ 규모: 797.95㎡(지상 1, 2층) ○ 보육정원: 51여명(장애아 30, 비장애아 21) ○ 사업비: 미편성(광명너부대 도시재생사업비 부담) ※ 내부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비 예산은 도시재생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 편성
추진현황	○ 2018. 7. ~ 2019. 5.: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치장소 검토 ○ 2018. 7. ~ 2019. 5.: 타지자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벤치마킹(4개소) ○ 2019. 7.: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계도면 협의완료
추진계획	○ 광명너부대 도시재생 2단계 사업 추진상황과 연계 추진
기대효과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치로 취약보육 활성화 및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장애위험아동 전담돌봄이 지원	
사업개요	○ 운영기간: 2022. 1. ~ 12. ※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광명시 보육 조례 및 『광명시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 연구』 결과 ○ 사업비(2022년 예산): 92,400천원(시비) ○ 내용: 장애위험아동 전담돌봄이(1일 4시간 근무)채용, 월1,100천원/인 지원, 장애위험아동의 다양한 돌봄요구에 적극적인 대응 및 함께하는 교우들과의 원활한 보육활동 추진 ○ 추진절차 1. 계획수립통보(보육정책과) 2. 전담돌봄이 채용 보조금 신청(어린이집) 3. 임면 보조금지원(보육정책과) 4. 아동 돌봄 급여 지급(어린이집) 5. 정산 및 평가(보육정책과)
추진현황	-
추진계획	- 1~2월: 장애위험아동 이용현황 조사/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연중: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구분	내용
	- 12월: 사업 평가
기대효과	○ 생애 처음 사회관계를 만드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위험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장애 위험 아동과 장애우에 대한 편견 없이 일반아동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돌봄사회 형성 ○ 교직원의 장애위험아동 돌봄에 따른 업무가중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아동학대 등 돌봄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주: *는 보육공약사업임.

자료: 광명시청 보육정책과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광명시 보육사업의 추진성과를 보면, 노후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개선 공사 실시, 정부 공모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8〉 광명시 보육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추진현황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2018. 10.~ 2021. 8.	3개소 (시립철산,시립구름산,시립안현어린이집)	노후시설 교체 및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 실시	완료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2021. 5.~ 2021. 12.	6개소 (시립철산누리,광명,한빛,한울,밝은빛,신촌어린이집)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공사 실시	추진 중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	-	-	민선7기 공약사업 「영유아체험센터 건립추진」 재원 확보, 총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10억원 확보(전국 5개 지자체 선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이용률 제고	-	-	○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설치 ▶ 2019년 3개소(시립가온자이, 시립하안누리, 시립동지) ▶ 2020년 1개소(시립빛누리) ▶ 2021년 2개소(시립새론, 시립솔빛)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2.4%로 경기도(20.3%) 내 순위 4위	-
뉴타운·재건축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진	-	-	-	-

자료: 광명시청 보육정책과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4. 2차년도 검토 사례: 경기도 남양주시

마찬가지로 본 절에서는 2차년도 연구에 참여하였던 경기도 남양주시에 대하여 지난 1년 여 간 새롭게 추진되거나 기획된 육아친화 정책 혹은 사업을 파악하고자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 면담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가. 개요 및 육아관련 현황

1) 인구 및 세대 현황

남양주시 인구는 2014년부터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2020년만 전년도에 비해 2.0% 이하의 증감이 있고, 그 외의 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2.0%가 넘는 증감률을 보였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2.9% 증가했고,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1.6%가 증가하여 총 713,321명으로 인구가 집계되고 있다.

세대수도 총인구와 같이 2014년부터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3.1%의 증가율을 보여 2020년 기준 285,334세대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표 VI-4-1〉 남양주시 인구 및 세대 추이

단위: 명, 세대(%)

구분	인구		세대수	
	총인구	(증감률)	총세대수	(증감률)
2014	636,256	(2.90)	238,111	(3.40)
2015	653,454	(2.70)	246,353	(3.46)
2016	662,154	(1.33)	251,335	(2.02)
2017	665,321	(0.47)	255,594	(1.69)
2018	681,828	(2.48)	264,488	(3.47)
2019	701,830	(2.93)	276,656	(4.60)
2020	713,321	(1.63)	285,334	(3.1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2) 영유아 인구 현황

남양주시의 영유아 인구 규모는 2021년 기준 33,337명(행정안전부, 2021)으로 전체 남양주시의 인구인 713,321명의 4.7%를 차지한다. 영유아 인구 추이는, 0~5세 전체의 인구가 2014년에 41,651명임에 비해 2020년에 33,337명을 나타내어, 2014년 대비 20.0%의 영유아 인구 감소를 나타냈다. 그 중, 0~2세 영아인구의 감소율이 2014년 19,195명에서 2020년 13,470명으로 줄어 29.8% 감소하였고, 3~5세 유아 인구의 감소율은 11.5%를 나타냈다.

〈표 VI-4-2〉 남양주시 영유아 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0~5세 전체	(전체 인구 대비 비율)	0~2세	(전체 인구 대비 비율)	3~5세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014	636,256	41,651	(6.55)	19,195	(3.02)	22,456	(3.53)
2015	653,454	41,571	(6.36)	18,590	(2.84)	22,981	(3.52)
2016	662,154	40,158	(6.06)	17,917	(2.71)	22,241	(3.36)
2017	665,321	37,361	(5.62)	16,291	(2.45)	21,070	(3.17)
2018	681,828	36,309	(5.33)	15,427	(2.26)	20,882	(3.06)
2019	701,830	35,593	(5.07)	14,519	(2.07)	21,074	(3.00)
2020	713,321	33,337	(4.67)	13,470	(1.89)	19,867	(2.79)
2014~2020 증감률	(12.11)	(-19.96)	(-28.61)	(-29.83)	(-37.41)	(-11.53)	(-21.09)

주: 전국 4.09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남양주시 행정동별 영유아 인구 현황은 다산1동, 별내동이 순서대로 높은 영아, 유아 인구수를 보인다.

〈표 VI-4-3〉 남양주시 행정동별 영유아 인구현황 (2020)

단위: 명

구분	전체 인구	만 0세	만 1세	만 2세	영아 총계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 총계
계	713,321	3,764	4,508	5,198	13,470	5,806	6,798	7,263	19,867
와부읍	62,502	204	256	310	770	349	395	451	1,195
진접읍	93,126	450	511	607	1,568	683	823	906	2,412
화도읍	103,885	487	655	705	1,847	814	908	943	2,665

구분	전체 인구	만 0세	만 1세	만 2세	영아 총계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 총계
화도읍동부출장소	14,636	121	138	152	411	179	183	168	530
진건읍	24,330	56	85	96	237	84	103	110	297
오남읍	53,618	225	256	308	789	310	419	445	1,174
퇴계원읍	29,764	122	136	148	406	141	188	196	525
별내면	19,766	63	73	93	229	111	123	146	380
수동면	9,076	15	16	23	54	35	31	30	96
조안면	4,195	9	13	18	40	20	14	14	48
호평동	50,880	273	333	423	1,029	452	543	619	1,614
평내동	36,643	173	203	250	626	273	304	393	970
금곡동	18,992	46	54	53	153	77	82	69	228
양정동	4,620	17	17	16	50	15	18	18	51
다산1동	77,068	669	709	840	2,218	999	1,165	1,214	3,378
다산2동	36,282	323	373	425	1,121	466	598	546	1,610
별내동	73,938	511	680	731	1,922	798	901	995	2,69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전국, 경기도, 남양주시의 0~5세 영유아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국의 영유아 수가 2014년 대비 2020년 22.6%가 감소하였는데, 그 중 0세, 1세, 2세의 감소율이 36.9%, 30.57%, 32.1%로 나타나, 영아감소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0~5세 영유아의 2014년 대비 2020년 인구수가 16.6%감소하였고, 남양주시는 2014년 대비 2020년 인구수가 20.0% 감소하여, 전국의 영유아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표 VI-4-4〉 전국경기도남양주시 영유아 인구 증감률

단위: 명, (%)

구분	연도	0~5세 영유아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국	2014	2,741,835	419,833	438,778	488,030	474,932	472,731	447,531
	2015	2,739,901	424,563	437,994	439,989	488,716	475,519	473,120
	2016	2,680,088	393,674	441,720	439,207	440,530	489,140	475,817
	2017	2,568,516	345,786	409,814	442,943	439,700	440,872	489,401
	2018	2,415,349	317,685	361,625	411,225	443,586	440,123	441,105
	2019	2,285,605	295,132	330,970	362,900	412,018	444,102	440,483
	2020	2,121,390	265,087	304,651	331,606	363,250	412,429	444,367
	2014~2020 증감률	(-22.63)	(-36.86)	(-30.57)	(-32.05)	(-23.52)	(-12.76)	(-0.71)

구분	연도	0~5세 영유아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경기도	2014	737,803	109,299	116,253	131,017	128,969	129,204	123,061
	2015	738,754	111,355	116,728	118,171	132,736	130,026	129,738
	2016	729,339	104,099	119,264	119,772	120,371	134,576	131,257
	2017	706,088	92,366	111,697	122,017	121,953	122,070	135,985
	2018	677,880	87,536	100,422	115,769	125,398	124,626	124,129
	2019	651,271	82,540	94,410	102,974	117,921	127,335	126,091
	2020	615,708	76,810	88,101	96,802	105,278	119,777	128,940
	2014~2020 증감률	(-16.55)	(-29.72)	(-24.22)	(-26.11)	(-18.37)	(-7.30)	(4.78)
남양주	2014	41,651	5,512	6,315	7,368	7,551	7,544	7,361
	2015	41,571	5,672	6,259	6,659	7,673	7,698	7,610
	2016	40,158	5,204	6,262	6,451	6,815	7,752	7,674
	2017	37,361	4,367	5,601	6,323	6,483	6,848	7,739
	2018	36,309	4,201	5,085	6,141	6,754	6,943	7,185
	2019	35,593	4,006	4,942	5,571	6,609	7,182	7,283
	2020	33,337	3,764	4,508	5,198	5,806	6,798	7,263
	2014~2020 증감률	(-19.96)	(-31.71)	(-28.61)	(-29.45)	(-23.11)	(-9.89)	(-1.3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3) 남양주시 보육현황

남양주시 전체 보육시설 수는 2014년 718개에서 점차 줄어 2020년에는 620개소⁵²⁾이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74개소, 민간어린이집이 207개소, 가정어린이집이 321개소이다. 2014년 대비 2020년의 전체 보육시설의 수는 14.0%가량 감소하였다. 그 중, 국공립 비중은 2014년 3.9%였던 것에 반해, 2018년 7.6%, 2020년에 11.9% 정도로 높아져, 최근 6년간, 약 1.6배 정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었다. 지난 7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민간은 약 12.0%, 가정어린이집은 약 26.0%정도 감소하였다.

〈표 VI-4-5〉 남양주시 보육시설 수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국공립	(국공립 비중)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단체	사회복지 법인	부모 협동
2014	718	28	(3.90)	234	436	1	13	3	3
2015	710	31	(4.37)	233	426	1	13	3	3
2016	683	35	(5.12)	229	401	1	12	3	2

52) 2021년 6월 166개소이다.

구분	전체	국공립	(국공립 비중)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
2017	656	42	(6.40)	229	367	2	11	3	2
2018	658	50	(7.60)	223	366	2	11	4	2
2019	654	66	(10.09)	216	354	2	10	4	2
2020	620	74	(11.94)	207	321	2	10	4	2
2014~2020 증감률	(-13.65)	(164.29)	(206.06)	(-11.54)	(-26.38)	(100.00)	(-23.08)	(33.33)	(-33.33)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에서 2021. 9. 29. 인출.

나. 육아친화 관련 추진 사업 현황

남양주시의 경우 2차년도 연구 진단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인구밀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이러한 인구밀도의 차이는 결국 육아인프라의 공급수준 및 지역 간 격차로 이어져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이후 지난 1년 여 간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보다 다양한 육아지원 요구에 부응하고 취약계층 영유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4-6〉 남양주시 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 사업 추진 개요

추진일정	내용
2019. 2.	장애통합어린이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19. 5.	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MOU체결
2019. 7.	개발제한보호구역 내 어린이집 배치계획 수립
2019. 1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 통과
2020. 1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의회)
2021. 2.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1. 4.	일상감사 및 전략위원 자문
2021. 6.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승인

자료: 남양주시 보육정책과 내부자료.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장애전문 어린이집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11개 시군 중에서는 남양주시, 평택시만 해당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구 100만 시대에 걸맞은 취약보육 활성화 및 전문성을 위해 장애전문 어린이집 운영 필요성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의 경우, 2021년 현재, 전체 영유아 47,531명 중 등록 장애영유아수 262명(0.5%)로 파악되었고, 장애통합어린이집 이용자는 91명(34%), 장애인복지관(치료실 등) 이용자는 17명 내외(1일 평균)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양주시 어린이집 41개소에서 장애통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부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 보육·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영유아들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였다.⁵³⁾

해당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연면적 1,020㎡의 공용 공간은 협소하므로 장애전문 어린이집입을 감안하여 연면적 1,300㎡로 증가시켜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는데, 기존 1,020㎡는 단순히 보육실, 유희실 등 시설기준에 의한 소요실만 합산된 것으로 공용 공간을 510㎡(전체의 39.0%)로 확장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설은 보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장애아동 전문시설로 운영 될 것이므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운영비 증가의 부담이 있으며, 비장애아 원아 모집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4-7〉 남양주시 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 사업계획(안)

구분	내용
위치	금곡동 152-60 일원(공원 부지 내)
규모	연면적 1,300㎡, 지상3층
정원	총 75명(장애아 45명, 비장애아 30명)
연면적	1,300㎡(3층)
총사업비	4,289,200천원

자료: 남양주시 보육정책과 내부자료.

5. 소결

본 장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혹은 친화인증사업 등 육아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 사례를 살펴보았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2020년 현재, 0~5세 전체의 인구가 2014년 대비 약 29.0%의 감소를 나타냈고, 그 중, 0~2세 영아인구의 감소율이 41.7%, 3~5세 유

53) 남양주시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아 인구의 감소율은 15.9%를 나타내어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지원정책들이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면밀하게 검토되고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육아를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연속연구 중 1차 연구를 활용한 육아친화 인식조사를 통하여 울산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남구공동체육아정책의 비전(vision)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며, 어느 연령대에 국한되기보다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공간의 조성고 서비스의 구성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육아친화마을의 조성 과정에 세대 간,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 간소통의 장과 참여의 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기획되고, 육아친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자체가 육아친화성을 강화해야 하므로 정부지원의 탑다운(Top-Down)지원이 아니라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정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마을의 공동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 주도적으로 계획되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부산광역시 경우, 0~5세 전체의 인구가 2014년에 159,816명임에 비해 2020년에 123,962명을 나타내어, 2014년 대비 22.4%의 영유아 인구 감소를 나타냈다. 그 중, 0~2세 영아인구는 2014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35.8% 감소하였고, 3~5세 유아 인구는 9.2% 감소하였다. 전체 보육시설 수 역시 2014년 대비 2020년 9.8%가량 감소하였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0~5세 전체의 인구가 2014년 대비 약 43.0%의 감소를 나타내어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광명시는 ‘아이와 교직원이 행복한 보육도시, 광명’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설립, 장애위험아동 전담돌봄이 지원 등 매우 다양한 육아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도시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신속한 육아 관련 사업계획 수립과 진행은 지역의 실효성 있는 육아친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0~5세 인구수는 2014년 대비 2020년 약 20.0% 감소하였는데, 전국의 영유아 수가 2014년 대비 2020년 약 23.0%였던 것에 비하면 영유아 감소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차년도 연구 진단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육아인프라의 공급수준 및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후 보다 다양한 육아지원 요구에 부응하고 취약계층 영유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VII

육아친화마을 인증 관련 법제 연구

- 1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 관련 법제 연구
- 2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 제정 방안
- 3 소결

VII. 육아친화마을 인증 관련 법제 연구

육아친화마을에서 각종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동반하여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권미경 외, 2019: 4)으로서 마을 단위의 육아친화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정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법적 주체로 상정할 수 있다.

육아친화마을의 법제화는 ‘마을-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국가’로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도록(권미경 외, 2019: 4)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육아친화마을 인증 관련 법제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도록 인증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친화마을을 구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육아친화마을을 지속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평가·자문·인증하는 법체계를 의미한다.

1.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 관련 법제 연구

오늘날에는 어떤 사안이든 하나의 법률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법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연계하여 법제를 구축해야 하기도 한다. 육아친화마을의 경우 그 인증제도 도입에서 출발하더라도 그것으로 그쳐서는 육아친화마을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업무·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제도와 정책과 조정 등이 필요하므로,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가. 법제화 모델

1) 1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방안

육아친화마을의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가장 가깝다.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이 법률에 육아친화마을의 근거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의 첫발을 떼기에는 여성가족부령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1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제3조 제1항 제5의2호에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실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제4조의2에는 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하되, 구체적인 사업 주체로서 육아정책연구소를 지정한 조항, 인증·재인증·상위단계인증 근거에 관한 조항, 3년 주기의 인증 평가 조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지원의 근거에 관한 조항, 육아친화마을 조례 제정의 근거 조항 등이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위임 없는 조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약한 면이 있으므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VII-1-1〉 1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법률	개정안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1. ~ 3. (생략) 4. 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현행 법률	개정안
〈신 설〉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의2. 육아친화마을 조성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조의2(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육아친화마을(이하 “육아친화마을”이라 한다)로 인증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육아친화마을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육아친화적인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에 필요한 복지 및 환경 조성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영·유아와 육아보호자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친화마을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 육아정책연구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육아친화마을을 인증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마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육아친화마을로 인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육아친화마을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인증 다음의 상위단계의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상위단계 인증절차는 제4항과 같다.

현행 법률	개정안
	⑥ 육아친화마을의 정책이 육아친화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아친화마을의 인증 및 재인증 또는 상위단계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친화마을 인증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하여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 그 시행규칙에서 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를 신설하여 운용하는 점에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육아정책연구소에 육아친화마을 인증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내용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에 관한 결정권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과 유의미성을 증명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육아친화마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법률에 없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이고, 단지 인증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률에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예산 확보 등에 유리한 면이 있다.

2) 2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1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 위임과 대통령령의 여성가족부령 재위임에 근거하여 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법적으로 재위임이 가능하지만, 여성가족부령인 시행규칙보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육아친화마을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은 그 법적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동시에 포괄적 재위임의 문제를 완화하는 점에서 법치주의에 더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의 협조를 받는 데도 유리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표 VII-1-2〉 2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현행 법률	개정안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 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①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신 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1의 2.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신 설〉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의2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표 VII-1-3〉 2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법률	개정안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1. ~ 5. (생략) 5의2. 육아친화마을 조성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 ① 시행령 제6조제1의2호에 따른 육아친화마을(이하 “육아친화마을”이라 한다)로 인증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육아친화마을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육아친화적인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현행 법률	개정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에 필요한 복지 및 환경 조성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영·유아와 육아보호자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친화마을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 육아정책연구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육아친화마을을 인증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아친화마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육아친화마을로 인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육아친화마을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인증 다음의 상위단계의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상위단계 인증절차는 제4항과 같다. ⑥ 육아친화마을의 정책이 육아친화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아친화마을의 인증 및 재인증 또는 상위단계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친화마을 인증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시행령의 개정안은 육아친화마을 인증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그 근거조항만 다를 뿐 그 내용은 1안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2안은 1안보다 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법치주의에 충실한 장점이 있다. 다만,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유의미성에 대한 정치한 논리를 뒷받

침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1안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등의 면을 고려해야 한다.

3) 3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치주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법률에 근거조항을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표 VII-1-4〉 3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법률	개정안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1. ~ 4. (생략)
〈신설〉	4의2. 육아친화마을 조성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의 근거조항을 개정한다.

〈표 VII-1-5〉 3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현행 법률	개정안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 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①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1의
〈신설〉	2.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현행 법률	개정안
〈신 설〉	② 제1항제1의2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표 VII-1-6〉 3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법률	개정안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5의2. 육아친화마을 조성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육아친화마을 인증제도) ① 법률 제9조제4의2호에 따른 육아친화마을(이하 “육아친화마을”이라 한다)로 인증받으려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육아친화마을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육아친화적인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에 필요한 복지 및 환경 조성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영·유아와 육아보호자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친화마을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 육아정책연구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육아친화마을을 인증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아친화마을 인증의 유효기간은

현행 법률	개정안
	3년으로 한다. ④ 육아친화마을로 인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육아친화마을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인증 다음의 상위단계의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상위단계 인증절차는 제4항과 같다. ⑥ 육아친화마을의 정책이 육아친화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아친화마을의 인증 및 재인증 또는 상위단계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친화마을 인증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안의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법적 근거조항만 다를 뿐 그 내용은 1안과 2안의 그것과 같다. 3안은 법치주의에 가장 부합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가장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입법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4) 4안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방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육아친화마을 인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 자녀 육아의 현실과 부합한다. 그러나 육아의 환경을 도시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여성친화도시와 육아친화마을을 연동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의 근거 조항에 뒤이어 제39조의2를 신설하는 방안과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의 여성친화도시 조항을 개정하여 육아친

화마을에 관한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여성친화적이면서도 양성평등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추진할 수 있다.

법률 개정에는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 방안에서도 법률 개정 없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여성친화도시 조항에 “돌봄”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여성친화도시의 한 내용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육아친화마을 인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표 VII-1-7〉 4-1안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방안

현행 법률	개정안
〈신 설〉	제39조의2(육아친화마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 마을이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필요한 철학, 공간,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참여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지역사회(이하 이 조에서 “육아친화마을”이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육아친화마을로 인증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아친화마을의 인증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2(육아친화마을 지정) ① 법 제39조에 따른 육아친화마을(이하 “육아친화마을”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육아친화마을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육아친화적인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에 필요한 복지 및 환경 조성 방안

현행 법률	개정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영·유아와 육아자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육아친화마을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육아정책연구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육아친화마을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육아친화마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육아친화마을의 정책이 육아친화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아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표 VII-1-8〉 4-2안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방안

현행 법률	개정안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와 육아친화마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그리고 육아친화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와 육아친화마을”이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와 육아친화마을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와 육아친화마을의 지정 기준·절

현행 법률	개정안
〈신 설〉	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와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안은 육아친화마을의 법률적 근거를 독립적으로 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다만, 그 명칭이 다르지만 조문의 구조와 내용이 여성친화도시와 거의 같아서 여성친화도시와 육아친화마을의 연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자칫 육아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본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4안의 두 가지 법률 개정안에서 해당 조문의 위임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제24조의2를 신설한다.

〈표 VII-1-9〉 4안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방안

현행 법률	개정안
〈신 설〉	제24조의2(육아친화마을 지정) ① 법 제○○조에 따른 육아친화마을(이하 “육아친화마을”이라 한다)로 인증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육아친화마을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육아친화적인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에 필요한 복지 및 환경 조성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영·유아와 육아보호자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친화마을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 육아정책연구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육아친화마을을 인증한다.

현행 법률	개정안
	③ 제2항에 따른 육아친화마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육아친화마을로 인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육아친화마을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육아친화마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인증 다음의 상위단계의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상위단계 인증절차는 제4항과 같다. ⑥ 육아친화마을의 정책이 육아친화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아친화마을의 인증 및 재인증 또는 상위단계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친화마을 인증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5) 5안 -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 유일하게 2021년 1분기(1~3월) 신생아 출생률이 상승했다. 그 배경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양육수당이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광주와 인접한 전남은 신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생활권이 사실상 겹치는 광주와 전남의 올해 출생아 수를 모두 더하면 전국 평균 감소율과 비슷하다.⁵⁴⁾ 현재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처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저출생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예산만 투입할 것도 아니며, 육아에 필요한 도시 환경을 연결하여 국가 전체의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도 뒤따라야 한다.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까닭이다. 담당 행정부처 역시 관련 행정부처가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법률 제정과정 자체도 쉽지 않지만, 어떤 법제

54) 경향신문(2021. 5. 31.). “광주 출생률 전국 유일 ‘상승’·전남 ‘최저’...“지원금 풍선효과”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105312148005>에서 2021. 6. 1. 인출.

구조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그 필요성만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육아친화마을 조성 그리고 그 인증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 바탕 위에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아동·육아친화도시 법제화의 터를 다지는 일이다. 법률에서 조례로 하향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법률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상향 민주화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 제정 방안

육아친화마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령을 개정하는 다섯 가지 방안과 별도로 또는 동시에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나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적 근거 없이도 그리고 인증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육아친화마을 인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조례표준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조례의 근거

법률개정안과 시행령개정안에 조례의 제정 근거를 두면, 조례의 적법성이 명확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 없이도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거를 통해 구성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⁵⁵⁾

55) 현재 1995. 4. 29. 92헌마264등(병합).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의 법적 근거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장 제1절 저출산 대책 중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친화마을 인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아동친화도시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의 시대에 육아친화마을 인증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더욱이 초창기에는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과의 연계하도록 인증사업을 운영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도 부담을 줄이면서도 도시의 체계를 갖추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증진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다.

나. 육아친화마을 조례의 구성 요소

여성친화도시 또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참고하면,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담아내야 한다.

- (1) 조례의 명칭: 조례의 명칭에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가칭 ‘○○시(군·구)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로 이름 붙일 수 있다. ‘기본조례’라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조례,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 등을 이미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와 연계 아래에서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조례이기 때문이다. 기본조례가 다른 조례보다 상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조례보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관련 조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일 뿐이다.
- (2) 육아친화마을조성위원회: 거버넌스기구로서 육아친화마을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회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3) 육아친화마을 정책조정기구: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행정부서의 관여가 필요하므로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관련 부서와 거버넌스 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 (4) 전담공무원 또는 전담부서 문제: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는 전담공무원과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육아친화마을도 전담공무원과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상 여의치 않다면, 육아친화마을 조정담당관을 두어 여러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조정담당관의 행정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있어야 한다.
- (5) 육아친화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영향평가와 예산 분석에도 필요하므로 육아친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다.
- (6) 육아(친화)영향평가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 영역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육아친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7) 시민참여제도: 여성참여기구와 아동참여기구와 협력하여 육아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시의견제시제도, 사전정책심의제도, 사후정책모니터링제도 등을 운영하도록 한다.
- (8) 육아친화예산: 여성친화예산과 아동친화예산을 고려하여 육아친화예산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다.
- (9) 육아친화기본계획: 실태조사, 영향평가, 예산제도, 참여 제도, 관련 교육 등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후 모니터링을 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3. 소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1안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육아친화마을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안이다. 일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단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을 준비하여 실행하되, 법률에 충분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이후, 한편으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한다. 이때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 표준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육아친화마을의 인증 기준을 기존의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와 연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아동 등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육아보호자가 최선의 육아를 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VIII

육아친화마을 조성 추진 방안

- 1 결론
- 2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VIII. 육아친화마을 조성 추진 방안

1. 결론

1차년도 연구의 ‘향후 추진 계획’에서 제시된 3차년도 연구계획(권미경 외, 2019: 374)은 다음과 같다.

“3차년도에는 ...(중략)... 연구를 종료하면서 육아친화적 마을을 조성하기 희망하는 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정적 절차가 담겨, 적용할 수 있는 KICCE 육아친화마을 모형에 대한 안내 매뉴얼을 구성한다.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육아친화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으로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크게 인식조사 및 분석, 지역현황 파악, 인증절차(컨설팅 포함) 마련, 근거 법제 마련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3차년도 연구계획을 실행하였다.

본 3차년도 연구는 본 연속연구의 시발점인 저출생 현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이에 육아친화환경, 나아가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이 필요함을 제시하기 위하여 저출생 및 육아친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저출생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89.0%를 차지하여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저출생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젊은 세대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기 적절한가를 설문하였을 때, 지역별로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결혼, 출산, 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중복응답)’에 대하여 1순위로 생각하는 정책을 설문한 결과를 보았을 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개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자녀양육관련 경제적 지원 강화’가 차지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다수의 연구에서 대부분 1, 2순위를 보여 준 고용, 주거문제 해결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2차 데이터와 지역설문(2차년도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양육환경 적절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1, 2차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들의 타당성을 한 번 더 확인함과 동시에 KICCE 육아친화체크리스트 활용에 있어 보다 우선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인증지표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1, 2차 연구에서 수립되고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증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의 개선으로 인증사업 발족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근거 법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제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인증사업의 추진에의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인증사업의 선행단계로 반드시 요구되는 컨설팅 사업을 고안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육아친화환경 및 마을 조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해당 컨설팅 사업 내용은 간결한 책자로 정리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하여 육아친화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가. 인증 기준 세분화

본 연구에서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역의 평균적인 '양육환경 적절성'의 경우 대도시가 읍면동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증 기준 수립 시 이러한 지역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대도시의 경우 육아친화 컨설팅 수행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 양육환경 적절성 개선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향후 인증 기준 수립에 있어 보다 세밀하게 지역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지역규모의 차이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 예를 들어, 농촌, 산업단지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다.

농촌의 보육서비스를 보면, 보육서비스 제공과 수요자의 이용 측면에서 도시와는 달리 수요가 많지 않고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아 존재하는 수요에 적합한 대응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은설·이정원·박진아·조혜주, 2014: 2, 재인용). 다문화 가정 증가, 특수작물을 재배 가구의 시간 집중적인 보육 수요 증가 등의 보육 특징이 있으나, 지역 특성상 민간 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 국공립 혹은 법인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지역 면적에 비해 시설 분포가 균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한 영유아의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결과를 초래한다. 보육실태조사(2009)에 의하면, 읍면지역의 어린이집 차량 중 27.4%가 월 3,000km 이상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의 경우는 동일 거리 구간 주행 차량의 비중이 14.8%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이 2배 가까이 긴 차량 운행 구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영유아들의 차량 이동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김은설 외, 2014: 2, 재인용). 또한 보육통계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는 반면에 농어촌지역에는 16.0%에 그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의 주 서비스 대상인 영아 보육 서비스 제공이 충분치 못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김은설 외, 2014: 2~3, 재인용). 이와 같이 지역에 따른 보육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반영한 인증기준이 수립되어야 실효성 있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여성친화도시 인증사업,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등 다른 친화도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역규모 혹은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규모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 마련은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의 차별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기준 마련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인증사업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기본조례 마련

주무부처 정립과 동시에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안 신설 혹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인증사업 관련 법제로 가장 간결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앞서 연구본문에서 제안하였고, 아울러 다음과 같이 KICCE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참고로 하여 기본적인

인 육아친화마을조성 개념을 공유하면서 지자체 특징을 반영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⁵⁶⁾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제정 이후에 실행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혁신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Ⅶ-2-1〉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표준안

「〇〇〇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 등 육아를 하는 사람이 아동을 키우기 행복하도록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친화마을”이란 온 마을이 영유아를 기르는데 필요한 철학, 공간,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참여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2. “영유아”란 원칙적으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다만, 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6세 이상의 아동까지 영유아의 범위를 확장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3. “육아”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육아영향평가”란 단체장이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육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육아친화도시의 조성과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육아친화마을의 이념) ① 육아친화마을은 모든 영유아와 보호자 및 그 가족을 환대하고 마을의 인적 협조 관계를 증진하며 공원녹지·여가문화·보건의료·교통보행·치안안전·행정서비스 등 마을의 기반시설 전체를 육아친화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육아친화마을은 모든 영유아와 보호자 및 그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③ 모든 영유아와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④ 모든 영유아와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인적 관계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다양성, 접근성, 편리성 등을 적절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①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인적 협조관계 구축, 물리적 환경 조성,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 등에서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 ‘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과 보호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6) 목적과 정의 관련 내용은 강은진 외, 2020: 281을 참조함.

제5조(적용 범위)

- 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육아친화마을 추진위원회

제6조(육아친화마을 조성 위원회 설치)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 육아친화마을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육아친화마을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육아친화마을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육아친화마을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육아친화마을과 관련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체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8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의회의원 및 다양한 계층·지역 또는 육아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단체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육아친화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 ① 회의는 분기당 1회의 정기회의와 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⑥ 단체장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육아친화마을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제13조(계획수립 등)

- ①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아친화마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그리고 추진체계
 2.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주요 정책과제와 사업별 추진계획 그리고 연차별 추진계획
 3. 육아친화마을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마을간 및 지역사회민사회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내용

제14조(계획의 실시 등)

- ① 육아친화마을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육아친화마을을 주무부서 또는 담당자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육아친화마을을 주무부서 또는 담당자는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주무부서 또는 담당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육아친화마을을 주무부서 또는 담당자는 육아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실태조사 등)

- ①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 ② 단체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시행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의 평가를 받는다.

제16조(육아영향평가 실시)

- ① 단체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육아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육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육아 관련 사업으로서 단체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단체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육아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 ② 육아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육아친화예산)

- ①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 ② 단체장은 육아친화예산이 여성친화예산 및 아동친화예산과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육아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단체장은 육아친화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육아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9조(육아친화마을정책 기획조정회의)

- ①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을 조성을 위한 기획과 전 행정부서의 협력과 정책조정을 위하여 육아친화마을 정책 기획조정회의(이 조에서 “기획조정회의”라 한다)를 운용한다.
- ② 단체장은 기획조정회의의 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부단체장과 전 행정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③ 기획조정회의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육아친화마을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단체장이 소집한다.

- ④ 기획조정회의는 육아친화마을 추진위원회와 연 2회 이상 연석회의를 한다.
- ⑤ 육아친화마을 담당부서가 기획조정회의의 간사가 된다.

제20조(추진실적의 평가) 단체장은 매년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유사 인증사업과의 관계 정립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및 여성·가족 관련 친화사업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및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와 사업, 공간 및 의사결정 과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5). 가족친화인증 역시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하며, 아동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유니세프, 2019: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개념은 1996년 이스탄불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II)에서 시작되어 각국 대표들이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제의를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시작되었다(유니세프, 201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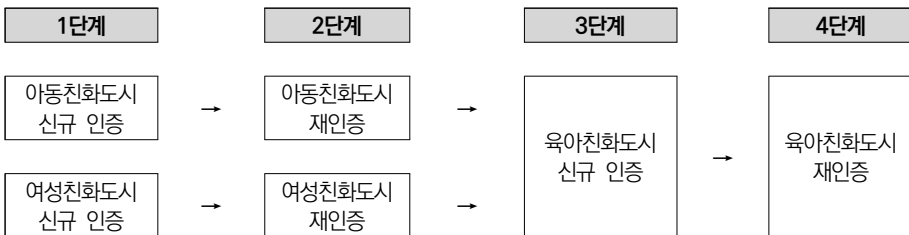
이렇듯 다양한 관련 ‘친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두 개의

친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유사 친화(인증)사업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만, 유사한 정책 혹은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통폐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이 분명한 정책 혹은 사업이면서 기존 정책 및 사업과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기존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기 사업 중 복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들 사업들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자문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일정 부분 차별성이 있으므로 복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담당자들 간의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사업 진행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인증사업은 1차 연구에서 정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3차 연구인 본 연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치’를 고려한 ‘생활환경조성’이 그 기본 개념이며, 사업의 대상 유사 사업과 비교하여 보다 광범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아동, 여성, 가족 등의 대상에 대한 사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사업대상을 가지며, 이에 본 사업의 인증지표에 유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지표를 고안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등의 재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경우 이들 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친화도시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인 ‘육아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인증 사업을 추진하도록 연계함으로써(그림 VII-2-1 참조)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유사 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가능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I-2-1]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유사친화 인증 사업 추진도



라. 핵심 부처 정립 및 관계 부처 간 협업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4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해 오면서 시행되었다. 따라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역시 기본적인 토대는 중앙정부 주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인증사업을 추진할 중앙부처를 정하여 그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여성 및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육아친화환경 조성에 적합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들과의 연계와 협업을 통하여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인증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마. 컨설팅사업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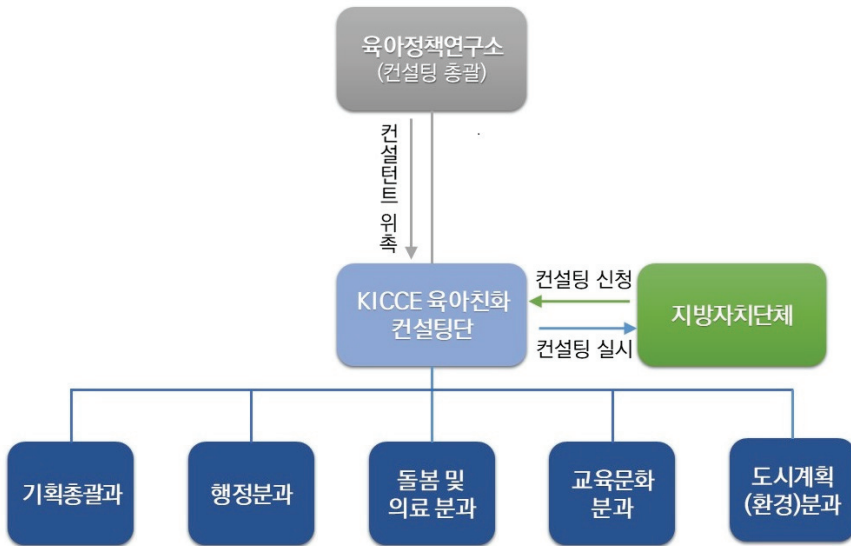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폭넓은 분야에 대하여 사업목표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연속성 있는 인력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육아친화 환경 조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선행 단계로서 컨설팅 지원 단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을 수립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해당 컨설팅은 단순히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선행적 단계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해당 친화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지역의 육아친화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향후 지역의 육아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써도 그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인증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컨설팅 사업단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향후 인증사업을 추진할 육아정책연구소에 컨설팅 사업단을 조성하여 축적된 육아 관련 정보와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나갈으로써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육아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육아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컨설팅 운영 체계는 아래 [그림 Ⅷ-2-1]에 정리되어 있다. 육아정책연구
 구소에서 컨설팅 총괄을 맡아 운영하며, 연구소 내 구축한 KICCE 육아친화 컨설
 팀단의 컨설턴트를 위촉한다. 해당 컨설팅단은 기획총괄과, 행정분과, 돌봄 및 의
 료분과, 교육문화분과, 도시계획(환경)분과 등으로 분과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
 도록 한다.

[그림 Ⅷ-2-2] KICCE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운영 방안





참고문헌

-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2020).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 강은진·박진아·조혜주(2019). 육아친화 중심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운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강은진·유해미·윤지연(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강하라(2021). 구군 출산·육아환경 및 여건분석: 육아친화마을 조성 중심. 육아친화마을 구현을 위한 현장 세미나.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 김주원(2017). 마을공동체 역량진단과 지원체계 구축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김춘남·박영란·고영호·최성은(2019).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연구. 경기복지재단.
- 권미경·박원순·김지현·윤유나·손승우·윤정호·김도우·정소이·조승연·박범수(2020).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영화(2010).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성찰과 전망: 공간의 정치에서 복지의 공간으로 - 대구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3(1), 91~121.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김은설·이정원·박진아·조혜주(2014).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모델 개선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 여성친화도시와 지역사회 변화.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울산 남구 육아친화마을 인식 조사 보고서.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19).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21). 아동친화도시 Handbook.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동기·이중섭(2020).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 및 과제. 전북연구원.

이영주·고광욱·강혜원(2017).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마을 추진 연구. 부산복지개발원.

정은하(2017). 2017 고령친화마을 시범사업 사업운영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조선주·이선민·이동선·권도연(2017).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UNICEF(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보도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2. 24.). 2020년 12월 인구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826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1. 3. 5. 인출.

【웹페이지】

가족친화지원사업. <https://www.ffsb.kr/ffm/ffmCertProcess.do>에서 2021. 5. 11. 인출.

경향신문(2021. 5. 31.). “광주 출생률 전국 유일 ‘상승’·전남 ‘최저’...“지원금 풍선효과”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105312148005>에서 2021. 6. 1. 인출.

고령친화서울. <http://afc.welfare.seoul.kr/afc/about/about.action>에서 2021. 3. 16. 인출.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소개.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who-network/>에서 2021. 3. 16.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1. 10. 7. 인출.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506에서 2021. 9. 29. 인출.
- 수원시 홈페이지 여성친화도시. https://www.suwon.go.kr/sw-www/depthHome/dep_welfare/welfare07/welfare_07-05.jsp에서 2021. 6. 10. 인출.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8.do에서 2021. 6. 10. 인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initiative/child-friendly-cities.asp>에서 2021. 6. 10. 인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 <http://www.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21. 10. 19. 인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도. <http://www.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21. 12. 21. 인출.
- 인천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101>에서 2021. 3. 16. 인출.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o>에서 2021. 12. 21. 인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선거통계시스템, 제 7회 지방선거 개표현황, 시·도지사 선거에서 2021. 5. 11. 인출.
- 질병관리청(2018). 「지역사회건강조사」, 시·군·구별 삶의 질 지수(EQ-5D Index)에서 2021. 5. 11. 인출.
- 통계청(2018). <http://kostat.go.kr/>에서 2021. 5. 11. 인출.
- 한국아동패널 소개. https://panel.kicce.re.kr/panel/html.do?menu_idx=50에서 2021. 6. 9. 인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 9. 29.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Age-friendly World 홈페이지.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search-network/?_sft_countries=repulic-of-korea에서 2021. 12. 21. 인출.

【참고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38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5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80호]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8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75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등 결정.
헌법재판소 1995. 4. 29. 92헌마264등(병합)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Child-Care-Friendly Community for Coping with Lowest-Low Fertility Rate Social Phenomenon(III)

Nayoung Kim, MeKyung Kwon, Dongseok Oh, Yuna Jeong

The low birth rate in Korea has continu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nd as of 2020, the total fertility rate recorded the lowest level at 0.84. In 2005, the government enacted related laws to prepare for such a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and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Committee' was organized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In addition, since 2006, related ministries jointly announced the '1st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the 4th plan for 2020, continuing various efforts to overcome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However, the lifestyles of households with children in Korea are rapidly changing, such as the increase i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changes in household types. Therefore, in order for the government's various efforts to produce positive results, the paradigm of the policy that focused only on the 'childcare' policy centered on infants and young children was shifted to establish a macro-paradigm linked to the local community's nurturing environment of 'creating a childcare-friendly environment'. consideration is required.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we propose a comprehensive plan to support the creation of a child-rearing-friendly village that redesigns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by closely examining how child-rearing support policies can be implemented in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attempted to enhance the creation of a more practical child-rearing-friendly village by analyzing various available statistical data and identifying the needs for creating a local living environment for families with children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 addition, it proposes a plan for preparing a legal and administrative basis for future childcare-friendly village development and certification projects.



부록

부록 1. 육아친화마을 구현을 위한 현장 세미나 포스터

육아친화마을

구현을 위한 현장 세미나



일시
2021.12.17.(금),
13:30-16:00

장소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진행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개회선언 및 시상식	13:30-13:40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본부장							
발표	13:40-14:40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노현미 울산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강하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진행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가족연구실 실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토론</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14:40-15:40</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민연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서영미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td> </tr> <tr> <td style="padding: 5px;">폐회 및 기념촬영</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15:40-16:00</td> </tr> </table>		토론	14:40-15:40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민연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서영미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폐회 및 기념촬영	15:40-16:00
토론	14:40-15:40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민연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서영미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폐회 및 기념촬영	15:40-16:0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부록 2.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부표 1〉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철학과 가치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결속감, 연대감, 충족감)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
			내가 이 마을에 속해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언제든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게 받는 도움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아이다움 인정	영유아/아동 개별성 인정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성평등 육아문화	성평등 공간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조성되어 있다(ex: 남성화장실 내 기저기갈이대 비치 등).
		성평등 서비스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양육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다(ex: 남성양육자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남성 양육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성평등 가치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 이뤄진다(ex: 남성양육자의 육아 참여 독려 등).
인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	인적네트워크 연결성	마을 내에 가족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인적네트워크의 지원(자원 및 활동)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이 있다(ex: 지역맘카페모임, 시민 단체, 공동체 활동 단체 등).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은 양육자들끼리 관계를 맺어주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소통을 위한 공간	다양성 (온라인/오프라인)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ex: 지역맘카페)이 있다.
		접근성	내가 사는 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편리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ex: 사용시간, 사용방법 등).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질	교사 근로환경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는 아이의 숫자가 적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 교사 근무기간이 길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교사의 태도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이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보육(교육) 시간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 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보육 이외의 개인적 일을 하기에 충 분하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 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를 하기에 충분하다.
		급간식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 급식수준이 만족스럽다.
		프로그램 및 교구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 프로그램 수준이 만족스럽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갖추고 있는 보육(혹 은 교육) 교구 수준이 만족스럽다.
	공간 질	보육(교육) 공간충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 공간 이 충분하다.
		야외놀이 공간충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야외/놀이 공간이 충 분하다.
		공간의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양육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을 양육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투명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을 보내는 데 비용 부담이 적 다(ex: 어린이집, 유치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의 거 리가 짧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에 가 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차량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은 안전하게 차량 운행한다.
공원 녹지 공간	접근성	비용 접근성	공원/녹지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리 않은 곳에 공원/녹지 공간(ex: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공원/녹지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 하다.
	공간과	공간충분성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시설 질	공간과 시설 안전성	공원/녹지의 공간과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인프라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공원/녹지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공원/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구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비용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여가/문화 공간(ex: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여가/문화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 충분성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 시설 안전성	여가/문화 공간 내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 인프라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의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여가/문화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구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등).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대형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병원이 있다.
		개인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개인 병원 등이 많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대형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형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개인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개인 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서비스 질	대형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개인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인력수	대형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개인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대형병원 의료인 태도	내 아이가 진료 받는 대형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개인병원 의료인 태도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교통 보행 네트워크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비용은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리 않은 곳에서 대중교통(ex: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보행도로상태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다양성	대중교통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ex: 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가 있다.
	교통/운전 문화	운전자의 태도	내가 사는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소방서접근성	내가 사는 집에서 멀리 않은 곳에서 소방서가 있다.
		경찰서접근성	내가 사는 집에서 멀리 않은 곳에 경찰서가 있다.
	인력	방범인력순찰	경찰 등 방범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물리적 환경	치안장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사설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행정 서비스 인프라	행정체계	보행도로	마을길은 밤에 안전하다.
		조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이 존재한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예산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인력의 태도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정보접근	정보의 충분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정보의 편리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개방성	대표(구청장)는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한다.

자료: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p. 361~365.

부록 3. 육아친화마을 건설링 영역별 지표

육아친화마을 인증을 위하여 건설링을 실시하며, 해당 건설링을 위한 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부표 2-1〉 영유아기 보육/돌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유형	절대적 공급 지표		데이터 출처	상대적공급 지표	상대적 공급 지표	
	절대적공급 지표	산식			유형	주민 체감도 지표
어린이집	최근린 어린이집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각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 집까지의 도로이동거리(500m 각자단위로 산 출)를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어린이집 접근 성 격차지표(국토지리정보원)	19.12	이용만족도	이용만족도 설문응답 결과 합 계분응답자 수 매우불만족(1)~매우만족(6)
	어린이집 도보 10분권 내 영유아 인구 비율	$\frac{\text{어린이집에서 750m 이내거주하는 영유아인구수} \times 100}{\text{영유아}(1 \sim 7\text{세})인구수}$	상동/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 제공 500m 각자단구 (나이는 한국나이 기준)	19.12	이용만족도	상동
유치원	최근린 유치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각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유치원 까지의 도로이동거리(500m 각자단위로 산출) 를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유치원 접근성 격차지표(국토지리정보원)	20.4	이용만족도	상동
	유치원 도보 10분권 내 영유아 인구 비율	$\frac{\text{유치원에서 750m 이내거주하는 영유아인구수} \times 100}{\text{영유아}(1 \sim 7\text{세})인구수}$	상동/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 랫폼 제공 500m 각자단구 (나이는 한국나이 기준)	19.8	이용만족도	상동

자료: 강연진·권미경·김보미·황영화·김희교(2020).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진단 및 적용. p. 317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함.

〈부표 2-2〉 아동기 보육/돌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유형	절대적 공급 지표			상대적 공급 지표		
	절대적 공급 지표	산식	데이터 출처	상대적 공급 지표	산식	
초등학교	초등학교 수	초등학교 수를 읍면동별 집계	2019 하반기 유초중고 학교 주소록	초등학교 연구 첨명당 초등학교 수	$\frac{\text{초등학교 수}}{\text{만6-12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	
지역아동 센터	지역아동 센터 수	지역아동센터 수를 읍면동별 집계	나눔플러스-ON 홈페이지 내 지역아동센터 찾기 페이지	만18세미만 아동 친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frac{\text{지역아동센터 수}}{\text{만0-17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	
유형	물리적 접근성 지표			주민 체감도 지표		
초등학교	최근린 초등학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격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까지의 도로이동거리(500m 각자단위로 산출)을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어린이집 접근성 격자지표(국토지리정보원)	이용민족도	$\frac{\text{이용민족도 설문 응답 결과 합}}{\text{설문 응답자 수}}$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6)	본 과업의 설문조사 C1 항목
	초등학교 도보10분권 내 초등학교평균 비용	$\frac{\text{초등학교에서 750m 이내거주하는 초등학교 평균 인구 수}}{\text{초등학교 평균 인구 (8-14세) 인구 수}} \times 100$	상동/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블랫폼 제공 500m 격자인구 (나이는 한국나이 기준)	이용민족도	상동	상동

자료: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2020).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Ⅱ):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진단 및 적용 p. 318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함.

〈부표 2-3〉 공원/녹지 육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유형	절대적 공급 지표				상대적 공급 지표			
	절대적 공급 지표	산식	데이터 출처	상대적 공급 지표	산식			
공원	공원의 수	공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동별 수 집계	2018(2019) 국토조사의 공원 위치 데이터 (국토지리정보원)	인구 만명당 공원 수	$\frac{\text{공원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0$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의 수	어린이공원의 소재지를 기준 으로 읍면동별 수 집계	상동	어린이 천명당 어린이공원 수	$\frac{\text{어린이공원 수}}{\text{만0-12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			
유형	물리적 접근성 지표				유형	주민 체감도 지표		
	최근린 생활권공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각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의 도로이동거리(500m 격자단위로 산술)을 읍면동 단위의 평균 값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어린이집 점 근성 각자지표(국토지리정보원)	18.12		이용만족도	$\frac{\text{이용만족도 설문 응답 결과 합}}{\text{설문 응답자 수}}$ 매우불만족(1)-매우만족(6)	
	생활권공원 도보10분권 내 인구 비율	$\frac{\text{생활권공원에서 750m 이내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상동/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 제공 500m 격자인구 (나이는 한국나이 기준)	20.4		이용만족도	상동	
	최근린 주재공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각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주재공원까지의 도로이동거리(500m 격 자단위로 산술)을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 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주재공원 점 근성 각자지표(국토지리정보원)	18.12				
주재공원 차량이동10분권 내 인구 비율		$\frac{\text{주재공원에서 500m 이내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상동/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 제공 500m 격자인구 (나이는 한국나이 기준)	20.4				

자료: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2020).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진단 및 적용. p. 319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함.

〈부표 2-4〉 여가/문화 육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금 지표/ 물리적 접근성/ 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유형	절대적 공금 지표			상대적 공금 지표			
	절대적 공금 지표	산식	데이터 출처	상대적 공금 지표	산식		
국공립 도서관	어린이 (유아) 자료실이 있는 국공립 도서관 수	어린이(유아)자료실이 있는 국공립도서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동별 수 집계	2018(2019) 국토조사의 국공립도서관 위치 데이터(국토지리정보원) 및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	어린이 천명당 어린이(유아) 자료실 보유 국공립도서관 수	$\frac{\text{어린이 (유아)자료실을 보유한 국공립도서관의 수}}{\text{만0-12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		
	어린이 도서관 수	어린이도서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동별 수 집계	상동	어린이 천명당 어린이도서관 수	$\frac{\text{어린이도서관 수}}{\text{만0-12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		
공영문화 시설	공영문화 시설 수	공영문화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동별 수 집계	2018(2019) 국토조사의 공영문화시설 위치 데이터(국토지리정보원)	인구 만명당 공영문화시설 수	$\frac{\text{공영문화시설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0$		
유형	물리적 접근성 지표			유형	주민 체감도 지표		
국공립 도서관	최근린 국공립도서관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격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국공립도서관까지의 도로이동거리(500m 격자단위로 산출)를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국공립도서관 접근성 각자지표(국토지리정보원)	국공립 도서관	이용만족도	이용만족도 설문응답 결과 합계 $\frac{\text{이용만족도 설문응답자 수}}{\text{매우불만족(1)-매우만족(6)}}$	본 과업의 설문조사 설문조사 C1 항목
	국공립도서관 도보10분권 내 인구 비율	$\frac{\text{국공립도서관에서 7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상동/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500m 격자인구 (나이는 한국나이 기준)	어린이 도서관	이용만족도	상동	상동
공영문화 시설	최근린 공영문화시설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격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공영문화시설까지의 도로이동거리(500m 격자단위로 산출)를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공영문화시설 접근성 각자지표(국토지리정보원)	공영문화 시설	이용만족도	상동	상동
	공영문화시설 차량이동 10분권 내 인구 비율	$\frac{\text{공영문화시설에서 5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상동/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500m 격자인구 (나이는 한국나이 기준)	20.4	이용만족도	상동	상동

자료: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2020).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Ⅱ):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진단 및 적용 p. 320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함.

〈부표 2-5〉 교통/안전 육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유형	절대적 공급 지표			상대적 공급 지표		
	절대적 공급 지표	산식	데이터 출처	상대적 공급 지표	산식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수	어린이보호구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동별 수 집계	경기도 데이터드림, 공공데이터포털	어린이 천명당 어린이보호구역 수	$\frac{\text{어린이보호구역 수}}{\text{만0-12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	
어린이 보호용 CCTV카메라	어린이보호용 CCTV카메라 수	상동	상동	어린이 천명당 어린이보호용 CCTV 카메라 수	$\frac{\text{어린이보호용 CCTV카메라 수}}{\text{만0-12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	
경찰서	경찰서 수	경찰서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동별 수 집계	2018(2019) 국토조사의 경찰서 위치 데이터(국토지리정보원)	인구 만명당 경찰서 수	$\frac{\text{경찰서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0$	
소방서	소방서 수	소방서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동별 수 집계	2018(2019) 국토조사의 소방서 위치 데이터(국토지리정보원)	인구 만명당 소방서 수	$\frac{\text{소방서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0$	
지진옥외 대피소	지진옥외 대피소 수	지진옥외대피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동별 수 집계	2018(2019) 국토조사의 지진옥외 대피소 위치 데이터(국토지리정보원)	인구 만명당 지진옥외대피소 수	$\frac{\text{지진옥외대피소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0$	
유형	물리적 접근성 지표			유형	주민 체감도 지표	
경찰서	최근린 경찰서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격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까지의 도로이동거리(500m 격자단위로 산출)를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경찰서 접근성 격자지표(국토지리정보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체 감도	마을/동네물리적환경 평가 설문 응답 결과 합계 점평균값 수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5)
	경찰서 차량이동10분권 내 인구 비율	$\frac{\text{경찰서에서 } 5km \text{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상동/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500m 격자단위(나이는 한국나이 기준)	어린이 보호용 CCTV 카메라	안전체 감도	본 과업의 설문조사 설문조사 D4-7
소방서	최근린 소방서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격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까지의 도로이동거리(500m 격자단위로 산출)를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공업문화시설 접근성 격자지표(국토지리정보원)	경찰서	안전체 감도	본 과업의 설문조사 설문조사 D4-8
	소방서 차량이동10분권 내 인구 비율	$\frac{\text{소방서에서 } 5km \text{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상동/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500m 격자단위(나이는 한국나이 기준)			

유형	절대적 공급 지표			상대적 공급 지표			
	절대적 공급 지표	산식	데이터 출처	상대적 공급 지표	산식		
지진 옥외 대피소	최근린·지진옥외 대피소까지의 평 균 도로이동거리	500m 격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진옥외대피소까지의 도로이동거리(500m 격자단위로 산출)를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으 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지진옥외대피소 접근성 격자지표(국토 지리정보원)	19.10			
	지진옥외대피소 도보10분권 내 인 구 비율	지진옥외대피소에서750m이내 거주하는주민등록인구수 전체 주민등록인구수	상동	20.4			

자료: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2020).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Ⅱ):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진단 및 적용 pp. 32
1~322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함.

〈부표 2-6〉 보건/의료 욕아 인프라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 지표/ 물리적 접근성/ 주민체감도 지표의 산식 및 데이터 출처

절대적 공급 지표			상대적 공급 지표		
유형	절대적 공급 지표	산식	데이터 출처	상대적 공급 지표	산식
산부인과	산부인과 병의원 수 병의원 수	산부인과 병의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음면동별 수 집계	중앙응급의료센터 병원찾기 웹페이지	여성인구 천명당 산부인과 병의원 수	$\frac{\text{산부인과 병의원 수}}{\text{산부인과 병의원 수}} \times 1,000$
소아 청소년과	소아 청소년과 병의원 수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소재 지를 기준으로 음면동별 수 집계	상동	소아청소년 천명당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수	$\frac{\text{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수}}{\text{만0-18세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
가정 의학과	가정의학과 병의원 수	가정의학과 병의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음면동별 수 집계	상동	인구 만명당 가정의학과 병의원 수	$\frac{\text{가정의학과 병의원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0$
종합병원	종합병원 수	종합병원의 소재지를 기준으 로 음면동별 수 집계	2018(2019) 국토조사의 종합병원 위치 데이 터 (국토지리정보원)	인구 만명당 종합병원 수	$\frac{\text{종합병원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0$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를 포함한 보건기관 수	보건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 로 음면동별 수 집계	2018(2019) 국토조사의 보건소 위치 데이 터 (국토지리정보원)	인구 만명당 보건기관 수	$\frac{\text{보건기관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00$
유형	물리적 접근성 지표			유형	주민 체감도 지표
산부인과/ 가정 의학과/ 소아 청소년과	최근린 병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격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병 원까지의 도로 이동거리(500m 격자단위로 산출)를 음면동 단위의 평균값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병원 접근 성 격자지표(국토지리정보원)	19.6	이용민족도 이용민족도 설문응답 결과 합 계한 응답자 수 매우불만족(1)~매우만족(6)
	병원 도보 10분권 내 인구 비율	$\frac{\text{병원에서 750m 이내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상동/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 제공 500m 격자단위 (나이는 한국나이 기준)	20.4	상동
	최근린 의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격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의 원까지의 도로 이동거리(500m 격자단위로 산출)를 음면동 단위의 평균값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의원 접근 성 격자지표(국토지리정보원)	19.6	상동

유형	절대적 공급 지표			상대적 공급 지표		
	절대적 공급 지표	산식	데이터 출처	상대적 공급 지표	산식	
종합병원	의원 도보10분권 내 인구 비율		$\frac{\text{의원에서 7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상동/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500m 격자인구(나이는 한국나이 기준)	20.4	
	최근린 종합병원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격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의 도로이동거리(500m 격자단위로 산출)을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지진·옥외대피소 접근성 격자지표(국토지리정보원)	19.10	상동
	종합병원 차량이동10분권 내 인구 비율		$\frac{\text{종합병원에서 5k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상동/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500m 격자인구	20.4	상동
보건기관	최근린 보건기관까지의 평균 도로이동거리		500m 격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기관까지의 도로이동거리(500m 격자단위로 산출)을 읍면동 단위의 평균값으로 재집계	2019 국토조사의 보건기관 접근성 격자지표(국토지리정보원)	19.6	
	보건기관 차량이동10분권 내 인구 비율		$\frac{\text{보건기관에서 5k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 수}}{\text{전체 주민등록인구 수}} \times 100$	상동/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500m 격자인구(나이는 한국나이 기준)	20.4	

자료: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2020).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Ⅱ):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진단 및 적용. pp. 32
3~324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함.

부록 4. 저출생 및 육아친화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생 및 육아친화 인식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연구의 한 부분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질문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으니 귀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주식회사 입소스에서 진행하며, 조사 수행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아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0월

○ 조사주관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 수행 담당 : (주)입소스 최형민 부장	○ 연락처 : 02 - 6464 - 5343

* 응답자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

입소스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개인(기업) 정보를 중요시하며 본 조사결과 통계 분석 및 조사 참여 확인 등을 위해 당사는 아래와 같이 귀하 및 귀사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일반정보의 수집, 이용내역	수집 및 이용	보유기간
	개인(기업) 통계 데이터 분석 및 조사 검증	본 과업 계약 종료 시점 이후 1년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기업)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해 주셔야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개인(기업)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사불가)

SQ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 ① 여성 ② 남성

SQ2. 귀하의 나이를 만 나이로 입력해 주세요.

연령 만 _____ 세

SQ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선택해 주세요.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3-1.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및 읍면동을 적어주세요.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SQ3-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거주 기간 ()개월

*** 지금부터 저출생 및 육아친화와 관련한 주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Q1.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심각한 편이다
④ 매우 심각하다

Q2.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군구)의 인구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많은 편이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부족하다) ④ 매우 적은 편이다(매우 부족하다)

Q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20~30대의 젊은 세대가 정착해 살기에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부적절하다→(Q3-1로 이동) ② 다소 부적절하다→(Q3-1로 이동)
③ 적절한 편이다 ④ 매우 적절하다

Q3-1. (Q3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20~30대의 젊은 세대가 정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로테이션)

- ①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 ②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
- ③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어린이집, 교육환경 등)
- ④ 교통 환경이 불편해서
- ⑤ 일자리가 부족해서
- ⑥ 주택공급 부족
- ⑦ 기타 ()

Q4.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다 ② 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③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다 ④ 충분히 구성되어 있다

Q5. 결혼,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는 다음의 정책 중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순위대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3순위까지 응답, 보기 로테이션)

- ① 청년고용 활성화
- ② 청년 주거지원 강화
- ③ 임신·출산 관련 의료 지원 강화
- ④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⑤ 질 좋은 보육·돌봄 확대
- ⑥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개혁
- ⑦ 성평등한 일·가정양립 실현 지원 강화
- ⑧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 ⑨ 결혼·출산친화 인식 개선 강화
- ⑩ 비혼 출산(미혼모), 입양 등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 ⑪ 영유아 및 아동 중심의 주거환경 지원
- ⑫ 기타 ()

Q9. 다음 지문을 제시했을 때,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점, ‘매우 필요하다’는 4점으로 4개 보기 가운데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9-1.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청년 취업지원정책 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9-2.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결혼장려정책 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9-3.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정책 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9-4.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일·가정양립정책 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9-5. 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아동돌봄정책 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②	③	④

Q10. ‘육아친화마을(환경)’이란 ‘병원, 유치원, 학교 등 육아지원 서비스 인프라와 유모차 편의, 놀이공간 조성 등 물리적 환경을 갖추는 등 전반적으로 육아를 위해 협력되는 마을(환경)’을 의미합니다. 육아친화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느 단위의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중앙정부 ②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및 도) ③ 기초자치단체(시군구)

Q11.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기초자치체(시군구)가 ‘육아친화환경’ 조성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 ② 별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③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 ④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Q12. 다음 중 육아친화환경(마을) 조성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기 로테이션)

- ① 육아에 대한 철학과 가치 실현
② 육아를 위한 지역 인적네트워크
③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④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Q15. 귀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것이 낫다
③ 없어도 괜찮다 ④ 없는 것이 낫다

**Q15-1. (Q15 ①,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왜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보기 로테이션)**

- ① 자녀 있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②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므로
③ 대부분이 자녀를 낳으므로
④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가치/보람 있기 때문에
⑤ 가족의 화목을 위해
⑥ 노년이 쓸쓸할 것 같아서
⑦ 노후에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⑧ 기타 ()

**Q15-2. (Q15 ③,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왜 자녀가 없는 것이 괜찮거나 낫다고
생각합니까? (보기 로테이션)**

- ① 경제적 부담
② 자녀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③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종사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
④ 본인 혹은 부부의 삶에 집중하고자
⑤ 자녀가 없어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
⑥ 사회의 양육친화환경 조성 미흡
⑦ 사회 및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성평등 인식 부족
⑧ 기타 ()

**Q16. 귀하는 아래 친화도시 인증 관련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
사업의 주체는 민간 혹은 중앙정부 등으로 다양하고 그 대상도 다양함)**

번호	사업명	예	아니오
1	아동친화도시		
2	여성친화도시		
3	가족친화인증		
4	고령친화도시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Ⅲ):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

